

연구보고 14-R09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김승경

공동연구원

송미경

N

Y

P

I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 김승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송미경(서울여자대학교·교수)
- ▶ 연구보조원 : 김미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인턴)



## 발 간 사 ■ ■ ■

---

현 정부에서는 가정폭력을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더불어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4대악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정부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가정폭력을 일반적으로 가정의 사적인 일이 아닌 범죄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에도 가해자에 대한 성행교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과 피해자들이 가정폭력과 혼육 사이의 모호한 경계 속에서 혼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폭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심리적 상처를 가지게 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조사자료의 분석과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연구들이 피해 여성들에게, 그리고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아동·청소년 자녀에게 초점을 두어온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청소년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이들이 가정폭력 후 집으로부터 벗어나 경험하는 다양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갖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가정폭력 쉼터 원장님들과 현장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담당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원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의 진행을 위해 면접에 참여해주신 쉼터 거주 어머님들과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연구의 성과가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 개선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 혁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은 아동·청소년 개인의 발달과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경우 비행과 범죄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피해자 지원을 넘어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 분석, 가정폭력 피해 어머니, 아동·청소년,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직접적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던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상의 보호와 지원을 가정폭력행위에 의한 피해자에게도 지원 가능하도록 범주화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행위를 할 경우 수감명령, 치료명령, 상담명령을 통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행위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개선을 위한 상담이나 지원, 조정에 회복적 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대상별로 나누어져 있는 가정폭력 지원업무를 총괄하여 '가정폭력' 사안에 대한 업무체계를 총괄하는 '통합 가정폭력 원스톱 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여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연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부재한 좋은 가정, 좋은 부모 역할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외상을 돌보기 위한 상시적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폭력재발의 위험이 있는 가정으로 되돌아가거나 함께 동거하길 원하지 않는 부모와 동거해야 하는 상황 등에 처하게 되기도 하므로 아동·청소년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상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정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하고, 피해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쉼터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연구 요약

###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지난 2013년 정부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 의결한 바 있으나, 여전히 자녀에 대한 양육의 권리는 부모가 가지고 있고, 훈육과 가정폭력 간의 경계가 모호하며, 가정폭력으로 판정될 경우에도 가해자의 성행교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은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정이라는 공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중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개별 피해자 특성별로 분리되어 있는 피해자 보호체제로 인해 피해 가족구성원들은 구성원 특성별로 별개의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현실이다.
-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은 아동·청소년 개인의 발달과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경우 비행과 범죄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피해자 지원을 넘어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가족 회복을 위한 가족보호 방안의 측면에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가정폭력의 개념 및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발달 문제, 국내외 가정폭력 대응정책 등에 관해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관련 공식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 가정폭력의 개념 및 가정폭력과 관련한 아동·청소년의 발달 특성
- 국내외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응방안 및 지원서비스 현황 고찰

## ○ 전문가 자문

본 연구의 방향과 범위, 방법 등을 설정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및 학계·현장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관련한 문제점 및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한 학계·현장 전문가 자문회의와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공무원 및 학계·현장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 ○ 양적연구: 가정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3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부가조사 중 아동·청소년 생활실태조사 및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 ○ 질적연구: 심층면접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탐색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 및 생활의 변화, 피해자 보호 쉼터에서의 생활, 지원에 대한 요구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어머니, 피해자 보호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가정폭력 발생 시 대응

방법, 현 지원체계 및 서비스의 장단점, 지원체계 및 서비스의 보완요구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 ○ 콜로키움

심층면접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관련 제도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론: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와 ‘가정폭력 사건의 회복적 사법 도입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 3. 주요결과

### 1)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입을 위해 공적기관(경찰)과 민간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마련 필요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분 및 가정복귀(또는 부모 격리 시) 등에 관한 의사 결정 시,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 필요
- 피해자의 상황 및 피해자 특성에 부합하는 대처방안을 피해자 입장에서 다양하게 제시해야 할 필요성 요구
- 신고주체나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인프라 구축 필요
- 단순한 가해자 성행교정 교육 및 피해자 상담·심리치료 이외에 가·피해 당사자 간 관계지향적 갈등해결의 방법 도입 필요

## 2)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 ○ 피해 아동·청소년 조사 결과

- 부모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적으며,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주변 성인들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 도움을 주지 않거나 별다른 조치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학교나 전문기관 담당자들은 상담이나 출동의 조치를 취해주긴 하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부모 간 폭력 목격을 경험한 경우에도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주변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낮긴 하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가정폭력을 심각한 일로 여기지 않거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겨 별다른 행동을 취해주지 않음.
- 부모에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비해 부모에 대한 폭력가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폭력 피해 자녀들이 이후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자로 변화될 가능성을 시사함.
- 중복폭력 피해 경험 아동·청소년들이 폭력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청소년에 비해 폭력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상황이나 갈등에 직면하였을 때 폭력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 피해자(여성) 실태조사 결과

- 성장기동안의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나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는 여성들은 폭력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거나 사회질서 유지나 일처리를 위해 폭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등 폭력에 대해 보다 관대한 태도를 가지는 경향을 보임.
-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은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높음.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높음.
-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를 위해서는 상담 및 심리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는 학업지원, 용돈 및 경제적 지원이 요구됨.

### 3)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심층면접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가정폭력이 일어난 후 가해자인 아버지에게는 미움과 불쌍함이 공존하는 양가감정을, 피해자인 어머니에게는 보호해주지 못했음에 대한 미안함이 가장 크다고 보고함. 가해자와 피해자인 부모 사이에서의 심리적 상처와 분노와 죄책감과 같은 양가감정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치료 지원이 요구됨.
- 가정폭력 발생 후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해 자책과 연민의 마음을 가짐.
- 폭력 경험 후 시설입소과정에서는 대체로 어머니의 결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남. 피해 어머니를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 자신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폭력에 대한 무서움과 공포 등으로 인해 어머니의 의견을 따르고 어머니를 위해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임.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지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함. 가정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예방차원의 교육과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쉼터 및 일시보호소에 대한 홍보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가정회복 및 자립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요구됨.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가차원의 상담 및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가 가능한 기관 지원이 필요함.

## 4. 정책제언

### ○ 법률 관련 개선방안

- 가정폭력행위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한 구별을 통한 조기개입
  - 가정폭력범죄의 직접적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던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상의 보호와 지원을 가정폭력행위에 의한 피해자에게도 지원가능하도록 범주화해야 함.
  -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행위를 할 경우 수감명령, 치료명령, 상담명령을 통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행위를 차단해야 함.

- 건전한 가정육성의 목적을 가정폭력보호법에 명시
  - 가정폭력범죄 이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가정폭력 행위 시 국가가 복지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보호법에 '건강한 가정육성'을 목적으로 설정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 개입의 길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관계개선을 위한 갈등해결의 관점에서 회복적 정의 도입방안 마련
  - 원가정 구성원과의 재결합이 가능한 관계개선, 재결합이 불가능하지만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개선을 위한 상담이나 지원, 조정에 회복적 정의 도입이 필요함.
  
- 정책 관련 개선방안
  - 가정폭력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필요
    -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직후 서비스를 필요로 하긴 하나, 어느 기관에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현재 대상별로 나누어져 있는 가정폭력 지원업무를 총괄하여 '가정폭력' 사안에 대한 업무체계를 총괄하는 '통합 가정폭력 원스톱 지원센터(가칭)' 설립을 통해 피해자의 연령, 성별,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서비스를 연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가정폭력 회복센터 설치·운영
    - 기존 가정폭력 상담기관은 대체로 피해 여성들을 위한 상담에 초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성행교정,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회복적 정의'의 측면에서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센터의 설립이 요구됨.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부재한 좋은 가정, 좋은 부모 역할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심리적 외상센터 운영
    -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의 범죄행위, 사회문

제로 받아들이고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외상을 돌보기 위한 상시적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요구됨. 다만, 가정폭력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각종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기 운영 중인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상담복지센터 등에 배치하여 지원횟수나 지원비용의 한계로 인해 치유에 이르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 필요

-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거취문제 등 다양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폭력재발의 위험이 있는 가정으로 되돌아가거나 함께 동거하길 원하지 않는 부모와 동거해야 하는 상황 등에 처하게 되기도 함. 이에 아동·청소년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현장전문가들은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 상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아동·청소년의 폭력 피해 경험(폭력 목격 경험)은 개인의 성장발달 과정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개인이 처한 상황과 자원에 따라 회복가능성이 매우 다양할 수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와 지원의 여부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 상황과 정도에 따라, 아동·청소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 아동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함.

○ 건강한 가정 및 사회 육성을 위한 반폭력 교육 실시

-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고, 추후 가정폭력 및 기타 폭력문제의 가해자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으며, 폭력의 대물림 가능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각종 폭력 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 반폭력 교육을 실시해야 함. 반폭력교육은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한 방법이 아님을 가르치고, 대인간 갈등해결의 방법과 자신과 타인의 인권보호 등의 내용에 기반하여 폭력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가정폭력 업무담당자들의 편견과 선입견 등으로 인해 2차적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은 사적인 가족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 쉼터 공간 개선 및 확충

-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제공해야 하는 쉼터 공간이 성별이나 연령 제한 문제로 인해 입소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청소년 일시쉼터의 경우 시도별 1개소 이상, 쉼터 내 남자 청소년 방과 여자 청소년 방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입소를 원하는 청소년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해야 함.
-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의 경우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여성(남성)쉼터, 피해가족쉼터,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를 위한 쉼터 등 그 유형을 다양화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주요 연구 내용 .....	6
1)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분석 .....	6
2) 국내외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현황 분석 .....	7
3)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7
3. 연구 방법 .....	8
1) 문헌연구 .....	8
2) 전문가 자문 .....	8
3) 양적연구: 가정폭력 실태조사 .....	9
4) 질적연구: 심층면접 .....	10
5) 콜로키움 .....	11
II. 이론적 배경 .....	13
1. 가정폭력의 개념 및 유형 .....	15
2. 가정폭력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19
1)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환경 .....	19
2) 가정폭력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22
3) 가정폭력의 세대간 전이 .....	25
III.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	29
1. 국내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법 및 지원체계 .....	31
1) 개관 .....	31
2) 법률상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	32

3) 가정폭력관련 법률의 분석 .....	34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 .....	38
5) 가정폭력 대응 서비스에서 피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대응현황 ..	43
6)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 .....	44
2. 해외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	59
1) 개관 .....	59
2) 피해 아동 지원 및 보호 정책 .....	60
3) 일선에서의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보호 및 지원 .....	63
3. 소결 및 시사점 .....	67
<b>IV.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b>	<b>71</b>
1. 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요 .....	73
1) 조사개요 .....	73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79
1)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 .....	79
2)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	138
3. 소결 및 시사점 .....	154
<b>V.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심층면접 .....</b>	<b>157</b>
1. 조사 대상 및 방법 .....	159
1)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피해 여성 대상 심층면접 .....	159
2)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 .....	164
2. 심층면접 결과 .....	166
1)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결과 .....	166
2) 가정폭력 피해 여성 대상 심층면접 결과 .....	181
3) 현장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	211

3. 논의 및 시사점 .....	238
<b>VI. 정책 제언 .....</b>	<b>241</b>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	243
1) 가정폭력 관련 법률 상 제한점 .....	243
2) 가정폭력 대응 서비스 상의 제한점 .....	245
2. 정책제언 .....	247
1) 법률 관련 개선 방안 .....	247
2) 정책 관련 개선 방안 .....	249
<b>참 고 문 헌 .....</b>	<b>257</b>

# 표 목 차

〈표 II-1〉 가정폭력 유형 .....	16
〈표 II-2〉 자녀에 대한 폭력에 관련된 요인들 .....	20
〈표 III-1〉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 매뉴얼 .....	43
〈표 III-2〉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내용(여성가족부) .....	48
〈표 III-3〉 CYS-net 서비스 내용 .....	58
〈표 IV-1〉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요 .....	74
〈표 IV-2〉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조사변인 .....	75
〈표 IV-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76
〈표 IV-4〉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개요 .....	77
〈표 IV-5〉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78
〈표 IV-6〉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	80
〈표 IV-7〉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변화 추이 .....	83
〈표 IV-8〉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성별 .....	85
〈표 IV-9〉 지난 1년 이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성별 .....	86
〈표 IV-10〉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학교급별 .....	87
〈표 IV-11〉 지난 1년 이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학교급별 .....	88
〈표 IV-12〉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지역규모별 .....	89
〈표 IV-13〉 지난 1년 이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지역규모별 .....	90
〈표 IV-14〉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한 이유 .....	91
〈표 IV-15〉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아동·청소년의 반응 .....	92
〈표 IV-16〉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 여부 .....	92
〈표 IV-17〉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 여부: 성별 .....	93
〈표 IV-18〉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 여부: 학교급별 .....	94
〈표 IV-19〉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다친 적이 있는 경우 상처부위 .....	95
〈표 IV-20〉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경험 여부 .....	96

〈표 IV-21〉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한 마음상태 .....	97
〈표 IV-22〉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 여부 ....	98
〈표 IV-23〉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경험: 성별 ...	99
〈표 IV-24〉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경험: 학교급별 ..	100
〈표 IV-25〉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경험: 지역규모별 ...	101
〈표 IV-26〉 부모님의 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 .....	102
〈표 IV-27〉 부모님의 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의 반응 ...	104
〈표 IV-28〉 부모 간 폭력 목격률 변화 추이 .....	106
〈표 IV-29〉 부모 간(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 목격률 .....	109
〈표 IV-30〉 부모 간(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 목격률 .....	110
〈표 IV-31〉 부모 간 폭력을 목격했을 때 아동·청소년의 반응 .....	111
〈표 IV-32〉 부모 간 폭력을 목격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경험 여부 .....	111
〈표 IV-33〉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 .....	112
〈표 IV-34〉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의 반응 ..	113
〈표 IV-35〉 부모 간 폭력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경험 여부 ....	115
〈표 IV-36〉 부모 간 폭력으로 인한 마음상태 .....	116
〈표 IV-37〉 아동·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발생률 변화 추이 .....	117
〈표 IV-38〉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	119
〈표 IV-39〉 지금까지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따른 지난 1년 간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	120
〈표 IV-40〉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따른 지난 1년 간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	121
〈표 IV-41〉 아동·청소년의 폭력허용도 .....	122
〈표 IV-42〉 아동·청소년의 폭력허용도 차이: 가정폭력 경험 유형별 .....	123
〈표 IV-43〉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 경험 .....	124

〈표 IV-44〉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여부: 성별 .....	127
〈표 IV-45〉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여부: 학교급별 .....	128
〈표 IV-46〉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	130
〈표 IV-47〉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성별 .....	133
〈표 IV-48〉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교급별 .....	134
〈표 IV-49〉	위와 같은 일(피해)이 일어났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반응 .....	136
〈표 IV-50〉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반응 .....	137
〈표 IV-51〉	배우자로부터의 가정폭력 발생률: 유형별 .....	139
〈표 IV-52〉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증상 여부 .....	141
〈표 IV-53〉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 .....	142
〈표 IV-54〉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증상 .....	143
〈표 IV-55〉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	145
〈표 IV-56〉	성장기(만 18세 이전) 동안에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	146
〈표 IV-57〉	성장기(만 18세 이전) 동안에 부모 간 폭력 목격 경 .....	147
〈표 IV-58〉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에 따른 폭력허용도 .....	148
〈표 IV-59〉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 폭력경험에 따른 본인의 자녀 폭력 가해 여부 ...	149
〈표 IV-60〉	성장기동안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에 따른 본인의 자녀 폭력 가해 여부 ..	150
〈표 IV-61〉	지난 1년 간 폭력 피해 어머니와 가해 아버지의 자녀 폭력 가해 여부 ...	151
〈표 IV-62〉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경험에 따른 본인의 자녀 폭력 여부 ..	152
〈표 IV-63〉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	153
〈표 V-1〉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 .....	160

〈표 V-2〉 가정폭력 피해 여성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 .....	161
〈표 V-3〉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심층면접 질문 영역 .....	163
〈표 V-4〉 가정폭력피해 어머니 심층면접 질문 영역 .....	164
〈표 V-5〉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자 현황 .....	165
〈표 V-6〉 현장전문가 심층면접 질문 영역 .....	166
〈표 V-7〉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험 영역 .....	167
〈표 V-8〉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경험 영역 ..	173
〈표 V-9〉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현재 입소 중인 시설에서의 경험 영역 .....	177
〈표 V-10〉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경험 영역 .....	181
〈표 V-11〉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경험 영역 .....	189
〈표 V-12〉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현재 입소 중인 시설에서의 경험 영역 .....	204

# 그림 목 차

【그림 Ⅲ-1】 법률상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	33
【그림 Ⅲ-2】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추진 방향 .....	46
【그림 Ⅲ-3】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 .....	50
【그림 Ⅲ-4】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 .....	51
【그림 Ⅲ-5】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추진전략 .....	54
【그림 Ⅲ-6】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	56
【그림 Ⅲ-7】 CYS-Net 지원체계 .....	58
【그림 Ⅲ-8】 Help Call 1388청소년전화 상담접수 및 업무처리과정 .....	59
【그림 Ⅳ-1】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정서적 폭력 .....	81
【그림 Ⅳ-2】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경한 신체적 폭력 .....	82
【그림 Ⅳ-3】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중한 신체적 폭력 .....	82
【그림 Ⅳ-4】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방임 .....	83
【그림 Ⅳ-5】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변화 추이: 2010년 .....	84
【그림 Ⅳ-6】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변화 추이: 2013년 .....	84
【그림 Ⅳ-7】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성별 .....	85
【그림 Ⅳ-8】 지난 1년 이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성별 .....	86
【그림 Ⅳ-9】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학교급별 .....	87
【그림 Ⅳ-10】 지난 1년 이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학교급별 .....	88
【그림 Ⅳ-11】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지역규모별 .....	89
【그림 Ⅳ-12】 지난 1년 이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지역규모별 .....	90
【그림 Ⅳ-13】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한 이유 .....	91
【그림 Ⅳ-14】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아동·청소년의 반응 .....	92
【그림 Ⅳ-15】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 여부 .....	93
【그림 Ⅳ-16】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 여부: 성별 .....	94
【그림 Ⅳ-17】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 여부: 학교급별 .....	95

【그림 IV-18】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다친 적이 있는 경우 상처부위 .....	96
【그림 IV-19】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경험 여부 ...	97
【그림 IV-20】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한 마음상태 .....	98
【그림 IV-21】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 여부 ..	99
【그림 IV-22】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경험: 성별 ..	100
【그림 IV-23】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경험: 학교급별 ..	101
【그림 IV-24】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경험: 지역규모별 .....	102
【그림 IV-25】 부모님의 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 ...	103
【그림 IV-26】 부모님의 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의 반응: 친인척 및 학교 밖 성인 .....	105
【그림 IV-27】 부모님의 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의 반응: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 .....	105
【그림 IV-28】 부모 간 폭력 목격률 변화 추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2010년 ...	107
【그림 IV-29】 부모 간 폭력 목격률 변화 추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2010년 ...	107
【그림 IV-30】 부모 간 폭력 목격률 변화 추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2013년 ...	108
【그림 IV-31】 부모 간 폭력 목격률 변화 추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2013년 ...	108
【그림 IV-32】 부모 간(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 목격률 .....	109
【그림 IV-33】 부모 간(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 목격률 .....	110
【그림 IV-34】 부모 간 폭력을 목격했을 때 아동·청소년의 반응 .....	111
【그림 IV-35】 부모 간 폭력을 목격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경험 여부 .....	112
【그림 IV-36】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 ...	113
【그림 IV-37】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의 반응: 친인척 및 학교 밖 성인 .....	114
【그림 IV-38】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의 반응: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 .....	115

【그림 IV-39】 부모 간 폭력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경험 여부	116
【그림 IV-40】 부모 간 폭력으로 인한 마음상태	117
【그림 IV-41】 아동·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발생률 변화 추이: 2010년	118
【그림 IV-42】 아동·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발생률 변화 추이: 2013년	118
【그림 IV-43】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119
【그림 IV-44】 지금까지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따른 지난 1년 간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120
【그림 IV-45】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따른 지난 1년 간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121
【그림 IV-46】 아동·청소년의 폭력허용도	122
【그림 IV-47】 아동·청소년의 폭력허용도 차이: 가정폭력 경험 유형별	123
【그림 IV-48】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 경험: 언어폭력	125
【그림 IV-49】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 경험: 따돌림	125
【그림 IV-50】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 경험: 강제 심부름	125
【그림 IV-51】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 경험: 금품 갈취	126
【그림 IV-52】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 경험: 감금	126
【그림 IV-53】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 경험: 성추행	126
【그림 IV-54】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 경험: 사이버폭력	127

【그림 IV-55】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여부: 성별 .....	128
【그림 IV-56】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여부: 학교급별 .....	129
【그림 IV-57】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언어폭력 .....	130
【그림 IV-58】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따돌림 .....	131
【그림 IV-59】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강제 심부름 .....	131
【그림 IV-60】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금품 갈취 .....	131
【그림 IV-61】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감금 .....	132
【그림 IV-62】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성추행 .....	132
【그림 IV-63】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사이버폭력 .....	132
【그림 IV-64】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성별 .....	134
【그림 IV-65】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교급별 .....	135
【그림 IV-66】	위와 같은 일(피해)이 일어났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반응 .....	136
【그림 IV-67】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반응 ..	137
【그림 IV-68】	배우자로부터의 가정폭력 발생률: 정서적 폭력 .....	140

【그림 IV-69】 배우자로부터의 가정폭력 발생률: 경제적 폭력 .....	140
【그림 IV-70】 배우자로부터의 가정폭력 발생률: 경한 신체적 폭력 .....	140
【그림 IV-71】 배우자로부터의 가정폭력 발생률: 중한 신체적 폭력 .....	141
【그림 IV-72】 배우자로부터의 가정폭력 발생률: 성폭력 .....	141
【그림 IV-73】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증상 여부 .....	142
【그림 IV-74】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 .....	143
【그림 IV-75】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증상 .....	144
【그림 IV-76】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	145
【그림 IV-77】 성장기(만 18세 이전) 동안에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	146
【그림 IV-78】 성장기(만 18세 이전) 동안에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 .....	147
【그림 IV-79】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에 따른 폭력허용도: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 여부 .....	148
【그림 IV-80】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에 따른 폭력허용도: 부모로부터 폭력을 목격한 경험 여부 .....	148
【그림 IV-81】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 폭력경험에 따른 본인의 자녀 폭력 가해 여부 .....	149
【그림 IV-82】 성장기동안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에 따른 본인의 자녀 폭력 가해 여부 .....	150
【그림 IV-83】 지난 1년 간 폭력 피해 어머니와 가해 아버지의 자녀 폭력 가해 여부 .....	151
【그림 IV-84】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경험에 따른 본인의 자녀 폭력 여부 .....	152
【그림 IV-85】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	153

# 제 I 장

---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방법



제 I 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은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최초의 장이자, 인간 형성의 가장 중요한 사회화의 장으로 인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문희 외, 2004:48). 가정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은 가족원들로부터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받고, 부모는 양육과 보호를 제공하고, 사회의 가치와 요구를 가르치며 사회적 경험을 확장하는데 기본이 되는 자아개념 및 자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Grusec & Lytton, 1988; 강문희 외, 2004:50에서 재인용) 자녀가 보다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가정은 아동이 처음으로 접하는 중요한 환경이자, 부모를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는 장이 된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에게 심리적·정서적 지지의 장이 되어야 할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 우리사회는 대체로 부부 간의 사소한 다툼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훈육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허용적인 태도를 취해왔으며, 가족이 아닌 타인이 관여해서는 안되는 '사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폭력은 가정의 건강한 유지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동학대와는 달리,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폭력행위의 대상에 따라 부모폭력과 부부폭력, 형제간의 폭력, 부모에 대한 자식의 폭력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들 모두 1차집단 내의 구성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김재엽, 김희수, 양혜원, 2006:85). 또한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의 유형과는 다르게 고정된 대상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사되며,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교육과 훈계의 도구, 혹은 애정의 또 다른 표현으로 포장되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으로 이해되는 경향성을 갖는다(김재엽, 김희수, 양혜원, 2006:85).

대체로 가정폭력은 그간 여성인권적 관점에서 ‘아내를 대상으로 하는 구타 또는 학대’ 등의 아내폭력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일부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까지 포함하여 부부폭력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여성가족부, 2013). 보통 자녀에 대한 학대는 아동학대의 의미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는데, 아동학대의 정의 및 아동학대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은 가해자로서 부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학대경험을 묻고 있으며,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부부간 폭력과 자녀에 대한 폭력을 별개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가정폭력의 피해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직접 폭력을 당하거나, 피학대 부모로부터 직접 폭력을 당하는 등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외에도 부모 간 폭력이 일어날 경우 폭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가정 내 다른 장소에서 폭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듣거나, 부모 간 폭력이 이루어진 후 피해 부모의 상처나 부서진 물건 등을 목격하는 등을 통해 부모의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는 경우인 부모 간 폭력 목격 등을 포함할 수도 있는 등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의 피해의 내용과 정도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은 종종 동일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데, 어떤 형태의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곳은 다른 형태의 가정폭력 역시 발생할 강한 경향성이 있고, 부모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에 대한 영향이 부모에 의해 직접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의 결과와 현저하게 유사하고 그러한 두 경험 모두 청소년 폭력에 유의미하게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발생과 매우 연관된 많은 요인들이 또한 가정폭력과 연관되어 있고, 이러한 많은 요인들은 아동들을 청소년 폭력 및 성인 폭력 범주의 위험에 놓이게 하는 많은 요인들과 동일하다는 특성을 가진다(Carter, 2005:1). 이러한 점에서 가정폭력과 자녀에 대한 폭력(학대)은 별개의 문제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가정폭력이라는 관점 내에서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sup>1)</sup>

나아가 이러한 가정폭력은 일반폭력과 달리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정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가정 내 무의식적 인권침해로, 주요 범죄의 잠재적

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직접 폭력을 당하는 경우(부모에 의한 직접 폭력, 피학대 부모로부터의 직접 폭력)와 부모로부터 직접 폭력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부모 간 폭력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경우 등을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요인이 되며, 폭력이 대물림되는 등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특성을 가진다(국가정책조정회의, 2013:2). 또한 가정폭력은 개인의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하고 극단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가정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가정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건강과 안전만이 아니라 가해자와 자녀,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우리사회의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거나, 세대 간에 전이되거나, 사회비행과 범죄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박인선, 2002:77).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사회 전반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이 존재하는 가정에서 다른 형태의 가정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며, 자녀가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인격형성이나 적응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의 목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의한 발견이나 신고가 쉽지 않으며, 가정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한 가정 내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생활을 해나가야 하며,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정을 떠나야 한다는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만성적인 폭력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들은 폭력에 대해 정서적으로 무감각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무기력해지는 등의 문제를 가질 수도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신고나 처벌 없이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서 가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자립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불량식품을 4대약으로 규정하고 4대약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8개 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가정폭력을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 치유에 초점을 두어오던 치료적 접근에서 한걸음 나아가 건강한 가정회복에 초점을 두고 초기대응 및 처벌강화, 피해자 및 가족보호 확대,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등의 3개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 권리는 보호자인 부모가 가지고 있고, 훈육과 가정폭력 간의 경계가 모호하며, 설령 가정폭력으로 판명될 경우에도 가해자의 성행교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가정이라는

공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중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건강한 가족 회복을 위해 가족보호 방안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별 피해자별로 분리되어 있는 피해자 보호체계에 의하여 가정폭력 피해 가족 구성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은 향후 개인의 발달에 지속적인 위협성을 갖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둔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실시된 다양한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일반 아동·청소년에게서의 가정폭력 발생 실태나 가정폭력 피해 어머니를 중심으로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둔 것에서 벗어나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결과 분석을 통해 가정폭력 발생과 관련한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어머니, 현장전문가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변화나 가정에 대한 인식, 피해자 보호시설에서의 경험 등에 대한 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며, 개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넘어 한 가족구성원의 행동이 다른 가족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족 전체성(유영주, 2004:498)의 측면에서의 피해자 보호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가족 회복을 위한 가족보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2. 주요 연구 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분석

#### (1)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 분석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관련 공식통계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통계자료인 가정폭력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3)의 부가조사인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와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서의 가정폭력 발생 실태, 가정폭력 경험과 친구 간 폭력 경험 간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발생 실태, 가정폭력으로 인한 영향, 폭력의 세대 간 전이 등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 (2)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어머니, 가정폭력 보호시설 현장종사자 대상 심층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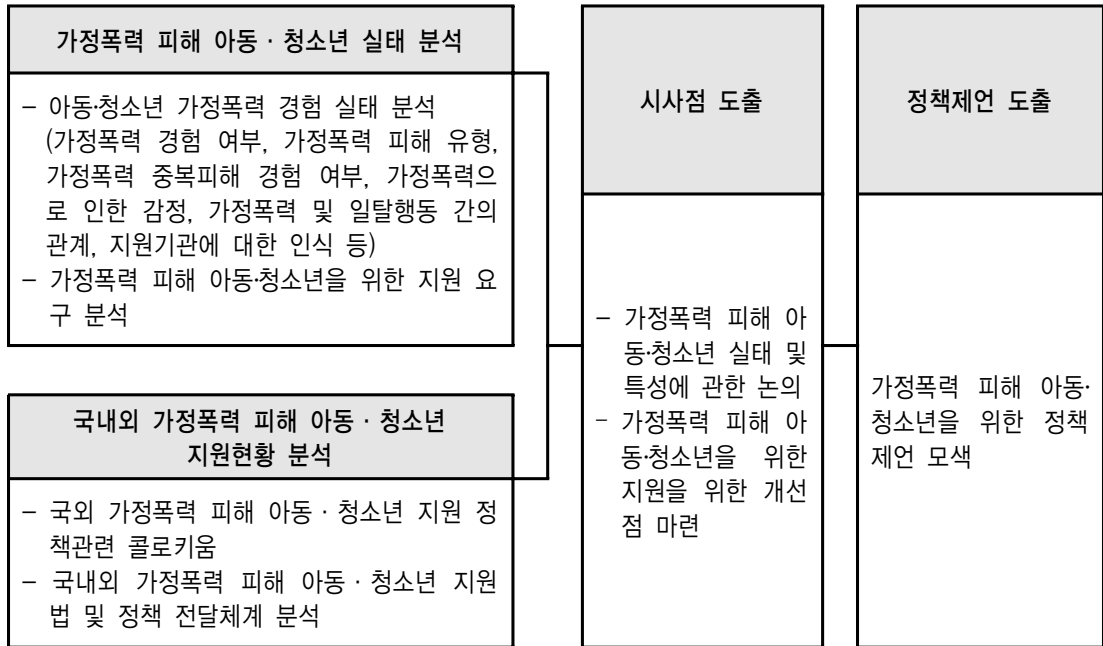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청소년, 어머니, 그리고 보호시설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반응, 피해자인 자신에 대한 반응, 가정폭력으로 인한 생활태도의 변화 등 가정폭력과 관련한 피해자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현재 입소 중인 시설에서의 생활 경험,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 시설 종사자와의 관계,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 2) 국내외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현황 분석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 및 지원체계에 관한 현황 분석을 통해 시사점 및 보완점을 도출하였다.

## 3)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중심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지원에 대한 요구, 현 지원체계 및 서비스의 장단점, 지원체계 및 서비스의 보완요구사항 등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가정폭력 관련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현행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모색하고, 앞서 기술한 내용과 더불어 콜로키움, 전문가 의견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3. 연구 방법

#### 1) 문헌연구

가정폭력의 개념 및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발달 문제, 국내의 가정폭력 대응정책 등에 관해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가정폭력실태 조사 관련 공식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 가정폭력의 개념 및 가정폭력과 관련한 아동·청소년의 발달 특성
- 국내외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응방안 및 지원서비스 현황 고찰

#### 2) 전문가 자문

본 연구의 방향과 범위, 방법 등을 설정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및 학계·현장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관련한 문제점 및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한 학계·현장 전문가 자문회의와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공무원 및 학계·현장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 3) 양적연구: 가정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3 가정폭력실태 조사의 부가조사 중 아동·청소년 생활실태조사 및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 ○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
조사지역	전국 15개 시/도 (제주도 제외)
조사완료	1,069명
모집단 층화	· 지역규모(대도시/중소도시/농촌), 학교급(초/중/고), 학년, · 내재적 층화: 남/녀/남녀공학, 사립/공립
표본배분	비례배분
표본추출	다단계 층화 확률비례추출법
조사방법	전문조사원에 의한 방문조사
조사기간	2013.10.24.~2013.11.15.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p.9)

○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이용 만 19세 이상 피해자
조사지역	전국
조사완료	상담소 148명, 보호시설 119명
모집단 층화	· 1차: 시설유형 · 2차: 지역
표본배분	시설별 균등배분
표본추출	층화집락추출법
조사방법	우편조사
조사기간	2013.10.25.~2013.11.29.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p.12)

4) 질적연구: 심층면접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탐색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 및 생활의 변화, 피해자 보호 쉼터에서의 생활, 지원에 대한 요구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어머니, 피해자 보호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가정폭력 발생 시 대응 방법, 현 지원체계 및 서비스의 장단점, 지원체계 및 서비스의 보완요구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 심층면담(면접)

주요 요소	내 용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쉼터 담당자 추천
면담참여자 수	- 가정폭력 전문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쉼터 등) 현장전문가 15명 내외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15명 내외 - 가정폭력 피해 부모 15명 내외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 가정폭력 상담전문기관의 현장전문가: 1년 이상 경력자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어머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쉼터에 입소 중인 내담자
면담방식(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 현장전문가: 반구조화된 집단 면담

주요 요소	내 용
개별 혹은 집단면담)	- 피해 아동·청소년: 반구조화된 개별 면담 피해 어머니: 반구조화된 집단 면담
면담 시간 및 횟수	- 현장전문가: 2~3시간, 1회 - 피해 아동·청소년 및 어머니: 90분, 2~3회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 기록 및 녹취
면담자	- 연구진 및 면접조사원

### 5) 콜로키움

심층면접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론: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에 대한 콜로키움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관련 제도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가정폭력 사건의 회복적 사법 도입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 제 Ⅱ 장

---

#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의 개념 및 유형
2. 가정폭력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제 II 장 이론적 배경

### 1. 가정폭력의 개념 및 유형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8.4.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개정, 2012.8.5.시행)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친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인 ‘가정폭력 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의미하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피해자’는 가정폭력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 즉, 광의의 개념에서 가정폭력을 정의할 때는 부부 간에 이루어지는 폭력 외에도 가족구성원 간의 폭력(예, 자녀에 의한 부모 학대)이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 부부는 아니지만 동거하는 사람들 간의 폭력(예, 사실혼 관계, 동성연애자들의 관계)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분류가 가정폭력의 한 유형에 속한다.

가정폭력의 다른 유형은 가정폭력 형태에 의한 것으로 크게 신체적인 폭력,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인 위협, 성적인 폭력, 방임 등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법제처, 2013). 첫 번째 유형인 신체적인 폭력에는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짊 움켜잡는 것이 포함된다. 두 번째 유형인 정서적인 학대는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더라도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도 포함된다. 세 번째 유형인 경제적인 위협은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동의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성적인 폭력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방임은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협상황에 방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의 정의는 모든 가족구성원 간의 다양한 폭력 유형을 포함하고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정폭력 관련 법 상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고, 가정폭력 유형별 개입 및 범죄인정정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박인선, 2002: 78).

표 II-1 가정폭력 유형 (단위: %)

구분	내용	세부유형
신체적인 폭력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짝 움켜잡는 것이 포함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꼬집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사지를 비트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 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등
정서적인 학대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더라도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도 포함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협박·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경제적인 위협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포함	가정구성원(노인)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허락없는 금전사용 금지행위
성적인 폭력	성적인 폭력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의 몸을 동의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등의 행위,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넣는 행위,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기타 유사성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방임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것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	------------------------------	---

출처: 법제처(201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러한 가정폭력 중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의미하는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현재 가족 내에서의 아동·청소년을 향한 부모의 폭력과 관련하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라는 두 가지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아동·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가정폭력의 피해는 아동학대와는 다소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재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범위나 폭력의 범위 등에 있어서 아동학대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가정폭력의 의미는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녀의 경우 부모의 직접적인 폭력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직접적인 폭력은 물론 부모 간의 폭력을 자녀가 목격한 경험과 같이 자녀가 가정폭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관찰 및 모델링을 통해 향후 아동·청소년의 폭력 가해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일례로 서구사회는 이미 부부폭력의 목격 역시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Magen et al., 2001; 정혜숙, 2009:126에서 재인용).

또한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중복현상을 밝히는 실태조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대표적으로 Straus, Gelles and Steinmtz(1980)의

미국 전역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아내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은 일반가정에 비해 129%가 높은 아동학대 발생률을 보인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Stark and Flitcraft(1988)는 아동학대혐의로 의뢰된 116명 어머니들의 병원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어머니들의 45%가 아내학대 피해자였음을 밝혀낸 바 있다(정혜숙, 2009:110 재인용). 미국의 경우 아내학대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구의 약 30~60%가 두 가지 현상의 중복을 보이고 있으며, 증상이나 사망 등과 같은 보다 심각한 피해를 경험한 가정들에게서는 중복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Edelson, 1999; Folsom, Christensen, Avery, & Moore, 2003)을 확인하면서 미국, 영국, 호주 등을 포함하는 아동학대 학회들에서 아동학대 및 아내학대 현장 간 공식적 협력관계 구축을 권장하게 되었고, 피해여성 현장에서도 아동서비스 시스템을 확대·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정혜숙, 2009:110에서 재인용; Waugh and Bonner, 2002; Lewis, 2003).

다시 말해, 이와 같은 가정폭력의 중층성을 감안할 때 자녀에 대한 구타, 배우자에 대한 구타 중 어느 하나의 폭력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구성원을 향한 폭력의 전이가 가능하고 이는 가족 역동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가정폭력을 단순히 구성원 내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일대일의 폭력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성원의 변화가 다른 가족원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상호 관련된 단위로 가족을 보는 개념인 가족전체성(김성천, 1995; 유영주 외, 2004: 498재인용)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에서 부부 간 폭력에 관한 연구에 비해 부부 간 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가정폭력에 있어 부모에 대한 직접 개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학대체계 내에서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조미숙, 2004: 7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의 유형 분류 중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분류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중 부모로부터의 폭력(직접적인 폭력 및 부모 간 가정폭력 목격 경험)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 2. 가정폭력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1)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환경

가정 내 폭력은 가부장적인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 속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아왔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가장 사적인 공간인 한 집안의 문제로 치부되어 가능한 한 드러나지 않아야 하고, 조용히 감추어야 할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가정폭력의 피해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가정폭력은 주변 사람들이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이자, 공적인 개입이 거부되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폭력은 일종의 자녀에 대한 교육 및 훈육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져 그 심각성이 과소평가되거나 가정 내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용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인을 학대하는 모든 남성 배우자의 대략 반 정도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학대하고(Murrell, Christoff, & Henning, 2007:523에서 재인용; Appel and Holden, 1998; Straus and Gelles, 1990),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은 가정폭력이 없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에 비해 1,500회 더 학대받는 경향이 있다(Murrell, Christoff, Henning, 2007:523에서 재인용; U.S. Department of Justice, 1993)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종종 동일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어떤 형태의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곳은 다른 가정폭력 역시 발생할 강한 경향성이 있으며, 둘째, 연구자들은 부모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에 대한 영향이 부모에 의해 직접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의 결과와 현저하게 유사하고 그러한 두 경험 모두 청소년 폭력에 유의미하게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아동학대의 발생과 매우 연관된 많은 요인들이 또한 가정폭력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많은 요인들은 아동들을 청소년 폭력 및 성인 폭력 범죄의 위험에 놓이게 하는 많은 요인들과 동일하다(Carter, 2005:1).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모들에게서 자녀에 대한 폭력이 보다 흔하게 발생한다고는 생각하는 것에 비해, 자녀를 ‘학대하는’ 하나의 성격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Berk, 2006:588). 다시 말해 정상적인 부모들조차 때때로 자녀에게 위협할 수 있으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이 반드시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Berk, 2006:588에서 재인용; Buchanan, 1996; Simons et al., 1991).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녀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Berk, 2006:588).

표 II-2 자녀에 대한 폭력에 관련된 요인들

요인	설명
부모의 특성	심리적인 장애, 알콜과 약물 남용, 아동기 학대 경험, 가혹한 신체적 훈육에 대한 신념, 자녀를 통해 충족하지 못한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소망, 자녀의 행동에 대한 비합리적 기대, 어린 연령(대부분 30세 이하), 낮은 교육수준
자녀의 특성	미숙아 또는 병약한 아기, 까다로운 기질, 부주의함과 과잉행동, 다른 발달적 문제들
가족의 특성	낮은 수입, 빈곤, 노숙, 불안정한 결혼생활, 사회적 고립,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신체적 학대, 잦은 이사, 좁은 공간에서 사는 대가족, 혼잡한 생활환경, 안정적이지 않은 고용, 높은 생활 스트레스의 신호들
지역사회	폭력과 사회적 고립이 특징인 사회, 공원, 아동보육시설, 학령전 프로그램, 레크레이션 센터, 가족을 지원하는 교회 등이 거의 없는 사회
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체적인 힘이나 폭력을 승인하는 문화

출처: Berk(2006).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가정에서 주로 경험하는 폭력으로는 부모로부터 직접 폭력을 당하는 경우와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체로 부모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 외에도 자녀들은 부모 간의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는 등 자녀들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범위와 정도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경우, 자녀들은 부모 간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에 함께 있으면서 폭력을 만류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폭력에 직접 관여하거나 폭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직접 목격할 수도 있고, 방이나 가정 내에 있는 다른 장소에서 부모 간 폭력이 일어나는 소리를 간접적으로 듣게 될 수도 있으며,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에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폭력이 일어난 후 부모 간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부모의 상처나 부서진 물건 등을 통해 폭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김재엽, 조학래, 양혜원, 2003:29).

일반적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가족환경은 정서적 자기조절, 공감 및 동정심, 자기 개념, 사회적 기술, 그리고 학업적인 동기를 손상시킨다(Berk, 2006:591).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들은

학업 실패를 포함하는 심각한 학습 및 적응 문제들, 심각한 우울, 공격적인 행동, 또래 관계의 어려움, 물질남용, 그리고 비행 등의 특성을 보이게 된다(Berk, 2006:591에서 재인용; Bolger & Patterson, 2001; Shonk & Cicchetti, 2001). 이렇게 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패턴의 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하나는 과도한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을 보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피의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이러한 패턴들은 '싸우거나 도망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Santrock, 2003:329).

대체로 아동·청소년들은 폭력의 상황과 같이 정서적인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부모로부터 지지와 안심을 받기 위해 부모에게 의지하려고 하지만, 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부모들은 정서적으로 무감각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예민해지거나, 또는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녀의 이러한 요구에 직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Carter, Weithorn, & Behrman, 1999:6). 탄력성과 가정폭력 노출에 관한 일부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적 유용성이 폭력에의 노출에 적응하는 아동의 능력에 결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체로 구타당한 어머니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안전하게 머무르는 것에 몰두하거나, 우울을 경험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덜 유용할 가능성이 높다(Carter, Weithorn, & Behrman, 1999:6). 나아가 폭력을 사용하는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폭력을 사용하는 아버지들이 폭력적이지 않은 아버지들에 비해 자녀에게 덜 유용할 수도 있고, 자녀와의 합리적인 토론에 관여하는 경향이 덜하고, 덜 애정적이었다(Carter, Weithorn, & Behrman, 1999:6).

아동에게 직접적인 학대행위가 가해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정이라는 폐쇄된 작은 집단에서 배우자 간에 폭력이 발생한 경우 그 폭력의 영향은 비단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김잔디, 2012). 즉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에 아동이 존재하는 경우 폭력을 목격하는 것만으로 아동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조미숙, 2005: 73-77),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충격은 부모에 의해 직접적인 학대를 받는 것과 유사한 충격을 줄 수 있다(김잔디, 2012에서 재인용; Carter, 2005).

물론 아동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모든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발달과 적응 과정에서 유해한 영향을 받으며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이 능력있고 친절한 성인과 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결정적인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상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공감을 해주며 개입해줄 수 있는 성인 지지자와 함께 자신의 두려움과 관심 등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Carter, Weithorn, & Behrman, 1999: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들은 자녀에게 결정적인 지지자가 되기도 하며, 자녀는 학대자인 부모와 계속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개선하도록 돕는데 유용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들이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Carter, Weithorn, & Behrman, 1999:7).

## 2) 가정폭력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대체로 선행연구에서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자녀들의 심리적, 행동적,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폭력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김재엽, 조춘범, 정윤경, 2008:30). 가정 내에서 폭력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은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기능에서의 중복적인 손상을 포함하여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는데(Thomlison, 1997:50에서 재인용), 중요한 것은 어떤 유형의 폭력을 경험하든 직·간접적으로 폭력을 경험한 자녀는 발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연령의 아동들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폭력에 노출된 영아는 그들의 발달에 결정적인 양육자와 애착을 발달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사례로 그들은 “성장실패”로 고통받을 수도 있다(Carter, 2005:2).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학령전 아동들은 발달적으로 퇴행하거나 악몽을 포함한 수면장애로 고생할 수도 있고, 폭력을 목격한 학령기 아동들은 우울, 불안 및 또래를 향한 폭력을 포함한 넓은 범주의 문제행동을 나타낼 수 있으며, 나아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영향은 청소년 및 성인기를 통해 계속될 수 있다(Carter, 2005:3).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은 자긍심이 손상되거나, 나약함을 보이며, 과잉행동 장애로 인한 집중력의 결함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이경은, 장덕희, 2000:100),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하고 부모의 폭력이 심할수록 청소년들은 가출충동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선, 황성현, 2010:12). 이 외에도 폭력사용 및 알콜 남용, 공격성과 같은 표현된 문제, 자긍심 손상 및 자해 등의 내재된 문제, 낮은 학업성취,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의 학교생활적응 문제 등을 보였고, 폭력의 정도가 심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장애를 가질 위험이 있으며, 체벌을 경험한 집단에서는 표현된 문제와 자긍심의 문제, 학교생활부적응 문제 및 일상생활에서 복통을 동반하는 등의 정신신체증을 나타냈다(이경은, 장덕희, 2000:113). 또한 폭력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자살을 시도하거나, 약물이나 알콜을 남용하거나, 가출하거나, 십대 매춘 및 다른 비행행동에 관여하거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장한 청소년들은

그들이 보았던 폭력적인 관계를 재현하는 위협에 처할 수 있다(Carter, 2005:3). 다시 말해,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은 성인기동안 타인, 데이트 상대,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폭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물질남용, 불안 및 우울을 보이기도 한다(Malinosky-Rummell & Hansen, 1993; Santrock, 2003:329).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주된 정서는 '분노감정'과 자살충동이었는데,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직접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된 정서는 '분노감정', '자살충동', '두려움과 공포'이었으며, 가정폭력 해결방안에서도 '부모님이 헤어지기를 바랐다', '집을 나가고 싶었다' 등의 회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창호, 권혜수, 조은경, 2002:45). 또한 가정폭력의 경험은 청소년의 비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강소영, 2012:9), 가정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경우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하, 권세원, 2010:224).

어렸을 때 직접적인 폭력을 경험하는 것처럼, 폭력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들은 가정 내에서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학대의 경험여부와 상관없이 부부 간 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도 부모로부터의 폭력을 직접 경험한 자녀들과 유사한 정서 및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희숙, 2003:256). 예를 들어, 아동 및 청소년기동안 부모간의 학대를 목격하는 것은 공격적 행동과 비행 행동(Fantuzzo et al., 1991; Graham-Bermann and Levendosky, 1998; Hershorn and Rosenbaum, 1985), 발달적 및 학업적 결손(Pfouts et al., 1982), 우울, 불안, 낮은 자아존중감, 그리고 신체화 증상(Fantuzzo et al., 1991; Graham-Bermann and Levendosky, 1998; Spaccarelli et al., 1994)을 포함하는 다수의 부정적인 결과들과 연관된다(Murrell, Christoff, Henning, 2007:524).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결과는 성인기까지 계속 이어지며, 우울, 트라우마, 반사회적 행동, 약물사용, 일반적인 폭력 및 배우자 폭력 등을 포함하는 장기적인 결과를 나타낸다(Murrell, Christoff, Henning, 2007:524; Downs et al., 1996; Ehrensaft et al., 2003; Henning et al., 1997; Wisdom, 1989).

이 외에도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은 빈약한 학업 수행과 문제 해결 기술, 그리고 낮은 수준의 공감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다(Carter, Weithorn, & Behrman, 1999:6). 만성적이거나 극단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우 정서적인 무감각, 증가된 각성, 폭력적인 사건 또는 사건에 대한 강박적이고 반복된 초점에 대한 신호의 회피와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증상들을 나타내기도 하며, 선행연구들에서는 성인기동안 우울, 낮은 자존감, 가정 내에서의 폭력 실습 및 범죄 행동 등을 포함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Carter,

Weithorn, & Behrman, 1999:6).

즉,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들은 쉽게 흥분하고 불안해하며, 신경질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부모에 의해 희생양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여러 가지 학습문제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조미숙, 2004:71). 특히 아내폭력 가정의 자녀들은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고, 우울 및 불안수준이 높으며, 더 공격적이거나 잦은 횡수의 비행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고, 신체적 폭력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고,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장희숙, 2003:274). 일반적으로 남자 아동의 경우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할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부부폭력을 목격해 아동의 내재화된 증상, 특히 우울요인은 배우자에 의해 매맞는 아내처럼 폭력의 희생자들이 공격행동과 더불어 자기비하의 과정에 연루되는 경향이 있는 것과 같이 모델링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조미숙, 2004:75).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에 의해 수행된 한 연구에서는 부모 간에 갈등이 있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70%가 (갈등이 없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49%인 것에 비해) 폭력 비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고 자기보고 하였는데, 이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일반적인 가정의 적대적 분위기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한 노출이 청소년 폭력의 위험을 배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Carter, 2005:3). 즉,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간의 중복은 그 결과 또는 발생율에 제한되지 않으며, 아동학대와 매우 연관된 많은 위험요인들은 청소년기 폭력의 위험에 놓인 아동들과 가정폭력의 위험에 놓인 여성들의 위험요인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Carter, 2005:3).

사랑과 애정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부모가 폭력의 가해자라는 점은 아동·청소년을 가정에 머물기보다 가정 밖으로 가출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오승환, 2010:319).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가출충동 및 가출행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51.3%가 가출의 원인을 부모와의 갈등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간섭과 폭력, 부모 간 갈등이 가출의 원인이 된다고 응답하였다(여성가족부, 2011).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심한 청소년들은 가출을 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끼고, 이러한 가출충동은 실제로 가출을 감행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박정선, 황성현, 2010:14).

물론 가정폭력을 경험한 모든 청소년이 즉시 가출을 감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출을 촉진하는 사회환경적인 요인이 가출을 용이하게 하거나 지속시킬 수 있으며(정운경, 원경림, 최지현, 2012: 160), 나아가 가정으로 귀가하였을 때 가정폭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청소년들의 가정으로의 복귀는 보다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선행연구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가출이 비행이나 폭력, 알콜 문제, 우울, 자살, 성매매, 학업중단 및 학교 중퇴 등의 사회적 문제와도 연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가정폭력과 같은 가족관계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은 재가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출한 청소년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으려면 가정환경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연구결과는 가출 청소년들이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가출을 막기 위해 가출 초기에 가족관계와 가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김성정, 2010:175). 그러나 가정으로 귀가하였을 때 가정폭력의 문제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청소년들의 가정으로의 복귀는 보다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가출은 비행이나 폭력, 알콜 문제, 우울, 자살, 성매매, 학업중단 및 학교 중퇴 등의 사회적 문제와도 연관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가출이 청소년을 범죄로 이어주는 통로가 됨을 보여주며(홍세희, 노연경, 박민선, 2010:182), 결국 가출 청소년들은 비행 및 범죄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조아미, 201:80).

### 3) 가정폭력의 세대간 전이

가정폭력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학자들은 흔히 세 가지의 이론적 관점을 사용하고 있다. 첫째, 사회학습이론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이 반복적인 폭력 상황에서 폭력행동과 폭력행동으로 인한 잊점을 모델링하고 강화해감으로써 공격적 특성과 폭력적 행동을 나타낸다는 관점이다(이경은, 장덕희, 2000:103). 이러한 관점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부부싸움에서 폭력을 자주 목격하게 되면, 자녀는 갈등해결방식으로 폭력행동을 받아들이고 모방하게 되며, 이후 자신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본다. 이렇게 아동기 동안의 가정폭력 피해 및 목격 경험은 관찰학습과 모델링과정을 통해 폭력 가해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한 사건의 피해자가 다른 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상호의존적 연쇄에 의해 폭력의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지게 되어 폭력은 세대 간 대물림 현상을 낳으며 폭력의 악순환이라는 끊을 수 없는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김재엽, 이병화, 윤여원, 2011:203).

둘째, 외상이론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를 경험하면서 부적응적인 특성을 보이게 된다는 관점이다(이경은, 장덕희, 2000:103). 이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이 복잡한 외상적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어 한가지 장애보다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복합적 증상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최장원, 김희진, 2011:79). 부모 간의 폭력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다양한 신체적인 문제 및 심리·사회적인 부적응 문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체적인 문제로는 두통, 복통, 천식, 위궤양 등의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말더듬, 야뇨증, 불면증, 우울증, 자살소동, 정신병, 공포, 수면거부 등과 같은 심리적 증상과 등교거부, 성적저하, 공격·파괴적 행동, 도벽, 폭행, 가출 등의 행동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kward, 1997; 조미숙, 이윤로, 1999:166에서 재인용).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무의식적인 분노와 두려움은 이들을 만성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신뢰감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다. 피해 아동·청소년들 중 남아는 스스로 공격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짐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편집증을 가지게 되거나, 폭력적인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는 알콜이나 약물중독 등으로 인한 자기학대에 빠지거나 자녀를 학대하게 되는 성향을 가지는 반면, 여아들은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기파괴적 성향을 가지며 가족관계 내에서 공격자에게 의존적으로 매달리거나 철회하는 등 두 가지 중 하나의 역할을 선택하게 된다(이경은, 장덕희, 2000:100).

셋째, 관계이론은 청소년이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 부모, 형제의 역할에 관한 폭력적 역할 쉐마를 형성하게 됨으로 인해 부정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는 것으로(이경은, 장덕희, 2000:103),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청소년들이 폭력을 가족 역할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가정폭력이 없는 가정의 아동·청소년과는 다른 역할을 습득하게 된다고 보는 관점이다(최장원, 김희진, 2011:79).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은 학대의 가해자가 되는 아버지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어머니와 자신들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친구들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곧 자신이 성인이 되었을 때 타인과 유연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 중 많은 연구자들은 흔히 학대받은 아동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자녀나 가까운 배우자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을 향해 폭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Murrell, Christoff, & Henning, 2007:523), 이러한 폭력의 세대 간 전이에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가정폭력의 피해 및 목격 경험은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이 발달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폭력 가해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부모 간의 불화로 인해 폭언이나 폭력을 많이 목격한 청소년일수록 폭력을 당연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폭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지며(오주, 아영아, 2006:86),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학대를 목격하고, 자녀인 자신 역시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중적인 폭력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폭력에 무감각해지고 폭력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될 수 있다(Jouriles & Norwood, 1995; 노충래, 김현경, 2004:82에서 재인용).

이론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가진 가족들은 가족 내에서의 폭력의 수용을 의미하는 일반화된 모델링과 원가족 내에서 개인이 노출되었던 특별한 유형의 공격성의 범행을 의미하는 특정한 형태의 모델링 모두를 만들어낸다. 중복적인 형태의 폭력이나 심각한 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동들은 보다 많은 모델링을 하게 되고, 그것은 폭력이 학습되고 저질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Murrell, Christoff, & Henning, 2007:524; Kalmuss, 1984).

많은 연구들은 아동기 동안의 다양한 유형의 트라우마가 다양한 유형의 학대적인 행동과 관련된다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다. Dutton과 Hart(1992)는 어렸을 때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는 범죄자들이 성적인 범죄보다는 신체적인 공격을 하는 범죄를 범할 경향이 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들은 가정폭력을 행한 사람들을 낯선 사람들을 향한 폭력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이나 비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비해 그들의 원가족내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경향이 좀 더 많다는 것을 알아냈다(Murrell, Christoff, & Henning, 2007:524; Dutton & Hart, 1992). 또 다른 연구들은 자녀를 학대하는 성인들이 일반 성인들에 비해 예전에 더 많이 학대받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학대받은 사람들이 폭력을 목격한 사람들에 비해 자녀를 더 많이 학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 희생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Murrell, Christoff, & Henning, 2007:524; Kalmuss, 1984)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 간 폭력에의 노출은 이성교제 폭력과 부부폭력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양혜원, 신혜섭, 2006:39). 자신이 직접 학대받지는 않았지만 폭력을 목격했던 성인들은 아동기동안 학대를 받았지만 폭력을 목격하지는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가정 내 폭력(배우자에 대한 폭력)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데(Murrell, Christoff, & Henning, 2007:524), 이러한 가정폭력의 경험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자녀가 성장하여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 폭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장과정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기 부모 폭력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Cornell & Gelles, 1982; 김재엽, 조춘범, 정윤경, 2008:33에서 재인용).

아동기 때 신체적으로 학대도 받고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한 적도 있다면 성인이 되어 배우자에 대한 폭력을 저지르는 경향이 많다는 증거가 있고(Murrell, Christoff, & Henning, 2007:524; Downs et al., 1996; Holtzworth-Munroe et al., 1997; Kalmuss, 1984; Wisdom, 1989), 어떤 연구자들은 비록 가정폭력에서 일반화된 그리고 특정한 모델링의 역할이 명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폭력은 학습되어지고(Murrell, Christoff, & Henning, 2007:524) 세대 간에 전이 되어 나타남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경험한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부정적인 발달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폭력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자신이 자란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끊거나 완충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 중 어느 한 쪽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나 관심은 세대간 폭력의 전이를 깨뜨리는 경향이 있으며(예. Jones, 1997, Kaufman & Ziegler, 1987 등; 장희숙, 2002:13에서 재인용), 부적응한 또래에 비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생활스트레스 요인이 적고, 보다 발달된 사회적 지지체계를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조미숙, 2004: 154). 이러한 결과는 폭력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요인으로 고려함으로써 이들을 건강한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 제 Ⅲ 장

---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1. 국내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법 및 지원체계
2. 해외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3. 소결 및 시사점



## 제 III 장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sup>2)</sup>

### 1. 국내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법 및 지원체계

#### 1) 개관

가정폭력 사안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개입할지에 관해서 그 정도와 범위를 정하는 일차적인 기준은 법률이다. 법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 개입은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강제적 개입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다. 가정폭력사건에서 강제적 개입의 대상은 가해자라고 할 수 있고 재정지원의 대상은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 가해의 범위와 정도에 따른 국가 개입의 필요성에 의해서 가해자에 대한 강제적 국가개입의 여부가 결정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의 필요범위와 정도에 따라서 재정적 개입여부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법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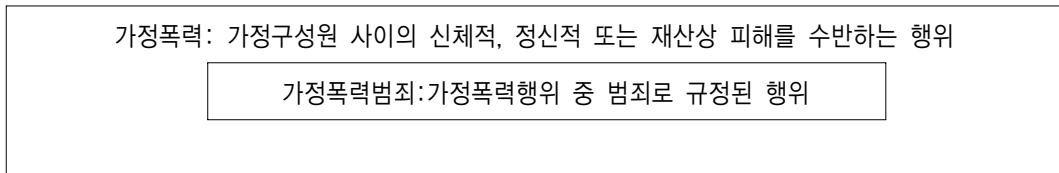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하므로(법 제2조 제2항)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정구성원성’은 국가의 개입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가정구성원성의 법률 해석에 있어 ‘이혼, 별거, 비정기적 동거 친족’의 폭력사건을 가정폭력관련 법률적용대상으로 할지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것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가개입의 범주에 관해서도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2014년 9월 29일 부터는 가정폭력처벌법에 우선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법)’이 시행되어, 이제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관한 국가의 개입은 아동학대법에 의해서 그 정도와 범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응정책연구는 가정폭

2) 본 장은 강지명(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작성하였음.

력 대응책과 아동학대 대응책을 모두 포함하게 되며, 아동학대법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대응서비스가 기존의 가정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의 흠결을 메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 2) 법률상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가정폭력사건 처리와 관련 된 법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으로 약칭)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으로 약칭)이 그것이다. 가정폭력 관련 법률상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 처벌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배우자(사실혼)나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사이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가정폭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구성원사이의 모든 가정폭력이 가정폭력범죄는 아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정식명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률상 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이지 가정폭력의 처벌이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예방은 모든 가정폭력을 대상으로 하지만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가정폭력범죄자와 그 가정구성원인 공범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현재 사법부가 개입하는 범위는 가정폭력처벌법상 규정되어 있는 가정폭력범죄에 한한다.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상 규정된 행위가 아니면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피해자보호에서의 가정폭력의 개념은 ‘가정구성원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유발 행위’이다.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가정폭력’의 개념과 사법처벌의 대상인 ‘가정폭력범죄’개념은 [그림III-1]과 같이 그 범위가 다르다.



[그림 III-1] 법률상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가정구성원은 현재 가정구성원이 아니더라도 가정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 배우자(사실혼),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포함)인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과거에 가정구성원이었어도 가정구성원에 해당하게 된다. 이혼, 별거, 가출, 사별 등으로 인하여 가족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된다. 다만, ‘가정폭력행위자’의 개념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상의 피해자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상의 피해자는 개념이 다르다. 가정폭력처벌법상의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하지만,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상의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한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범위는 법률상 규정된 가정폭력범죄피해자의 범위보다 넓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관련 법률에서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의 개념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범죄에 상응하는 ‘가정폭력범죄피해자’와 가정폭력에 상응하는 ‘가정폭력피해자’도 다른 개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개념을 가정폭력범죄행위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가 법률상 구분된 개념임에 근거하여 가정폭력행위자와 가정폭력범죄행위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현행 법률상의 가정폭력행위자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가정폭력피해자)와 가정폭력범죄행위자(↔가정폭력범죄피해자)로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하면서 ‘법률상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행위자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서 가정폭력행위자와 가정폭력범죄행위자를 구분하지 않고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범죄행위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범죄자’를 중심으로 국가개입여부를 결정짓기 위함이다. 이것은 형사사법적인 측면에서 당연한 처사이나, 가정폭력범죄행위자에 대응하는 피해자, 즉, 가정폭력범죄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만 국가가 개입해서 보호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논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의 측면에서는 미흡하기 그지없다.

특정범죄유형의 피해자가 아니라 국민복지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동반가정구성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범죄행위를 행한 사람만을 가정폭력행위자로 규정짓고 가해자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고 있는 가정폭력처벌법은 본질적으로 건전한 가정의 육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국가가 모든 이에게 복지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도와 단계에 따라 다양한 국가개입의 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3) 가정폭력관련 법률의 분석

#### (1)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보호법의 목적

1997년 12월 13일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 시행되었던 제정당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피해자관련 내용이 없었다.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후 2002년 12월 18일 개정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이 목적조항에 추가되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 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자의 강력한 형사처벌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여 건전한 가정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7년 제정당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2006년 4월 28일 개정과정에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빠지고 '지원'이 추가되어 '이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뀌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건전한 가정의 육성'이 빠진 것은 우선, 피해자에게 집중하기 위함이고, 다음으로는 건전가정 육성의 목적 하에 이루어질 가해자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전한 가정 육성'이라는 목적이 가정폭력처

별법으로 이동한 것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가정폭력행위자(↔가정폭력피해자)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으로 규정되면서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한 지원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국가개입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행위자에 한하기 때문에 가정폭력범죄피해자를 제외한, 가정폭력피해자를 만든 가정폭력행위자는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서 가정폭력범죄예방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개입범주에 들어있고, 가정폭력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가해행위자는 국가개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가끔 술 먹고 들어와서 폭언을 일삼고 밥상을 뒤엎으며 가정폭력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지만 범죄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은 형사법의 보충성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행위의 우려가 있는 행위자가 가족 또는 타인의 권유로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희망할 때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범죄를 이미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상담이나 진료적 개입만을 할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전의 가정폭력행위자에게도 자발적 상담이나 진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그 사실자체가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이나 진료를 향해서 한걸음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가정폭력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행위자가 아닌, 가정폭력행위자(↔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이 규정될 수 있어야할 것이다. 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법의 목적에 가정폭력 방지의 내용이 들어있으므로,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에 마련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3) 가정폭력피해자의 동반 가정구성원 지원

가정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 정책은 가정폭력가해자를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에서의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법률상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외의 가정구성원은 동반 가정구성원에 해당된다. 동반가정구성원에 대해서는 숙식의 제공이외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제8조 1항에 규정된 피해자지원 사항인 '2.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3.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펴보았듯이 가정폭력관련 법률에서 인정하는 가정구성원은 가정폭력행위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치료'는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법률규정은 제정과 인력배정에 후순위를 부여하는 좋은 핑계가 될 수 있다. '상담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여 최소한 피해자와 동반한 가정구성원은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 상태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4) 가정폭력범죄 형사처벌의 특례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범죄행위자(법률상 가정폭력행위자↔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이미 가정폭력범죄로 진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범죄행위자(법률상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하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형사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도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형사적 국가 개입의 범위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건전한 가정의 육성'이라는 목적 하에서 용인되고 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된 가정폭력범죄행위자(법률상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40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①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감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1~8호까지의 처분은 병과(併科)될 수 있으며 친권제한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사회봉사나 수감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과 공유하도록 규정되다.

1호처분부터 8호처분까지 보호처분의 내용을 보면 ‘보호’가 무엇을 보호하는가에 관한 의문이 든다. 가정폭력범죄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이 왜 보호처분인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처분인지 명확하지 않다. 가해자에게는 오히려 가혹할 수 있는 처분이다. 동 보호처분 규정이 친권제한을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해석하여도 전체적인 의미에서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들의 ‘보호’의 개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보호처분 규정들은 모두 형사제재의 일환으로 사회봉사, 수감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모두 보안처분이다. 물론 가정폭력범죄행위자에 대한 응보적 처벌보다는 적절한 교정처우를 통해서 재범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형벌완화 처분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제한, 친권제한이라는 선택지를 가지고 가정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

그리고 보호처분의 내용에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은 없다. 상담위탁이나 수감명령도 가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수감이고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가족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담이나 수감이 가능한 보호처분은 없는 것이다. 즉, 가정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가정보호사건처리절차에 따른 보호처분은 명목상 가정보호일 뿐이고 가정을 보호하는 기능이 유명무실하다. 접근제한과 친권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를 배제한 나머지 가정구성원을 통해서 가정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의미를 지닐 수는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

행위자와 원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친권을 제한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친권 제한과 접근 제한을 통해서 피해자의 심적 가족관계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심리상담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와 자식을 분리하고 가정폭력범죄행위자를 배제하여 서로를 부정하고 접근을 못하는 데에서 그치는 사법의 개입은 이제 탈피해야 한다. 직접적인 가정폭력범죄피해자가 아닌, 동반가정구성원에 해당하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치료와 상담지원은 임의적 지원이 아니라 필수적지원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처분을 비롯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특례규정은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완화가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미래지향적인 가족관계수립에 초점을 두고 사법의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 가정구성원의 관계 및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염두에 두고 보호처분에 상응하는 단계별, 정도별 피해자에 대한 국가개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보호처분과 같이 접근제한, 친권제한, 수강명령, 사회봉사, 여러 가지 위탁은 가정폭력범죄가 일어난 이후 초기단계의 국가개입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행위 이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의 경우에 적용가능한 장치를 통해서 가정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가정폭력범죄행위자 보호처분 이후의 가정구성원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다음 단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

##### (1)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특례법

아동학대특례법의 목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동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목적 조항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아동학대특례법은 학대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보다는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그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의 관계에서 의의가

있는 측면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절차가 아동복지법에서보다 명시적으로 강화되어 보호된다는 것이고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지를 지니게 되었다는 점이다.

##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친권상실에 관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검사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지만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동에게 더욱더 밀접한 아동보호기관의 의견이 친권상실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이 긍정적이다.

### 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가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자를 분리라고 배제하는 것을 주요 틀로 사용하는 임시조치는 다른 가정구성원의 개입이나 의견피력사항 없이 판사의 결정에만 달려있다. 아동학대행위자를 조사·심리하는 것은 사법부의 당연한 권한이나 피해 아동 보호는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보호될 필요성은 아동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가정이 분리되는 것에 대한 아동본인 및 다른 가정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1.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나.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1.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 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가정구성원의 의사반영이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아동학대특례법은 피해 아동에 대한 발전적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아동학대 행위자에게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범죄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선택지가 제시되어 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라는 관계대상에서 피해자를 피해 아동으로만 치환하였을 뿐 다른 것이 없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특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의 과정에서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대비를 실무적으로 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보호처분을 받으나 가정폭력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처분을 받으나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동법 제36조 '⑥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와 '⑦ 제1항 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를 통해서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특성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p>제36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p> <p>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p> <p>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p>	<p>제40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p> <p>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p> <p>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li> <li>3.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li> <li>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li> <li>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li> <li>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li> <li>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li> <li>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li> <li>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li> <li>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li> <li>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li> <li>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li> <li>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li> <li>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li> </ol>
---	---

그러나 교정현실상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특성화된 교정처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공권력이 명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더 많은 전문화된 선택지가 존재해야한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 아동과는 관계의 회복을 위한 보호처분이 마련되어야한다. 기존의 교정처우의 현실에 맞추어 피해자를 아동피해자로만 치환한 보호처분제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치료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의 도입’을 통한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 피해 아동보호명령

피해 아동보호명령은 가정폭력사건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국가의 개입이다. 가정법원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 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 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피해 아동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여지를 관계자들의 재량에만 맡기고 있다. 법률상 피해 아동의 의견을 참고하여 피해 아동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자랄지에 관한 보호명령이 결정되어야할 것이다. 피해 아동에게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에게 의견진술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 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6.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이러한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 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4년 이상의 양육기간이 필요한 피해 아동의 경우, 피해 아동의 의사에 따라 양육기관을 달리할 수도 있고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는 조항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가 최소 1년, 최대 4년이 지나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 국가는 아동학대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개입의 정도를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때 국가의 개입은 아동을 비롯한 가정구성원의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설정되어 있는 4년이 아니라 연한의 제한 없이 피해 아동과 가정구성원 및 양육자가 원할 경우 언제나 중단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치료의 경우 최소한 성인이 될 때 까지는 원할 경우 언제나 지원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마.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고자할 때에는 피해 아동의 의사가 존중되어야한다는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해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아동학대특별법 전반에 걸친 기초가 아동의 의사반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킬 의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 3.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와 같은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가정폭력 대응 서비스에서 피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대응현황

가정폭력사건 대응의 최일선에 서있는 기관은 경찰이다. <표Ⅲ-1>는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 매뉴얼로 가정폭력보호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동 매뉴얼은 2012년 작성된 것으로 피해·아동·청소년에 관한 대응내용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특례법의 제정에 따라서 아동학대현장대응 매뉴얼이 따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함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동학대가 가정폭력대응의 대상에 포함되었을 때조차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따로 마련된 아동학대 매뉴얼과 잘 연계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떠넘기기 식의 사건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

**표 Ⅲ-1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 매뉴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장 출입 및 조사(제9조의4)	현장출동 경찰관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상태와 안전여부 조사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응급조치(제5조)	현장출동한 사법경찰관 즉시 조치 1호: 폭력행위 제지 및 수사 2호: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도(동의시) 3호: 치료기관 인도 4호: 임시조치 신청가능 통보 ※ 작성서류: 응급조치 보고서
▼	
긴급임시조치(법 제8조2, 제8조의3)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재발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 신청 또는 사법경찰관 직권으로 결정⇒지체없이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작성⇒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검사임시조치 청구(48시간이

	<p>내)⇒판사 결정으로 임시조치 집행</p> <p>※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결정하지 않는 경우 즉시 긴급임시조치 취소</p> <p>1호: 퇴거 등 격리</p> <p>2호: 주거 및 직장 100m 접근 금지</p> <p>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p> <p>※작성서류: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긴급임시조치 확인서, 긴급임시조치결정서(긴급임시조치 통보서⇒가해자교부)</p>
--	---



임시조치(제8조,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의해 청구</li> <li>• 피해자(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진술 가능</li> </ul> <p>※임시조치 신청 요청을 받았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게 그 사유보고(법 제8조4항)</p> <p>1호: 퇴거 등 격리 2호:주거·직장 100미터 접근금지</p> <p>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의료기관 등 위탁</p> <p>5호: 유치장·구치소등 유치(1~3호 위반, 재발 우려시 신청)(법 8조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호~3호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법 제65조)</li> <li>▶ 임시조치 기간(법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 3호: 2개월 이내(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li> <li>- 4 ~ 5호: 1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 최장 2개월)</li> </ul> </li> </ul> <p>※작성서류: 임시조치 신청서</p> <p>⇒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조사표, 긴급임시조치결정서, 긴급임시조치확인서 첨부</p>
-----------------	--



가정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송치(제7조)	<p>가정보호사건 송치-징역·벌금 등 형사제재가 아닌 접근제한, 친권행사 제한, 치료위탁, 감호위탁 등 보호처분 결정</p> <p>형사사건 송치-일반 형사사건과 동일 절차로 진행</p>
-----------------------	---

### 6)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sup>3)</sup>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서비스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현행 가정폭력관련법 상 가정폭력 대응서비스의 대상이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3) 이 부분은 김승경(본 과제 책임연구원)이 작성하였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가 정비되기는 하였으나,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대응서비스는 대체로 여성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아동이나 노인은 보건복지부에,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등 그 대응서비스 제공기관은 대상에 따라 다소 분리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아직도 여성, 아동, 노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으로 가정폭력에 있어 실제로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높긴 하지만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를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성별이나 연령으로 구분하기보다 가족구성원이라는 관점 내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피해자를 성별이나 연령이라는 특성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 보다는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의 체계를 통합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 지원체계의 분절로 인해 지원에서 누락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정책

최근 정부는 1997년 가정폭력 예방·처벌을 위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가족 및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주거지원 시설 등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다(국가정책 조정회의, 2013:1).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에서는 가정폭력 방지를 통한 건강한 가족가치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초기대응 및 처벌 강화, 피해자 및 가족보호 확대 등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비전	가정폭력 방지를 통한 건강한 가족가치 구현		
목표	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 20% 감축		
핵심 과제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초기 대응 및 처벌 강화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추진 과제	건강한 가족가치 정착을 위한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	초기대응 및 긴급구호체계 강화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내실화 (여가부, 경찰청, 법무부)

	<p>(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화</li> <li>-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교육 강화 실시</li> <li>- 가족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족가치 정착 지원</li> </ul>	<p>(여가부, 법무부, 경찰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대응 및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li> <li>-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배치, 피해자 보호조치 전문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보호소 마련</li> <li>- 1366 긴급구조 기능 강화</li> <li>- 가족보호시설, 주거지원시설 확대</li> <li>-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확대</li> <li>-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적용</li> <li>- 무료 법률 구조 지원</li> <li>- 시설 입소 여성 건강검진·직업훈련비 등 지원</li> <li>- 피해자권리보호제도 적극홍보</li> <li>- 가정폭력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li> <li>- 이주여성 대상 통역 지원 강화</li> <li>- 1577-1366 착신시스템 개선, 상담언어 확대</li> <li>- 피해자 지원 법무담당관을 통한 지원 강화</li> <li>- 공인 여성 관련 단체 발급 확인서, '혼인단절, 귀책사유 증빙자료' 인정</li> <li>- 다문화 가정폭력 예방, 신고 활성화</li> </ul>
<p>가해자 교정 치료 효과 제고 (법무부, 여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자 교정내실화를 위한 감호위탁 보호처분제 실효성 제고</li> <li>-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교정치료 프로그램 등 강화</li> </ul>	<p>가해자 엄정 처벌 (법무부, 경찰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자 엄정 대처 및 책임성 강화(법무부, 경찰청)</li> <li>-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 송치 확대</li> </ul>	<p>아동학대 예방·보호 강화 (복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교육 제도화 방안 마련</li> <li>- 아동관련 기관 취업, 운영제한 근거 마련</li> <li>-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제정</li> <li>- 그룹홈에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등 보급</li> <li>- 거주형 치료, 보호시설 확충</li> <li>-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추진</li> </ul>	
<p>중독 예방 및 정신건강 치료 (복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치료효과 극대화</li> <li>- 정신건강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li> </ul>		<p>노인학대 예방·보호 강화 (복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노인 신속보호, 경찰관 현장 동행 추진</li> <li>- 피해노인 신분조회 근거 마련</li> <li>- 상담원 대상 교육 전문화</li> <li>- 학대 사례 적극 발굴 및 지원 강화</li> <li>-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li> <li>- 지역 복지자원 연계 강화</li> <li>- 치매·독거노인 관리 강화</li> </ul>	

[그림 III-2]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추진 방향

이 중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의 주요 대책은 세 번째 핵심과제인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중 두 번째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예방·보호 강화’ 부분으로, 여기에서는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아동학대 피해자 치료 및 가족 지원을 강화하며, 가정 내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정부지원과 연계하여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이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14), 법무부와 함께 아동복지법 개정과 연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학대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행위자의 재발방지 프로그램 수강명령제도를 도입하며 접근금지 등 피해 아동보호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다(~'14).

또한 2015년까지 전용 그룹홈에 피해자 치료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치료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지원하며, 재학대 방지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2017년까지는 학대피해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형 치료·보호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신고의무자(의료기관, 교사, 아동복지시설, 응급구조사 등 22개 직군) 대상의 교육을 추진하고, 학대피해 아동이 아동학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요령 및 신고방법’ 등을 안전예방 의무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영역의 추진과제 중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분야에서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첫째,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강화를 위해 현재 전국에 44개소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국 시·군·구 내에 통합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임상심리 전문치료 인력을 증원하여 상담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다양한 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어 법인별로 업무수행방식이 상이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 기준을 포함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대상자별 집중적 홍보 및 교육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사이버교육 과정을 신고의무자 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동 스스로 학대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아동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셋째, 학대피해 아동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재학대 방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행위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프로그램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가정법원이 결정한 친권제한, 접근제한, 보호관찰 및 치료·상담 등의 보호처분을 불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보호처분 이행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넷째, 아동학대예방 효율화를 위해 보호처분제도, 친권제한제도,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상담원 신변안전 확보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가정폭력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가족구성원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해 건강한 가족가치를 확산하고,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초기대응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우며, 피해자 지원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및 교육을 통한 피해자 관점의 양성평등 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엄정처벌 및 재범우려자에 대한 치료·교정 프로그램 마련,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사전 예방적 치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영역에서 가정폭력 예방 및 가족구성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3년에 총 3개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표 III-2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내용(여성가족부)

정책 과제	사업명	주관 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가정폭력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확산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대응 실무과정 개설 운영	- 지방경찰학교 내 가정폭력 전문과정 개설 - 양성평등교육 진흥원에 가정폭력 예방전문강사 과정 신설 운영
			가정폭력 예방문화 확산	- 가정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 및 공익광고 실시(연중)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주거지원사업

	보호 및 가해자 교정 지원 확대		피해자 지원	긴급전화 1366 피해자 지원프로그램
			무료법률 지원 사업	무료법률 지원사업
			가해자프로그램 운영비	가해자 프로그램 운영, 성폭력 가해청소년 교육사업, 가정폭력 예방 홍보 및 교육
		대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내실화</li> <li>- 결혼이민자 대상 가정폭력사범 처리절차 지침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 상담위탁 관리대상 실태 파악</li> <li>- 불성실 상담자, 상담위탁 취소 등 재기현황 파악</li> <li>- 상담내실화를 위해 담결과보고서의 충실한 작성 유도 등</li> </ul>

## (2) 가정폭력 사건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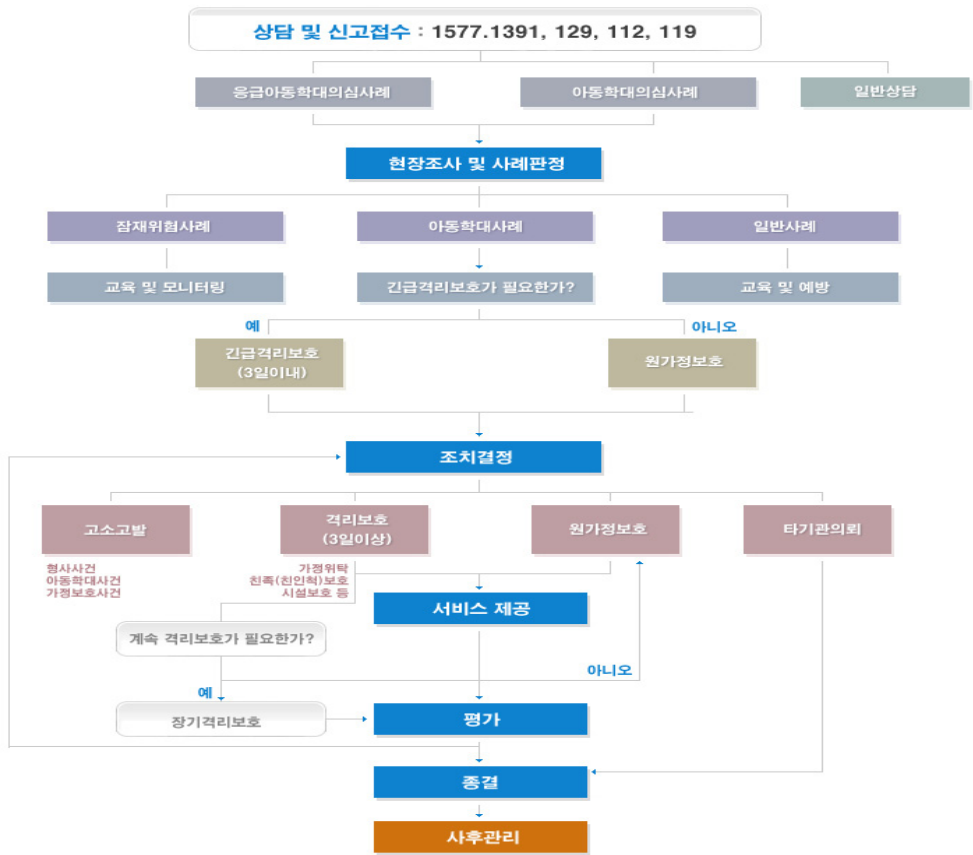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가정폭력 사건을 고소 또는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고소 또는 신고할 경우 [그림III-3]과 같은 절차에 의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경찰이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경찰은 크게 응급조치와 긴급입시조치를 취하고, 입시조치를 신청하게 된다. 응급조치로는 폭력행위자를 제지하고, 행위자를 피해자와 분리시키며, 피해자를 보호시설 또는 치료기관으로 인도하고, 폭력행위 재발 시 입시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함을 통보해준다. 긴급입시조치로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퇴거시키는 등의 격리, 주거지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게 된다. 또한 입시조치로 앞서 서술한 세 가지 긴급입시조치사항 외에 가해자를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유치장 및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조치를 검찰에 신청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입시조치를 청구하게 되면 가해자를 조사한 후 불기소처분, 가정보호사건, 형사처리 등으로 구분하여 법원에 송치하게 된다.

법원에서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입시조치를 결정하고 조사와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을 판단하게 된다. 보호처분은 접근행위의 제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행위의 제한,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불처분은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그림 III -3]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



[그림 III-4]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

또한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나 검사의 청구로 친권을 정지할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하여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부모가 행사하는 특정종류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연합뉴스, 2014.4.1.).

### (3) 가정폭력 방지 사업

#### ① 가정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가정폭력 재발방지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반복적이며, 물립되는

특성이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성행 교정을 통해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을 대상으로 치유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온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2012년 현재 120개소)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강명령 처분자, 가정보호사건 중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 및 기타 상담기관이나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의뢰하여 상담을 권유한 사람들 중 본인이 상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상담대상자의 생업, 육아, 가사 등을 고려하여 야간이나 휴일 상담을 권장하고 있으며, 행위자의 상담거부, 난폭행동 등으로 인해 통제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계약 시 비폭력을 명시하고, 경찰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발생 시 상담을 중단하고 의뢰한 법원이나 검찰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상담개입은 여성주의와 인지행동모델을 기본 관점으로 하여 행위자가 폭력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비폭력적인 대안적인 기술을 습득해서 폭력을 멈추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주 1회, 20회기를 기준으로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전국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여성중심, 피해자중심의 상담을 기본 관점으로,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치유의 주체로 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하고 있다. 상담은 주 1회 개별상담과 집단상담/가족상담, 심신회복캠프 등의 형태로 운영되며, 15회기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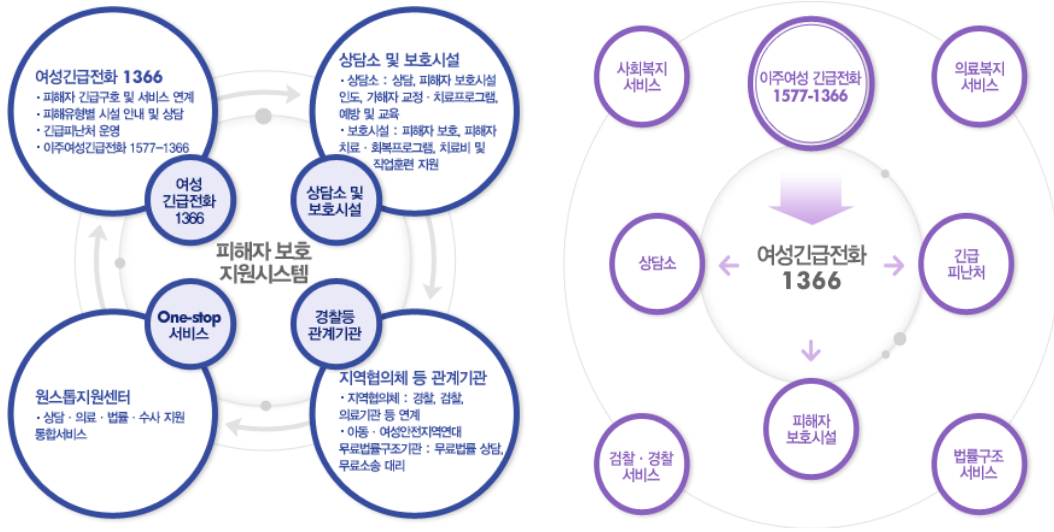
- ②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여성긴급전화,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보호

경찰에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하거나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 외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지원체계는 크게 여성긴급전화,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보호 사업, 무료법률구조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 구축되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연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협력기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을 두고 있다.

여성긴급전화인 1366은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지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동안 위기개입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1366은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되어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및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에게 외부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상에 해당 서비스 기관에 의뢰하며, 서비스 대상자를 위해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지원, 비용공제, 각종 정보 등의 자원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피난처를 운영하여 7일 이내의 긴급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피난처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쉼터, 법률지원기관, 의료지원기관 등 관련기관 간 연계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고 가정해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정폭력 피해 및 가해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과 지속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 업무로는 피해자 치료와 가해자 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담자가 필요로 할 경우 쉼터,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지역관련기관을 연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출처: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그림 III-5]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추진전략

여성긴급전화 1366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를 의뢰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가정복귀를 도우며,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하고,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돕는 교육을 시행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임무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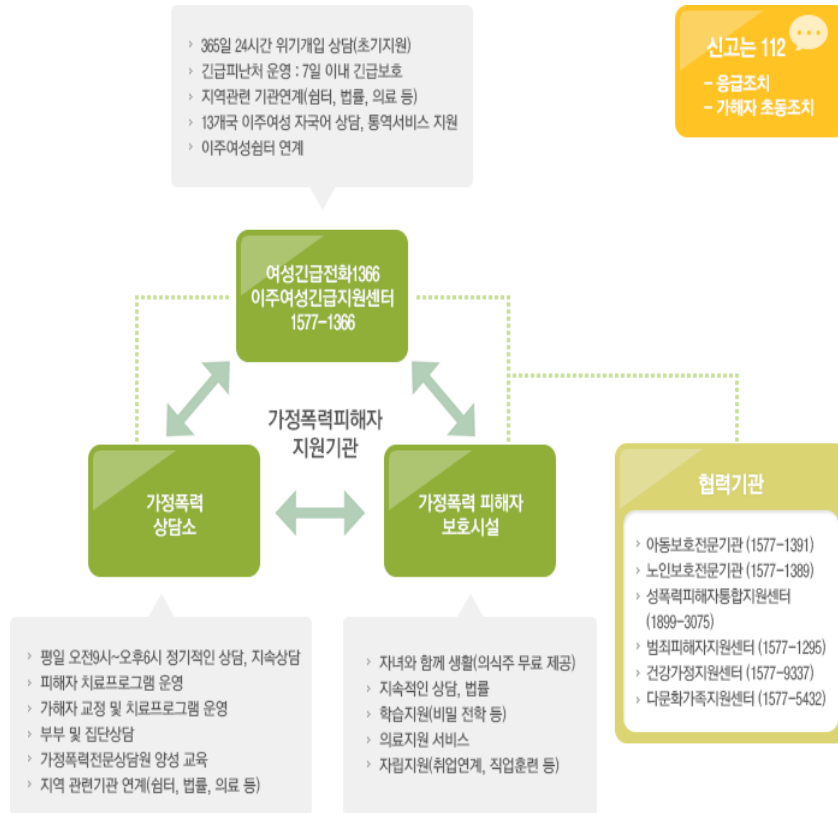
이 외에도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입소를 희망하거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지만 가정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호시설에서는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며,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하거나,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피해자의 자립을 위해 시설 외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직업 및 취업 훈련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해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8조 제1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네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과 2년의 범위 내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하는 장기보호시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하는 외국인 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하는 장애인 보호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 제1항). 단, 단기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 중에 있는 등 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보호시설에는 피해자가 자녀를 동반하여 시설에 함께 입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대체로 피해 어머니가 자녀를 동반하고 입소할 수 있는 쉼터의 경우 10세 이상의 남아는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대체로 10세 이상의 남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가족을 18세까지의 남아가 거주 가능한 가족쉼터로 연계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 혹은 청소년 쉼터 등으로 남아를 의뢰하게 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인근 학교에 출석을 원할 경우 보호시설은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교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될 때, 학교의 입학 및 전학을 승낙해야 하며, 교육장에게 당해 아동의 전학을 추천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하며,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은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취학지원의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 4조의 4, 동법 시행령 제 1조의 3).



[그림 Ⅲ-6]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피해 어머니가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 상담원은 상담을 통해 자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담 및 신고를 통해 접수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을 통해 긴급격리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3일 이내의 격리보호 또는 원가정 보호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결정하고 난 후, 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고소고발, 3일 이상의 격리보호, 원가정 보호, 타기관 의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격리보호의 경우 가정위탁, 친족(친인척) 보호, 시설보호 등을 3일 이상 제공하게 되며, 계속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장기격리보호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원가정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상담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게 된다.

대체로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청소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는 전국 196개(2013년 9월 기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지역연계협력사업, 청소년상담 및 활동지원, 청소년전화 1388운영, 위기청소년 긴급 구조 활동, 일시보호시설운영,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CYS-net)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Help Call 1388 청소년 전화를 통해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의뢰할 수 있는데, 상담자의 평가를 통해 일반상담, 긴급구조가 필요한 위기상담, 자치단체나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신고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청소년이 폭력, 가출, 학대 등과 같은 위험에 처한 경우 1388 헬프콜(24시간, 365일 운영)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면담을 통해 일시보호 기관에 연계될 수 있으며,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학교, 병원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되어 있어 청소년이 처한 문제를 원인 진단부터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

이들 중 특히 10~19세 사이의 일시보호가 필요한 남녀청소년의 경우에는 입소일부터 24시간 이내의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일시보호소에 입소가 가능하데, 일시보호소에서는 사안에 따라 최장 1주일까지 보호가 가능하며 이후 귀가조치 하거나 시설로 인계하게 된다. 기관의뢰나 긴급구조, 또는 자발적으로 입소하게 된 청소년들은 초기면접을 통해 상황 분석 및 지원방향을 모색하게 되며, 보호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숙식 및 의료지원이 가능하고 전문상담 및 정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일시보호소로 연계하게 된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일시보호 후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울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청소년 쉼터로의 입소가 가능하도록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이나 그룹홈의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의 입소가능 연령이 대체로 18세 미만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의 입소가 가능한 연령 역시 18세 미만인 경우이며, 1388과 연계된 일시보호쉼터는 대체로 19세 미만까지로 연령을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쉼터는 가정폭력 피해보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18세 이상의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보호기관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는 지역사회 내 활용가능한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교육 등 맞춤형 One-stop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가정 및 학교, 사회로의 복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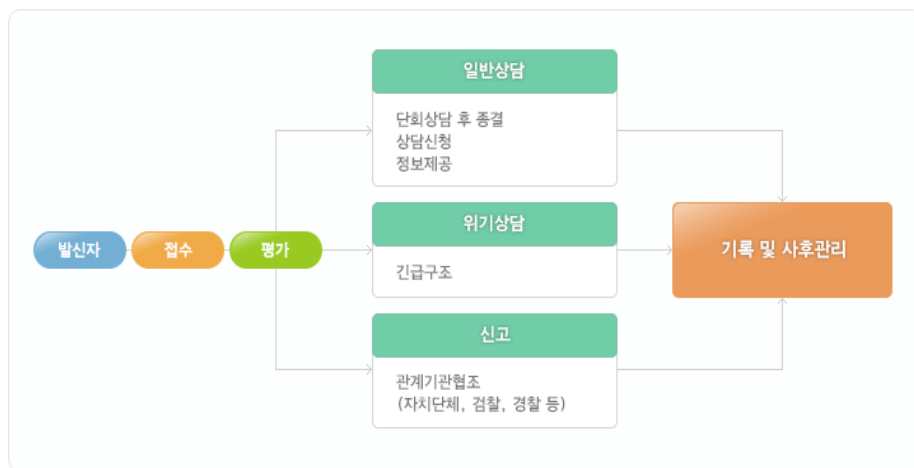
지원하는 체계로 일반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CYS-Net의 지원체계는 아래와 같다.

**표 III-3 CYS-net 서비스 내용**

분야별	서비스내용	사업수행기관
상담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동반자 파견 등	직접수행
보호	· 긴급구조, 일시보호, 귀가지원, 식사제공, 교통비지원 · 청소년쉼터, 그룹홈 연계	직접수행 청소년쉼터, 그룹홈
교육	· 검정고시 응시지원, 대안교육 연계 등	직접수행, 대안학교
자립	· 직업 · 취업정보 제공, 취업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	직접수행, 고용지원센터
법률	· 조사동행, 변호지원, 법률자문	1388 법률 지원단
문화	· 동아리활동 지원, 수련관 프로그램 안내 등	청소년수련관
건강	· 약품지원, 건강진단, 치료지원	지역의료원, 보건소, 1388의료 지원단 (약사회, 의사협회 등)



[그림 III-7] CYS-Net 지원체계



[그림 III-8] Help Call 1388 청소년전화 상담접수 및 업무처리과정

출처: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gj1388.or.kr/bbs/board.php?bo\\_table=sub03](http://www.gj1388.or.kr/bbs/board.php?bo_table=sub03) 02

## 2. 해외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 1) 개관

가정폭력 관련 정책의 동향은 가정보호를 위한 공적 기관의 불개입정책에서 강력개입을 통한 강력차별정책으로 흘러왔으나, 강력차별정책은 가정의 와해라는 역기능을 낳아서 현재에는 가정을 보호하면서 가정에 개입하는 정책으로 흐르고 있다. 대만의 경우, 단순한 보호정책에서 나아가서, 대면프로그램을 적용할 사건으로 부적합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가정폭력사건에서도, 가정의 보호를 위해서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다(후양란영, 2010:217-231).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고 강력하게 집행하고자하는 국가의 의지를 나타낸다. 다만, 일선에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연계가 이루어지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국의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및 보호정책은 간략하게 개관하고자한다. 일본, 미국, 스웨덴, 영국의 경우 가정폭력관련 대응책보다는 아동복지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국가로 이를 활용한 피해

아동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년사법에서 가정법원이 소년에 대한 선의권을 가지고 있고 아동상담소를 두는 등 아동에 대해서는 복지사법모델을 가지고 있다. 일본, 미국, 스웨덴, 영국은 제도의 구축차원에서 어떻게 아동복지지원체제를 마련양상을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호주와 캐나다, 독일은 가정폭력 피해지원의 일선에서 각각 특이한 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피해 아동 지원 및 보호 정책

### (1) 일본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방지법, 2000년 11월 시행),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DV방지법, 2001년 10월 시행)에 따라서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기 보다는 원칙에 충실하여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를 통해서 피해 아동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가정폭력방지법이라고 불리우는 법의 명칭자체가 가정폭력 전체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기 보다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방지'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배우자에 대한 적용 법률과 아동피해자에 대한 적용 법률이 다른 것이 원칙이며, 아동피해자는 당연히 기존의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된다.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과정에서도 관계기관들이 대상아동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하여 학대피해 아동 및 요보호아동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보호를 위한 연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박세경 외, 2005:230).

### (2) 스웨덴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 act.2003)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요보호아동 또는 가정의 요구(needs)에 따라 관련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조직기구인 '보건복지국가 위원회'가 각 기관의 협력을 위한 중심체 역할을 하면서 위협에 처한 아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보건복지국 각 위원회의 감독 하에 있는 각 지역사회서비스는 전국의 사회서비스를 감독하는 국가적 책임을 지고 있다. 스웨덴은 정부와 비영리 민간 시민단체 사이에 공식적·비공식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아동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의 효과성은 ‘아동권리모임(Children’s Rights in) 큰 규모의 지역사회그룹 및 단체를 아동보호시스템에 관련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박세경 외, 2005:208).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실효성있는 피학대아동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의 욕구 및 부모의 강점과 약점 등 가정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진다. 심각한 학대사태의 경우 가족보존은 불가능하므로 아동은 처음에 보호를 받는다. 아동이 자신의 가정 외의 다른 곳으로 갈 것인가는 자발적인 선택이거나 보호기관에 의해 정해진다.. 경미한 학대의 경우는 사회사업가나 패밀리 워커에 의한 지도가 제공되는데, 1년에 5회기 또는 그 이상의 접촉이 이루어진다. 가끔은 클라이언트의 가정에서 지도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아이를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등이며, 부모들은 부모교실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한다(박명숙, 2006:8).*

### (3) 미국

미국의 아동학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서비스의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복합적인 아동학대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974년 연방정부차원에서 제정된 ‘아동학대 예방 및 처우법(Child Abuse Prevent and Treatment Act: CAPTA)’에 근거하여 각 주정부는 1976년부터 ‘아동학대 신고법’이나 ‘아동보호서비스’ 관련법령 내에 아동학대 신고 및 개입체계의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피해 아동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다. 연방차원의 ‘국립 아동학대 및 방임센터’는 CAPTA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아동학대 예방정책 및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정부나 지역사회의 피해 아동 개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였으나 1996년 CAPTA의 개정과 함께 센터는 폐쇄되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4). 이것은 1998년 연방차원에서 대응정책이 제시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린북(Greenbook)정책이라 불리는 기본안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전문가와 아동학대 전문가로 구성된 “소년·가정법원 판사전국위원회”가 설립되었다.(김잔디, 2012:198). 동 위원회는 연방차원의 가이드라인을 1999년에 제시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법원, 사회복지기관, 법집행기관, 가정폭력피해자지원기관, 학회 등에 걸친 다양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기관과의 연계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후“Effective Intervention in Domestic Violence and Child Maltreatment Case: Guidelines for Policy and

Practice(Greenbook)”이 발간되었고 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보호와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연계의 가이드라인이 재정비 되었다.

피해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접수, 현장조사, 보호조치는 주정부의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상담 및 치료 등의 서비스는 전문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담당하는 지역협의체가 담당하고 있다. 보호자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아동이 발생될 경우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며 주 정부가 법적인 후견인이 된다. 아동은 위탁가정에서 18~22개월 정도 보호된 후 원가정 복귀나 입장되게 된다. 부모가 법원에서 명령한 아동보호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양육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박탈의 절차를 밟게 된다. 아동학대 전담경찰의 배치 등을 통해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6).

각 주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Child Protective Service)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민간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의 보호와 지원방법을 마련하고 있다(이유진 외, 2012 :47). 민간기관이 오히려 주체가 되고 실무를 전담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후관리서비스를 통해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원가정과의 재결합, 입양, 후견인을 통한 보호, 청소년 독립생활’의 4가지의 유형으로 서비스의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박명숙,2006:5).

#### (4) 영국

영국의 아동법은 아동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법률로서 1989년에 제정되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부모와 가족이 개입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가족과의 협의를 통한 아동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동법의 원칙의 특징은 부모와의 협의를 통한 상호적 개입이라는 측면이다.

아동보호를 위한 개입 및 조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명령으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정부는 가정에 개입할 수 있다. ‘아동 긴급보호명령’의 경우 아동이 현재의 가정이나 거주지에서 받는 피해에 대해서 긴급명령을 내리고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4:36). 아동에 대한 긴급개입이나 초기 조사 시 경찰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43개의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긴급아동학대의 경우에만 경찰이 임의대로 부모와의 격리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가정법원 판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아동에 대한 의료적 검사도 판사의

승인 후에 실시가 가능한 등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원을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 격리된 아동은 대부분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데 장기보호가 결정되더라도 원가정의 가족과의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보호기간 동안의 보호조치와 상담 등에 대해서도 ‘부모와 아동’이 당사자로서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이유진 외, 2012 :52).

학대피해 아동을 담당하는 민간기관들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가족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40) 2004년의 아동법은 아동복지와 보호 및 가족지원이 정부의 책임임을 제시하며 사건발생시 조사의 책임과 의무도 지방정부에 부과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아동보호서비스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고 지역협조체계를 관장하는 핵심이 된다(황옥경, 2011:35). 2005아동보호지침서, 2006아동보호기관 공동지침서를 통해서 보건부, 내무부, 교육부 등의 관련부처가 협력하여 세세한 규정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일선에서의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보호 및 지원

#### (1) 호주<sup>4)</sup>

호주에서는 가정법원이 주축이 되어 가정법원과(Family Court)와 연방 치안법원(Federal Magistrates Court) 모두 가족법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웹사이트의 방문주소와 전화번호(1300 352 000), 가정법원지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연계기관(Centrelink)과 가족지원실(Family Assistance Office)에서 재정지원, 보육비 지원, 구직 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호주 정부에서는 자녀지원제도(Child support scheme) 시행기관으로서, 별거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의무를 수행하도록 양육비관리국(Child support agency)을 두고 있으며 전화번호(13 12 72)를 명시해서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법률전문 비영리 센터들, 응급도움이 가능한 전화, 피난처 제공이 가능한 전화를 공적기관에 이어 비영리 민간기관까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의 안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가정폭력이 일어난 이후에 개입이 가능한 이상의 국가개입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전예방 서비스가 잘되어 있다는 것이다.

4) 호주 가정폭력 피해자 안내지. 호주 가정법원 홈페이지 [www.familylawcourts.gov.au](http://www.familylawcourts.gov.au) 2014.10.9 방문

특히 가족관계센터를 통해서 가족관계를 강화하고 가족관계 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관계센터도 존재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화번호를 명시하여(1800 050 321) 실질적인 안내를 하고 있다. 동거 및 비동거 가족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호주도 전국에 걸쳐서 지원가능한 어린이와 청소년지원전화를 마련하여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800 551 800). 개인이나 부부를 위한 24시간 위기 지원전화를 운영하고 재정문제 상담도하는 ‘라이프라인’ 전화(13 11 14)를 마련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 볼 수 없는 남성들과 그 배우자나 가족을 위한 전화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24시간 제공되는 ‘멘즈 라인 오스트레일리아’는 (1300 789 978)을 통해서 상담 서비스가 지원된다. 이 외에도 ‘남성지원 서비스’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있다. 고민하는 아버지를 위한 서비스전화(1300 853 437), 아버지재단, 할아버지 협회의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 관계지원협회와 같은 ‘관계’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와도 연계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지향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는 회복적 사법의 운영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호주에는 형법이나 범죄법이 아니라 회복적 사법법(범죄법)이 존재한다. 회복적 사법을 형사사법에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갈등해소의 방법으로 회복적 정의이념을 적용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캐나다<sup>5)</sup>

캐나다의 경우 이민국에서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안내지를 한글로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민자도 이해하기 쉽게, 가정폭력 피해자 중심적인 일선의 지원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해가 쉬운 화법의 사용과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방향의 설정이 특징이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또는 관계가 끝난 후에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이나 학대행동이라고 규정하며,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위협하려고 하는 기타형태의 학대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다. 꼬치꼬치 따지거나 소유물처럼 대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멸시하거나, 욕을 하거나, 일을 못하게 하거나, 교육을

5) 캐나다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보안내지. 한글로 제공하고 있다. [http://www.justiceeducation.ca/sites/default/files/pdfs/korean/694w\\_Domestic\\_Violence\\_Kor.pdf](http://www.justiceeducation.ca/sites/default/files/pdfs/korean/694w_Domestic_Violence_Kor.pdf)(2014년 10월 9일 방문)

못 받게 하거나, 성질을 부리거나, 내가 다치지 않으려고 나 자신을 즐겁게 하기보다 파트너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지 등 다양한 가정폭력의 징후를 예를 들어서 쉬운 말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의 개념을 사용하고 한자어를 구나 절을 통해서 짧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

당장 위험한 상태라면 911에 전화하여 경찰을 도움을 받고 아니라면 피해자서비스나 피해자링크, 임시거처제공이 가능한 안전한 집에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어서 경우에 따른 액션플랜이 다음과 같이 짜여 있다.

도움이 필요하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본인이나 자녀가 당장 위험하거나 긴급 치료가 필요하다면 911에 전화하십시오.
- 본인이나 자녀가 안전한 곳에 있지 않으면 안전한 곳으로 가십시오. 임시 거처나 안전한 집을 찾으려면 피해자 링크(VictimLINK)에 연락하십시오.
-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뢰하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친구나 가족이 정서적 위로나 실제적인 도움을 주도록 허락하십시오.
- 피해자 링크의 다음 번호로 피해자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1-800-563-0808.
- 피해자 서비스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 계획을 세우십시오. 안전 계획은 본인과 자녀가 폭력 상황 때문에 처하게 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계획입니다.
- 신체 상해나 성폭행을 당한 후 가능하면 빨리 병원이나 워크인 클리닉, 가정의에게 가십시오.
- 경찰에 연락하고 싶는데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거주지 경찰서의 비응급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 가정 폭력이나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피해자 서비스 담당자에게 물어십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가정 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린이를 위한 도움의 전화가 마련되어 있다.

**가정 폭력 BC(Domestic Violence BC)**

- [www.domesticviolencebc.ca](http://www.domesticviolencebc.ca)

**헬스링크 BC(HealthLinkBC)**

- 24 시간 무료 전화: 811 또는 [www.HealthLinkBC.ca](http://www.HealthLinkBC.ca)
- 손쉬운 비응급 건강 정보 및 서비스 이용
- 요청 시 130 여 언어로 통역 서비스

**BC 간호사 상담 전화(BC NurseLine)**

- 전화: 24 시간 1-866-215-4700
- 130 개 언어로 통역 서비스

**어린이를 위한 도움의 전화(Helpline for Children)**

- 전화: 24 시간 310-1234

**법률 서비스 협회(Legal Services Society)(LSS 콜센터와 법률 정보 전화(LawLine)**

- 전화: 604-408-2172 또는 1-866-577-2525

(3) 독일<sup>6)</sup>

독일은 다른 나라와 같이 가정법원 등의 담당 업무기관을 법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형법전은 특별법이 난무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형법에 넣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가해자를 처벌하고자하면 그 범죄유형에 맞는 형법전상의 조문을 적용하고 양형단계에서 가중처벌하는 방식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해서 민사적으로 해야 할 일, 형사법원이 해야 할 일,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이 각기 고유의 업무범위에 맞게 분산되어 있으면서 연계가 잘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폭력 행위 시의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들은 민사법원의 보호개선에 관한 법률규정을 적용하고 경찰법규, 스토킹 법규 등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법률을 모아서 그 때 그 때 잘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하나의 단일 특별법을 계속 양산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베를린 시의 ‘노동 이민 그리고 여성을 위한 담당기관(Senate department<sup>7)</sup>)’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정폭력에 관한 홈페이지에서는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가정폭력이 왜 발견되기 어려운지, 가정폭력의 통계적인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가정폭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함께 ‘아동과 가정폭력’란을 따로 마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항상 아동과 관계되어 있으며

6) <http://www.berlin.de/sen/trauen/keine-gewalt/haeusliche-gewalt/artikel.20187.php>(2014년 10월 9일방문)

7) 베를린 상원을 의역하였으며, 도시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엄마의 폭력피해경험은 아동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며 아동도 학대를 당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 아동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제시하면서 그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동에게 그 결과는 다방면에 걸쳐서 일어난다. 아동은 두려움을 키우고 수면장애나 집중력 저하에 시달리게 된다. 이것은 학교에서의 능률저하와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은둔과 우울증을 증가시켜서 건설적인 분쟁해결능력의 부족으로 이어지게 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때로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이어지기도 한다. 가정폭력의 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부모의 양육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개입과 예방은 필수적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베를린 센터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의 예방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가정폭력에서 아동이라는 특수경우에 대한 지원은 여성피난처나 여성의 집 협회의 담당자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지원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베를린 경찰과 사법기관은 보호와 지원을 위한 서비스 연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당사자나 가족구성원 또는 동료들이 BIG-핫라인의 구조번호로 언제나 유선상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핫라인은 당사자인 여성과 아동에게 피난처를 제공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폭력을 목격하게 되거나 희생자가 되는 아동을 위한 긴급아동구조번호(61 00 61)가 있다. 이 외에도 연방전체에 걸친 여성에 대한 폭력구조 전화가 수신자부담으로 365일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며 언제나 익명의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3. 소결 및 시사점

아동학대 사례업무 진행 단계는 상담 및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조치결정, 서비스 제공, 평가 및 종결, 사후관리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사건의 발굴 과정의 현장조사와 사례판정 및 보호조치는 인권문제로 인해서 국가의 개입이 전제된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학대아동 개입에 있어 공적 기관의 역할의 미비와 실무의 부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연구들에서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다(이유진 외, 2012 등). 이러한 연구결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적기관과의 연계를 활발하게 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해야한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경찰권의 권한 양도를 의미하므로 현행 법률체계에서 실현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적 기관과의 연계강화가 연구결과로 제시된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적기관과 민간기관은 분명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국가공권력의 발휘를 통한 인권침해의 경우인 현장조사와 사례판정, 조치결정 및 종결에 있어서는 공적 기관이 핵심주체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폭력 가정 내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위한 공적 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아동학대 특례법을 통해서 역할강화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니 이제는 법집행이 필요한 시기이다.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발휘의 핵심 주체는 공적 기관이 담당하고 상담이나 서비스의 제공 등은 전문민간기관이 담당하도록 분명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원가정의 보호'라는 결코 버릴 수 없는 카드인, 모순적인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특별법상의 '가해자 보호처분'은 원가정의 보호를 위해서 형사법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가정 보호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파악이 아니라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사건의 발굴, 조사, 보호와 지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기관이 어느 정도로 개입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원하는 원가정의 형태는 다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하고 싶어 하는 원가정 구성원에게 보호처분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호하고 싶어 하는 원가정의 구성원에게 가정구성원성을 인정하여 가정폭력범죄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은 부과 가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는 재량을 발휘하여 가정폭력범죄행위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정구성원성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내포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의 기본권이 국가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침해될 수 있느냐, 국가가 아동의 자유권을 어느 정도로 보장해야 하느냐와 관계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국의 아동보호 정책이 부모로부터 격리하여 아동을 보호하더라도 부모와 아동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영국의 시스템은

원가정의 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집행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원가정 보호를 전제로 하면서도 부모로부터 격리된 아동을 보호·지원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아동·청소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를 참고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와 지원을 소개하는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에는 1366이라는 여성긴급전화만이 소개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sup>8)</sup> 경찰에서는 경찰의 정책에 부합하는 117번호가 소개되고 있다. 가정폭력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피해 아동·청소년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앞에서 살펴본 국가의 보호와 지원 사례들과 같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일선 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설명하는 통합 홈페이지나 콘텐츠가 마련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입장에서 기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포털 사용율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에서도 '가정폭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가 일차적으로 연계된 곳은 없다. 호주와 캐나다가 인터넷으로 가정폭력피해자지원 내용을 한국어로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은 연구자를 숙연하게 할 정도이다.

둘째, 캐나다의 피해자 행동 매뉴얼과 같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대처방안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양하게 제시해야 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정확히 표현하거나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때 다양한 상황 선택지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준다. 가정폭력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법률의 용어로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한자어의 요약·압축된 구나 절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안내자료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학대 신고의 주체가 아동일 수 있고 이를 위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 관점에 의한 인프라를 구축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 및 연계기관이 명시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신고처인 경찰의 112만 대대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상담처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화번호가 전면에서 함께 검색되어야 하며 24시간 상담 및 신고, 지원이 가능한 핫라인의 개설이 필요하다. 112에 전화해서는 아동학대의 상황과 대처방안을 상의할 수 없다. 당장에 경찰이 출동할 상황이 아니라면 낮에 아동보호기관이 근무하는 시간에 아동보호기관에 상담해야 한다.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독일의 아동긴급구조전화번호(61 00 61)과 캐나다의 어린이를 위한

8) 여성가족부 홈페이지>국민지원>가정폭력 피해자

[http://www.mogef.go.kr/korea/view/support/support01\\_01\\_04\\_01.jsp](http://www.mogef.go.kr/korea/view/support/support01_01_04_01.jsp)(2014.10월 9일 방문)

도움전화(310 1234)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호주의 경우도 캐나다와 독일과 마찬가지로 24시간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의 신고자를 범몰이나 실무에서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기관장이나 교사 등의 아동주변의 성인으로 전제하고 있다. 장난전화,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인 피해자인 아동의 신고나 상담에 대한 일차적 접근 가능성을 후순위로 미루지는 말아야한다.

넷째, 관계지향적 갈등해결의 시각과 예방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일선에 제시되어야한다. 호주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서는 동거 혹은 비동거 가정구성원 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기관이 소개되어 있다. 이것은 사후에도 필요한 일이지만 가정폭력 이전에 관계개선을 위한 상담이 이루어지거나 회복적 정의의 원리로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전 재정 투입이 범죄예방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한다. 가정폭력은 하루 이틀에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다. 감정의 골이 깊고 관계가 끊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쉽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이자 예방책은 관계지향적 갈등해결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가해자에 대한 강제적 개입을 치료적 사법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회복적 사법의 측면에서 대응을 마련하여야할 것이다.

다섯째, 가정구성원의 다양화에 따른 서비스를 마련해야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여성피해자나, 한부모를 여성양육자만으로 설정하고 여성의 집, 여성피난처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가정폭력 피해지원 인프라에 대한 다양성을 가해야한다. 호주와 같이 남성양육자로 구성된 가정의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남성이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

## 제 IV 장

---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1. 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요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3. 소결 및 시사점



## 제 IV 장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sup>9)</sup>

### 1. 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요

####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의 부가조사인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호의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어 오고 있다.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는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와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로 구성되어 실시되었다. 주 조사인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는 19세 이상 일민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우리사회 전반의 가정폭력 발생현황,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정책에 대한 인지도, 체감도 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외에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아동·청소년,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피해자 등의 취약계층 및 소수자 대상의 조사와 지원기관, 수사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가정폭력 발생률 실태를 파악하고 가정폭력을 경험한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아동·청소년 자녀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9) 국가기관에서 내용과 대상이 중복되는 통계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여성가족부에서도 본 조사를 통계청에서 승인통계로 지정받아 원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바, 본 장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1)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여성가족부로부터 원자료(raw data)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은 설문응답 이해도를 고려하여, 고등학교 3학년은 조사시기를 감안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조사대상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 총 1,069명이었으며, 이 중 초등학생이 351명, 중학생 349명, 고등학생은 369명이었으며, 남자는 530명, 여자는 539명이었다.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와 학교급(초, 중, 고), 학년을 고려하여 모집단을 층화하였으며, 다단계 층화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IV-1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
조사지역	전국 15개 시/도 (제주도 제외)
조사완료	1,069명
모집단 층화	· 지역규모(대도시/중소도시/농촌), 학교급(초/중/고), 학년, · 내재적 층화: 남/녀/남녀공학, 사립/공립
표본배분	비례배분
표본추출	다단계 층화 확률비례추출법
조사방법	전문조사원에 의한 방문조사
조사기간	2013.10.24.~2013.11.15.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p.9)

본 연구에서 실태조사 분석을 위해 사용한 조사변인은 다음과 같다.

표 IV-2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조사변인

조사명	조사변인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인구학적 배경	지역 지역크기 성별 학교급 및 학년
	친구와의 관계	폭력허용도 친구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및 피해 시 반응, 도움 요청 여부) 친구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의 폭력 가해 경험 부모님의 폭력 가해 이유 부모님의 폭력에 대한 반응 부모님의 폭력 시 도움 요청 여부 부모님이 폭력 시 몸/마음에 상처가 난 적이 있는지 여부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 부모 간 폭력 목격 시 반응 부모 간 폭력 목격 시 도움 요청 여부 부모 간 폭력 목격 시 마음 상태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인구학적 배경	연령 거주지역 지역규모 결혼기간
	개인적 특성 및 폭력에 관한 태도	성장기(만 18세 미만)동안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성장기(만 18세 미만)동안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 폭력허용도
	가정폭력 관련 사항	배우자의 가정폭력 가해 유형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 증상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증상
	가정폭력 대응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배우자의 폭력 가해 시 맞대응 여부( 및 이유, 맞대응 시 배우자 반응) 폭력에 대한 대응 방법 배우자 폭력 시 도움 요청 대상 및 도움 내용 배우자의 최초 폭력 이후 도움요청까지의 소요 시간( 및 이유)
자녀관련 사항	배우자가 자녀에게 폭력을 가한 경험 자신이 자녀에게 폭력을 가한 경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인 1,069명의 아동·청소년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530명(49.6%), 여학생이 539명(50.4%)이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351명(32.8%), 중학생 349명(32.7%), 고등학생 369명(34.5%)이었으며,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 380명(35.5%), 중소도시 371명(34.7%), 읍/면지역 318명(29.7%)으로 조사대상자가 대체로 고르게 표집되었음을 볼 수 있다.

표 IV-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빈도(%)
성별	남자	530(49.6)
	여자	539(50.4)
	합계	1,069(100.0)
학교급 및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04(9.7)
	초등학교 5학년	123(11.5)
	초등학교 6학년	124(11.6)
	중학교 1학년	100(9.4)
	중학교 2학년	125(11.7)
	중학교 3학년	124(11.6)
	고등학교 1학년	185(17.3)
	고등학교 2학년	184(17.2)
	합계	1,069(100.0)
지역규모	대도시	380(35.5)
	중소도시	371(34.7)
	읍/면지역	318(29.7)
	합계	1,069(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75(7.0)
	부산광역시	75(7.0)
	대구광역시	49(4.6)
	인천광역시	40(3.7)
	광주광역시	50(4.7)
	대전광역시	40(3.7)
	울산광역시	50(4.7)
	경기도	90(8.4)

구분		빈도(%)
	강원도	40(3.7)
	충청북도	100(9.4)
	충청남도	90(8.4)
	전라북도	100(9.4)
	전라남도	90(8.4)
	경상북도	90(8.4)
	경상남도	90(8.4)
	합계	1,069(100.0)

## (2)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는 중화집락추출법을 통해 전국에서 추출된 상담소 100개와 가정폭력 보호시설 63개에 대해 상담소 및 시설 종사자의 협조를 얻어 우편조사로 실시되었다.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에 총 652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41.0%에 해당하는 267부였다. 조사 진행 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협의체를 통해 기관 종사자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전화통화를 통해 설문조사 독려를 하였으며 조사표를 발송할 때 여성가족부의 조사협조 공문과 조사안내문을 함께 발송하였다.

응답자는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148명, 보호시설에서 119명이 참여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IV-4**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이용 만 19세 이상 피해자
조사지역	전국
조사완료	상담소 148명, 보호시설 119명
모집단 층화	· 1차: 시설유형

구분	내용
	· 2차: 지역
표본배분	시설별 균등배분
표본추출	층화집락추출법
조사방법	우편조사
조사기간	2013.10.25.~2013.11.29.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p.12)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실태조사에 참여한 대상은 총 267명이었으며, 모두 여성이었다. 연령은 40대가 3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28.8%), 50대(17.2%) 등의 순이었다. 거주지는 대체로 다양하였으며, 중소도시 거주자가 51.3%, 대도시 거주자가 34.8%, 읍면지역 거주자가 13.9% 등의 순이었다. 결혼기간은 10년 미만인 경우가 3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년 이상~20년 미만 31.1%, 10년 이상 2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5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성별	여자	267(100.0)
	합계	267(100.0)
연령	20대	9(3.4)
	30대	77(28.8)
	40대	97(36.3)
	50대	46(17.2)
	60대	12(4.5)
	모름/무응답	26(9.7)
	합계	267(10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34(12.7)
	부산광역시	20(7.5)
	대구광역시	5(1.9)
	인천광역시	6(2.2)
	광주광역시	14(5.2)

구분		빈도(%)
	대전광역시	6(2.2)
	울산광역시	8(3.0)
	경기도	28(10.5)
	강원도	27(10.1)
	충청북도	11(4.1)
	충청남도	12(4.5)
	전라북도	20(7.5)
	전라남도	20(7.5)
	경상북도	18(6.7)
	경상남도	27(10.1)
	제주도	11(4.1)
	합계	267(100.0)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137(51.3)
읍/면		37(13.9)
합계		267(100.0)
결혼기간	10년미만	94(35.2)
	10~20년 미만	83(31.1)
	10년 이상	75(28.1)
	모름/무응답	15(5.6)
	합계	267(100.0)

## 2.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 1)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

#### (1)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

아동·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폭력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난 1년 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정서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한 신체적 폭력(16.7%), 중한 신체적 폭력(6.8%), 방임(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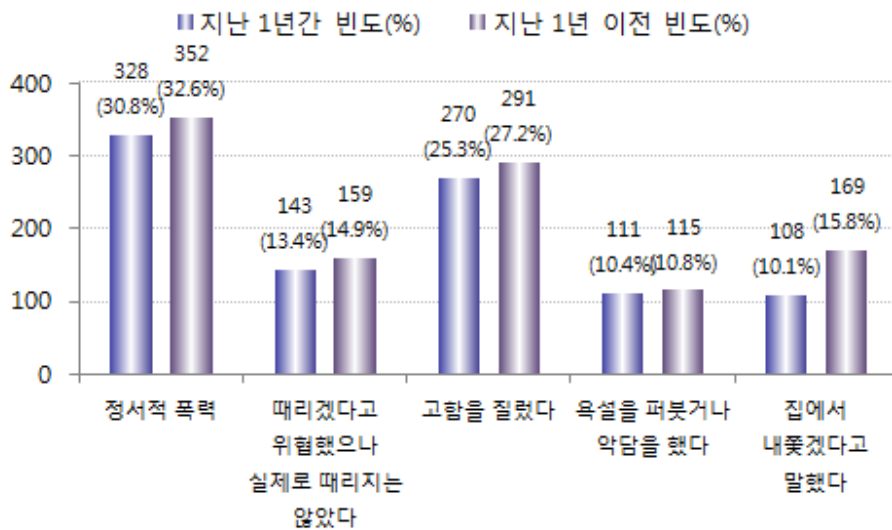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년 이전에 부모로부터 폭력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그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간 부모가 행사한 정서적 폭력 중에서는 고함을 지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25.3%), 그 다음으로 는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위협했다(13.4%),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했다(10.4%),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경험한 경한 신체적 폭력으로는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렸다고 응답한 경우가 1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고 응답한 경우가 8.7%에 해당하였다. 중한 신체적 폭력은 정서적 폭력이나 경한 신체적 폭력에 비해 대체로 발생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긴 하나,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고 응답한 경우가 4.7%로 가장 많았고, 벨트,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렸다(3.4%), 나를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2.6%), 사정없이 때렸다(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의로 화상을 입히거나, 목을 조르고, 칼이나 가위 등으로 위협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소수 발생하였다. 방임의 경우, 식사를 제 때에 잘 챙겨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6%로 가장 높았고,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혼자 있게 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나를 돌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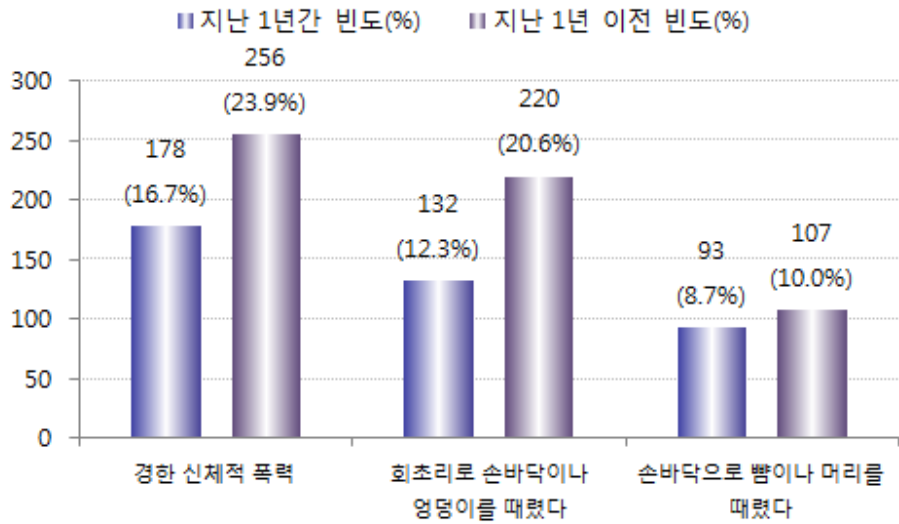
표 IV-6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유형	지난 1년간 빈도(%)	지난 1년 이전 빈도(%)
<b>정서적 폭력</b>	<b>328(30.8)</b>	<b>352(32.9)</b>
- 때리겠다고 위협했으나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	143(13.4)	159(14.9)
- 고함을 질렀다	270(25.3)	291(27.2)
-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했다	111(10.4)	115(10.8)
-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	108(10.1)	169(15.8)
<b>경한 신체적 폭력</b>	<b>178(16.7)</b>	<b>256(23.9)</b>
-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렸다	132(12.3)	220(20.6)
-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	93(8.7)	107(10.0)
<b>중한 신체적 폭력</b>	<b>73(6.8)</b>	<b>100(9.4)</b>
- 벨트,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렸다	36(3.4)	5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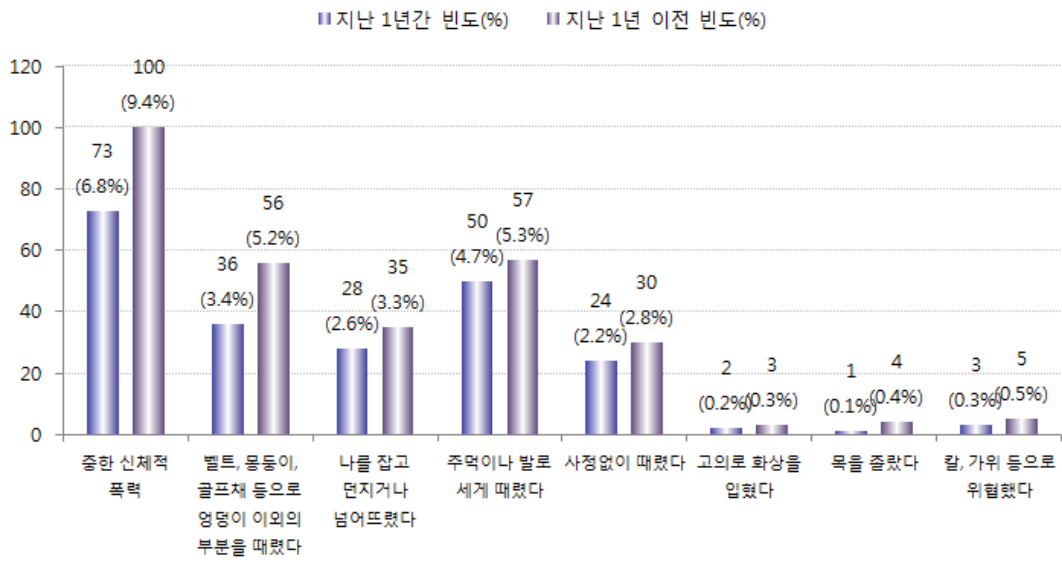
유형	지난 1년간 빈도(%)	지난 1년 이전 빈도(%)
- 나를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	28(2.6)	35(3.3)
- 주먹이나 발로 세계 때렸다	50(4.7)	57(5.3)
- 사정없이 때렸다	24(2.2)	30(2.8)
-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2(0.2)	3(0.3)
- 목을 졸랐다	1(0.1)	4(0.4)
- 칼, 가위 등으로 위협했다	3(0.3)	5(0.5)
<b>방임</b>	<b>41(3.8)</b>	<b>52(4.9)</b>
-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혼자 있게 했다	11(1.0)	27(2.5)
- 식사를 제 때에 잘 챙겨주지 않았다	28(2.6)	36(3.4)
-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5(0.5)	9(0.8)
-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나를 돌보지 않았다	4(0.4)	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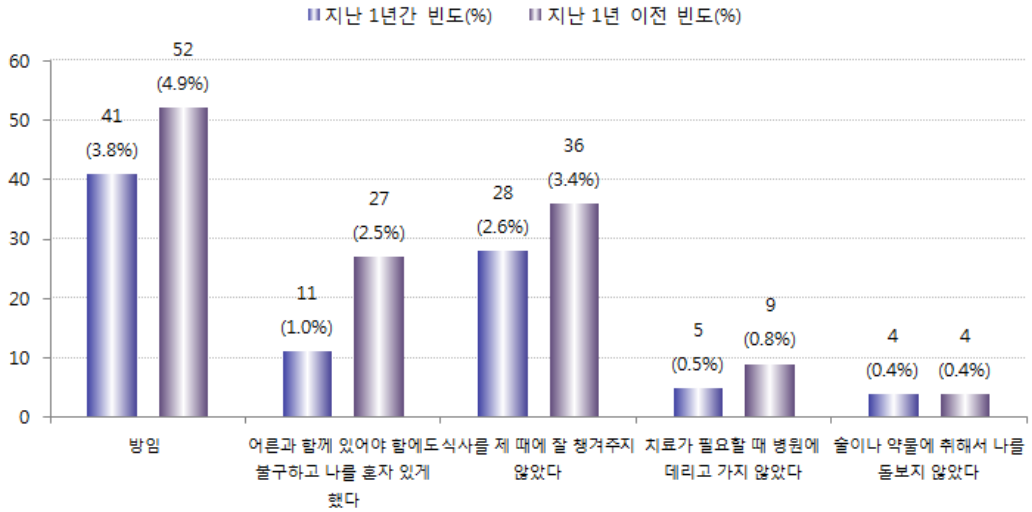
[그림 IV-1]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정서적 폭력



[그림 IV-2]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경한 신체적 폭력



[그림 IV-3]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중한 신체적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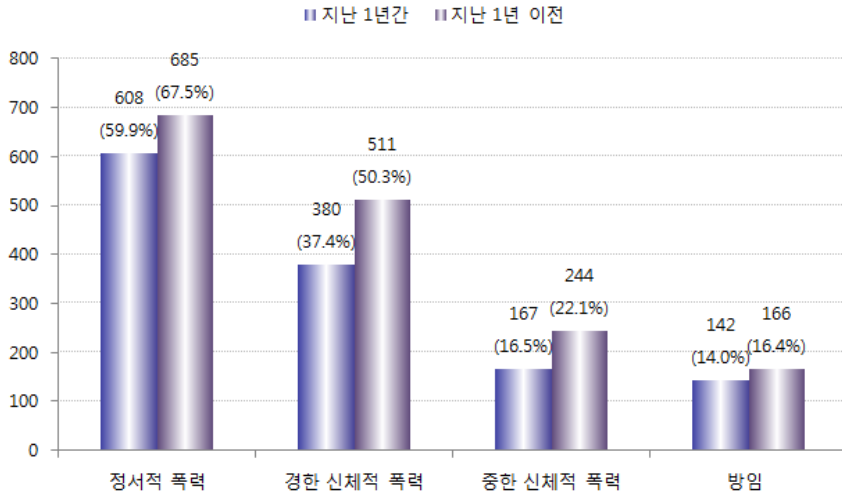
[그림 IV-4]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방임

이렇게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은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지난 1년 간의 정서적 폭력 59.9%에서 30.8%로 29.1%p 감소하였으며, 경한 신체적 폭력은 37.4%에서 16.7%로 20.7%p, 중한 신체적 폭력은 16.5%에서 6.8%로 9.7%p, 방임은 14.0%에서 3.8%로 10.2%p 그 비율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난 1년 이전의 가정폭력 발생률을 비교해본 결과 역시 모든 폭력유형에서 발생률이 급감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의 폭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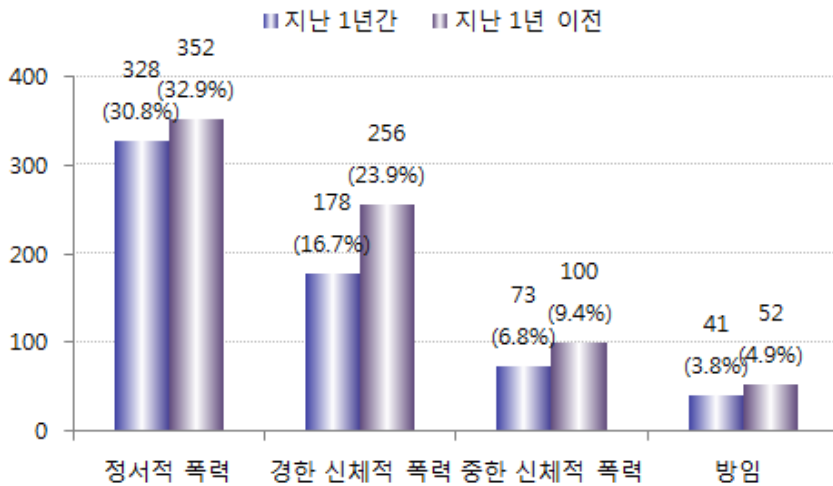
표 IV-7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변화 추이<sup>10)</sup>

유형	2010년		2013년	
	지난 1년간 빈도(%)	지난 1년 이전 빈도(%)	지난 1년간 빈도(%)	지난 1년 이전 빈도(%)
정서적 폭력	608(59.9)	685(67.5)	328(30.8)	352(32.9)
경한 신체적 폭력	380(37.4)	511(50.3)	178(16.7)	256(23.9)
중한 신체적 폭력	167(16.5)	244(22.1)	73(6.8)	100(9.4)
방임	142(14.0)	166(16.4)	41(3.8)	52(4.9)

10) 2010년과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표본추출방식과 대상이 상이하여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긴 하나, 대략적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수치를 제시하였다. 2010년의 경우, 전국 초등 5학년~고등 2학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그림 IV-5]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변화 추이: 2010년



[그림 IV-6]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변화 추이: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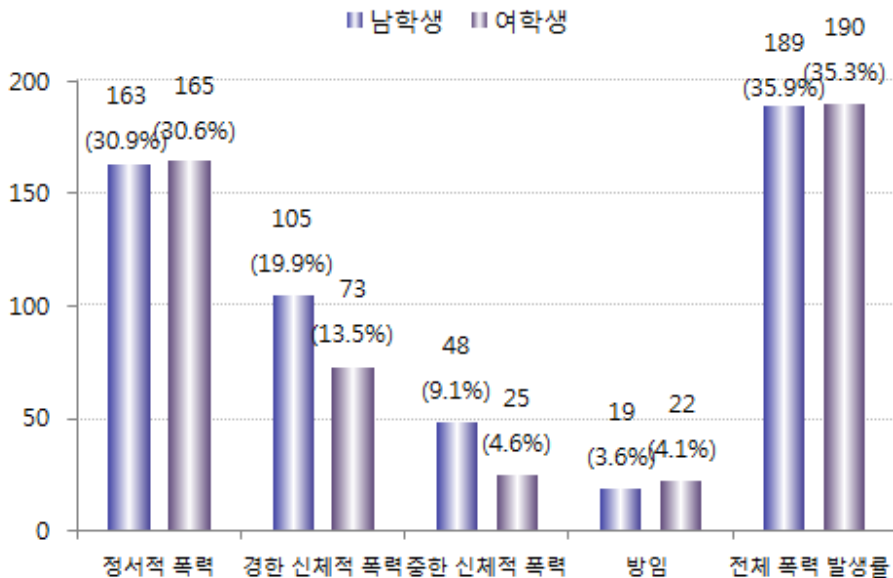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아동·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년을 생활권(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 구분 및 인구비례(초, 중, 고등학교 각 10개교)를 기준으로 비확률 표본 추출법 중 하나인 할당추출법을 사용하여 1,015명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비해 2013년 조사에서는 전국 초등 4학년~고등 2학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와 학교급(초, 중, 고), 학년에 따라 다단계중화 확률비례추출법에 의해 1,069명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같다.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피해경험 및 정서적 폭력, 방임 등의 유형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적 폭력의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피해경험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과 방임의 경우에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에게서 발생률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성별 (단위: 명(%))

유형	전체	남학생	여학생	$\chi^2$
정서적 폭력	328(30.8)	163(30.9)	165(30.6)	0.013
경한 신체적 폭력	178(16.7)	105(19.9)	73(13.5)	7.799**
중한 신체적 폭력	73(6.8)	48(9.1)	25(4.6)	8.346**
방임	41(3.8)	19(3.6)	22(4.1)	0.163
전체 폭력 발생률	379(35.6)	189(35.9)	190(35.3)	0.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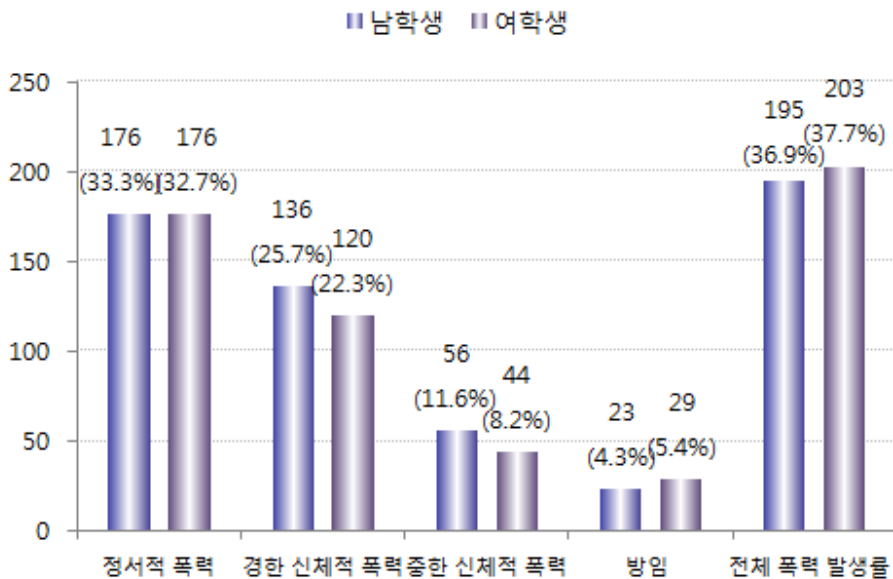


[그림 IV-7]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성별

지난 1년 이전에 부모로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적 폭력은 남학생이, 방임은 여학생이 좀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지난 1년 이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성별 (단위: 명(%))

유형	전체	남학생	여학생	$\chi^2$
정서적 폭력	352(33.0)	176(33.3)	176(32.7)	0.046
경한 신체적 폭력	256(24.0)	136(25.7)	120(22.3)	1.739
중한 신체적 폭력	100(9.4)	56(11.6)	44(8.2)	1.847
방임	52(4.9)	23(4.3)	29(5.4)	0.614
전체 폭력 발생률	398(37.3)	195(36.9)	203(37.7)	0.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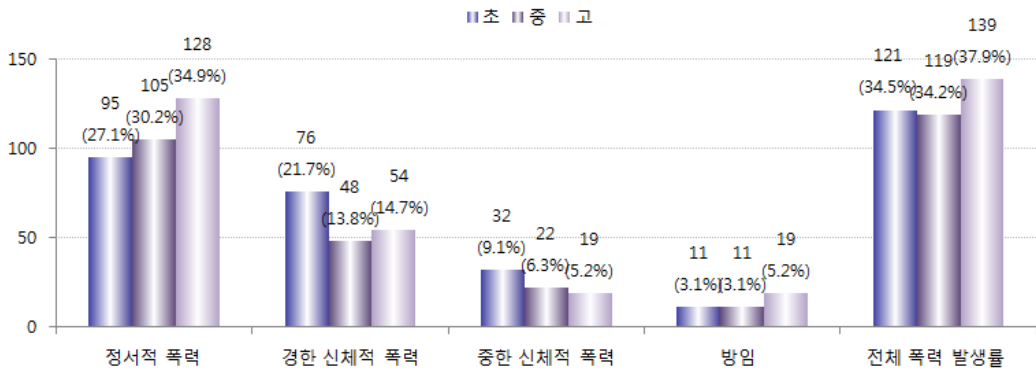


[그림 IV-8] 지난 1년 이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성별

학교급에 따른 가정폭력 발생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발생률은 경한 신체적 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한 신체적 폭력은 초등학생에게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21.7%),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14.7%), 중학생(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정서적 폭력과 방임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중한 신체적 폭력은 초등학생에게서 발생률이 가장 높고(9.1%),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발생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학교급별 (단위: 명(%))

유형	전체	초	중	고	$\chi^2$
정서적 폭력	328(30.8)	95(27.1)	105(30.2)	128(34.9)	5.226
경한 신체적 폭력	178(16.7)	76(21.7)	48(13.8)	54(14.7)	9.344**
중한 신체적 폭력	73(6.8)	32(9.1)	22(6.3)	19(5.2)	4.590
방임	41(3.8)	11(3.1)	11(3.2)	19(5.2)	2.681
전체 폭력 발생률	379(35.6)	121(34.5)	119(34.2)	139(37.9)	1.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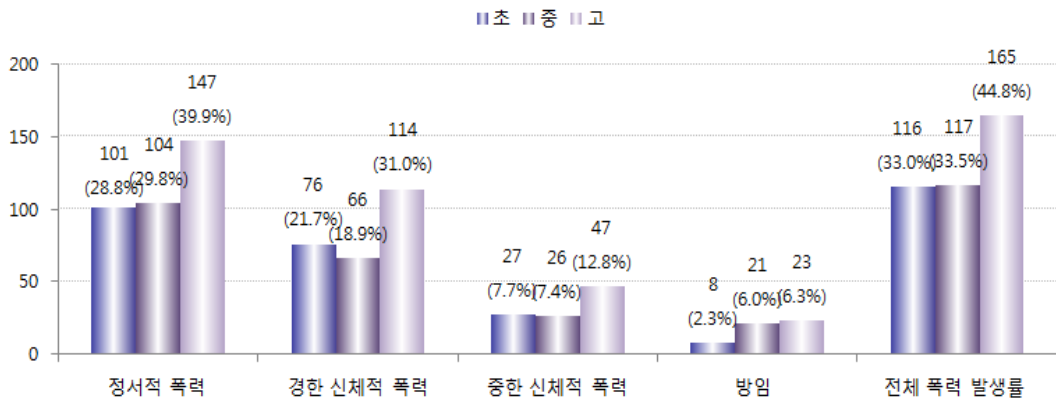


[그림 IV-9]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학교급별

지난 1년 이전의 가정폭력 발생률이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유형이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과 방임은 고등학생에게서의 발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발생률도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체적 폭력은 고등학생에게서 발생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폭력 중 지난 1년 간 어느 한 가지의 폭력이라도 발생한 적이 있는지의 경우에 대해 고등학생은 44.8%가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학생 33.5%, 초등학생 33.5%로 학교급이 낮아짐에 따라 가정폭력의 발생률도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지난 1년 이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학교급별 (단위: 명(%))

유형	전체	초	중	고	$\chi^2$
정서적 폭력	352(33.0)	101(28.8)	104(29.8)	147(39.9)	12.487**
경한 신체적 폭력	256(24.0)	76(21.7)	66(18.9)	114(31.0)	15.853***
중한 신체적 폭력	100(9.4)	27(7.7)	26(7.4)	47(12.8)	7.689*
방임	52(4.9)	8(2.3)	21(6.0)	23(6.3)	7.591*
전체 폭력 발생률	398(37.3)	116(33.0)	117(33.5)	165(44.8)	13.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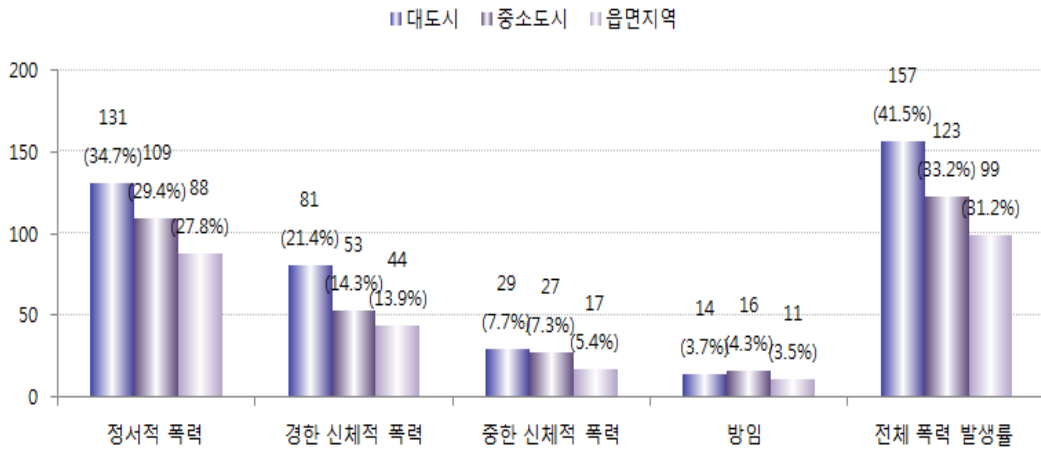


[그림 IV-10] 지난 1년 이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학교급별

가정폭력 발생률이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발생률은 방임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대체로 대도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경한 신체적 폭력은 대도시에서의 발생률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발생률이 동일하고 그에 비해 읍면지역의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유형의 가정폭력 중 한 가지라도 발생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33.2%로, 발생률이 31.2%에 해당하는 읍면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지역규모별 (단위: 명(%))

유형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chi^2$
정서적 폭력	328(30.8)	131(34.7)	109(29.4)	88(27.8)	4.364
경한 신체적 폭력	178(16.7)	81(21.4)	53(14.3)	44(13.9)	9.443**
중한 신체적 폭력	73(6.8)	29(7.7)	27(7.3)	17(5.4)	1.606
방임	41(3.8)	14(3.7)	16(4.3)	11(3.5)	0.360
전체 폭력 발생률	379(35.6)	157(41.5)	123(33.2)	99(31.2)	9.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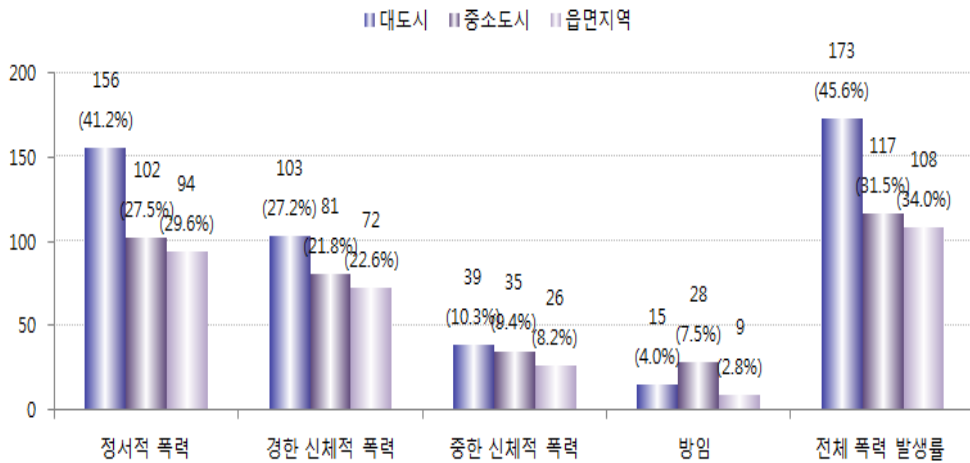


[그림 IV-11]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지역규모별

지난 1년 이전에 가정폭력 발생률이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폭력 발생률은 대도시가 45.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31.5%), 읍면지역(34.0%) 등의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이전의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정서적 폭력과 방임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은 읍면지역(29.6%)과 중소도시(27.5%)에 비해 대도시에서의 발생률이 41.2%로 가장 높았고, 방임은 대도시(4.0%), 읍면지역(2.8%)에 비해 중소도시가 7.5%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지난 1년 이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지역규모별(단위: 명(%))

유형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chi^2$
정서적 폭력	352(33.0)	156(41.2)	102(27.5)	94(29.6)	18.218***
경한 신체적 폭력	256(24.0)	103(27.2)	81(21.8)	72(22.6)	3.376
중한 신체적 폭력	100(9.4)	39(10.3)	35(9.4)	26(8.2)	0.914
방임	52(4.9)	15(4.0)	28(7.5)	9(2.8)	9.278*
전체 폭력 발생률	398(37.3)	173(45.6)	117(31.5)	108(34.0)	18.080***



[그림 IV-12] 지난 1년 이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률: 지역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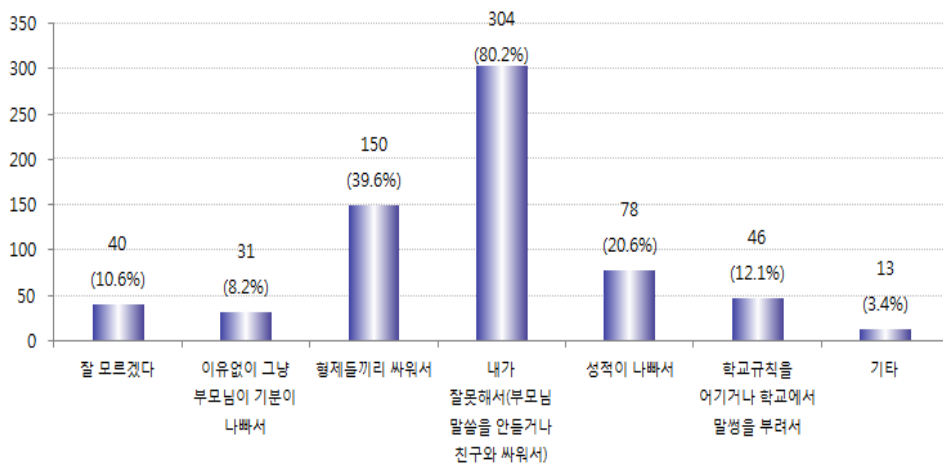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가정폭력을 행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거나 친구와 싸우는 등과 같이 자신이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0.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형제들끼리 싸웠기 때문에 39.6%, 성적이 나빠서 20.6%, 학교규칙을 어기거나 학교에서 말썽을 부려서 12.1% 등 자신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폭력을 사용한 것이라고 인식한 경우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자신이 어른의 말을 안 듣거나 친구 및 형제와 다투고, 학교 규칙을 어기는 등 규칙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때문에 부모가 자신에게 폭력을 사용했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20.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10.6%, 부모님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이유 없이 때린다고 응답한 경우가

8.2% 등으로 부모님이 자신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폭력을 행사한다고 인식한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4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한 이유

(중복응답)

유형	빈도(%)
잘 모르겠다	40(10.6)
이유없이 그냥 부모님이 기분이 나빠서	31(8.2)
형제들끼리 싸워서	150(39.6)
내가 잘못해서(부모님 말씀을 안듣거나 친구와 싸워서)	304(80.2)
성적이 나빠서	78(20.6)
학교규칙을 어기거나 학교에서 말썽을 부려서	46(12.1)
기타	13(3.4)
합계	662(1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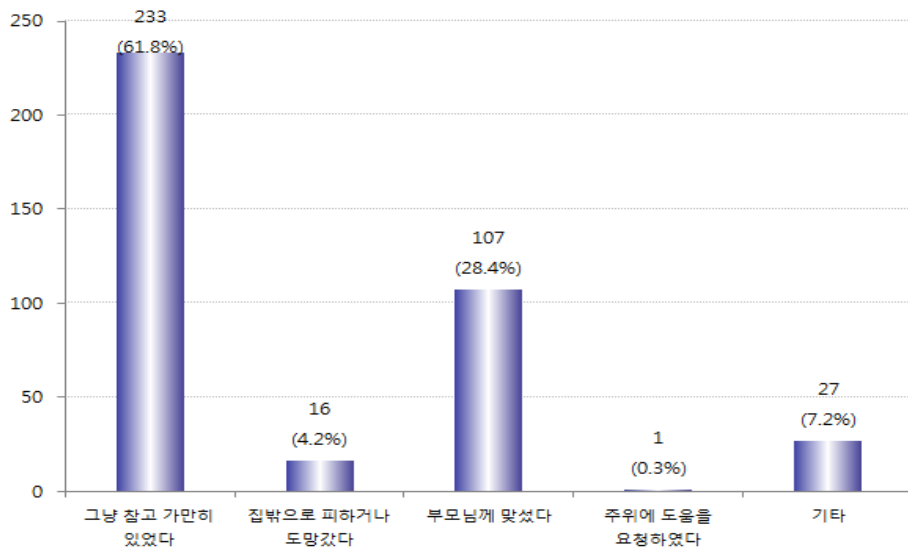
[그림 IV-13]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한 이유

부모님이 폭력을 행사할 때 아동·청소년들의 반응은 그냥 참고 가만히 있었던 경우가 61.8%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께 맞선 경우가 28.4%, 집밖으로 피하거나 도망간 경우가 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위 성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0.3%에 그쳐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은 부모님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5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아동·청소년의 반응

(중복응답)

유형	빈도(%)
그냥 참고 가만히 있었다	233(61.8)
집밖으로 피하거나 도망갔다	16(4.2)
부모님께 맞섰다	107(28.4)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0.3)
기타	27(7.2)
합계	384(1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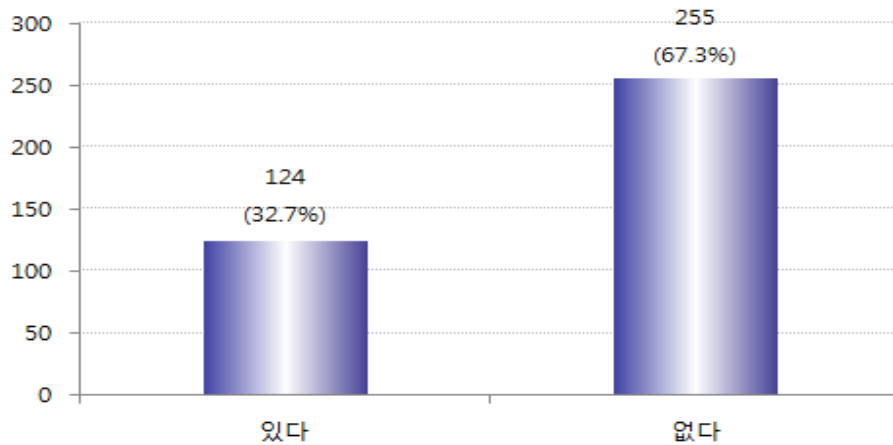


[그림 IV-14]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아동·청소년의 반응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2.7%,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67.3%였다.

표 IV-16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 여부

유형	빈도(%)
있다	124(32.7)
없다	255(67.3)
합계	379(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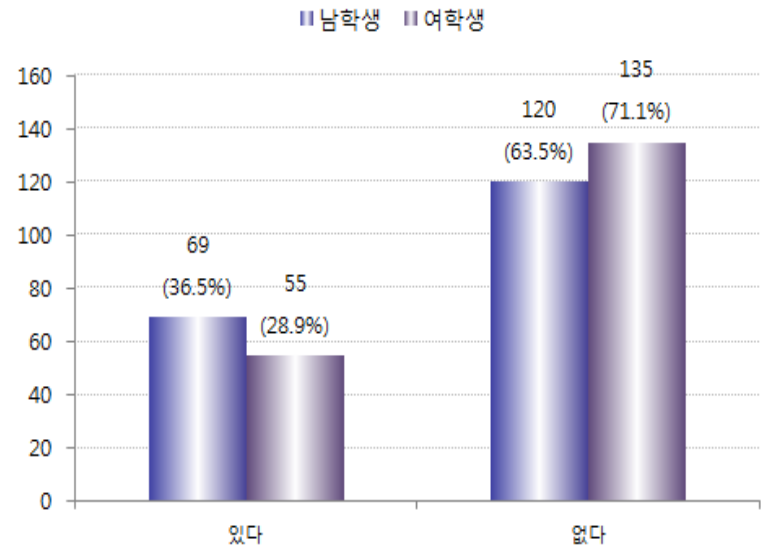


[그림 IV-15]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 여부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이 있는지 여부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학생에게서 몸에 상처가 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 여부: 성별 (단위: 명(%))

유형	전체	남학생	여학생	$\chi^2$
있다	124(32.7)	69(36.5)	55(28.9)	2.460
없다	255(67.3)	120(63.5)	135(71.1)	
합계	379(100.0)	189(100.0)	19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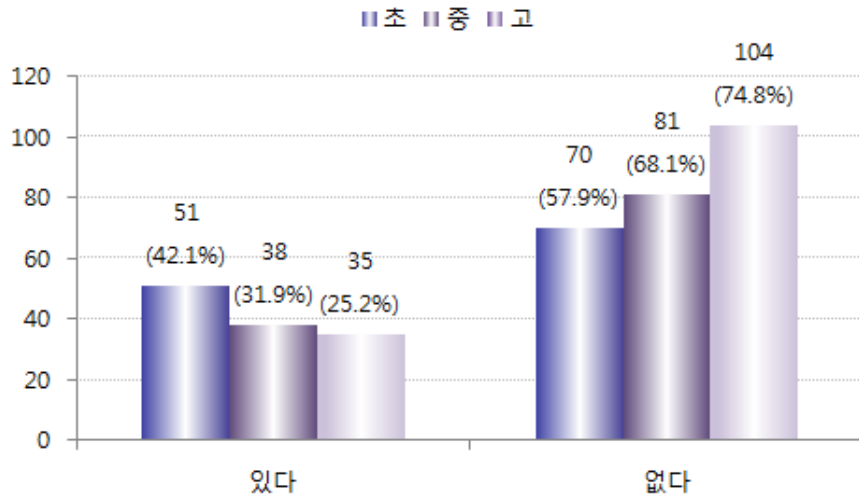


[그림 IV-16]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 여부: 성별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이 있는지 여부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은 초등학생들의 경우가 42.1%로 가장 많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 여부: 학교급별(단위: 명(%))

유형	전체	초	중	고	$\chi^2$
있다	124(32.7)	51(42.1)	38(31.9)	35(25.2)	8.510*
없다	255(67.3)	70(57.9)	81(68.1)	104(74.8)	
합계	379(100.0)	121(100.0)	119(100.0)	139(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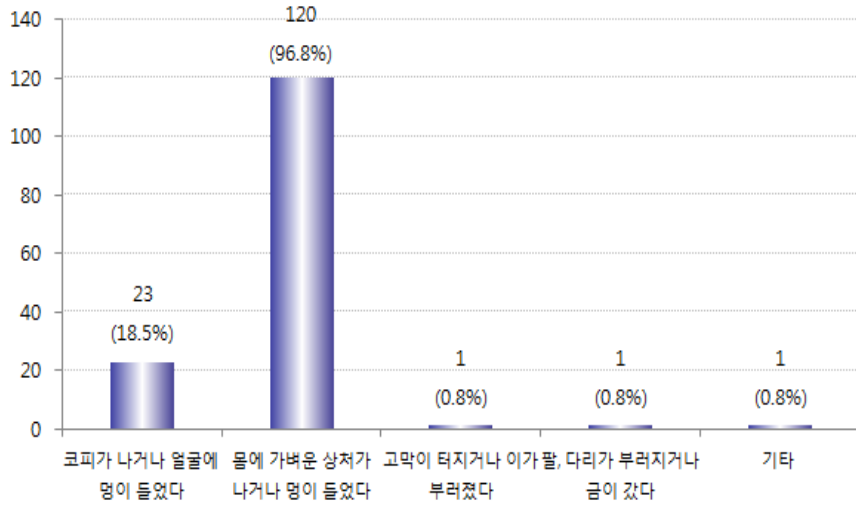


[그림 IV-17]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경험 여부: 학교급별

부모가 행한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적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처가 난 부위에 대해 알아본 결과, 아동·청소년들은 몸에 가벼운 상처가 나거나 멍이 들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96.8%로 가장 많았고, 코피가 나거나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18.5%였다. 이 외에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폭력으로 인해 고막이 터지거나 이가 부러진 경우,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경우(각 0.8%)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경우도 발견되었다.

표 IV-19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다친 적이 있는 경우 상처부위 (중복응답)

유형	빈도(%)
코피가 나거나 얼굴에 멍이 들었다	23(18.5)
몸에 가벼운 상처가 나거나 멍이 들었다	120(96.8)
고막이 터지거나 이가 부러졌다	1(0.8)
팔, 다리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다	1(0.8)
기타	1(0.8)
합계	146(1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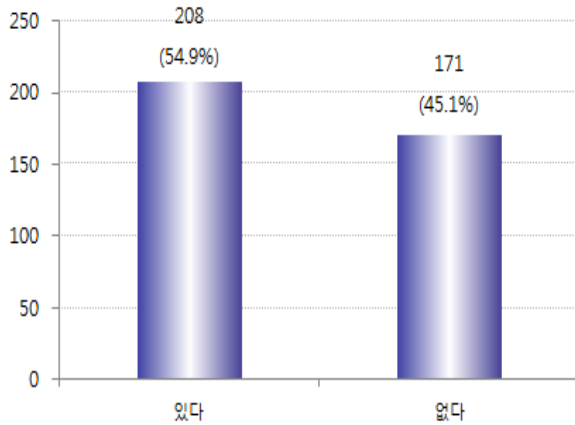


[그림 IV-18]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다친 적이 있는 경우 상처부위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이 54.9%로 나타났다.

표 IV-20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경험 여부

유형	빈도(%)
있다	208(54.9)
없다	171(45.1)
합계	379(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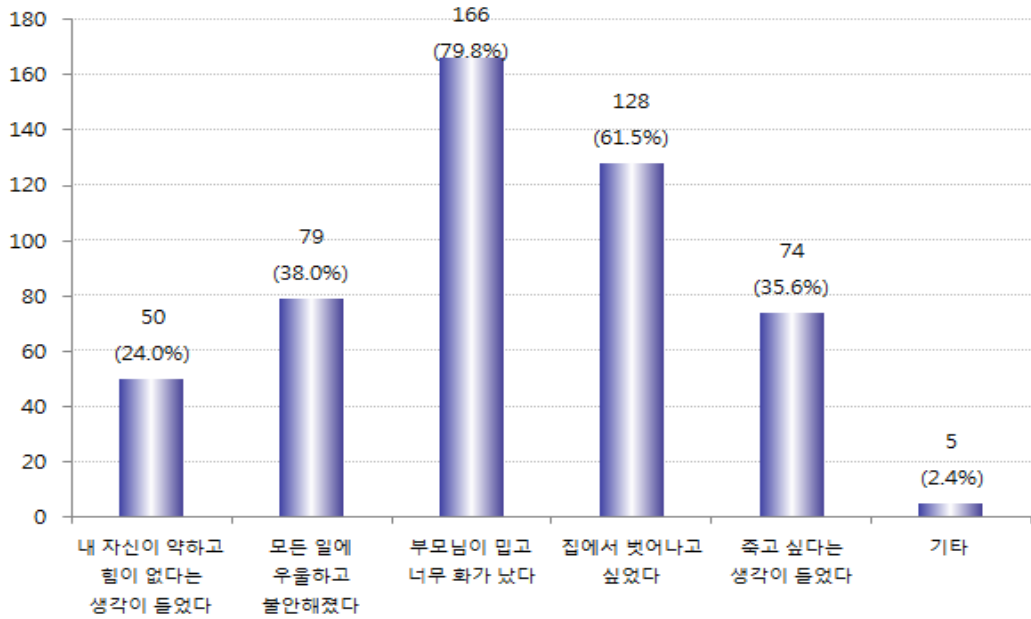
[그림 IV-19]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경험 여부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에게 그 당시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질문한 결과, 부모님이 밉고 너무 화가 났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이 79.8%로 가장 많았고,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61.5%, 모든 일에 우울하고 불안해졌다 38.0%,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35.6%, 내 자신이 약하고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응답이 2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집에서 벗어나거나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등 현재의 생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과 우울감, 불안감, 무력감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한 마음상태

(중복응답)

유형	빈도(%)
내 자신이 약하고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50(24.0)
모든 일에 우울하고 불안해졌다	79(38.0)
부모님이 밉고 너무 화가 났다	166(79.8)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128(61.5)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74(35.6)
기타	5(2.4)
합계	502(2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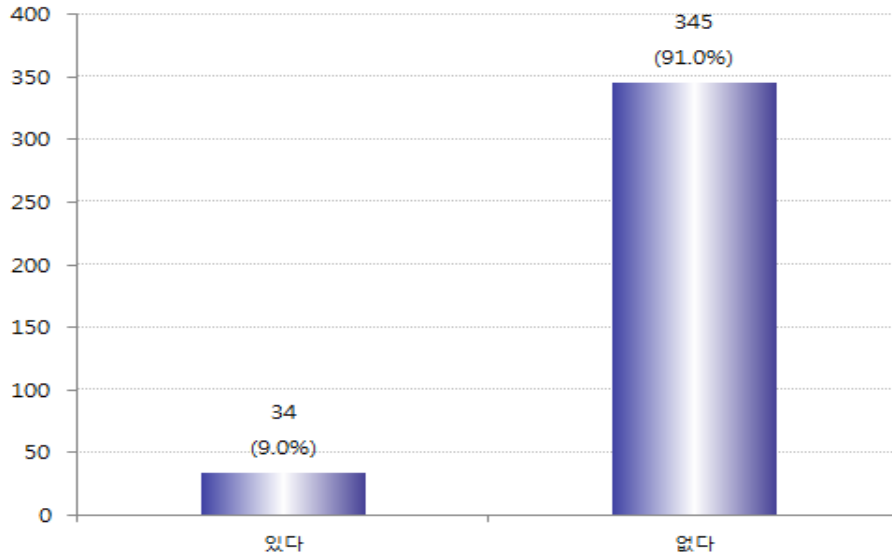
[그림 IV-20]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한 마음상태

(2) 부모님의 폭력과 관련하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

부모님의 폭력과 관련하여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들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91.0%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 여부

유형	빈도(%)
있다	34(9.0)
없다	345(91.0)
합계	379(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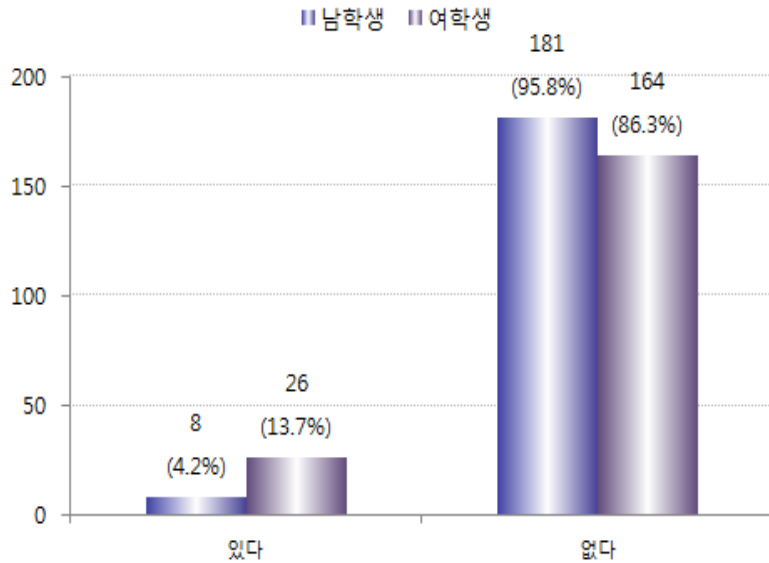


[그림 IV-21]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 여부

부모님이 폭력을 행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은 남학생(4.2%)에 비해 여학생(13.7%)들이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경험: 성별 (단위: 명(%))

유형	전체	남학생	여학생	$\chi^2$
있다	34(9.0)	8(4.2)	26(13.7)	10.365**
없다	345(91.0)	181(95.8)	164(86.3)	
합계	379(100.0)	189(100.0)	19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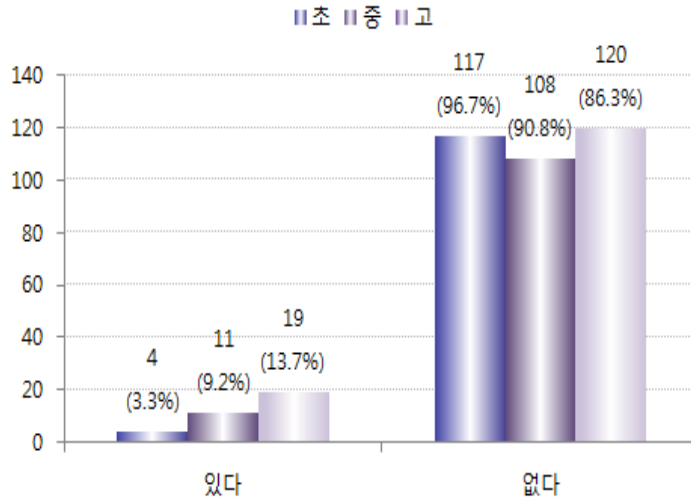


[그림 IV-22]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경험: 성별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한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부모로부터 폭력의 피해를 경험하였을 때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이나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V-24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경험: 학교급별 (단위: 명(%))

유형	전체	초	중	고	$\chi^2$
있다	34(9.0)	4(3.3)	11(9.2)	19(13.7)	8.523*
없다	345(91.0)	117(96.7)	108(90.8)	120(86.3)	
합계	379(100.0)	121(100.0)	119(100.0)	139(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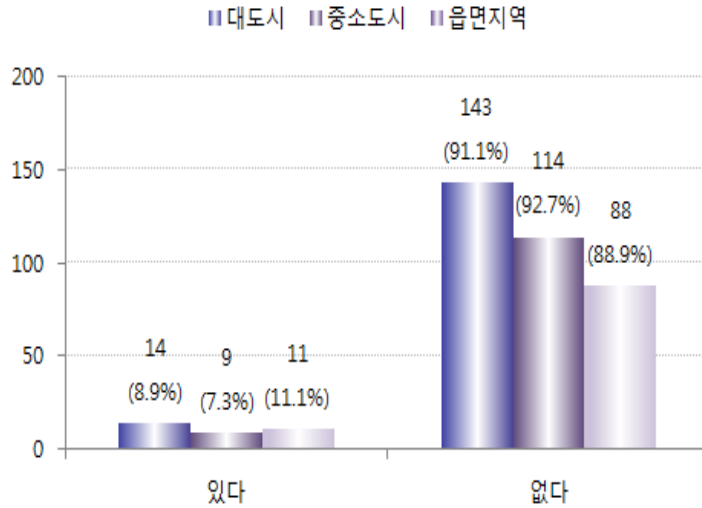


[그림 IV-23]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경험: 학교급별

이에 비해 부모가 폭력을 행했을 때 아동·청소년들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는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경험: 지역규모별(단위: 명(%))

유형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chi^2$
있다	34(9.0)	14(8.9)	9(7.3)	11(11.1)	0.968
없다	345(91.0)	143(91.1)	114(92.7)	88(88.9)	
합계	379(100.0)	157(100.0)	123(100.0)	99(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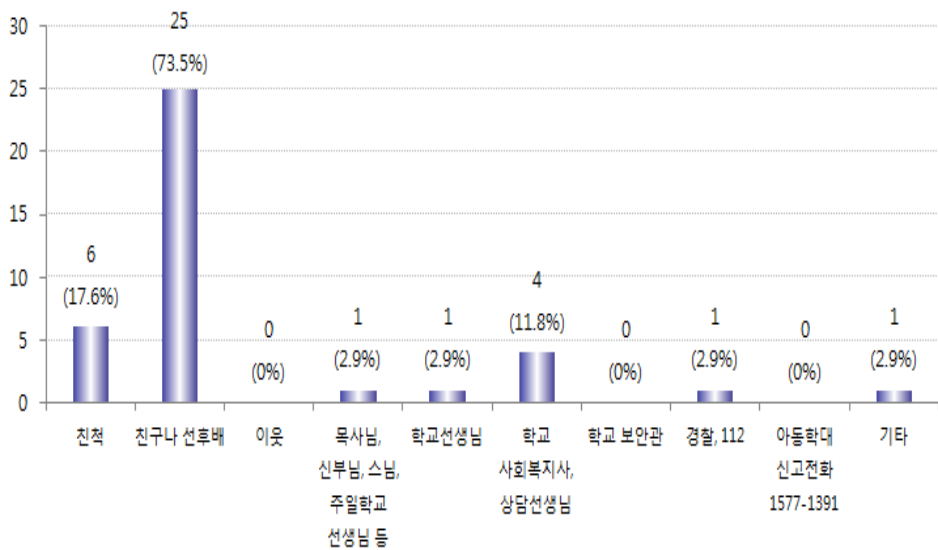
[그림 IV-24]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경험: 지역규모별

부모의 폭력과 관련하여 주위에 도움을 청한 적이 있는 경우 도움을 요청한 대상이 누구였는지 살펴본 결과, 94.0%는 친인척이나 학교 밖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2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이나 학교 밖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 친구나 선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76.5%로 가장 많았으나, 친구나 선후배는 아동·청소년들의 또래로,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위로나 위안을 제공해줄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17.6%로 나타났으며,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인 학교사회복지사나 상담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11.8%로 나타났다.

표 IV-26 부모님의 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 (중복응답)

유형		빈도(%)	
친인척 및 학교 밖 성인	친척	6	17.6
	친구나 선후배	25	73.5
	이웃	-	-
	목사님, 신부님, 스님, 주일학교	1	2.9

유형		빈도(%)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	선생님 등		
	학교선생님	1	2.9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선생님	4	11.8
	학교 보안관	-	-
	경찰, 112	1	2.9
기타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	-
		1	2.9
합계		39	114.7



[그림 IV-25] 부모님의 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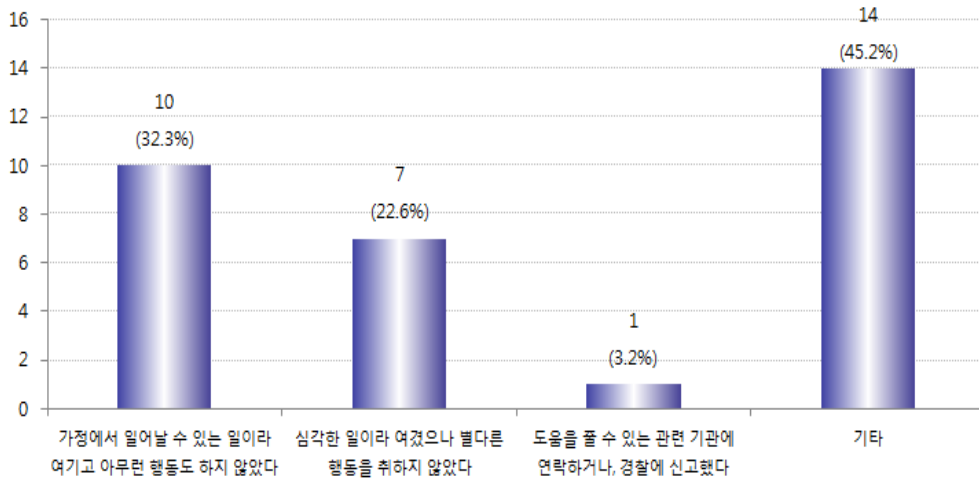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아동·청소년들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친인척 및 학교 밖 성인의 경우,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심각한 일이라고 여기기는 하지만 별다른 조치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가 22.6%인 반면, 도움을 수 있는 관련 기관에 연락을 해주거나 경찰에 신고를 해준 경우는 32%에 그쳐 아동·청소년들이 가정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친인척 및 학교 밖 성인에게 주위에 도움을 청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받을 수 있었던 경우는 매우 미미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동을 하거나 상담을 해줬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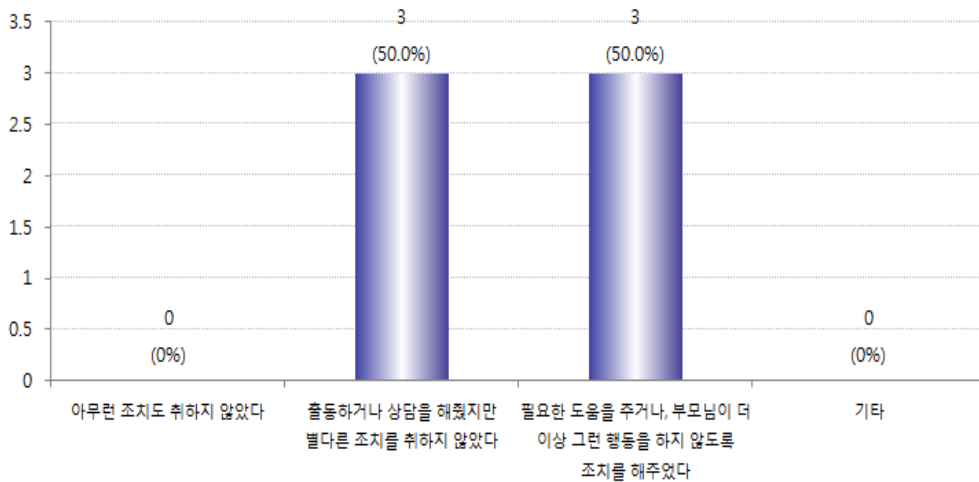
가정폭력문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는 응답과 필요한 도움을 주거나 부모님이 더 이상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었다는 응답이 각각 50%로 나타나 친인척 및 학교 밖 성인들에 비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가정폭력에 관한 실질적인 대응을 해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27** 부모님의 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의 반응 (중복응답)

유형		빈도(%)
친인척 및 학교 밖 성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여기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10(32.3)
	심각한 일이라 여겼으나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7(22.6)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기관에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했다	1(3.2)
	기타	14(45.2)
소계		32(103.2)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출동하거나 상담을 해줬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50.0)
	필요한 도움을 주거나, 부모님이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었다	3(50.0)
	기타	-
소계		6(100.0)
합계		38



[그림 IV-26] 부모님의 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의 반응: 친인척 및 학교 밖 성인



[그림 IV-27] 부모님의 폭력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의 반응: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

### (3) 부모 간의 폭력 목격 경험

부모가 아동·청소년 자신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도 가정폭력의 피해경험으로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에게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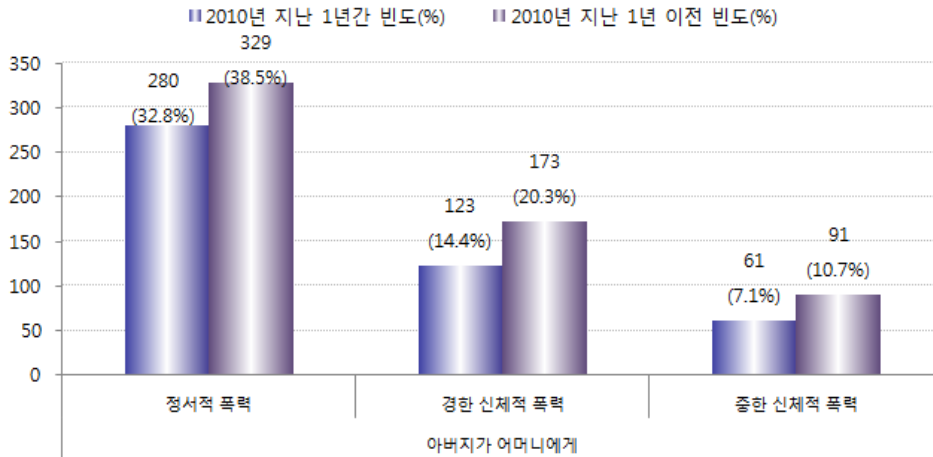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3년 조사 결과, 지난 1년 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한 정서적 폭력을 목격한 비율은 10.8%로 2010년에 비해 22.0%p가 감소하였고, 경한 신체적 폭력 목격 비율은 4.6%, 중한 신체적 폭력 목격 비율은 1.2%로 2010년 조사에 비해 각각 9.8%p, 5.9%p가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 비해 대체적으로 그 비율이 낮은 편이며, 지난 1년간 폭력 목격빈도도 정서적 폭력 6.6%(2010년 대비 13.9%p 감소), 경한 신체적 폭력 2.5%(2010년 대비 6.5%p 감소), 중한 신체적 폭력 0.6%(2010년 대비 2.6%p 감소) 등으로 2010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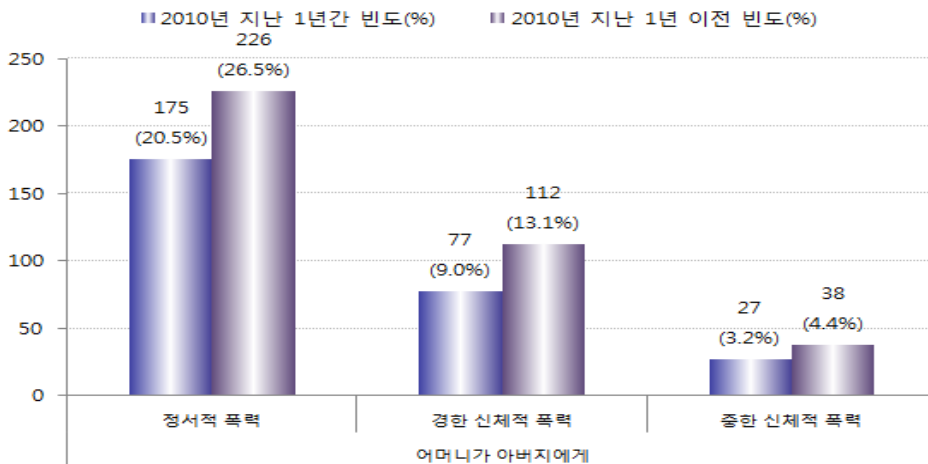
지난 1년 이전의 부모 간 폭력 목격 비율도 2010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2013년 조사 결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한 정서적 폭력의 목격 비율은 13.8%, 경한 신체적 폭력 목격비율은 6.9%, 중한 신체적 폭력 목격 비율은 1.6% 등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한 폭력을 목격한 비율 중 정서적 폭력의 목격 비율은 7.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경한 신체적 폭력 목격 비율은 2.5%, 중한 신체적 폭력 목격 비율은 0.6% 등으로 나타났다.

표 IV-28 부모 간 폭력 목격률 변화 추이<sup>1)</sup>

유형	2010년		2013년	
	지난 1년간 빈도(%)	지난 1년 이전 빈도(%)	지난 1년간 빈도(%)	지난 1년 이전 빈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정서적 폭력	280(32.8)	329(38.5)	115(10.8)	147(13.8)
-경한 신체적 폭력	123(14.4)	173(20.3)	49(4.6)	74(6.9)
-중한 신체적 폭력	61(7.1)	91(10.7)	13(1.2)	17(1.6)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정서적 폭력	175(20.5)	226(26.5)	70(6.6)	82(7.7)
-경한 신체적 폭력	77(9.0)	112(13.1)	27(2.5)	44(4.1)
-중한 신체적 폭력	27(3.2)	38(4.4)	6(0.6)	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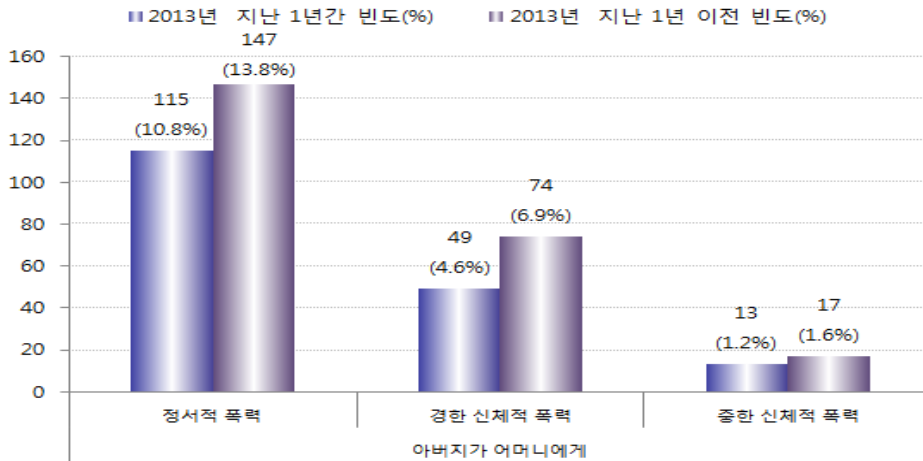


[그림 IV-28] 부모 간 폭력 목격률 변화 추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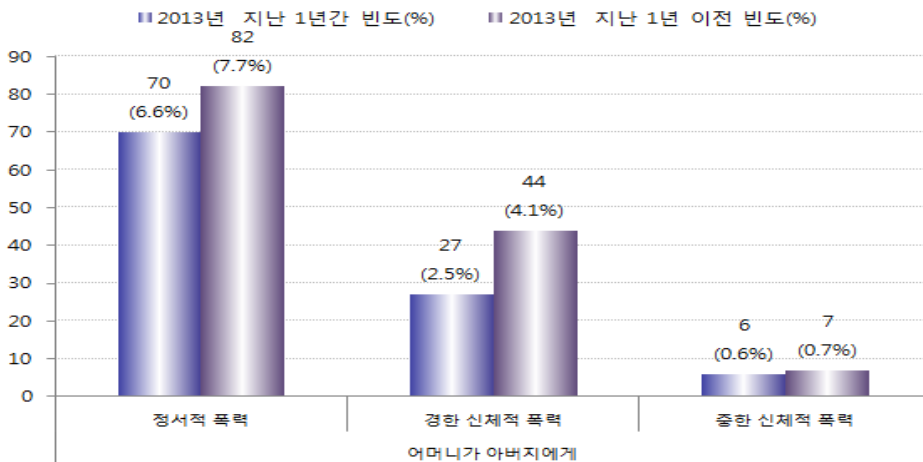


[그림 IV-29] 부모 간 폭력 목격률 변화 추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2010년

11) 2010년과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표본추출방식과 대상이 상이하여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긴 하나, 대략적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수치를 제시하였다. 2010년의 경우, 전국 초등 5학년~고등 2학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생활권(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 구분 및 인구비례(초, 중, 고등학교 각 10개교)를 기준으로 비확률 표본 추출법 중 하나인 할당추출법을 사용하여 1,015명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비해 2013년 조사에서는 전국 초등 4학년~고등 2학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와 학교급(초, 중, 고), 학년에 따라 다단계층화 확률비례추출법에 의해 1,069명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IV-30] 부모 간 폭력 목격률 변화 추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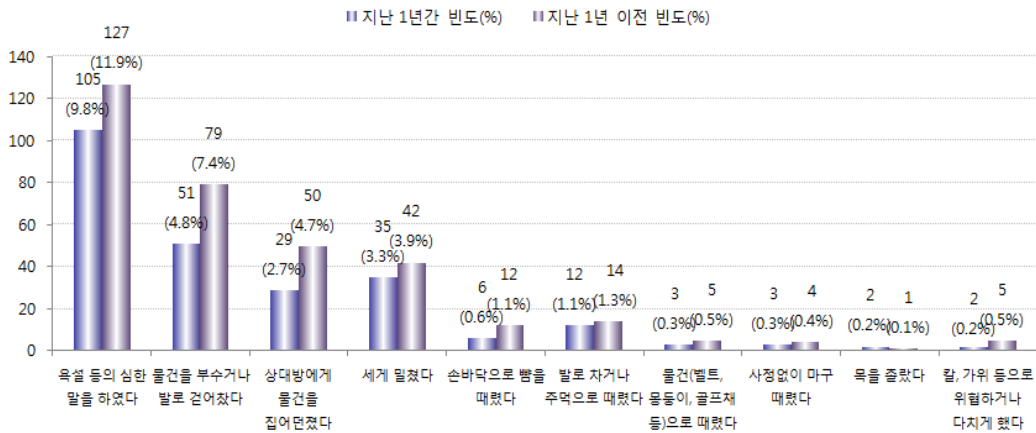


[그림 IV-31] 부모 간 폭력 목격률 변화 추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2013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 중 아동·청소년들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욕설 등의 심한 말을 하는 것을 가장 많이 목격하였고(9.8%), 그 다음으로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차는 행동(4.8%), 상대방을 세계 밀치는 행동(3.3%),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동(2.7%), 상대방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1.1%)의 순으로 많이 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지난 1년 이전에 목격한 행동에서는 상대방을 세계 밀치는 행동에 비해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동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표 IV-29 부모 간(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 목격률

유형	지난 1년간 빈도(%)	지난 1년 이전 빈도(%)
정서적 폭력 - 욕설 등의 심한 말을 하였다 -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찼다	105(9.8) 51(4.8)	127(11.9) 79(7.4)
경한 신체적 폭력 -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 세계 밀쳤다 -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29(2.7) 35(3.3) 6(0.6)	50(4.7) 42(3.9) 12(1.1)
중한 신체적 폭력 -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 물건(벨트,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 목을 졸랐다 - 칼, 가위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다	12(1.1) 3(0.3) 3(0.3) 2(0.2) 2(0.2)	14(1.3) 5(0.5) 4(0.4) 1(0.1) 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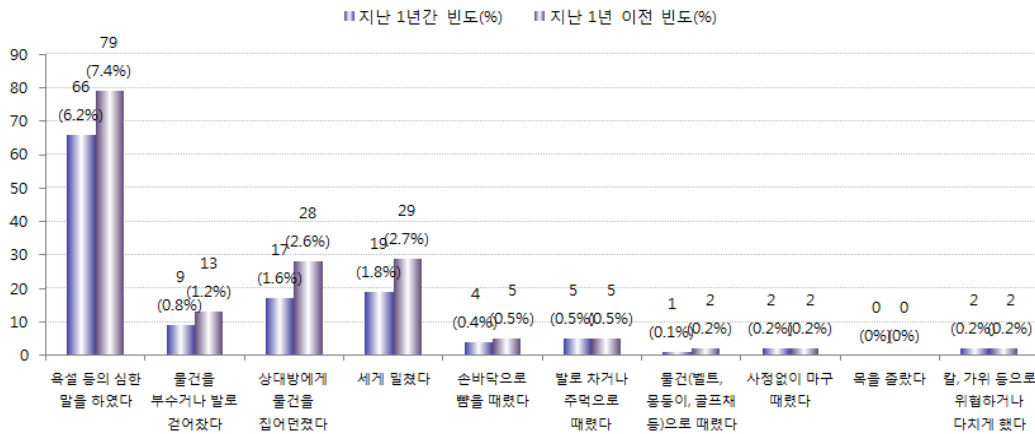


[그림 IV-32] 부모 간(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 목격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하는 장면을 아동·청소년이 목격한 경우, 아동·청소년들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향해 욕설 등의 심한 말을 하는 것을 가장 많이 목격하였으며(6.2%), 그 다음으로 상대방을 세계 밀치는 행동(1.8%),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동(1.6%),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차는 행동(0.8%) 등의 순으로 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0 부모 간(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 목격률

유형	지난 1년간 빈도(%)	지난 1년 이전 빈도(%)
정서적 폭력		
- 욕설 등의 심한 말을 하였다	66(6.2)	79(7.4)
-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찼다	9(0.8)	13(1.2)
경한 신체적 폭력		
-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17(1.6)	28(2.6)
- 세계 밀쳤다	19(1.8)	29(2.7)
-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4(0.4)	5(0.5)
중한 신체적 폭력		
-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5(0.5)	5(0.5)
- 물건(벨트,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1(0.1)	2(0.2)
-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2(0.2)	2(0.2)
- 목을 졸랐다	-	-
- 칼, 가위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다	2(0.2)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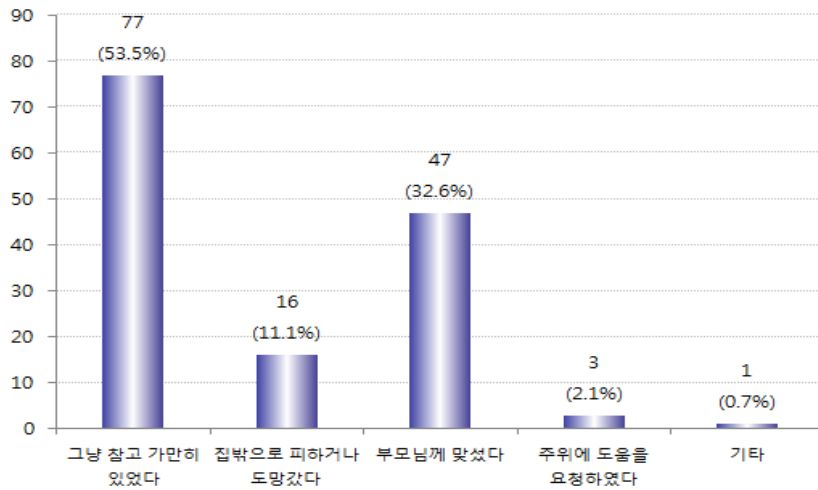
[그림 IV-33] 부모 간(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 목격률

부모 간의 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경우 아동·청소년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 아동·청소년들은 그냥 참고 가만히 있었다는 응답이 5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님에게 맞았다 32.6%, 집밖으로 피하거나 도망갔다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2.1%에 불과하였다.

표 IV-31 부모 간 폭력을 목격했을 때 아동·청소년의 반응

(중복응답)

유형	빈도(%)
그냥 참고 가만히 있었다	77(53.5)
집밖으로 피하거나 도망갔다	16(11.1)
부모님께 맞섰다	47(32.6)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3(2.1)
기타	1(0.7)
합계	144(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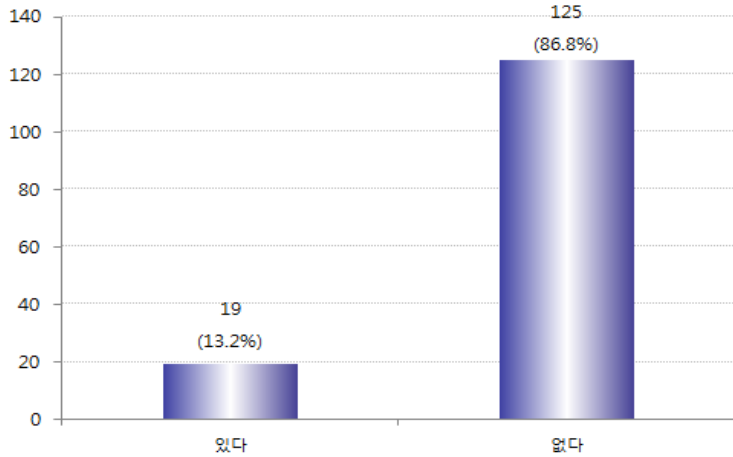


[그림 IV-34] 부모 간 폭력을 목격했을 때 아동·청소년의 반응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하였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13.2%의 아동·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32 부모 간 폭력을 목격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경험 여부

유형	빈도(%)
있다	19(13.2)
없다	125(86.8)
합계	144(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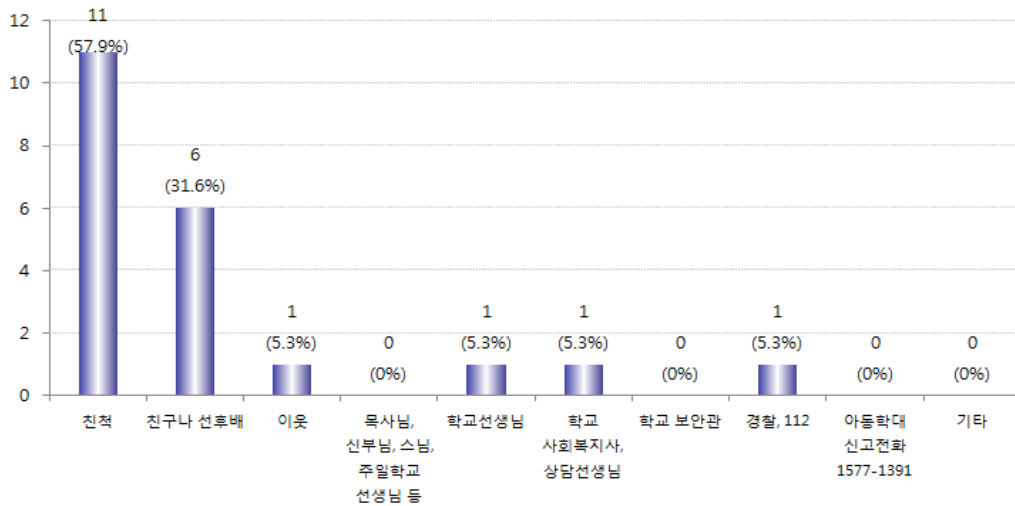


[그림 IV-35] 부모 간 폭력을 목격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경험 여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은 대부분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57.9%), 그 다음으로 친구나 선후배(31.6%), 이웃, 학교선생님, 학교 사회복지사 및 상담선생님, 경찰(각 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3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

유형		빈도(%)	
친인척 및 학교 밖 성인	친척	11	57.9
	친구나 선후배	6	31.6
	이웃	1	5.3
	목사님, 신부님, 스님, 주일학교 선생님 등	-	-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	학교선생님	1	5.3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선생님	1	5.3
	학교 보안관	-	-
	경찰,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1	5.3
기타		-	-
합계		21	1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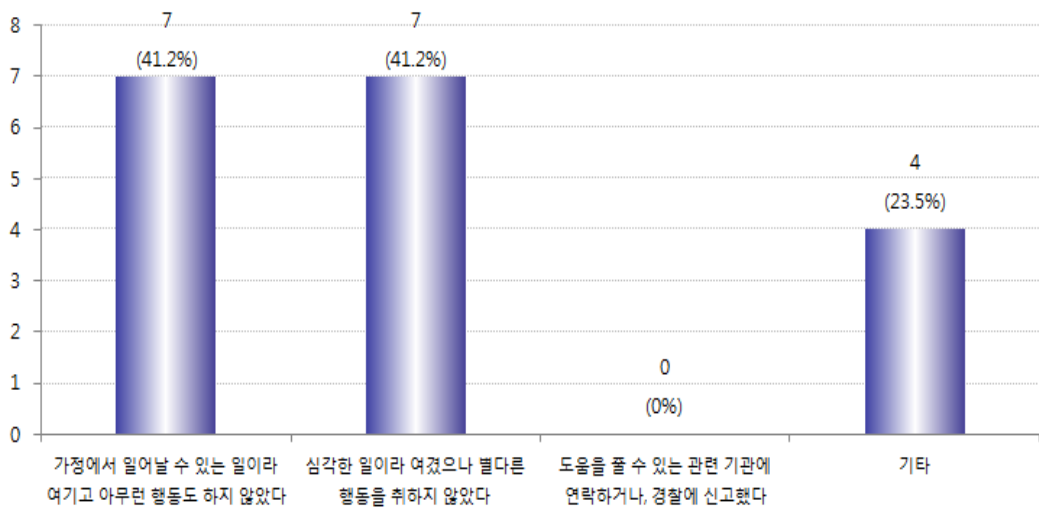
[그림 IV-36]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

아동·청소년들이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후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도움을 요청받은 대상의 반응은 친인척 및 학교 밖 성인들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여기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와 심각한 일이라고 여기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41.2%로 가장 많아 아동·청소년들이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고 도움을 요청하여도 친인척 및 학교 밖 성인으로부터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 출동을 하거나 상담을 해주기는 하였으나 그 이외의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66.7%로 나타나 아동·청소년들이 가정폭력 목격 후 도움을 요청하여도 학교나 전문기관에서 조차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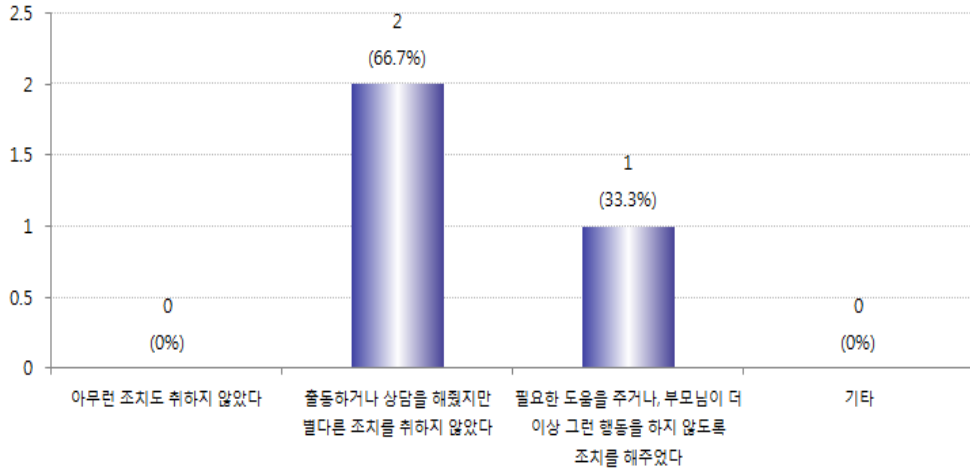
표 IV-34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의 반응 (중복응답)

유형	빈도(%)
친인척 및 학교 밖 성인	7(41.2)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여기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7(41.2)
심각한 일이라 여겼으나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7(41.2)

유형		빈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기관에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했다	-
	기타	4(23.5)
소계		18(105.9)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출동하거나 상담을 해줬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66.7)
	필요한 도움을 주거나, 부모님이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었다	1(33.3)
	기타	-
소계		3(100.0)
합계		21



[그림 IV-37]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의 반응: 친인척 및 학교 밖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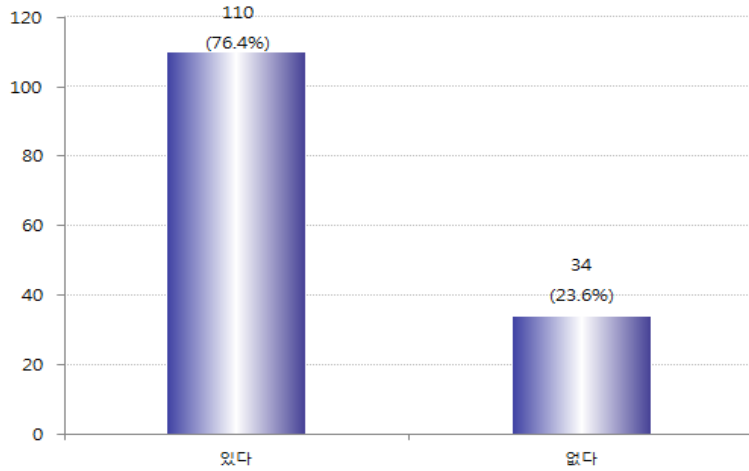


[그림 IV-38]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 대상의 반응: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

부모 간의 폭력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아동·청소년들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76.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마음이 힘들었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5 부모 간 폭력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경험 여부

유형	빈도(%)
있다	110(76.4)
없다	34(23.6)
합계	144(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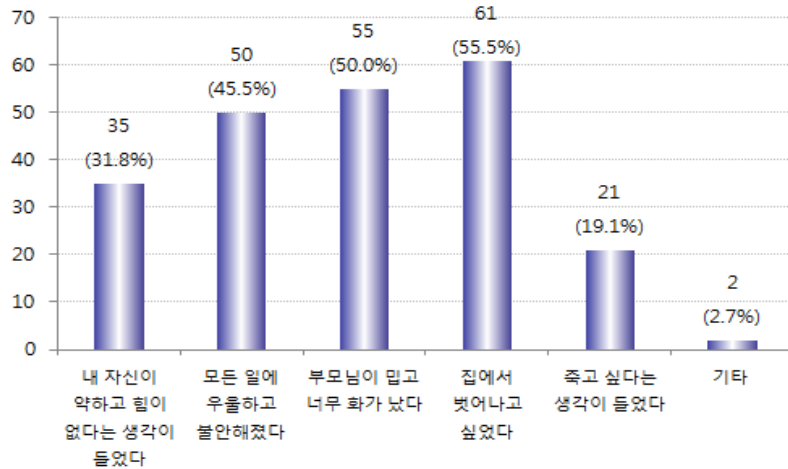
[그림 IV-39] 부모 간 폭력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경험 여부

부모 간 폭력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부모가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대해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응답이 5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님이 밋고 너무 화가 났다(50.0%), 모든 일에 우울하고 불안해졌다(45.5%), 내 자신이 약하고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31.8%),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19.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V-36 부모 간 폭력으로 인한 마음상태

(중복응답)

유형	빈도(%)
내 자신이 약하고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35(31.8)
모든 일에 우울하고 불안해졌다	50(45.5)
부모님이 밋고 너무 화가 났다	55(50.0)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61(55.5)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21(19.1)
기타	2(2.7)
합계	224(2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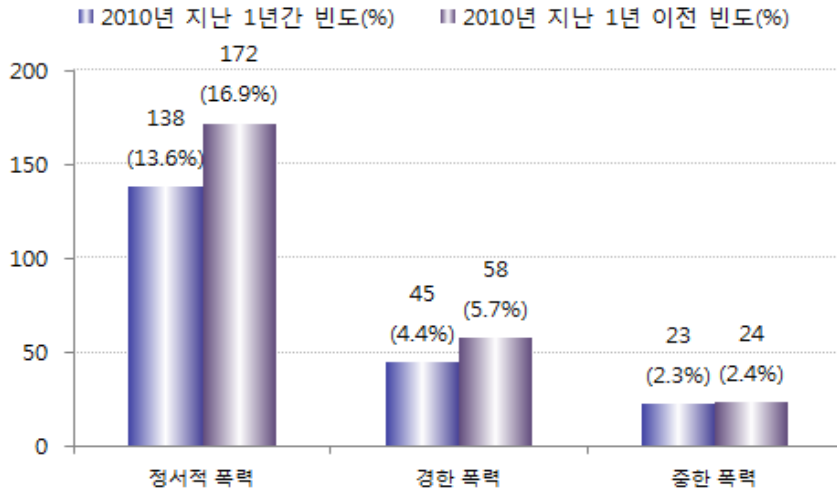
[그림 IV-40] 부모 간 폭력으로 인한 마음상태

#### (4) 부모님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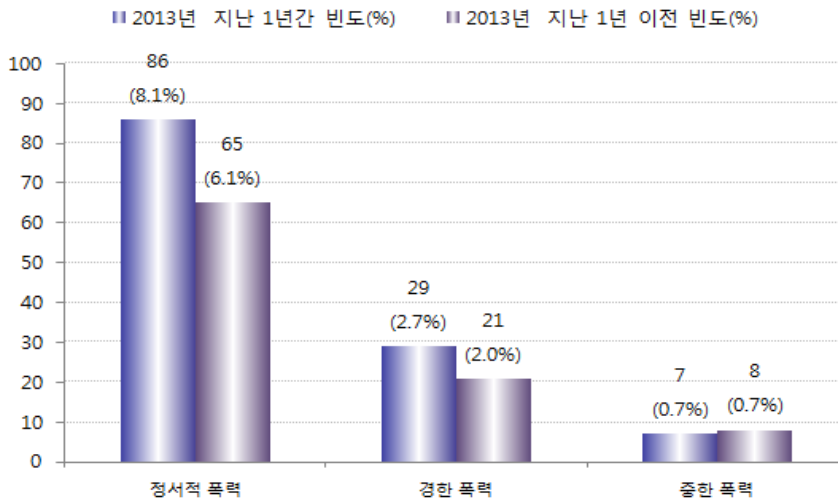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1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발생률은 감소하였으나, 지난 1년 이전에 비해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이 부모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동·청소년들의 연령이 증가해감에 따라 부모를 향한 폭력 행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이 부모를 향해 정서적 폭력을 행사한 빈도는 8.1%로, 지난 1년 이전에 6.1%였던 것에 비해 2.0%p 증가하였으며, 경한 폭력의 경우는 지난 1년 이전에 2.0%에서 지난 1년 간 2.7%로 0.7%p 증가하였다.

표 IV-37 아동·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발생률 변화 추이

유형	2010년		2013년	
	지난 1년간 빈도(%)	지난 1년 이전 빈도(%)	지난 1년간 빈도(%)	지난 1년 이전 빈도(%)
정서적 폭력	138(13.6)	172(16.9)	86(8.1)	65(6.1)
경한 폭력	45(4.4)	58(5.7)	29(2.7)	21(2.0)
중한 폭력	23(2.3)	24(2.4)	7(0.7)	8(0.7)



[그림 IV-41] 아동·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발생률 변화 추이: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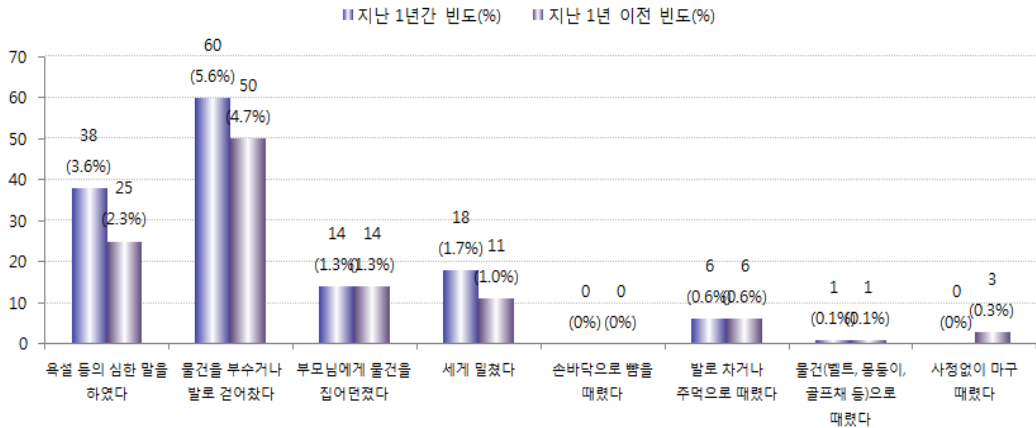
[그림 IV-42] 아동·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발생률 변화 추이: 2013년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지난 1년 간 특히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정서적 폭력을 행한 경험이 5.6%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를 향해 욕설 등의 심한 말을 한 경우가 3.6%로 나타났다. 이 외에 부모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린 빈도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부모님을 세계 밀치거나 부모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이 각각 1.7%, 1.3%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벨트, 몽둥이, 골프채 등의 물건으로 부모를 때리는 등의 중한 폭력도 소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가하는 폭력 외에 자녀가 부모를 향해 행하는 가정폭력의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38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유형	지난 1년간 빈도(%)	지난 1년 이전 빈도(%)
<b>정서적 폭력</b>		
-욕설 등의 심한 말을 하였다	38(3.6)	25(2.3)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찼다	60(5.6)	50(4.7)
<b>경한 폭력</b>		
-부모님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14(1.3)	14(1.3)
-세계 밀쳤다	18(1.7)	11(1.0)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	-
<b>중한 폭력</b>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6(0.6)	6(0.6)
-물건(벨트,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1(0.1)	1(0.1)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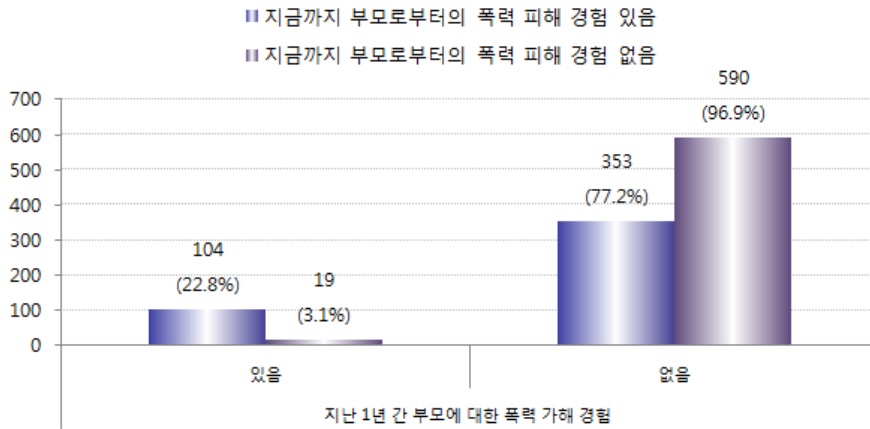
[그림 IV-43]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모에게 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한 번이라도 있는 아동·청소년

년 들 중 지난 1년간 부모에 대해 폭력을 행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총 22.8%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는 아동·청소년들 중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이 3.1%인 것에 비해 매우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39** 지금까지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따른 지난 1년 간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단위: 명(%))

유형		전체	지금까지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chi^2$
			있음	없음	
지난 1년 간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있음	123(11.5)	104(22.8)	19(3.1)	98.636***
	없음	943(88.5)	353(77.2)	590(96.9)	
합계		1,066(100.0)	457(100.0)	609(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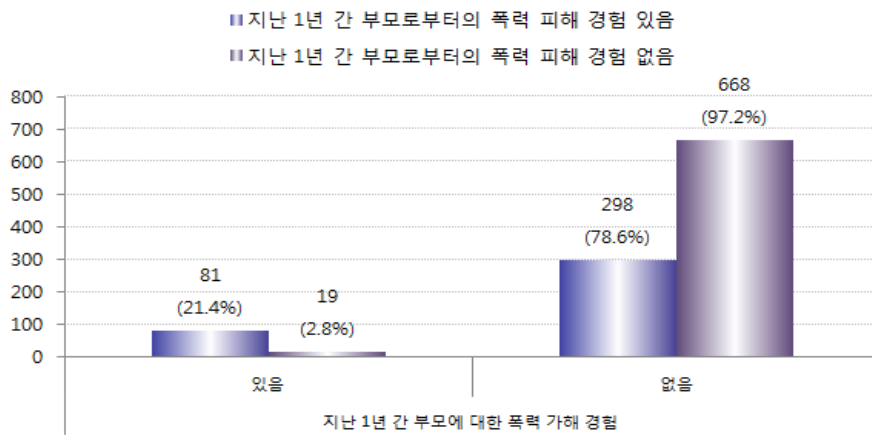
[그림 IV-44] 지금까지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따른 지난 1년 간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 중 지난 1년 간 부모에게 폭력을 행한 아동·청소년은 총 21.4%로,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아동·청소년에게서 지난 1년 간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경험이 28% 발생한 것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0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따른 지난 1년 간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단위: 명(%))

유형		전체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chi^2$
			있음	없음	
지난 1년 간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있음	100(9.4)	81(21.4)	19(2.8)	99.472***
	없음	966(90.6)	298(78.6)	668(97.2)	
합계		1,066(100.0)	379(100.0)	687(100.0)	



[그림 IV-45]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따른 지난 1년 간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 중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모에 대한 폭력의 가해자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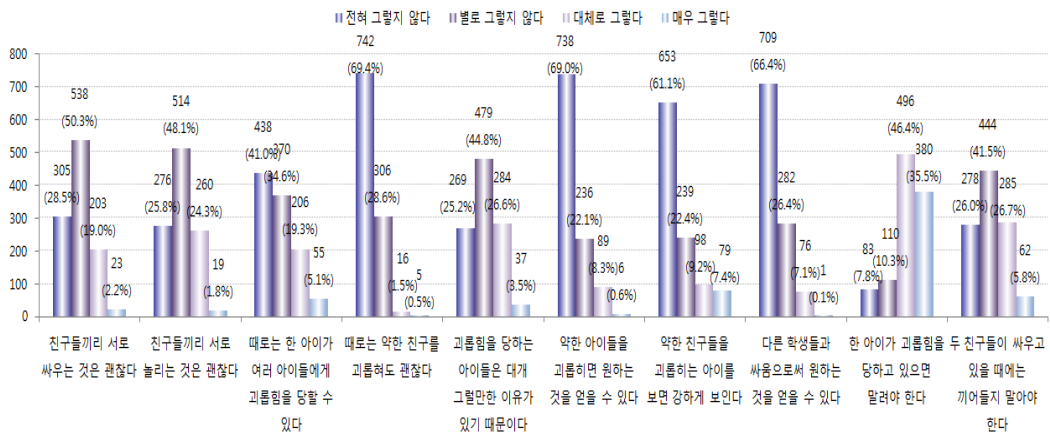
#### (5)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폭력 경험

아동·청소년들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41 아동·청소년의 폭력허용도

(단위: 명(%))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친구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은 괜찮다	305(28.5)	538(50.3)	203(19.0)	23(2.2)
친구들끼리 서로 놀리는 것은 괜찮다	276(25.8)	514(48.1)	260(24.3)	19(1.8)
때로는 한 아이가 여러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438(41.0)	370(34.6)	206(19.3)	55(5.1)
때로는 약한 친구를 괴롭혀도 괜찮다	742(69.4)	306(28.6)	16(1.5)	5(0.5)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은 대개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269(25.2)	479(44.8)	284(26.6)	37(3.5)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738(69.0)	236(22.1)	89(8.3)	6(0.6)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아이를 보면 강하게 보인다	653(61.1)	239(22.4)	98(9.2)	79(7.4)
다른 학생들과 싸움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709(66.4)	282(26.4)	76(7.1)	1(0.1)
한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말려야 한다	83(7.8)	110(10.3)	496(46.4)	380(35.5)
두 친구들이 싸우고 있을 때에는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278(26.0)	444(41.5)	285(26.7)	6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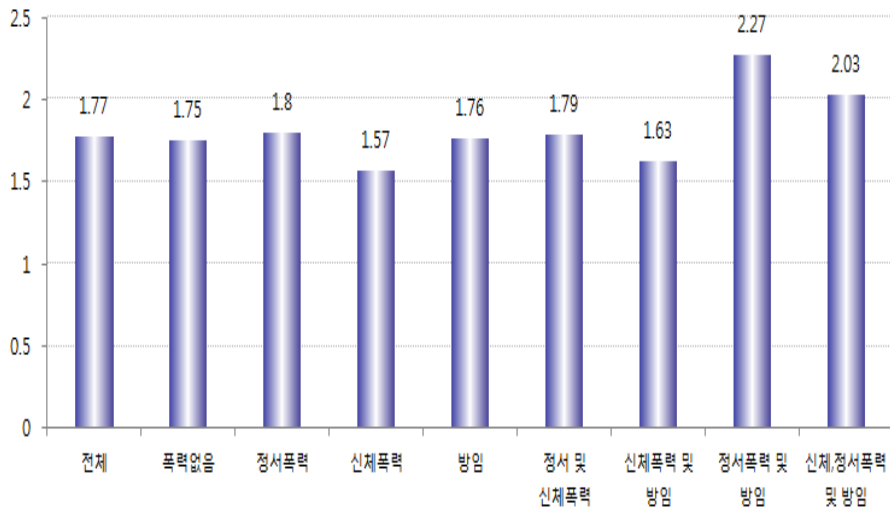
[그림 IV-46] 아동·청소년의 폭력허용도

지금까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의 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이 경험한 폭력의 유형에 따라 폭력을 허용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정서적 폭력과 방임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의 폭력허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폭력 및 방임을 모두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의 폭력허용도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의 폭력 허용도가 오히려 정서적 폭력이나 방임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의 폭력허용도에 비해 대체로 낮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폭력만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경우에

는 부모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들에 비해서도 폭력허용도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정서폭력과 방임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의 경우는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그리고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만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폭력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 아동·청소년의 폭력허용도 차이: 가정폭력 경험 유형별 (단위: 점, 명)

	전체	폭력 없음	정서 폭력	신체 폭력	방임	정서 신체 및 폭력	신체 폭력 및 방임	정서 폭력 및 방임	신체·정서·폭력 및 방임	F	Scheffe
폭력 허용도 평균	1.77	1.75	1.80	1.57	1.76	1.79	1.63	2.27	2.03	6316***	7,8)1* 7,8)3**
N	1,066	609	147	43	9	205	3	10	40		



[그림 IV-47] 아동·청소년의 폭력허용도 차이: 가정폭력 경험 유형별

지난 1년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친구들과와의 관계에서 친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대체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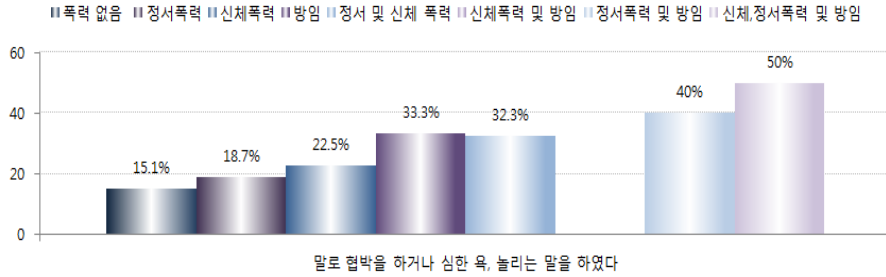
없는 아동들에 비해 친구관계에서의 가해경험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신체, 정서적 폭력 및 방임을 모두 경험한 학생들의 경우 말로 협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는 행동, 따돌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동,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리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가두는 행동,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동,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욕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동 등의 가해 경험이 가정 내에서 다른 폭력의 유형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에 비해 높았고, 특히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의 방임을 경험한 학생들은 중복 가해를 경험한 학생들에 비해 친구들에게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43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 경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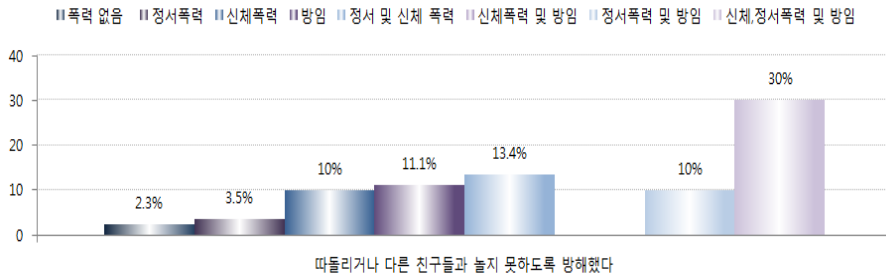
	가정 내 부모의 폭력 유형								
	폭력 없음	정서 폭력	신체 폭력	방임	정서 신체 및 폭력	신체 폭력 및 방임	정서 폭력 및 방임	신체·정서 폭력 및 방임	
친구관계에서의 폭력 가해 경험	말로 협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였다	104(15.1)	32(18.7)	9(22.5)	3(33.3)	41(32.3)	-	4(40.0)	10(50.0)
	따돌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16(2.3)	6(3.5)	4(10.0)	1(11.1)	17(13.4)	-	1(10.0)	6(30.0)
	강제로 심부름을 시켰다(예: 빵셔틀)	1(0.1)	-	1(2.5)	-	2(1.6)	-	-	-
	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렸다	5(0.7)	1(0.6)	1(2.5)	2(22.2)	3(2.4)	-	-	-
폭력 가해 경험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리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가두었다	6(0.9)	1(0.6)	2(5.0)	-	7(5.5)	-	-	4(20.0)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졌다	6(0.9)	1(0.6)	-	-	2(1.6)	-	-	2(10.0)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욕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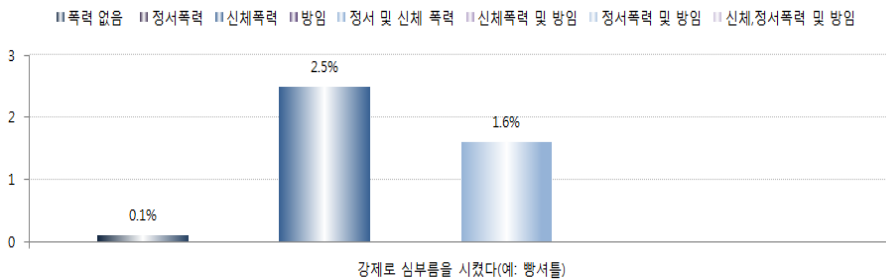
1(0.1) 1(0.6) - - 5(3.9) - - 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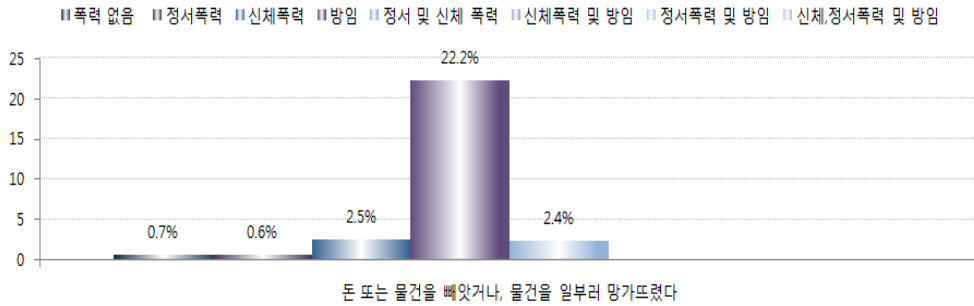
[그림 IV-48]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 경험: 언어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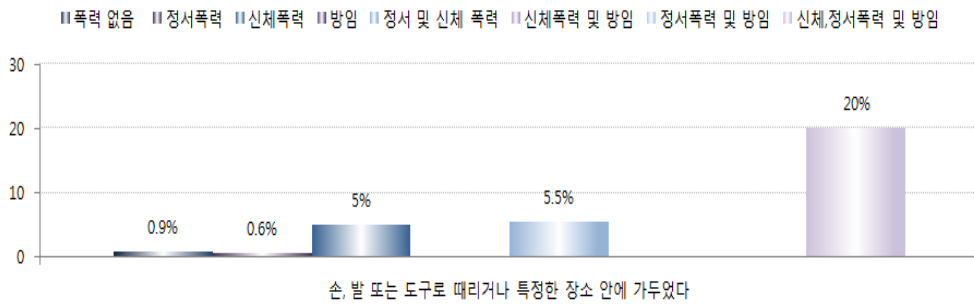
[그림 IV-49]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 경험: 따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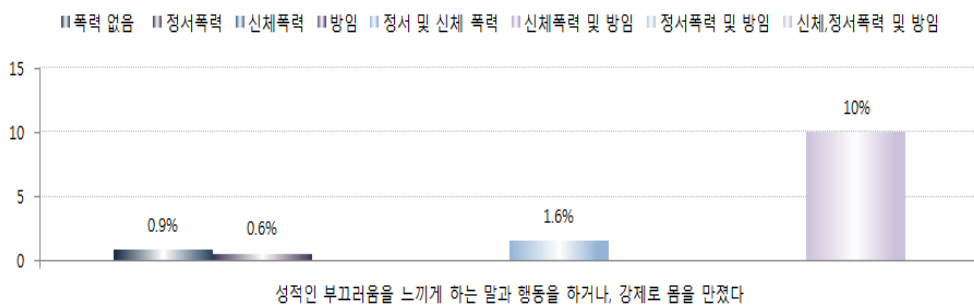
[그림 IV-50]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 경험: 강제 심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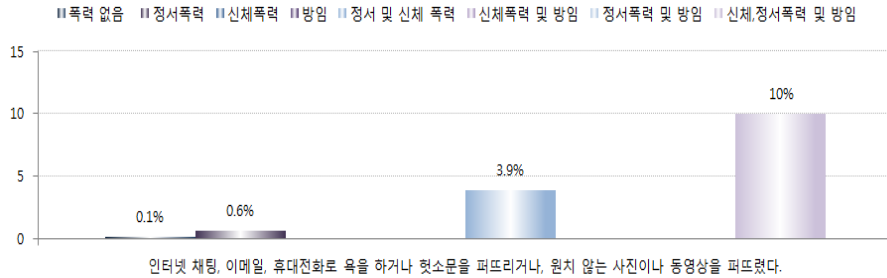
[그림 IV-51]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 경험: 금품 갈취



[그림 IV-52]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 경험: 감금



[그림 IV-53]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 경험: 성추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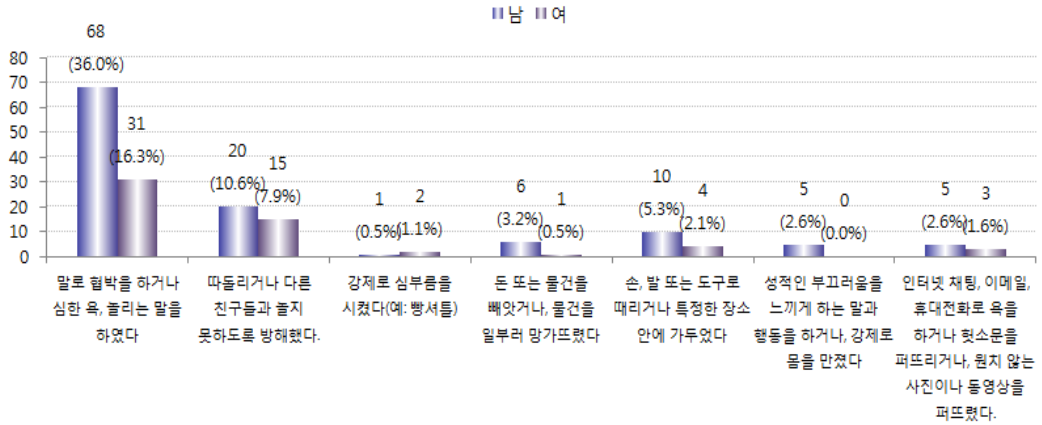


[그림 IV-54]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가해 경험: 사이버폭력

지난 1년 동안 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 중 성별에 따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폭력을 행한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친구에게 뺱셔들과 같은 심부름을 강제로 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폭력 가해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말로 헐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는 행동과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동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게서의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4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여부: 성별 (단위: 명(%))

유형	전체	남	여	$\chi^2$
말로 헐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였다	99(26.1)	68(36.0)	31(16.3)	18.983***
따돌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35(9.2)	20(10.6)	15(7.9)	0.816
강제로 심부름을 시켰다(예: 뺱셔들)	3(0.8)	1(0.5)	2(1.1)	0.331
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렸다	7(1.8)	6(3.2)	1(0.5)	3.666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리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가두었다	14(3.7)	10(5.3)	4(2.1)	2.703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졌다	5(1.3)	5(2.6)	-	5.094*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욕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렸다.	8(2.1)	5(2.6)	3(1.6)	0.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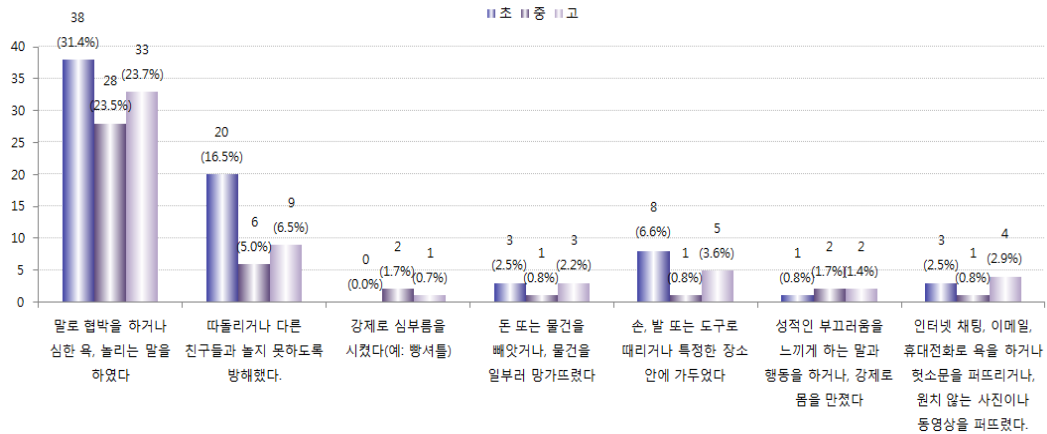
[그림 IV-55]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여부: 성별

부모로부터 지금까지 가정폭력을 한 번이라도 당한 적이 있는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험의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말로 헐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는 행동, 따돌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동, 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일부러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동,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리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가두는 행동 등은 초등학교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 중학생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따돌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동은 학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동과 강제로 심부름을 시키는 행동은 중학생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였고,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욕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동은 고등학생에게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IV-45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여부: 학교급별 (단위: 명(%))

유형	전체	초	중	고	$\chi^2$
말로 헐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였다	99(26.1)	38(31.4)	28(23.5)	33(23.7)	2.573
따돌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35(9.2)	20(16.5)	6(5.0)	9(6.5)	11.439**

강제로 심부름을 시켰다(예: 빵셔틀)	3(0.8)	-	2(1.7)	1(0.7)	2.173
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렸다	7(1.8)	3(2.5)	1(0.8)	3(2.2)	1.006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리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가두었다	14(3.7)	8(6.6)	1(0.8)	5(3.6)	5.623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졌다	5(1.3)	1(0.8)	2(1.7)	2(1.4)	0.360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욕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상을 퍼뜨렸다.	8(2.1)	3(2.5)	1(0.8)	4(2.9)	1.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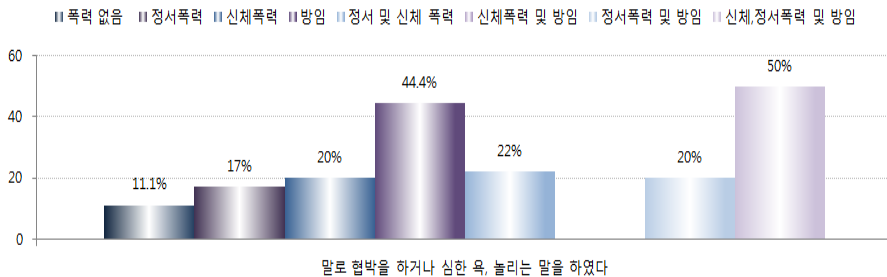
[그림 IV-56]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여부: 학교급별

이와는 반대로 지난 1년 간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학생들이 친구관계에서도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가정 내에서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가정 내에서 한 가지 이상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폭력을 당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 내에서 신체, 정서적 폭력 및 방임 등 모든 유형의 폭력을 모두 경험한 학생들이 친구관계에서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 내에서 방임을 경험한 학생들은 2가지 유형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에 비해서 말로 친구들이 협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는 행동, 따돌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돈 또는 물건을 빼앗는 행동,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행동,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욕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상을 퍼뜨리는 행동 등으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에서 부모의 방임이 중복가해만큼 아동·청소년에게 위협적인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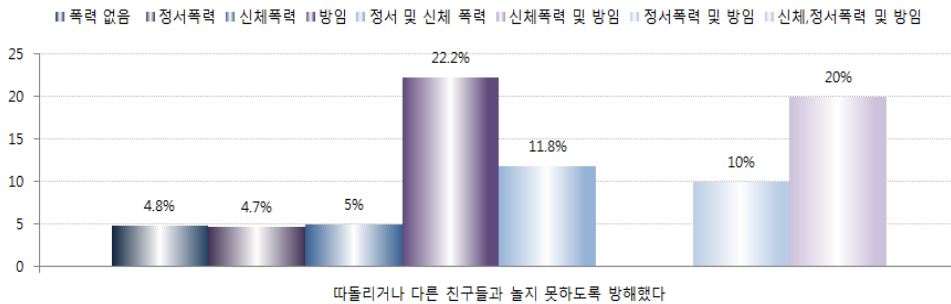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46**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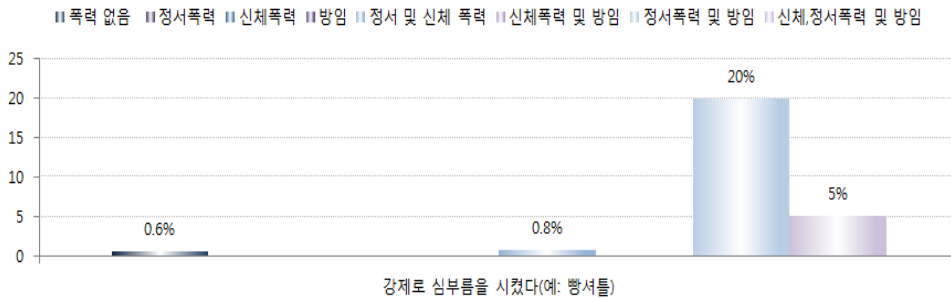
	가정 내 부모의 폭력 유형							
	폭력 없음	정서 폭력	신체 폭력	방임	정서 신체 및 폭력	신체 폭력 및 방임	정서 폭력 및 방임	신체·정서 폭력 및 방임
말로 협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였다	76(11.1)	29(17.0)	8(20.0)	4(44.4)	28(22.0)	-	2(20.0)	10(50.0)
친구 따돌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33(4.8)	8(4.7)	2(5.0)	2(22.2)	15(11.8)	-	1(10.0)	4(20.0)
관계 강제로 심부름을 시켰다(예: 빵셔틀)	4(0.6)	-	-	-	1(0.8)	-	2(20.0)	1(5.0)
에 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서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렸다	11(1.6)	1(0.6)	-	2(22.2)	8(6.3)	-	-	3(15.0)
의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리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가두었다	7(1.0)	-	-	-	6(4.7)	-	-	4(20.0)
폭력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강제해로 몸을 만졌다	15(2.2)	2(1.2)	1(2.5)	-	1(0.8)	-	-	3(15.0)
해 인터넷 채팅, 이메일, 경험 휴대전화로 욕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렸다.	10(1.5)	2(1.2)	1(2.5)	1(11.1)	10(7.9)	-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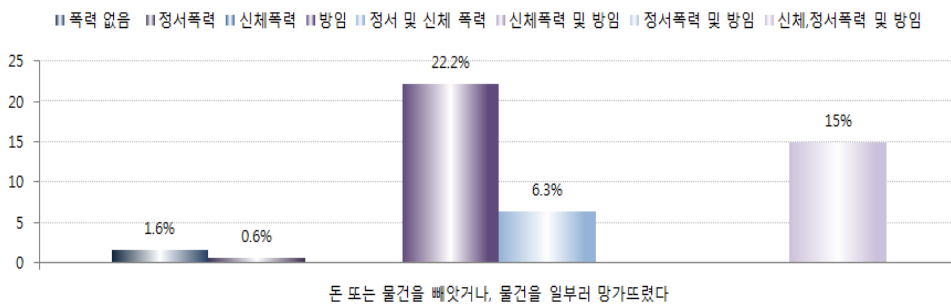
[그림 IV-57]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언어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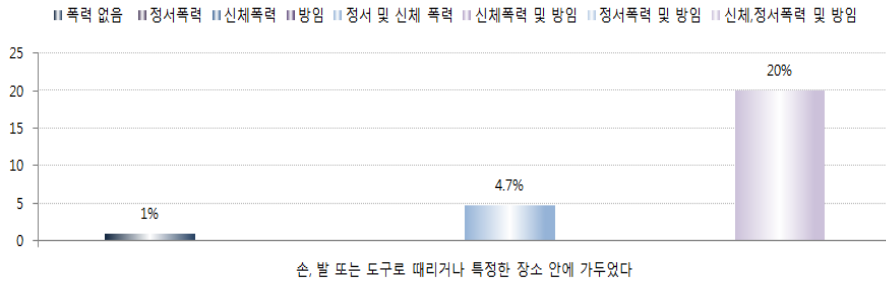
[그림 IV-58]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따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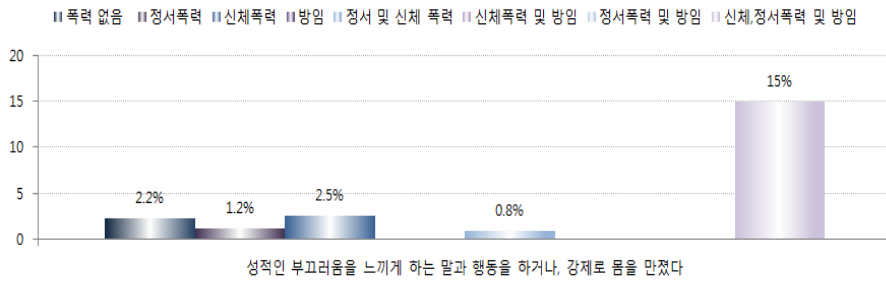
[그림 IV-59]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강제 심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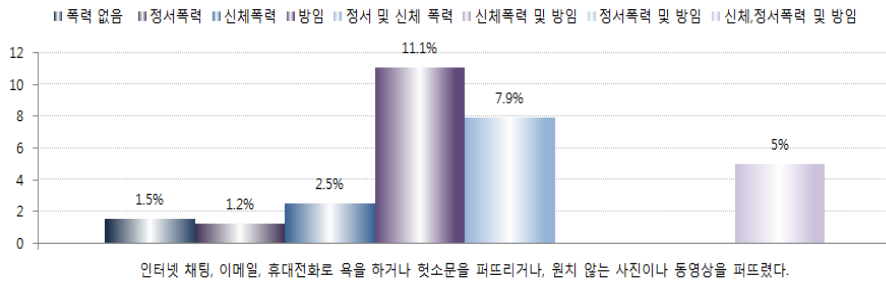
[그림 IV-60]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금품 갈취



[그림 IV-61]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감금



[그림 IV-62]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성추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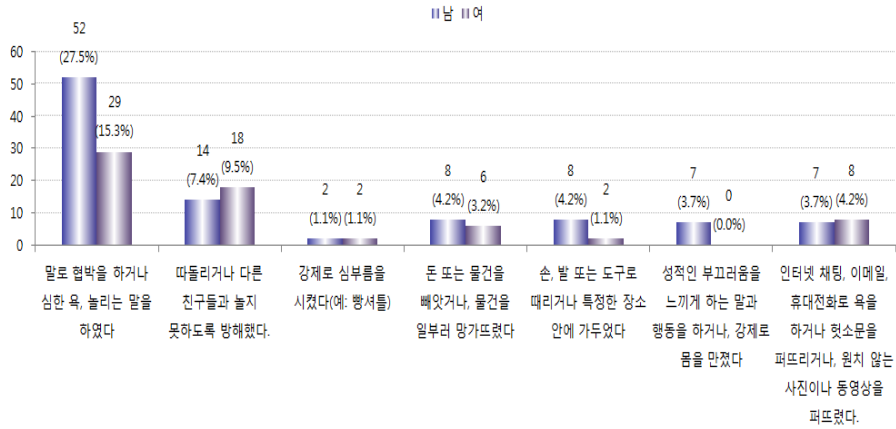
[그림 IV-63] 지난 1년 간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유형에 따른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사이버폭력

지난 1년 간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친구관계에서의 폭력 피해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따돌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동과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욕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이를 제외한 말로 협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는 행동, 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행동,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리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가두는 행동,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여학생에 비해 많이 경험하였으며, 특히 말로 협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는 행동과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동을 당한 경험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7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성별(단위: 명(%))

유형	전체	남	여	$\chi^2$
말로 협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였다	81(21.4)	52(27.5)	29(15.3)	8.461**
따돌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32(8.4)	14(7.4)	18(9.5)	0.523
강제로 심부름을 시켰다(예: 빵셔틀)	4(1.1)	2(1.1)	2(1.1)	0.000
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렸다	14(3.7)	8(4.2)	6(3.2)	0.308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리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가두었다	10(2.6)	8(4.2)	2(1.1)	3.730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졌다	7(1.8)	7(3.7)	-	7.169**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욕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렸다.	15(4.0)	7(3.7)	8(4.2)	0.064



[그림 IV-64]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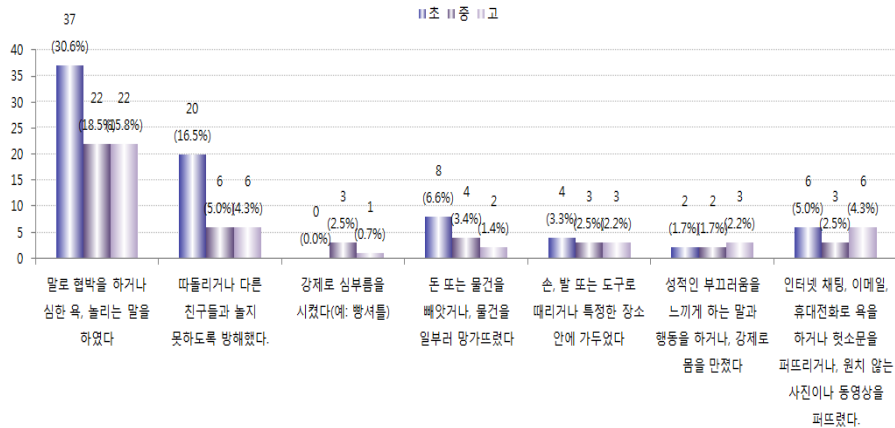
지난 1년 간 가정에서 부모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학교급에 따라 폭력 피해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말로 협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는 행동, 따돌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강제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행동,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리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가두는 행동 등은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학교급이 낮을수록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지는 등의 피해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48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교급별

(단위: 명(%))

유형	전체	초	중	고	$\chi^2$
말로 협박을 하거나 심한 욕, 놀리는 말을 하였다	81(21.4)	37(30.6)	22(18.5)	22(15.8)	9.235*
따돌리거나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32(8.4)	20(16.5)	6(5.0)	6(4.3)	15.076**

유형	전체	초	중	고	$\chi^2$
강제로 심부름을 시켰다(예: 빵셔틀)	4(1.1)	-	3(2.5)	1(0.7)	3.889
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렸다	14(3.7)	8(6.6)	4(3.4)	2(1.4)	4.919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리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가두었다	10(2.6)	4(3.3)	3(2.5)	3(2.2)	0.341
성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강제로 몸을 만졌다	7(1.8)	2(1.7)	2(1.7)	3(2.2)	0.118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욕을 하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렸다.	15(4.0)	6(5.0)	3(2.5)	6(4.3)	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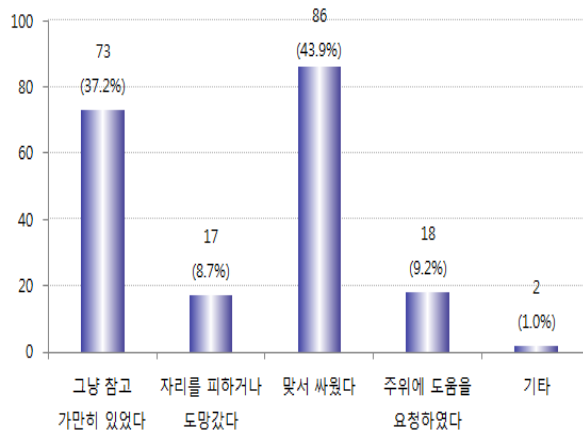


[그림 IV-65]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교급별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때 대체로 맞서 싸우는 행동(43.9%)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그냥 참고 가만히 있는 것(37.2%)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9.2%에 불과하여 폭력을 경험하더라도 주변의 성인이나 전문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9 위와 같은 일(피해)이 일어났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반응

유형	빈도(%)
그냥 참고 가만히 있었다	73(37.2)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갔다	17(8.7)
맞서 싸웠다	86(43.9)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8(9.2)
기타	2(1.0)
합계	196(100.0)



[그림 IV-66] 위와 같은 일(피해)이 일어났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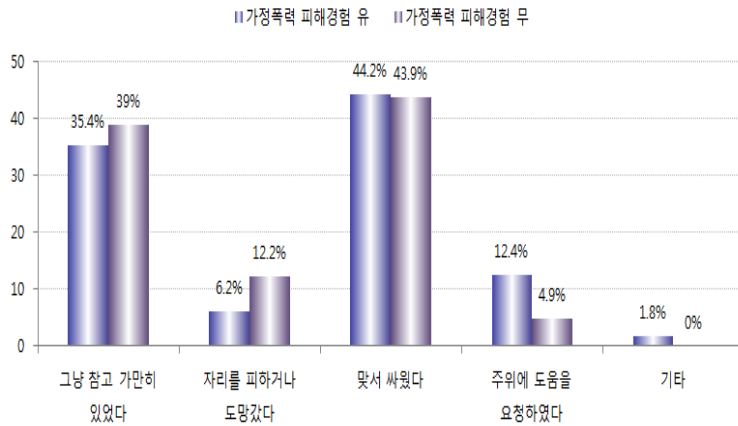
이렇게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반응이 가정 내에서 폭력 피해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아동·청소년에 비해 학교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하였을 때 맞서 싸우는 행동(유 44.2%, 무 43.9%)을 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유 12.4% 무 4.9%)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냥 참고 가만히 있거나(유 35.4%, 무 39.0%),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가는 행동(유 6.2%, 무 12.2%)을 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0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반응

(단위: 명(%))

유형	전체(%)	가정폭력 피해경험 유	가정폭력 피해경험 무	$\chi^2$
그냥 참고 가만히 있었다	72(36.9)	40(35.4)	32(39.0)	6.489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갔다	17(8.7)	7(6.2)	10(12.2)	
맞서 싸웠다	86(44.1)	50(44.2)	36(43.9)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8(9.2)	14(12.4)	4(4.9)	
기타	2(1.0)	2(1.8)	0(0.0)	
합계	196(100.0)	113(100.0)	82(100.0)	



[그림 IV-67]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반응

결 과 요약

- 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유형별 발생률을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 경한 신체적 폭력> 중한 신체적 폭력> 방임 순임.
- 신체적 폭력의 발생률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게서 유의미하게 높지만, 다른 유형의 폭력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아동·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한 이유에 대해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거나 친구나 형제와 싸우는 등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유를 모르거나, 부모님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자신에게 폭력을 행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 수 있음.
- 부모가 폭력을 행사할 때 아동·청소년들은 그냥 참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부모님에게 맞서고, 집밖으로 피해 도망가기도 함. 그러나 주위 성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

-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다친 적이 있는 경우, 몸에 가벼운 상처가 나거나 멍이 드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코피가 나거나 얼굴에 멍이 드는 경우가 많음.
-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은 부모님이 밟고 너무 화가 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고,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거나 모든 일에 우울하고 불안해졌다, 죽고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등의 응답을 함.
- 부모님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 경우는 매우 소수이며, 학교급이 낮을수록 도움을 요청한 경험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요청의 대상은 친구나 선후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친인척이었음. 그러나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인 학교사회복지사나 상담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소수임.
- 친인척 및 학교밖 성인들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거나, 심각한 일이라고 여겨도 별다른 조치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학교 및 전문기관 담당자들의 경우 출동을 하거나 상담을 해주는 하나, 폭력문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폭력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을 경험한 경우에도, 주위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여기고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거나, 심각한 일이라 여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행동을 취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아동·청소년들은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할 경우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어하며,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부모님이 밟고 화가 나는 마음, 모든 일에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 자신이 약하고 힘이 없다는 생각 등을 하게 됨.
- 부모에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폭력 피해 자녀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자로 변화될 가능성을 시사함.
- 중복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폭력이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들에 비해 폭력허용도가 높게 나타남. 특히 신체, 정서폭력 및 방임을 모두 경험한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친구관계에서 여러 유형의 폭력가해경험/피해경험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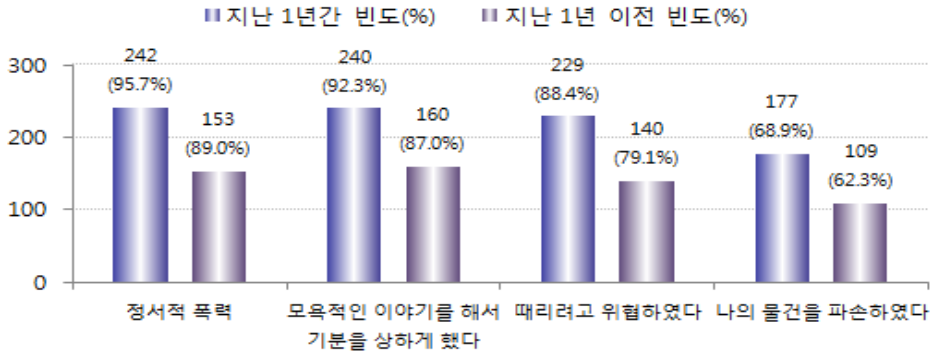
### (1)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실태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 여성들이 지난 1년 이전에, 그리고 지난 1년 간 가장 많이 경험한 배우자의 폭력 유형으로는 정서적 폭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중 95.7%는 지난 1년 간 배우자로부터 모욕적인 이야기나,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을 당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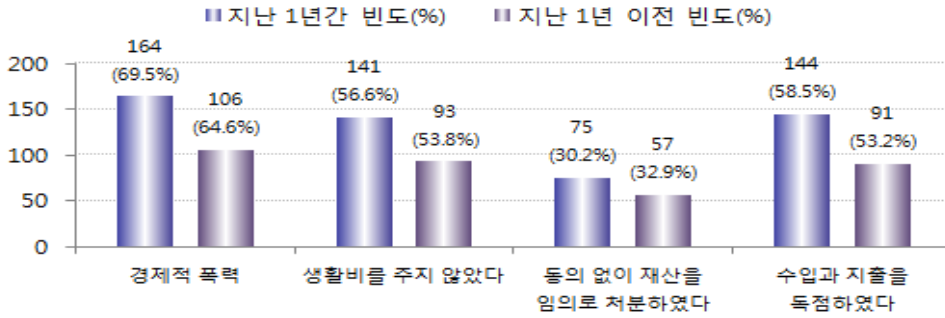
적이 있었으며, 지난 1년 이전에도 89.0%가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경험한 폭력 유형은 경한 신체적 폭력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87.8%가 지난 1년 간 배우자로부터 어깨나 목 등을 짝 움켜잡히는 등의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고, 지난 1년 이전에는 79.3%가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리는 등의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중한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폭력 등의 발생률도 지난 1년 간 각각 70.7%, 69.5%, 6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51 배우자로부터의 가정폭력 발생률: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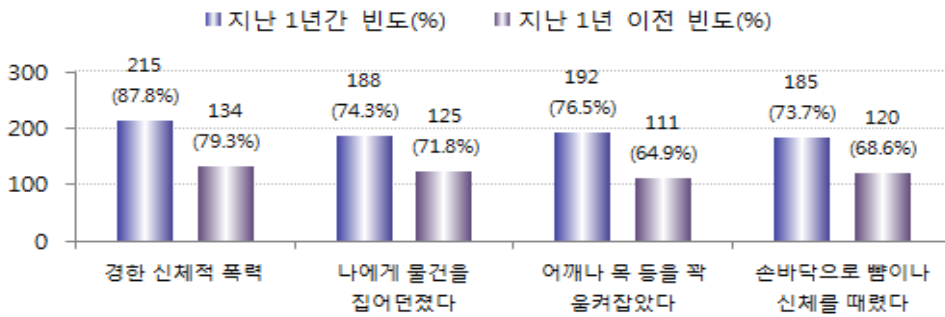
유형	지난 1년간 빈도(%)	지난 1년 이전 빈도(%)
<b>정서적 폭력</b>	242(95.7)	153(89.0)
-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했다	240(92.3)	160(87.0)
-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229(88.4)	140(79.1)
- 나의 물건을 파손하였다	177(68.9)	109(62.3)
<b>경제적 폭력</b>	164(69.5)	106(64.6)
-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141(56.6)	93(53.8)
-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75(30.2)	57(32.9)
-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144(58.5)	91(53.2)
<b>경한 신체적 폭력</b>	215(87.8)	134(79.3)
- 나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188(74.3)	125(71.8)
- 어깨나 목 등을 짝 움켜잡았다	192(76.5)	111(64.9)
-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렸다	185(73.7)	120(68.6)
<b>중한 신체적 폭력</b>	174(70.7)	104(62.7)
- 목을 졸랐다	117(46.4)	81(46.3)
-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115(45.1)	84(48.3)
- 혁대, 몽둥이로 때렸다	47(18.7)	40(23.7)
-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122(48.0)	76(44.2)
<b>성폭력</b>	173(68.9)	116(67.8)
- 내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169(67.1)	116(66.7)
- 내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129(51.0)	88(51.2)
<b>전체 폭력 발생률</b>	214(96.8)	136(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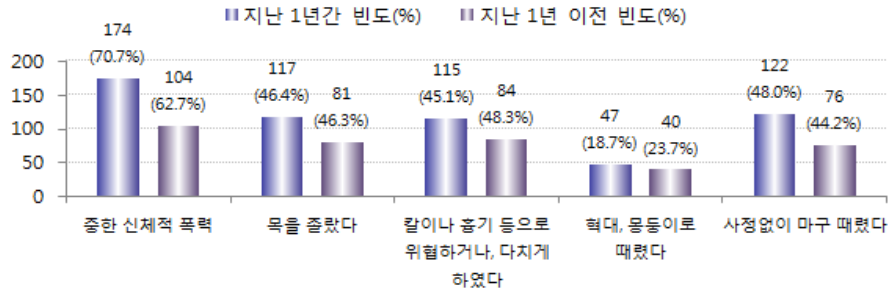
[그림 IV-68] 배우자로부터의 가정폭력 발생률: 정서적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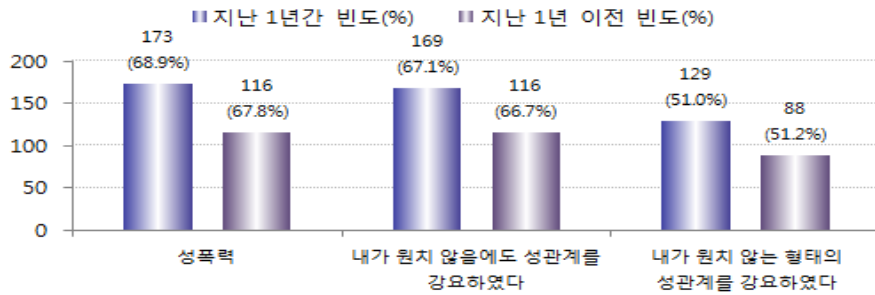
[그림 IV-69] 배우자로부터의 가정폭력 발생률: 경제적 폭력



[그림 IV-70] 배우자로부터의 가정폭력 발생률: 경한 신체적 폭력



[그림 IV-71] 배우자로부터의 가정폭력 발생률: 중한 신체적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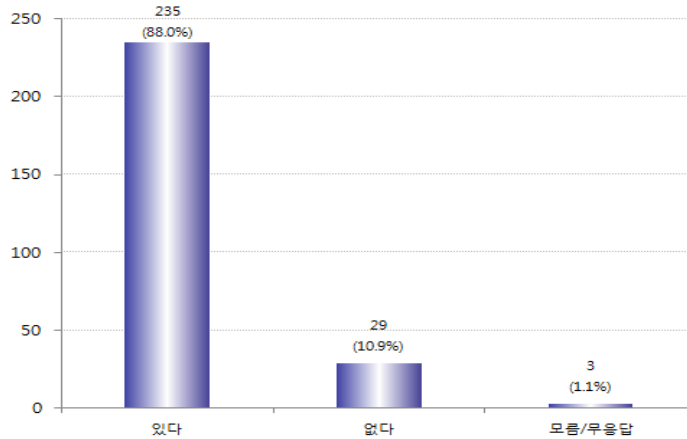


[그림 IV-72] 배우자로부터의 가정폭력 발생률: 성폭력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인 증상을 겪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88.0%가 신체증상을 겪은 증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52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증상 여부

유형	빈도(%)
있다	235(88.0)
없다	29(10.9)
모름/무응답	3(1.1)
합계	26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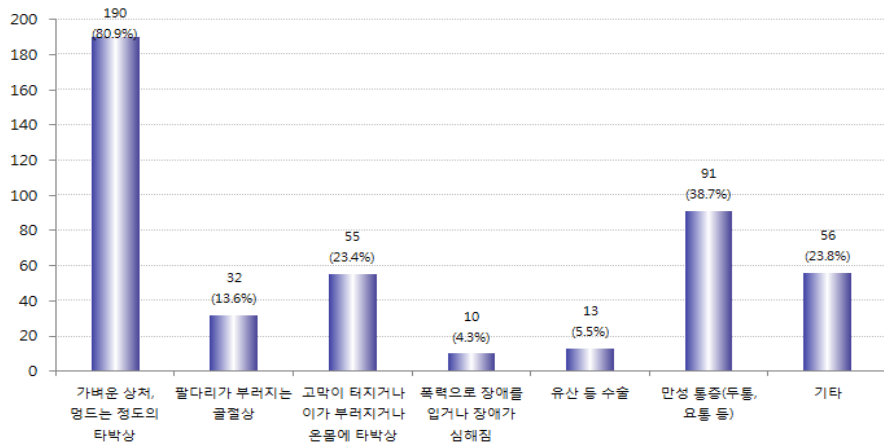


[그림 IV-73]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증상 여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 중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여성들 중 80.9%는 가벼운 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을 경험한 경우가 8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두통, 요통 등의 만성 통증이 38.7%였으며, 고막이 터지거나 이가 부러지거나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경우가 23.4%, 팔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 13.6% 등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경우도 상당 수 나타났다. 이외에도 폭력으로 인해 유산 등의 수술을 경험하거나(5.5%), 장애를 입거나 장애가 심해진 경우(4.3%)에 이르기까지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증상은 경미한 수준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53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

유형	빈도(%)
가벼운 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	190(80.9)
팔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	32(13.6)
고막이 터지거나 이가 부러지거나 온몸에 타박상	55(23.4)
폭력으로 장애를 입거나 장애가 심해짐	10(4.3)
유산 등 수술	13(5.5)
만성 통증(두통, 요통 등)	91(38.7)
기타	56(23.8)
합계	447(190.2)



[그림 IV-74]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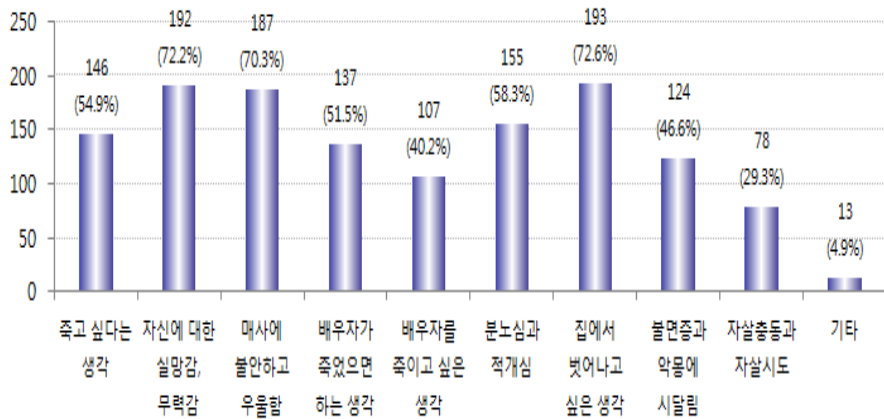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 여성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 외에, 심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증상을 살펴본 결과, 피해 여성들 중 72.6%는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폭력을 경험한 후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나 무력감을 경험한 경우가 72.2%, 매사에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을 경험한 경우가 70.3% 등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분노심과 적개심(58.3%), 죽고 싶다는 생각(54.9%), 배우자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51.5%),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림(46.6%), 배우자를 죽이고 싶은 생각(4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경우 자살충동과 자살시도를 경험한 적도 29.3%에 달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증상이 매우 심각함을 볼 수 있다.

표 IV-54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증상

(중복응답)

유형	빈도(%)
죽고 싶다는 생각	146(54.9)
자신에 대한 실망감, 무력감	192(72.2)
매사에 불안하고 우울함	187(70.3)
배우자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	137(51.5)
배우자를 죽이고 싶은 생각	107(40.2)
분노심과 적개심	155(58.3)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	193(72.6)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림	124(46.6)

유형	빈도(%)
자살충동과 자살시도	78(29.3)
기타	13(4.9)
합계	1,332(5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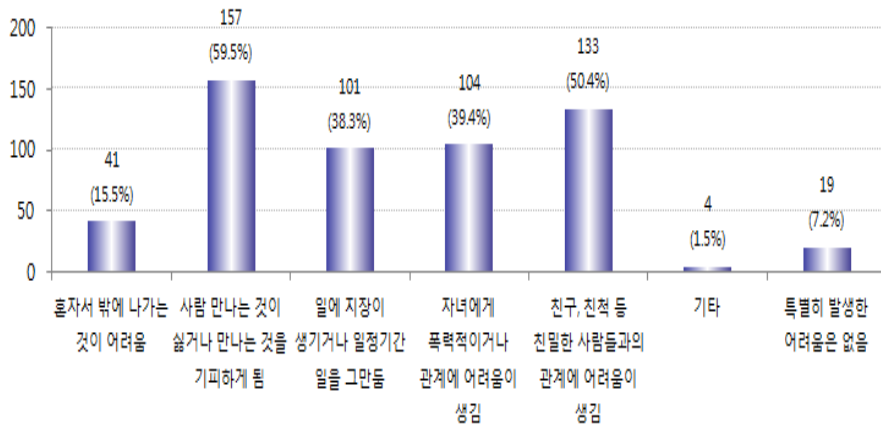
[그림 IV-75]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증상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후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폭력 피해 여성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거나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높았고, 친구나 친척 등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다 50.4% 등으로 응답하여 과반수의 피해자들이 평소 일상적으로 만나던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만남을 회피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에게 폭력적이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응답한 경우가 39.4%에 달하여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폭력적인 행동으로 풀거나 자녀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으로 생긴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일에 지장이 생기거나 일정기간 일을 그만두었다 38.3%, 혼자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워졌다 15.5% 등의 응답을 하여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후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가 어려워졌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막연하게 사람에 대한 회피나 혼자서 밖에 나가는 것이 어려운 것 외에도 친구나, 친척, 자녀 등과의 관계와 같이 자신에게 사회적 지지가 되어 줄 수 있는 친인척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는 피해여성을 보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위축되도록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55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중복응답)

유형	빈도(%)
혼자서 밖에 나가는 것이 어려움	41(15.5)
사람 만나는 것이 싫거나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됨	157(59.5)
일에 지장이 생기거나 일정기간 일을 그만둠	101(38.3)
자녀에게 폭력적이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생김	104(39.4)
친구, 친척 등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김	133(50.4)
기타	4(1.5)
특별히 발생한 어려움은 없음	19(7.2)
합계	559(2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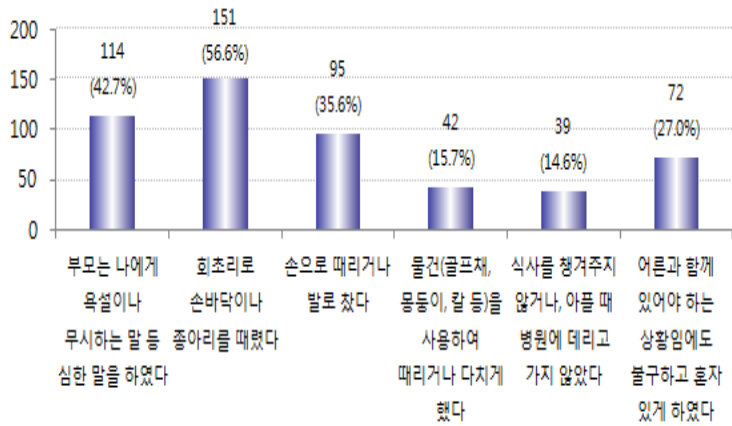
[그림 IV-76]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 (2)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성장기 폭력경험 및 자녀 가해경험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피해 여성들은 성장기 동안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피해 여성들 중 42.7%는 성장기인 만 18세까지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63.7%는 신체적인 폭력을, 30.7%는 부모로부터의 방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체 피해여성의 70.4%가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6 성장기(만 18세 이전) 동안에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유형	빈도(%)
<b>정서적 폭력</b>	114(42.7)
- 부모는 나에게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였다	114(42.7)
<b>신체적 폭력</b>	170(63.7)
-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렸다	151(56.6)
-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95(35.6)
- 물건(골프채, 몽둥이, 칼 등)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다치게 했다	42(15.7)
<b>방임</b>	82(30.7)
-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아플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39(14.6)
-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게 하였다	72(27.0)
<b>전체 폭력 발생률</b>	188(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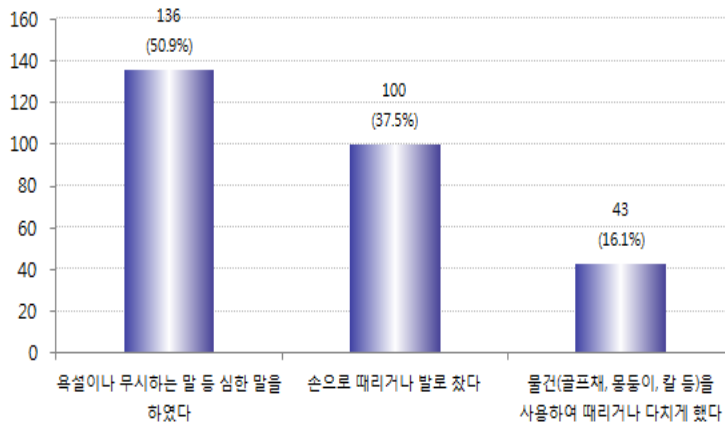


[그림 IV-77] 성장기(만 18세 이전) 동안에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또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중 53.2%는 성장기동안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50.9%는 부모 간의 정서적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8.2%는 신체적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57 성장기(만 18세 이전) 동안에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

유형	빈도(%)
정서적 폭력	136(50.9)
-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였다	136(50.9)
신체적 폭력	102(38.2)
-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100(37.5)
- 물건(골프채, 몽둥이, 칼 등)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다치게 했다	43(16.1)
전체 폭력 목격률	142(53.2)



[그림 IV-78] 성장기(만 18세 이전) 동안에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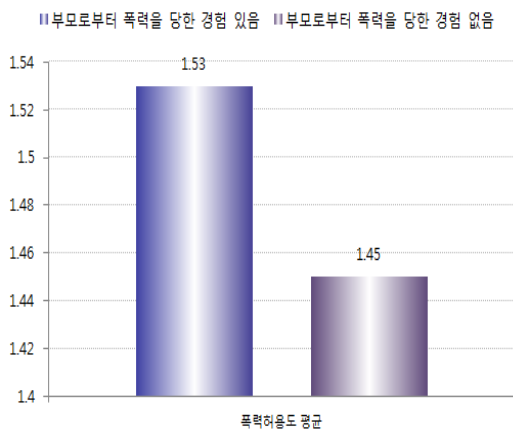
성장기 동안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경험 및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이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나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에 따른 폭력 허용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비해 폭력허용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 폭력의 경험 및 폭력 목격의 경험이 있는 경우 폭력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거나 사회질서 유지나 일처리를 위해 폭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등 폭력에 대해 보다 관대한 태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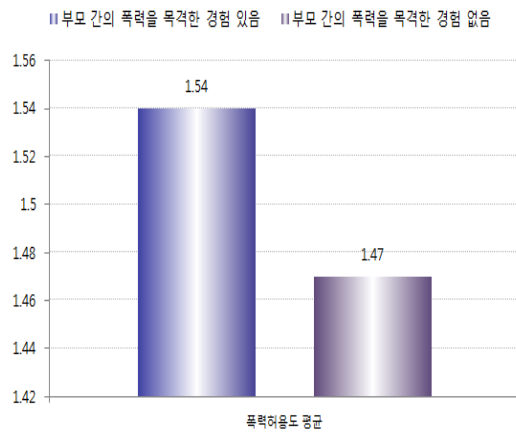
##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에 따른 폭력허용도

(단위: 점)

	전체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폭력허용도 평균	1.50	1.53	1.45	1.54	1.47
t		0.926		0.927	



[그림 IV-79]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에 따른 폭력허용도: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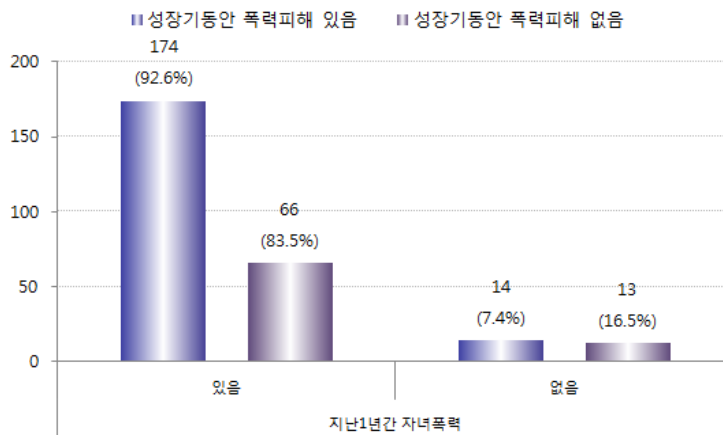


[그림 IV-80]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에 따른 폭력허용도: 부모로부터 폭력을 목격한 경험 여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중 자신이 성장기 동안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본인의 자녀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이면서 18세 이전까지의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89.9%였으며, 이들 중 성장기동안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중 지난 1년 간 자녀에게 폭력을 가한 적이 있는 경우는 92.5%에 해당하여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자녀에게 유의미하게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9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 폭력경험에 따른 본인의 자녀 폭력 가해 여부(단위: 명(%))

유형		전체	성장기동안 폭력피해		$\chi^2$
			있음	없음	
지난1년간 자녀폭력	있음	240(89.9)	174(92.6)	66(83.5)	4.967*
	없음	27(10.1)	14(7.4)	13(16.5)	
합계		267(100.0)	188(100.0)	79(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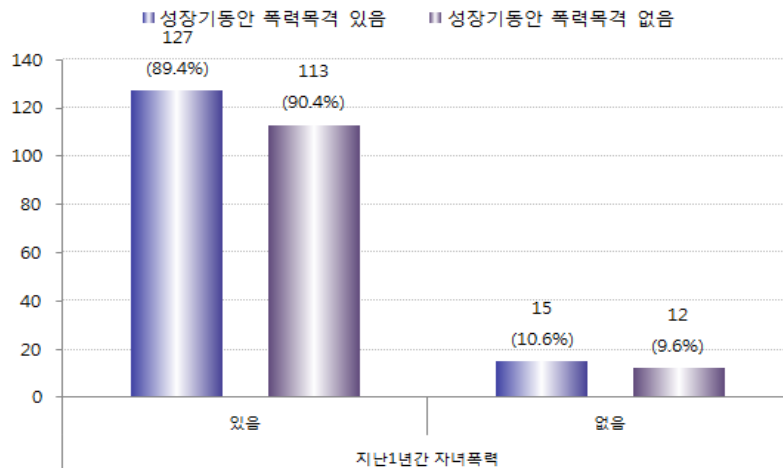
[그림 IV-81]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 폭력경험에 따른 본인의 자녀 폭력 가해 여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중 성장기동안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경우, 부모 간의 폭력 목격 경험에 따라 지난 1년 간 자신의 자녀에 대한 폭력 가해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에 따라 자녀에 대한 폭력 가해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자녀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89.9%)이 매우 높음을 볼 수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만 18세 이전에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녀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장기동안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기동안 부모 간의 폭력 목격 경험이 없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게서 지난 1년 간 자녀폭력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에 따른 영향이라기보다

현재 가정 내에서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것이 자녀에 대한 가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60 성장기동안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에 따른 본인의 자녀 폭력 가해 여부(단위: 명(%))

유형		전체	성장기동안 폭력목격		$\chi^2$
			있음	없음	
지난1년간 자녀폭력	있음	240(89.9)	127(89.4)	113(90.4)	0.068
	없음	27(10.1)	15(10.6)	12(9.6)	
합계		267(100.0)	142(100.0)	12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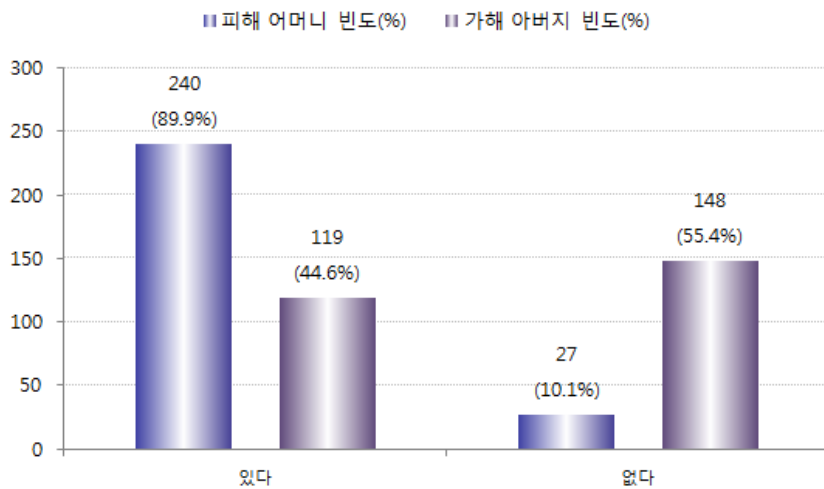


[그림 IV-82] 성장기동안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에 따른 본인의 자녀 폭력 가해 여부

지난 1년 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중 지난 1년 간 자녀에게 폭력을 가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체 피해여성의 89.9%는 자녀에게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비율인 44.6%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에서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매우 높음을 볼 수 있다.

표 IV-61 지난 1년 간 폭력 피해 어머니와 가해 아버지의 자녀 폭력 가해 여부(단위: 명(%))

유형	피해 어머니 빈도(%)	가해 아버지 빈도(%)
있다	240(89.9)	119(44.6)
없다	27(10.1)	148(55.4)
합계	267(100.0)	26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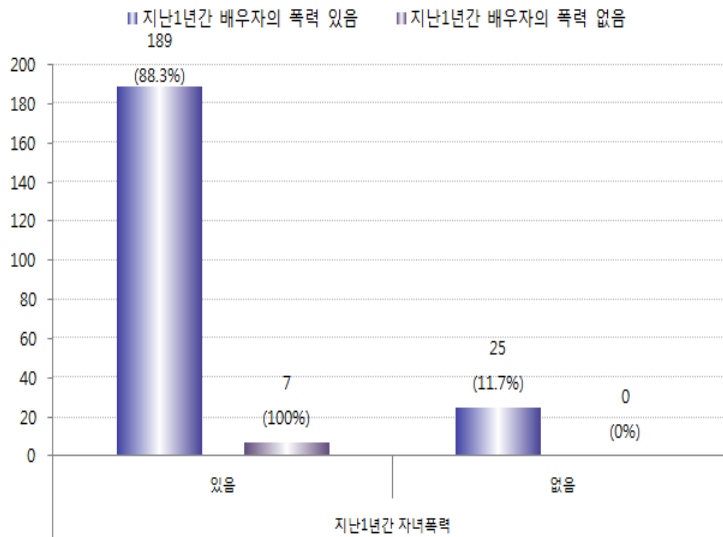


[그림 IV-83] 지난 1년 간 폭력 피해 어머니와 가해 아버지의 자녀 폭력 가해 여부

가정폭력 피해 어머니 중 지난 1년 간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녀를 향해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난 1년 간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던 피해 여성은 총 221명 중 214명에 해당하는 96.8%였고, 그 중 지난 1년 간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었던 어머니는 189명(88.3%)로 나타났다.

표 IV-62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경험에 따른 본인의 자녀 폭력 여부(단위: 명(%))

유형		전체	지난1년간 배우자의 폭력		$\chi^2$
			있음	없음	
지난1년간 자녀폭력	있음	196(88.7)	189(88.3)	7(100.0)	0.922
	없음	25(11.3)	25(11.7)	0(0.0)	
합계		221(100.0)	214(100.0)	7(100.0)	



[그림 IV-84]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경험에 따른 본인의 자녀 폭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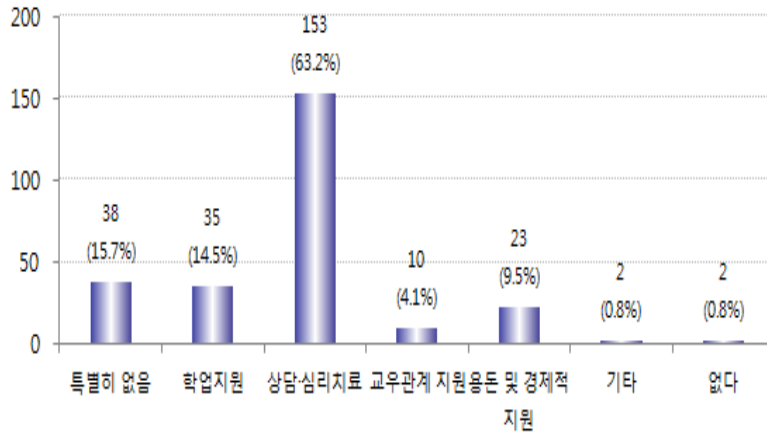
### (3)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를 위한 지원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63.2%)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다음으로는 학업지원(14.5%), 용돈 및 경제적 지원(9.5%) 등이 요구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IV-63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중복응답)

유형	빈도(%)
특별히 없음	38(15.7)
학업지원	35(14.5)
상담·심리치료	153(63.2)
교우관계 지원	10(4.1)
용돈 및 경제적 지원	23(9.5)
기타	2(0.8)
없다	2(0.8)
합계	263(108.7)



[그림 IV-85]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결 과 요 약**

- 피해 여성들은 배우자로부터 지난 1년 간 정서적 폭력> 경한 신체적 폭력> 중한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폭력 순으로 폭력을 경험함,
-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 여성의 88%는 신체증상을 경험하였으며, 신체 증상으로는 가벼운 상처나 타박상 등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만성통증, 온몸에 타박상, 골절상 등의 순으로 경험함.
- 가정폭력으로 인해서는 무력감, 우울감,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가장 많고, 배우자를 죽이거나 배우자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 자살충동과 자살시도 등의 심리적 증상도 상당수 나타남.
- 피해 여성 중 과반 수 이상이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바 있었고, 정서적 폭력이나 방임을 경험한 경우도 상당 수 있음.

- 성장기동안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피해 여성도 과반 수 이상임.
-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경우 폭력허용도가 높게 나타남.
-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자녀에게 폭력을 가해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성장기동안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자녀에게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음.
- 피해 여성들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를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다음으로 학업지원, 용돈 및 경제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3. 소결 및 시사점

아동·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부가조사인 아동청소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폭력유형은 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고, 경한 신체적 폭력, 중한 신체적 폭력, 방임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은 발생률이 약 30% 이상으로, 때리거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방식의 신체적 폭력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훈육의 차원에서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경향은 사회 전반에 걸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언어적으로 헐뜯거나 악담을 하는 등의 정서적 폭력은 겉으로 피해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국민 홍보를 통해 폭력의 개념을 규정하고, 폭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음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할 때 가만히 참고 있거나 부모님에게 맞서고, 도망가는 등의 대처를 하기도 하지만, 주위 성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도 도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성인들이 가정폭력을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겨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심각한 일이라고 여기더라도 별다른 조치행동을 취해주지 않는 등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서의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다툼', 또는 '자녀에 대한 훈육' 정도로 보는 경향이 있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들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는 것은 물론, 미움, 분노, 우울, 불안 등의 감정과 더불어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큰 상처를 입는다는 결과를 볼 때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 및 성인들의 적극적인 도움 노력이 절실하다 할 수 있다.

셋째, 부모에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에 대한 폭력 가해경험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중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폭력이 없는 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비해 폭력허용도가 높고, 친구관계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 피해 아동들은 갈등상황에서 폭력을 이용하는 것이 정당하고,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다른 폭력문제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며, 피해자였던 아동·청소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변화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의 순환이 일어나기 전에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반폭력교육을 통해 폭력이 갈등 해결을 위한 정당한 방법이 아님을 가르치고, 보다 건강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자신을 조절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와 유사한 결과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성장기동안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폭력 허용도가 높고,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결과는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폭력의 대물림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충분히 치유하여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를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리적 외상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아동·청소년 포함)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가 비용 및 횟수 면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거나, 가정폭력 전문가가 아닌 일반 상담사에 의해 상담이 제공되는 현실을 볼 때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외상을 다룰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문적인 기관 혹은 전문가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할 수 있다.



## 제 V 장

---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심층면접

1. 조사대상 및 방법
2. 심층면접 결과
3. 논의 및 시사점



## 제 V 장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심층면접<sup>12)</sup>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경험 및 생활실태 파악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지원체계 및 지원서비스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험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정폭력의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며, 또 피해 아동 청소년의 부모이기도 한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그들의 가정폭력 경험 및 가정폭력 관련 지원 경험, 시설입소 경험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1. 조사 대상 및 방법

#### 1)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및 피해 여성 대상 심층면접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경험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입소하고 있는 가정폭력피해여성과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을 의도적으로 표집하였다. 서울, 경기도 소재 가정폭력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일시쉼터에 연구 목적을 밝히고 쉼터의 현장전문가를 통해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14명의 어머니와 11명의 아동·청소년들을 만나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동의서를 받았다. 특히 면접 대상인 아동·청소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를 받은 후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대상자에게는 반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참여자 현황은 <표 V-1>과 <표 V-2>에 제시되어 있다.

12) 본 장은 송미경(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이 집필하였음.

표 V-1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

면접대상	연령	성별	교급	최초폭력발생시기	폭력발생빈도	폭력유형	폭력장소	폭력상황	주행위자	주피해자	피신경험	행위자상태
A01	13	여	초등	7세 경		정서			아버지	본인	있음 친구집, 신고	음주 또는 정상
A02	9	여	초등	6-7세 정도 부터	자주	정서	집	단 둘이 있을 때, 부부폭력, 자녀폭력	아버지	어머니	있음 어머니와 가출 한번	음주
A03	11	남	초등		2달에 한번	신체, 정서	집	다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부간 폭력, 자녀폭력	아버지	어머니, 형인	없음	정상
A04	13	남	초등		1년에 1-2번	신체, 정서		누가 있든 상관없음, 부부폭력, 자녀폭력	아버지	어머니, 본인 동생	있음 어머니와 피신 경험 2번	정상
A05	12	여	초등	초3 (2년 전)	1년에 4-5번	신체, 정서	집	부모님 단 둘이 있을 때 부부폭력	아버지	어머니	있음	스트 레스
A7	15	여	중등	어릴 때부터	술 마실 때마다	신체		다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부폭력, 자녀폭력	아버지	본인	있음 옆집, 슈퍼, 할머니댁	음주
A09	12	여	초등		여러 번		집					
A10	13	여	초등	초3	주 2-3회	신체, 정서	집		아버지	어머니	없음	음주
A11	13	여	초등		한 달에 2-3번	정서(언 어)	집	다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부폭력, 자녀폭력	아버지	어머니, 본인	있음 여러번	음주
A12	9	남	초등		주 1-2번	신체, 정서	집	다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부폭력, 자녀폭력	아버지	어머니	있음 가출	음주
A16	15	여	중등	10년 전		정서	집	누가 있든 상관없음, 부부폭력	아버지	어머니	있음	음주 또는 정상

표 V-2 가정폭력 피해 여성 심층면접 대상자 현황

면접대상	연령	성별	최종학력	최초폭력발생시기	폭력발생빈도	폭력유형	폭력장소	폭력 상황	주행위자	주피해자	피신경험	행위자 상태
M01	36	여	고졸	출산 후 (13년 전)	일주일에 2회	신체	집	누가 있든 상관없음. 부부폭력, 자녀폭력	남편	어머니, 자녀	있음 놀이터, 식당, 보호시설	정상
M02	44	여	고졸	결혼 전부터		신체, 정서	집	부부폭력, 자녀폭력	남편	본인, 자녀	있음 (2012년도)	음주, 도박
M03	53	여	중졸	10년 전	일주일에 2번	신체	집	누가 있든 상관없음. 부부폭력	남편	본인	있음 동생집	정상
M04	39	여	대졸			가끔 신체, 정서	집	다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부폭력, 자녀폭력	남편	본인	있음 친구네 일주일	음주
M05	38	여	고졸	결혼 후 3년 후	1주일에 두세번	신체, 정서, 성	집	단들이 또는 다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부간 폭력, 자녀폭력	남편	본인, 자녀	있음 혼자 가출	정상
M06		여	대졸	2010년	월1회	신체, 성	집	다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부폭력	동거남	본인	있음	음주
M07	40	여	대졸	2010년	연3-4회	신체, 정서	집	다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부폭력, 자녀폭력	남편	본인, 자녀	있음	정상
M08	46	여	대학원졸		2-3일에 한번	신체, 정서, 경제	집	단들이 있을 때 부부폭력	남편	본인	2번 있음	분노한 상태
M10	44	여	고졸	결혼 전부터			집	누가 있든 상관없음. 부부폭력, 자녀폭력	남편	본인, 자녀	있음 찜질방, 놀이터, 보호시설	음주, 도박, 우울증, 의처증
M11	43	여	고졸	아이 낳고 나서	일주일에 2번	신체, 정서, 성	집	다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부폭력, 자녀폭력	아버지	본인, 자녀	있음 자녀와 찜질방으로 피신	음주, 의처증
M12	31	여	중졸	결혼 1달 후	1달에 1-2번	신체, 정서, 성, 재산	집	다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부간 폭력	남편	본인, 자녀 (언어폭력)	있음 보호시설 한번	약물
M13	39	여	고졸	큰애 4세 (본인)	3개월에 한번	신체, 성, 재산	집	다른 가족이 보는	남편	본인	있음 친정으로 피신	음주, 다혈질

면접 대상	연령	성별	최종 학력	최초 폭력 발생 시기	폭력 발생 빈도	폭력 유형	폭력 장소	폭력 상황	주 행위자	주 피해자	피신경험	행위자 상태
				24세)				앞에서, 부부간 폭력, 자녀폭력				
M14	46	여	대졸	동거 시작한 뒤	술 마실 때마다 (1년 내내 술마심)	신체, 재산, 성	집	단 둘이 있을 때 부부폭력, 자녀폭력	남편	본인, 자녀	있음 지방으로 피신	음주
M18	46	여	고졸	20년전	일 년에 1-2번	정서, 재산	집	다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부폭력, 자녀폭력	남편	본인	있음	음주

인터뷰 내용을 얻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팀의 합의를 거쳐 반구조화된 면접용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면접은 연구자들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연구보조원 4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자와 연구보조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실시하였고, 개별 면접시간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였다. 수집된 면접자료는 질적분석과정인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후 CQR)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근거이론과 집중적 과정분석을 결합하여 Hill 등(1997, 2005)이 개발한 CQR은 연구대상의 경험내용을 범주화하고 그 경험의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양미진, 이영희, 2006,에서 재인용). 특히 CQR은 다수의 연구자가 분석팀을 구성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합의를 도달하는 과정을 거치며 각 사례간의 대표성을 검토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질적연구방법이 갖는 한계 즉, 객관성 결여와 엄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지승희, 2001). 이러한 특성을 지녔기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이론의 구성요소에 제한받지 않고 피면접자의 경험을 통하여 현상을 탐색하는 동시에 한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CQR을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5명의 합의팀과 1명의 감수자로 구성되었다. 합의팀은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가진 상담심리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1명과 상담관련 박사과정 재학생 4명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균 상담경력은 15년이다. 감수자는 상담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갖춘, 상담경험과 연구경력을 지닌 교수를 선정하였다. 감수자는 또한 본 연구 이전에 합의적

질적분석 방법의 연구에서 합의팀으로 세 번, 감수팀으로 세 번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다.

합의팀은 가정폭력피해여성 및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사례 전체의 축어록마다 면접용 질문을 기초로 하여 같은 주제별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 후, 각각의 사례 2개씩을 함께 읽고 영역을 만든 다음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영역을 결정하였다. 이후 나머지 사례 모두 같은 절차를 거쳐 합의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가정폭력피해여성과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의 주제 영역이 결정되었고, 핵심개념을 구성한 후 감수자로부터 감수를 받았다. 감수에서 지적된 내용은 합의팀의 토의를 거쳐 수정하거나 기존의 결정을 유지하였다. 교차분석 후에는 교차분석에서 제외하였던 2개의 사례를 검토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안정성을 점검하였다.

본 연구는 Hill 등(2005)의 제안을 따라, 가정폭력피해여성은 14사례의 모든 사례 혹은 한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general)', 7~12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전형적(typical)' 3~6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변동적(variant)', 2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드문(rare)' 라고 표시하였다. 각 영역과 범주에서 1사례인 경우는 모두 제외하였다.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11사례의 모든 사례 혹은 한 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general)', 5~9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전형적(typical)' 2~4사례에 나타나는 것은 '변동적(variant)' 이라고 표시하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역시 각 영역과 범주에서 1사례인 경우는 모두 제외하였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사용한 질문영역은 <표 V-3>과 <표 V-4>와 같다.

**표 V-3**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심층면접 질문 영역

질문영역	상세질문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경험은 어떠한가	1) 가정폭력의 주 행위자인 아버지에게 드는 생각과 느낌은 무엇입니까? 2) 피해자인 어머니에 대해 드는 생각과 느낌은 무엇입니까? 3) 가정폭력이 발생한 후 자신에게 드는 생각과 감정은 무엇이었습니다? 4) 가정폭력으로 인해 나타난 자신의 생활태도 상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5) 과거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폭력이 일어난 초기 시기)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가정폭력 관련하여 제공받은 지원 경험은 어떠한가	1) 처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 처음 도움을 받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 처음 도움을 요청하신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 어떤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3)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4) 전문기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습니까?

	5)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6) 특히,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입소 중인 시설에서의 경험은 어떠한가	1) 현재 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한 느낌은 어떠합니까? -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3) 시설 종사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4) 퇴소 이후 계획은 어떠합니까?

표 V-4 가정폭력피해 어머니 심층면접 질문 영역

질문영역	상세질문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경험은 어떠한가	1) 가정폭력으로 인해 나타난 자신의 생활태도 상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2) 자녀들이 피해자인 어머니에 대해 보이는 태도나 감정은 어떠한 것 같습니다? 3) 과거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폭력이 일어난 초기 시기)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까?
가정폭력 관련하여 제공받은 지원 경험은 어떠한가	1) 처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 처음 도움을 받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 처음 도움을 요청하신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 어떤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3)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4) 전문기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습니까? 5)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6) 특히,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입소 중인 시설에서의 경험은 어떠한가	1) 현재 입소하고 있는 시설에 오기까지의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 절차상의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 행위자(남편)의 방해는 없었습니까? - 기타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2) 현재 입소 중인 시설에서 제공받고 있는 지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3)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 2)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

본 연구에서는 쉼터 현장 전문가의 관점에서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경험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현행 가정폭력 지원체계 및 지원서비스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연구진들의 논의를 통해 질문사항들을 작성하였는데, 질문의 형태는 Krueger & Casey(2000)의 질문방식과 과정을 참고하였다. 이후, 관련전문가 1인에게 감수를 받아 쉼터의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서울, 경기도 소재 가정폭력쉼터(단기, 중장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일시쉼터 및 위기개입 팀, 아동보호전문기관 총 20기관을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여 총 21명에게 최종 동의를 받았으며 인터뷰에 대한 소정의 답례비를 지급하였다. 포커스 그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관의 유형 및 직책을 고려하여 총 5개의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였다. 토의에 앞서 도입단계로 참여자들은 각자 자신의 관련 경력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부분은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소개 질문」으로 시작하였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며 「주요 질문」을 이어나갔다. 관련 주제에 대한 토의가 마무리되었을 때, 도출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한 「마무리 질문」으로 인터뷰를 마감했다.

참여자 현황은 <표 V-5>에 제시되어 있다.

**표 V-5**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자 현황

기관유형	대상자	직책	경력
가정폭력 쉼터	P01	원장	-
	P02		-
	P03		-
	P04		-
	P05	현장전문가 (상담 및 생활지도)	가폭쉼터 6년, 성매매피해쉼터 2년
	P06		자원봉사5년, 쉼터3년
	P07	현장전문가 (상담 및 생활지도)	쉼터 5년, 상담소 1년
	P08		쉼터 3년반, 상담 7~8년
	P09		쉼터 1년
	P10		쉼터 2년
	P11		쉼터 5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P12	상담원	위기개입팀 3~4년, 일시쉼터 3년
	P13	상담원	위기개입팀 8년
	P14	팀장	위기개입팀 4년
	P15	상담원	위지지원팀 2년, 위스쿨
아동보호 전문기관	P16	상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3년
	P17		아동보호전문기관 8년
	P18		아동보호전문기관 2년4개월, 상담치료센터 2년 6개월, 그룹홈 8개월
	P19		아동보호전문기관 3년 9개월
	P20	팀장	아동보호전문기관 8년
	P21	상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3년

현장전문가에게 사용한 질문영역은 다음과 같다.

표 V-6 현장전문가 심층면접 질문 영역

질문영역	상세질문
도입질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OO기관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었고 어떤 일을 하셨나요?</li> <li>2. OO기관에서 아동·청소년들과는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집니까?</li> <li>3. OO기관에 입소한 청소년들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li> </ol>
주질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행위자인 아버지에게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은 어떠한가요?</li> <li>2.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은 어떠한가요?</li> <li>3.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이 가정폭력을 당한 자신에게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은 어떠한가요?</li> <li>4.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에게 어떠한 생활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인식하십니까?</li> <li>5. 폭력 발생 직후 피해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li> <li>6. 피해자들이 처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는 계기는 무엇입니까?</li> <li>7. 피해자들이 처음 도움을 받게 되는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li> <li>8. 피해자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li> <li>9. 피해자들이 현재 입소 중인 시설에서의 경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li> <li>10.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li> <li>11. 시설종사자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li> <li>13. 피해자들은 대체로 가정으로 복귀예정입니까? 만약 아닌 경우, 이후 계획은 어떠한가요?</li> </ol>
마무리 질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재 귀 시설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아동·청소년)을 위한 어떠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까?</li> <li>2. 현장전문가인 여러분들은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부의 지원체제나 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3. 특히,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4.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li> </ol>

## 2. 심층면접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면접내용을 통하여 그들의 가정폭력 경험 및 가정폭력 관련 지원 경험, 시설에서의 생활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결과

#### (1)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험

표 V-7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험 영역

영역	범주	응답빈도
행위자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	1) 불쌍하기도 하고 미움	변동적(4)
	2) 무서움	변동적(3)
	3) 화나고 싫음	전형적(7)
어머니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	1) 미안함	변동적(3)
	2) 둘 다 싫음	변동적(3)
자신에게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	1) 엄마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후회됨	변동적(3)
	2) 자는 척하고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비열하다고 느꼈음	변동적(2)
	2) 불쌍함	변동적(4)
생활태도에 대한 변화	1) 뭔가 생각이 많아짐	변동적(2)
	2) 나약해지고 어려짐	변동적(4)
	3) 아빠를 자꾸 피하게 됨	변동적(2)
	4) 아빠가 시키는대로 함	변동적(3)
	5) 억지로 웃음	변동적(2)
	6) 그냥 화를 많이 냄	전형적(6)
폭력발생직후 가장 필요한 도움	1) 병원 치료	변동적(3)
	2) 아빠를 설득하고 말려주는 것	전형적(7)
	3) 가해자 피해자 분리	변동적(2)
	4) 경찰의 개입	전형적(7)

① 가정폭력의 주 행위자인 아버지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

가정폭력의 주 행위자인 아버지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이 어떠한가에 대해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한 대답을 유목화해보면, 분노와 미움만을 느끼는(전형적) 아동 청소년들과, 분노와 미움과 함께 불쌍하다는 양가감정(변동적)을 느끼는 아동 청소년들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었다. 가해 아버지들 중에는 아내는 심하게 폭력하면서도 자녀와의 관계는 좋았던 경우가 있어서,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느끼는 아동청소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양가감정과 죄책감을 느끼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아버지가 부끄럽다고 보고한 청소년도 있었는데, 이는 자신이 기대하는 아버지 상에서 어긋나는, 어른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내 아버지임이 부끄럽다는 의미로 가해자인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피해아동 청소년의 자존감과 연결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가. 불쌍하기도 하고 미움

- A01: 아빠가 불쌍하기도 하고 미웠어요. 아빠의 아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폭력을 했었어요.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 불쌍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 것을 집에 와서 저희들한테 묻다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 A08: 아빠가요. 미우면서 아빠가 너무 좋은데, 아빠가 미워졌어요.
- A08: 아빠가 좀 불쌍한데..

### 나. 무서움

- A01: 싫어요. 싫고, 또다시 발생할까봐 무서워요.
- A03: 아빠가 무섭고 괴로웠어요.
- A07: 술을 마신 아빠를 보면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무서워가지고... 무섭고 두려워서...
- A07: 진짜 무서워요. 그냥 아빠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혼자 막 불안해요. 아빠가 또 날 때릴까봐.
- A09: 아빠 무서워요. 아빠 싫어요. 불안하다고나 할까?

### 다. 화나고 싫음

- A01: 뭔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나쁠 때가 더 많아서 (음) 싫어요.
- A04: 감정은 뭐 화난다? 나 혼자서 이려고 사나? 다른 가정은 어떻게 사나?
- A07: 부끄러웠어요 그냥 아빠가. 그러면 안됐었는데, 내 아빠가 왜 내 아빠야 이런식으로 됐었고, 맨날 미안하다 한 마디면 끝내니까 나도 그렇게 끝내지니까 그게 싫었고, 아빠도 싫었고

## ② 피해자인 어머니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

아버지의 폭력의 피해자인 어머니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은 주로 미안함이었다. 피해아동청소년들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무언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미안함이 매우 컸으며 또한, 가해자인 아버지나 피해자인 어머니 둘 다, 싫다고 보고한 아동청소년들은 그들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이 매우 중요했는데, 남들과 다르게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억울함, 미움의 감정이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녀가 피해자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생각과는 매우 다른 결과였다.

#### 가. 미안함

A05: 그냥... 엄마가 다치면 안 되는데... 아... 엄마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안됐... 안됐다  
그런 느낌.

A08: 엄마한테 미안하고...

#### 나. 둘 다 싫음

A07: 지금은 둘 다 싫고 두렵고. 차라리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

### ③ 가정폭력이 발생한 후 자신에게 드는 생각과 감정

가정폭력을 경험한 후, 자신에게 드는 생각과 감정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대해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엄마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무서워서 숨기만 한 자신의 행동이 후회스럽고(변동적), 이러한 자신을 비열하다고 생각하였다(변동적). 또한 이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불쌍하다(변동적)는 응답도 있었다. 그 외에 아버지와 같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한편으로는 자신도 아버지처럼 될까봐 두렵고 무섭다. 또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 가. 엄마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후회감

A01: 막 엄마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후회됐다? 그랬어요. (중략) 지금은...  
앞으로 보호해줄 생각이예요.

A04: 저 자신에게요? 어... 후회되죠. 똑같은 게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죠. 나는 왜 실천을 못  
하나?

나. 자는 척하고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비열하다고 느꼈음

A08: 저 혼자 무서워서 자는 척하고 누굴 도와주지 않아서 제가 비열해 보였어요.

A10: 내가 어떻게 판단할지 잘 정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할까? 아니면 그냥 자는 척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겁한 거죠. 창피하고.

다. 불쌍함

A05: 여기서 살기 싫다. 좀 약간 불쌍하고, 내가 불쌍하고, 왜 이런데서 살까...

A05: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좀 힘들어 보이고 그랬어요.

A07: 음... 이러다 죽는 거 아닌지, 그냥 이렇게 맞으면서도 아빠랑 살려고 그러고, 아빠를 이해하려고 하는 제가 이해가 안됐고 불쌍하고, 왜 그런지...

#### ④ 가정폭력으로 인해 나타난 자신의 생활태도 상의 변화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들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후 나타난 자신의 생활태도 상의 변화로 '예전과 달리 나약해지고 마음이 여려짐'(변동적), '그냥 화를 많이 냄'(변동적), '그때의 상황을 자꾸 곱씹어 생각하며 생각이 많아짐'(변동적), '아버지를 자꾸 피하게 됨'(변동적),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됨'(변동적)등으로 응답하였다. 그 외에는 '감정이 없어짐', '눈물이 많아짐', 등이 있었다. 다시 말해, 분노나 우울감이 다소 많아지고 가해자인 아버지를 피하거나 아버지에게 순종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 생각이 많아짐

A01: 되게 활발해졌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음... 뭔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생각을 더 생각... 머릿속에서 뭔가 생각하고서 행동해야 한다는...

A04: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안 그러면 불편해가지고 잠을 못 자거든요.

A09: 맞고 나서 최대한 떨쳐내려고 하니깐 감정은 잘 모르겠고 기억하면 자꾸 후회가 되니까 근데 자꾸 생각하게 되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 나. 나약해지고 어려워짐

A08: 옛날에는 제가 마음이 강했거든요. 근데요. 자꾸자꾸 어려워져요.

A08: 쓸데없고 사소한 괴롭힘을 당해, 쓸데없고 사소한 장난 같은 거에 울고 그랬어요. 힘든 일은 더욱더 그래요.

A07: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많아졌어요.

## 다. 아빠를 자꾸 피하게 됨

A05: 아빠를... 아빠를 피하... 피해서 살기 위해서.

## 라.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함

A05: 좀... 아빠 눈치 보고 맨날 그러니까... 맨날 눈치 보고 계속 빨리 빨리 움직이고 맨날 그래야 되니까 약간 힘들고 그런 것 같아서.

## 마. 억지로 웃음

A07: 나 행복한데... 이러면서 웃고, 아무렇지 않아... 이러구 마냥 웃고, 다 괜찮아 기분 좋은데... 이러면서 억지로 제 감정을 숨겼어요. 그리고 그냥 웃어요.

## 바. 그냥 화를 많이 냄

A05: 그냥 화가 자꾸 나고 그러니까 화내고...

## ⑤ 폭력발생 직후 가장 필요한 도움

폭력을 당한 직후 혹은 폭력 초기에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대답을 분석해보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경찰의

개입(전형적)이었다. 아동 청소년들은 법을 수호하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기 때문에 폭력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누구든 가해자인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 상황을 알려주는 것(전형적)이라는 의견이었는데. 이는 어머니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행동을 주변에서 알려주는 것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었다. 이것 외에도 다친 어머니를 위한 병원치료(변동적), 가해자인 아버지와 분리(변동적)등이 있었다.

#### 가. 병원치료

A01: 뭔가 엄마가 다쳤을 때는 (응) 병원에 빨리 갈 수 있는...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 나. 아빠를 설득하고 알려주는 것

A03: 아빠가 저를 때리지 않게 도와줬으면...

A03: 어... 어... 그냥 아빠가... 아빠가 저희 안 때리게...

A08: 아빠를 설득해주고 싸움을 알려주면 좋겠어요.

A09: 일단은 아빠를 밖으로 데려가서 좀 막아야죠. 말려야죠.

#### 다. 가해자와 분리

A04: 서로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아빠랑 떨어지게 해주는 것... 우리를 잘 보호해주어야 하니까요.

#### 라. 경찰의 개입

A07: 경찰아저씨. 왜냐하면 경찰아저씨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거 같아요.

#### (2) 가정폭력 관련하여 지원받은 경험

표 V-8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경험 영역

영역	범주	응답빈도
전문기관에 도움요청 계기	어머니를 따라옴	일반적(11)
도움을 받게된 경로	어딘지 잘 기억이 안남	전형적(6)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에 대해 알고있는 정도	1) 112	변동적(2)
	2) 배우지 않아서 모름	전형적(7)
지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1) 좋음	전형적(5)
	2) 폭력피해를 안받게 해주는 것	전형적(5)
정부의 지원체계나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	1) 주택지원	전형적(6)
	2) 쉼터를 많이 만들어주었으면	변동적(3)
	3) 경찰의 보호와 아버지 처벌	변동적(3)
	4) 잘 모르겠음	변동적(2)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대한 생각	1) 충분한 영양섭취	변동적(2)
	2) 교육	전형적(6)
	3) 쉴 곳 마련	전형적(8)
	4) 경찰이 아버지의 폭력을 막아줌	변동적(2)

① 처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

가정피해아동 청소년이 처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는 자신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어머니를 따라 오게 된 것(일반적)으로 드러났다. 비록 욕설을 듣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해서 힘든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아직 미성년자로 집을 나가서 생활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주로 어머니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 어머니를 따라나옴

A08: 엄마랑 따라왔어요.

A09: 엄마 따라서요.

A04: 더 이상 대답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저랑 엄마랑 똑같이 느꼈어요. 엄마가 저한테 먼저 물어보셨어요.

A03: 여기, 이곳으로 오게 된 계기요? 어... 그 때 엄마가 엄마도 욕설 받는 것 싫어했고, 엄마가 집 나갈 때 저희도 같이 집 나가기로 했고, 저희도 있기 싫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 ② 도움을 받게 된 경로

처음 도움을 요청한 기관이 어떤 기관이며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딘지 잘 기억이 안남(전형적)’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이 역시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이끌어내셨음을 보여주고 있다.

A03: 그 때, 그... 어딘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 구청이었어요.

A04: 시 구청 기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오래 되가지고

A05: 엄마가 신고를 해서 경찰분이 그 쉼터로 안전한 곳으로 일단 가고 또 어떤 여기 쉼터 선생님한테 전화해 드려가지고 그곳으로 가라고 말해주셔서 오게 됐어요.

A05: 의료보험. 음... 또... 음... 잘 생각이 안...

## ③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는 ‘112 신고(변동적)’ 등으로 매우 한정되고, 올바르게 않은 정보였으며 심지어 이조차도 ‘모르겠다’(전형적)는 청소년들이 더 많았다. 이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대처교육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함을 시사한다.

A01: 막 무료로 연극 같은 거를 볼 수 있고, 막 밥도, 그런 것도 무료로 먹을 수 있고, 그런거...

A03: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 배웠어요.

A08: (오래 고민) 112, 법원. 폭력을 하면 법원가서 처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A09: 없는데요.

## ④ 전문기관의 지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피해아동 청소년들이 전문기관에서 받은 지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받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음(전형적), ‘폭력피해를 보지 않고 안정적으로 안전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전형적) 등으로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 가. 좋음

A01: 음... 막 편안하게 설 수 있는 거... 그리고 의식주. 그런 거...

A03: 음... 그냥 받은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어요.

A04: 그렇게 좋은 건 많은데 그렇게 안 좋은 건 없는 거 같아요.

A05: 아쉬운 점은 없는데...

#### 나. 폭력피해를 안 받게 해주는 것

A01: 폭력 같은 피해를 보지 않고 되게 안정적이게 생활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A03: 아빠한테 맞지 않아도 된다는...

A04: 좀 더 안정적인. 안전한 생활. 다른 사람들이 여기 못 들어오잖아요.

A05: 보호받는 거... 안정되는 거 같은 느낌.

#### ⑤ 정부의 지원체계나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현행 지원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청소년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잘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응답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가해자에 대한 확실하고 강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안전(전형적), ‘쉼터의 증설’(전형적), ‘주택지원(전형적)’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가 우선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수의 피해아동청소년은 이것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고 잘 모르겠다(변동적)는 응답을 하고 있었다.

### 가. 주택지원

A01: 뭔가 거기 쉼터 같은데서 나가면 집을 구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권을 주는 거 같은데요.

A01: 임대 아파트나 그런데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되게 막 힘들게 막 뭐하고서 뭐하고서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그런 거를 막 그런 거를 이야기 해주고서 그걸 알아보고서 그런 아파트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

A04: 좀 더 안정된 생활이요. 주택 먼저 살 곳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나머지는 돈을 벌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되니깐요.

### 나. 쉼터를 많이 만들어주었으면

A07: 여기 쉼터는 장기 시설이 아니고 단기시설로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진짜 자기 피해자 아이가 가게 되는 경우에 혹시 또 가정폭력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불쌍한 거잖아요. 상담치료사 선생님들도 확신을 못하겠으면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장기 시설을 보내서 안정을 찾거나 부모님도 교육같은 걸 다 받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찾고 아이도 그랬을 때 집에 보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저도 지금 이게 제일 불안하거든요.

A09: 일단 쉼터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다. 경찰의 보호와 아버지 처벌

A04: 아버지에 대해 더 심한 처벌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A05: 경찰이 좀... 경찰이 잘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A05: 이렇게 좀 경찰이 어... 그런 사람의 그 사람을... 그... 직접 그...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약간 도와주는 것.

A07: 경찰아저씨가 음. 자주 자주 들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바쁘시겠지만, 퇴소한 아동이 집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거나 위험한 상황이라고 살짝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에는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적어도 한두번 정도는 들르면서 그것을 힘드셔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A09: 법을... 벌금 낸다거나...

A09: 경찰이요.

⑥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

가정폭력피해 지원 중, 특히 피해아동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쉼 곳 마련(전형적)’, ‘교육(전형적)’, ‘충분한 영양섭취(변동적)’, ‘경찰이 아버지의 폭력을 막아줌(변동적)’ 등 다양했다. 특별히 눈 여겨 볼 응답 중 하나는 비록 한 사례에서 나타나, 분석표에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경찰과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전을 살펴봐주기를 바라고, 가해자가 변화했고, 그 가정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아동 청소년들을 다시 가정에 복귀시키는 것은 하지 말아달라는 것으로 이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불안한 피해아동청소년들의 정서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 A08: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상담자를 보내주면... (누가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 자원봉사자가요.
- A09: (아이들을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섭취, 쉼 곳, 교육...
- A03: 경찰이요. (경찰?) 음. 믿음직스러워서요. 저를 확실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도와준다는 의미는?) 음...아빠가 저를 때리지 않게 도와주지 않을까...
- A04: 경찰이죠. 경찰은 최대한 저희를 위해 노력하니깐... 아버지에 대해 더 심한 처벌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 A05: 심터를 짓게 하는 거... 그리고 잠잘 곳 아니면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곳 마련해주는 것. 그냥 계속 이렇게 도와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좀 보호할 수 있게 해주고, 피할 수 있게 아빠를 힘든 사람들을 피할 수 있게...
- A05: 상담을 받아서 그... 그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거나 좀 마음 가라앉게 하게 상담하는 거.
- A05: 경찰이 좀... 경찰이 잘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좀 경찰이 어... 그런 사람의 그 사람을... 그... 직접 그...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약간 도와주는 것.

(3) 현재 입소중인 시설에서의 경험

**표 V-9**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현재 입소 중인 시설에서의 경험 영역

영역	범주	응답빈도
현재 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한 생각	1) 좋음	전형적(6)
	2) 불편함	전형적(8)

영역	범주	응답빈도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	1) 제멋대로인 아이들 때문에 짜증남	변동적(2)
	2) 잘 지내는 편	변동적(3)
시설 종사자와의 관계	가끔은 무섭기도 하지만 좋음	전형적(6)
	잘 모르겠음	전형적(5)
향후 계획 및 생각	엄마가 정할 것임	전형적(9)
	잘 모르겠음	변동적(2)

### ① 현 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한 느낌

현재 거주하는 시설에서의 생활이 어떠하냐는 질문에 대해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응답은 크게 '좋음'(전형적)과 '불편함'(전형적)으로 구분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잘해주는 것과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어 편안함 등이 시설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이유이며, 규칙이 있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동들이 있는 점 등이 시설의 불편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기관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전형적)', '불편함도 있으니까 중간에서 조금 넘게 만족(변동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 가. 좋음

A05: 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A08: 살게 해줬어요. 살집.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A11: 저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 나. 불편함

A01: 막 공부할 때, 거기에 이해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어린애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시끄럽게 하고 노코도 안하고 문을 열고 들어온다거나 그런 게... 그런 게 그랬어요...

A05: TV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막 보니까 좀 못 볼 때도 있고 그래서 좀... 그리고 방 안에서 음료수 같은 거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친구를 못 데려오고...

A06: 공동생활이라서 불편해가지고

## ②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함께 사는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들의 답변을 분석해보면, 어린 아이들이 제 멋대로 공부 방해하여 짜증나고 싫지만(변동적) 서로 거의 잘 지내는 편(변동적)이라고 보고하였다.

### 가. 짜증남

A01: 뭔가 그런 막 아까 말했듯이 어린 아이들이 문 열고 들어오고 그러는 거 짜증나요. 불편한 점도 있으니까 최고는 아닌 것 같아요.

A07: 지금 있는 애들 나 싫어할 거예요. 나는 선생님들 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 나. 잘 지내는 편

A10: 네... 이모들하고도 많이 친해졌고...

A05: 이모들하고도 잘 지내고, 약간 친구하고 다룰 때도 있는데 그래도 거의 다 잘 지내고 있어요.

## ③ 시설 종사자들과의 관계

시설종사자들과의 관계에서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시설 종사자들을 무섭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잘 지내고 있는 편이었다.

### 가. 가끔은 무섭기도 하지만 좋음

A08: 가끔은 무섭기도 한데, 친절해요.

A07: 거기 시설에서 같이 계시주는 선생님은 학교에서 안 좋은 일 있었으면 누구냐고 찾아간다고 하면서 지켜주시고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한다고 해주시고... 그런 점들이 좋아요.

## ④ 퇴소 이후의 계획

시설 퇴소 후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은 '엄마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 집에서 지금처럼 살 것 같음', '엄마가 불편하니까 집으로 갈순 없다' 등으로 어머니의 의견을 따르는 경향(전형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 엄마가 정할 것임

A01: 그런 점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엄마가 집 알아보고 있어가지고 알아보면 그 집에서 학교..

지금처럼 생활할 것 같아요.

A02: 몰라요. 엄마가 말해주셔야 하는데 몰라요.

A11: 여기서 주거지 같은 것을 줘요. 엄마가 거기서 산다고...

A05: 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정하는 거라서...

A08: 집으로 갈 순 없죠. 엄마가 불편해하니까.

### 결 과 요약

- 아동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은 다음과 같음.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행위자에 대해 가지는 감정은 화나고 싫으며, 무섭기도 하지만, 불쌍하기도 하고 미움.
  - 가정폭력 피해자인 어머니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싫다는 감정을 보임.
  - 자신에 대해서는 불쌍하고, 엄마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후회되기도 하며, 자는 척하고 도와주지 못해서 자신이 비열하다고 느껴지는 등의 감정을 가짐.
  - 가정폭력 피해 경험 후 그냥 화를 많이 내고, 나약하고 어려웠다는 느낌이 들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함, 뭔가 생각이 많아짐, 아빠를 자꾸 피하게 됨, 억지로 웃음 등의 변화가 나타남.
  - 가정폭력 발생 직후에는 아빠를 설득하고 말려주는 것, 경찰의 개입, 병원치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것 등의 도움이 필요함.
-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경험은 다음과 같음.
  - 전문기관에 오게 된 것은 어머니를 따라 오게 되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 온 것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응답이 일반적임.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 모른다는 응답이 전형적이고, 112 정도를 알고 있음.
  - 지원에 대해서는 폭력피해를 안 받게 해준다는 점과 그로 인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정부의 지원체계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주택지원, 쉼터 확충, 경찰의 보호와 아버지 처벌 등을 요구하였으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있음.
  -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실 곳 마련, 교육, 충분한 영양섭취, 경찰이 아버지의 폭력을 막아주길 요구함.

- 입소 중인 시설에 대한 경험은 다음과 같음.
  - 시설 생활은 불편하기도 하고 좋기도 함.
  -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는 잘 지내는 편이지만, 제멋대로인 아이들 때문에 불편하기도 함.
  - 시설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가끔 무섭기도 하지만 좋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있음.
  - 향후 계획은 엄마가 정할 것이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있음.

## 2) 가정폭력 피해 여성 대상 심층면접 결과

### (1)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경험

표 V-10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경험 영역

영역	범주	응답빈도
생활태도의 변화	1) 무기력하고 우울해짐	일반적(13)
	2) 사람을 피하게 됨	전형적(7)
	3) 집중력 저하	변동적(3)
	4) 아이들에게 보상을 받고 싶어함	드문(2)
	5) 아이들에게 거칠게 대함	드문(2)
자녀들이 모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	1) 불쌍하다고 함	전형적(9)
	2) 약하고 무능력한 사람	드문(2)
	3) 보호해주려고 함(심리적, 육체적) 힘이 되어줌	전형적(7)
폭력직후 가장 필요한 도움	1) 경찰의 개입과 확실한 처벌	일반적(13)
	2) 쉼터에 대한 정보	변동적(3)
	3) 가해자와의 분리	변동적(3)
	4) 잠시 피해있을 수 있는 곳 (쉼터 말고)	드문(2)

#### ① 가정폭력으로 인해 나타난 자신의 생활태도 상의 변화

가정폭력 이후 자신에게 나타난 생활태도 상의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피해 여성들은 무기력하고 우울해짐(일반적)을 가장 큰 변화로 여기고 있는데, 실제로 우울장애를 겪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인기피증처럼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실제 만났을 때도 눈 맞춤이나

대화를 피하게 되었다고(전형적) 보고하는데 이는 자신감의 상실에서 기인하는 것 같았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나, 집안일을 할 때도 집중하기가 어려웠고(변동적), 힘에 부치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거칠게 대하고, 내가 힘든 것을 좀 알아달라고, 아이들에게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도 생긴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드문).

#### 가. 무기력하고 우울해짐

M01: 네. 중간에 그니까 제가 한 18년을... 결혼생활 18년을 했었기 때문에 남들한테 알리지 않고 친정동생한테 하소연하고, 많이 주로 그랬죠. 친구들한테도 처음에는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정동생하고 터놓고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었고, 직장을 같이 다니던 그 언니가 또 그런 모습들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언니한테도 얘기하고, 또 요런 식으로 했었던 거 같고,, (음...) 그런 식으로,, 많이 참고 살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우울증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무기력하고 나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루에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그 한자리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머릿속은 끊임없이 생각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 끊임없이 하면서 무기력했던 거 같아요.

M08: 그냥 좀 짜증나고 그 희망이 없는 거 있죠? 그니까 조금 우울해지고 그리고 자꾸 지겹다는 생각.

M11: 기분은 늘 우울해요.

M12: 즐겁고 행복했는데, 희망이...

M12: 사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없어요.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M18: 당연히 우울해지고 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죠. 정말 아무 것도 하기 싫어지고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 나. 사람을 피하게 됨

M07: 사람들이 무서워지죠. 특히 남자들이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대화하기 싫어요.

M08: 대인관계를 잘 못해요. 왜냐면 남편이 그런 걸 싫어하니까 남편하고 똑같이 생활태도... 그런 습관이 변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자꾸 사람들 만나는 걸 기피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전화하는 것도 다 핸드폰도 이렇게 체크하고 뭔가 기분이 이상하면 너 핸드폰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다 체크해보고 어쩔 때는 전화하고 가서 확인하고 별 것도 아닌 일에 이러니까 제가 사람들 만나는 게 이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또 저도 남편한테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아무한테도 할 수가 없고, 했다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니까 대인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저도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고 좀 그렇더라고요.

M08: 그니까 사람들하고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냥 대충 거기서 인사하고 더 깊게 깊은 대화 못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왜냐면 그렇게 해봤자 남편이 또 이제 그 사람한테 피해를 가게 하니까 행동이 점점 인간답지 못하고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니까 좀 제 스스로 소외감을 점점 들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 느낌 나는... 상대방은 다정다감하게 친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먼저 그냥 선입견을 갖고 그렇게 될까봐 그 두려움에 자꾸 사람들을 피하게 되니까 근데 남편이 그랬었는데 남편 테두리 안에 제가 들어가니까 저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도 싫어했거든요. 왜 구지 저렇까 뭣 땀에 저렇까 근데 저도 지금 그렇게 똑같은 상황에 그렇게 되가는 것 같더라고요.

M11: 갑자기 뭐를 나타나는 모습이 무슨 모습이 나타나면 그 모습이 저를 죽이는 모습이 보여요. 어. 잘 때도 그렇고 자다가 머리 신경에도 왔다 갔다...

M12: 있어요. 사람이 다가오면, 얘기할 때는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물어볼 때는 그거 피하고 싶어요.

#### 다. 집중력 저하

M07: 애들한테도 제가 이제 집중을 할 수 없었고... 살림을... 만약 주부라면 제가 되게 지금 한 4개월 동안 오는 시간에 되는 거라... 짧은 시간에 살림을 하면서 그 집중도 못하고 아무 것도... 왜 내가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선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또 불안감이 엄습해오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제... 예...

M11: 많이 깜빡깜빡해요.

#### 라. 아이들에게 보상 받고 싶어함

M11: 애들한테 잘해준다고 해도 마음 같이 그게 안되니까 아빠한테 하던 거를 내가 조금 행동을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큰소리치면서 너 좀 제대로 못하잖니, 엄마 힘들다면서 애들한테 내가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심리... 생각인지... 엄마도 힘들어.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내가 애들한테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 마. 아이들에게 거칠게 대함

M11: 내가 애들한테도 잘한다고 하는데도, 아빠의 언어폭력을 당하다보니깐, 나도 모르게 애들한테 행동이 좀 거칠게 되는 게 있어요. 짜증내고 인상이 많이 안 펴지는 거죠 내가. 엄마가 얼굴이 항상 굳어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폭력 속에서 내가 얼굴이... 나는 편하고 웃고 있대지만, 그 얼굴 표정이 내가 많이 굳어져 있구나. 자식이 그걸 읽어주더라고요. OO가 특히... 그래가지고 엄마가 항상 이렇게 얼굴이 굳어져 있다고... 그 이야길 많이 해주더라고요.

### ② 자녀들이 피해자인 어머니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피해자인 어머니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피해여성들은 자녀들이 자신을 '불쌍하다'(전형적)고 생각할 것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보살펴주고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전형적)과 함께 엄마가 떠날까 두려운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 가. 불쌍하다

M06: 아이들이 제가... 그런 제가 그러고 있으면 아이들이 눈치로도 어느 정도 느껴지나봐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저를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던 날 집안이 다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일어났어요. 새벽 일찍. 그런 상황을 보고선 애들이 전부 저한테 달려와서 같이 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울고 있었는데, 아... 이런 모습을 아이들한테 안보여야 되는데 들킨거죠.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엄마 괜찮아요? 아이들이 저를 위로하고(눈물)... 일단 아이들은 제 앞에서는 씩씩하려고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엄마가 얘기하고 알고 있는 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든든하게 그렇게 먼저 얘기해줘서 너무 좋았죠. 그런 반응이 있어서 정말 너무나 다행이고 안심이었어요.

M06: 태도가 달라졌죠... 제가 이쪽으로 오면 저 있는 쪽으로 항상 저를 보호하려 하고 아이들이 그런 걸 아는 거죠.

M06: 엄마 울지 마세요. 나왔더라고요. 아이가 되려 위로하고...

M06: 엄마를 괴롭히니까... 어떤 상황의 잘잘못을 애들이 판단하겠어요? 그렇지만 자꾸 이렇게 엄마가

극도로 분노하고 그런 상황을 대충 들어보니까 본인도 '엄마 말이 맞겠다. 엄마가 이렇게 극도로 화낼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드나봐요. 그래서 휴지를 들고 온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 아니면 와서 제가 기대고 있으면 누우라고 침대로 데리고 간다든지 뭐 이런 막 저를 위해서 걱정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물도 떠다주고 막... 이럴 때...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엄마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 속상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M06: 저를 항상 보는 시선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 무슨 말을 꺼내려면 저의 환경을 보고서 했었던 것 같아요.

M08: 아이는 제가 울고 있으면 엄마가 불쌍하고 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당하고만 사는 것.

M18: 그래도 이제 성격상 아빠랑 부딪힘이 많고 그렇지만 남자 여자가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니까 엄마가 불쌍하다 왜냐면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살림을 부스든 뭐하든 하고나면 제가 울면서 치우고 그런 광경을 많이 봤으니까 심정적으로는 엄마가 안 됐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 나. 약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인식

M11: 엄마는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뭐 보기도 그렇겠죠?

M13: 음... 그냥 무능력한 엄마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큰 애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불쌍하고.

#### 다. 힘이 되어주고 보호해주려고 함

M08: 여기 나온다고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고 이제 가야겠다고. 너의 간단한 짐 싸라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엄마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 줬었고

M08: 제가 남편한테 당하고 사니까 자존감도 점점 낮아지고 자괴감도 들고 굉장히 굴욕적이고 막 그랬었는데, 항상 저희 딸은 어버이날 되면 '존경하는 엄마' 이렇게 써주는 게 고맙더라구요. 그래도... 나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큰 딸이 나를 그렇게 써줘서 요번에도 제가 대체 너네는 나한테서 뭘 배울게 있어서 그렇게 말귀를 썼나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단어라서 그냥 쓴 건가 그러고 말았는데, 그래도 항상 쓸 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 애의 속마음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물어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써 주는 딸이 있으니까 저는 힘이 나더라고요.

M14: 그 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 때 당시에는 엄마 무조건 아프고 힘들어하고 막 보호해 줘야하고 자기네가 지켜줘야 할 존재로 생각을 했었어요.

M14: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내려왔는데, 약자잖아요. 자기들이 봤을 때. 엄마 혼자 희생하는 거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가 불쌍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자기들이 도와주고 싶은데 그럴 상황이 안되니까 늘 마음 속에 그 눈빛으로 손잡아 주면서 우리 좋은 날 올 거라고 나를 많이 다독거렸던 거 같아요.

M18: 아들도 그래요.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아들도 엄마 대신 자기가 몸으로 막아준다던지 그런 행동...

### ③ 폭력발생 초기(폭력 직후)에 가장 필요한 도움

폭력이 일어난 초기에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피해 여성들의 대답은 경찰의 개입과 확실하고 강력한 처벌(일반적), 가해자와의 분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제공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폭력발생 초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별 도움을 받지 못했고, 특히 경찰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부부간의 문제라고 치부하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이 아쉽다고 보고했다.

#### 가. 경찰의 개입과 확실한 처벌

M02: 그... 경찰관이... 신고를 하잖아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싸움으로만... 이게 부부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형사 쪽으로 해서 딱 처벌을... 처음에 신고를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처음에 폭행을 당해서 112에 신고를 해서 그러면 경찰관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부부싸움, 일반적인 부부싸움이야 지금 이 상황, 이거만을 잠잠하게 하고 가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다쳤잖아요. 그게 한 두번 있었던 게 아니라 지속된 부분일텐데, 그 순간에 뭔가 진짜 고소하겠습니까 물어보거나 아니면 아우, 왜 그래요 남자는 남자한테 얘기해서, 대화해서 그냥 끝내 버릴려고 그냥 돌아가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후, 그런 거는 조금 아니다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여자가 빨개 벗고 집에서 여자가 도망을 나와도 경찰관 분들이 대하는 게 너무 이렇게 보호가 아니라 좀 아우 빨리 이거 좀 하기 싫어 귀찮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이게 가정, 민사 폭행을 당했던

거를... 일단 이거는 사람이잖아요. 배우자를 떠나서 배우자든 아니든, 누군가를 때렸다는 거는 폭력, 악이잖아요. 그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정... 뭐.. 형사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넘어가나봐요. 이런 게... 진짜 크게 머리가 깨지거나 큰 일이 되지 않는 이상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약하지 않나 그런 제도가...

M02: 그거요, 지금 말한 거... 경찰이 왔어요, 왔는데 막 내가 막 다쳐가지고 피도 흘리고 뭐도 하고 있는데 남편말만 듣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쳤는데... 아우 그만 하고 아저씨 어찌구 저찌구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하면서 그냥 말을 돌리고 그렇게 하고 가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남자가 남자에 대해 그런 게 좀 많지 않나... 어이가 없었죠... 경찰조차도 그렇게 대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저기 하겠어요. 그런거죠..

M03: 그 때 초기에 막말로 경찰을 딱 불러서 경찰이 어떻게 해결을 딱 해줬더라면 오히려 폭력이 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딱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든 간에, 폭력을 하면 당신이 처벌을... 이 아저씨는 경찰은 무서워해요. 무식해서, 경찰이 한번만 더 폭력을 행하며 조치를 취한다는

M03: 애당초 처음에 전에는 경찰을 불러도 소용이 없었겠지만, 처음에 경찰을 내가 경찰을 부를 줄 알았고 와서 요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서로 면담을 해서 이러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줬으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나도 잘못된 행동이었고, 나도 애당초 처음에 쉬쉬했던 게 잘못 했던 거 같아요. 다 알려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심어주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왔을 것이고 처음에도 경찰에 신고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잘못된 걸 인식을 했다면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된다는 생각을 심어줬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까지는 안했겠지요. 그러니까 아 모르겠어요. 제 행동이 제 처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잘못된건지 아리송하기도 하고 그게 잘못된건지 잘한건지

M10: 다 무시, 경찰도 안 믿고 이웃도 안 믿고, 그렇게 도와 달라고 외치고 막 저기 했어도 아무도 안도와 주더라고. 그래 갖구 인제는 사람들을, 저한테 그런 게 좀 생기는 거 같애. 사람들을 다 못믿겠어. 그래서 지금도 전 경찰을 되게 싫어해요. 그때, 그때 저희만 좀 도와 줬으면 좀 더 제가... 그때 너무 머리고맹이 잡히고 왜 힘들게 도망갔는데, 경찰이 왔는데도, 그런 도움이 안되니까,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 그 뒤로는 경찰이 도와준다고 해도 불신이 들어. 믿기지가 않더라고.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000에서도 경찰 불렀거든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가정 일이라고 그냥 왔다가 가. 그 뒤로는 경찰도 부르고 심지 않고요. 저희는요 아무 간섭 안 받고 애하고 둘이서 진짜 학교, 학교만 학교 비밀만 좀 지켜주구 들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 나. 쉼터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M07: 신고는 어머니들이나 대부분 들어오신 어머니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셔서 재결합했다가 다시 들어온 케이스들도 계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경찰만 생각을 해요. 근데 경찰은 또 우선 남자예요. 어머니들 생각했을 때 어 경찰 부르면 너무 커지지 않을까 경찰조차도 부르기가 무서운...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대안 방법이라는 게 경찰 말고 어떤 특수 이런 케어해줄 수 있는 좀 더 부드러운 아니면 이런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의뢰를 해서. 네. 미국 같은 선진국은 아예 딱 조사 나와서 분리를 시키는 경우잖아요... 특별한 기관이 있어서 거기에 바로 바로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조사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이 정말 꼭 있어야 되지 않나.

M13: 우선은 아 그니까. 이런 데를 알았으면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뻔 했어요. 이런 데는 제가 이리 오고 나서 알았으니까. 있었으면 미리 알았으면 진단서도 어떻게 해서든 해놓고 여기서 협의이혼이 안 되더라도 재판이혼이라도 했으면 깨끗하게 정리라도 하고 그럴 텐데 그게 안 된 게 조금...

## 다. 가해자와의 분리

M07: 제일 원하는 거는 범죄자가 우선 저희한테 금지... 우선 자기가 뭘 잘못해서 여기 들어왔는지... 뭘 잘못했는지를 인식시켜야죠 나라에서. 뭘 잘못했는지 첫 번째. 그다음은 니가 그 사람들을 아프게 했으니까 '너는 그 사람들을 만날 자격이 없다'라는 게 주어져야죠. 그래서 이 사람 어머니 애기들이 두렵지 않게 만들어야 돼... 두렵지 않아야 돼요. 우선...

M14: 접근금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2~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날 조사를 받고 바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도 집으로 가고 그러면 완전히 부딪치면 큰 일 나는 거잖아요.

## 라. 잠시 피해있을 수 있는 곳

M11: 일단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할... 애들 데리고 피해있어야 할 공간이 좀 있었으면 했었어요. 갈 데가 없었으니까... 그 때는... 찜질방 가도 돈이 없고 그러니까... 찜질방 가도 하루 갔다가 하루 나와야 되고, 애들 학교도 가야 되고, 어딜 못 갔어요. 가도 그 답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 아빠가 가봤자 니네가 어딜 가겠냐... 그런 식으로 하니까... 피난처가 있었으면... 그런 곳도 없고... 애들 데리고 맘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이런 시설을 일찍 알았으면...

M12: 쉼터 가려면 복잡하잖아요. 당장 애들 학교도 못가고, 완전히 집을 나가야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잠시 피해서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생각도하고, 준비도 하고

(2) 가정폭력 관련하여 지원받은 경험

표 V-11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경험 영역

영역	범주	응답빈도
처음 전문기관에 도움요청하게 된 계기	1) 아이들을 위해 결심함	전형적(7)
	2)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변동적(3)
	3) 남편을 떠나 새로운 내 삶을 찾고 싶었음	변동적(4)
처음 도움을 받게되는 경로	1) 경찰	전형적(9)
	2) 1366 전화신고	변동적(6)
가정폭력 피해자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1) 1366	변동적(6)
	2) 전혀 아는 것이 없었고 이번에 알게됨	전형적(7)
전문기관 지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1) 긍정적으로 느꼈음	전형적(9)
	2) 아쉬움이 있음	변동적(6)
정부의 지원체계나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	1) 자립지원 확대	전형적(7)
	2) 법, 제도 개정(거주기한 연장 포함)	일반적(13)
	3)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성 도모	변동적(3)
	4) 쉼터 규정 개선	드문(2)
	5) 쉼터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전형적(7)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지원	1) 심리치료	일반적 (14)
	2)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변동적(3)
	3) 학업에 부차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지원	전형적(7)
	4) 인생에 대한 멘토링	드문(2)

### ① 처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처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피해여성들의 답변은 '자녀들을 위함'과 '자신을 위함'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들이 커 가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한 채, 계속 스트레스 상황과 좋지 못한 환경을 제공한 것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이 함께 있어 아이들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경우(전형적)가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변동적)보다 더 컸다. 또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남편에게 대항할 수도 없었고 어떤 해결책도 나오지 않는 점(변동적)이 도움을 요청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 가. 아이들을 위해서 결심함

M05: 이제는 제가 바보처럼 맞고 살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구요. 애들도 계속 커 가는데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서 살고 싶지는 않고 내가 뭔가를 하면서 그냥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M05: 그거는 꽤 오랜 시간동안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행동을 실현화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나와서 애들하고만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시달리고 항상 폭력을 당하니까

M11: 음..도움을 요청한건 뭐..나도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애들이 힘드니까, 그래서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도움을 청했죠.

M11: 죽이든 살리든지, 하나가 쇼부를 내가지고 결단을 지고 싶은 생각 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 속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일단 애들하고 어디 가고 싶..도망가던가.. 셋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생각 밖에 안 들죠.

M13: 그니까, 큰 애가 엄마 아빠가 싸운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이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엄마 아빠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을 지키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가정을 이렇게 해서 지키려고 하는 게 필요까지 있나 애도 이렇게 상처를 받는데. 그래서 이 방법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분리하는 게 낫다 생각한 거죠.

M14: 12월 4일날도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휘청휘청 거리는데 그 상황에서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니까 차 사오라고, 삼천만원 차를 내일모래 바꿀 거니까 니가 다 알아서 책임지고 갚아라

이러니까 난 그게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안된다. 그리고 났는데, 어떻게 일이 불거져가지고 큰애가 그 사람랑 일이 됐던 거예요. 싸움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은 술이 취해가지고 여기가 큰애가 손에 멧집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코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중략) 큰 아이도 맞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전체가 막 다, 그 사람이 힘이 장사니까 술 먹으면 기운이 있는 대로 막 솟구쳐 오르거든요. 그런 상황이 돼서 내가 밖으로 뛰어나와서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경찰이 와서 나하고 애들 둘 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놈도 경찰에 따로 차 불러가고 분리 딱 시키고 그날 이후로 제가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넣어가지고 큰 애도 같이 고소장을 넣었어요.

## 나. 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M01: 음... 가족 문제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개인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 그.. 정신과 상담도 가보고, 애기 아빠랑... 그런 식으로 해서 가보고 여러 차례 했다 그랬잖아요. 솔직히 인식자체는 일상 용역 센터나 파출소에 신고하고 이런 게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정말 막바지에 다다른 어떻게 보면 정말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쉽게 다가가지 못해요. 정말 굶을 대로 굶어야만 그렇게 접근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다는 느낌보다는 아.. 그런데 신고하고 그런데 기관에 도움받는 사람은 약간에 이제 정말 그..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인식... 그런게 있었던 거 같아요.

M01: 이 방법, 저 방법 다 안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내가 자존심 내려놓고 이런 거까지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했던 거 같아요.

M03: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됐던 거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거는 내가 숨긴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내가 맞는 게 내가 때린 것도 아니고 그닥 창피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 시택이건 친정이건 다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다 알려버렸죠.

M03: 그러면서 내가 일도 추진하게 된거고. 마음의 정리를 다 하게 된 거지. 저 인간하고도 아닌 거는 아닌 거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아닌 건 아닌 거구나. 힘들게 내가 살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해서.

M08: 계기는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제 판단으로는 이거를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몰래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

## 다. 남편을 떠나 새로운 내 삶을 찾고 싶었음

M04: 맨 처음에는 경찰에 전화는 했지만 돌려보내고 그랬거든요. 가정 일이라고 돌려보내고... 마지막 여기 오기 전에는 애들 앞에서 그 난리를 치고 욕을 무슨 무슨 창녀라고 그러고... 남편 마음에 도대체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 모든 말들을 들어가면서... 아무리 술 먹었다고 해도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나를 완전 거의 쓰레기 취급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경찰서에서 이런 데가 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처음에 단기? 하룻밤 재워주는 데가 있어요. 하룻밤 자고 다시 집에 가지는 못하니까... 사실 아이들 앞에서 엄마를 완전히 깔아뭉개면서... 쓰레기 취급을 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겠다. 아파서 지난 몇 년간 내가 돌보고 했던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고마워는 하겠지만, 고마움 반... 그리고 자기가 고마워하면 내가 자기를 더 무시할거다... 그래서인지 더 당연시하면서 그 모든 돈을 제가 다 줬어요. 제가 벌면 다 줬어요. 그렇게 까지 해가면서 꾸려온 가정인데, 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더 이상 같이 살 이유도 없고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해가면서 나 혼자 애쓸 필요도 없다..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됐어요.

M12: 저는 이렇게 남편이랑 남편이 폭력 때문에 떠나고 벗어나고 싶어요. 새로운 제 삶을 만들고 싶어요. 도와주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 ② 처음 도움을 받게 되는 경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가정폭력 당시 처음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은 주로 경찰서였다(전형적). 이는 다른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긴급한 상황이라 신고를 한 이유도 있겠으나 그만큼 사회 내에서의 경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해서 보여주었던 도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피해자를 보호해주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경찰이 있는가하면 가정 문제 특히 부부싸움으로 취급하며 스스로 해결하기를 권유하는 경찰도 있어 아쉬움을 표현하며 경찰의 대응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 외에는 1366 전화(변동적), 구청, 쉼터로 직접 찾아감 등의 응답이 있었다.

#### 가. 경찰

M01: 파출소를 통해서, 1366 센터에 통화를 먼저 했어요.

M03: 경찰. 이제 응급실에 가는 것도 119를 불러주시더라고요.  
 M04: 경찰에 전할했어요.  
 M06: 경찰... 112... 도움을 받은거죠... 1366을 소개를 해주셔서...  
 M11: 경찰.  
 M14: 그러가지고 제가 맨발로 뛰어 나와 가지고 핸드폰으로 112에 전화를 했고 그 때 인제 경찰이  
 떠나가고 들어오게 됐고 분리가 되어가지고.

#### 나. 1366 전화신고

M13: 네.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아니 우선은 1366에 전화해서 연락하니까 경찰 도움 받아서 이쪽으로  
 온거죠.  
 M08: 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가정... 상담소라고 했나? 가정상담센터...  
 M10: 처음에는 가정상담소.. 가족폭력 상담소.  
 M12: 음...1366 만약에 급한 밤에라도 언제라도 급하게 나올 위험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 다. 기타

M05: 구청. OO구청에 가가지고 쉼터라도 설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좋으니깐 어디라도 알아봐  
 달라고 그랬죠.  
 M07: 여기(쉼터)예요.

### ③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1366 정도를 알고 있었고(변동적), 많은 수의 피해여성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다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알게되었다(전형적)고 대답하고 있었다. 피해여성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혹은 폭력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정보가 거의 없고 무지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가. 1366

M01: 네, 1366센터. 그 다음에는 그 센터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화상담 같은 것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으로서 임시 이제 와있을 수 있게 돼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연계해서 센터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연결해 준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정도 알고 있어요.

M04: 저도 1366이 있는 것만 알았지. 그것 말고는 몰라요.

M14: 가정 폭력에 대해서 서비스 받는 거는 저는 1366이 아직까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식적으로 알려진 그런 어떤 보호 저기라고 생각이 되구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 전혀 아는 것이 없었고 이번에 알게 됨

M02: 가정폭력피해서비스요? 저는 그런 거를 몰랐구요. 그리고 전화를 한 번도 평소에 해본적도 없었고, 경찰에 신고만 해서 그분들이 이제 와서 가정에 와서 제제 정도만 하고 그리고 가셨고, 제가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그런 기관을 찾아 본적도 없고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M05: 거의 뭐 모르고 지냈죠. 이번에 뭐 좀 알게 되었는데.

M13: 하나도 몰랐죠. 그냥 1366이 있다고만 얘기 엄마들한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M06: 가정폭력이요? 저는 1366... 이게 저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 저는 요즘 인터넷 있고 하지만 제가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1366은 그냥 신고센터가 몇 번인지 제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112로 신고하면 되겠지 라고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나라 에도 그런 게 있긴 있어 많이 들어봤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M07: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내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다들 그러실 거예요.

M11: 그냥 애들한테 비밀 보장은 기본이고 애들 학원 같은 것도 여기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거..그 정도? 그리고 식비같은 거 제공해준다는 거. 애들이 받을 수 있는 상담 같은 거. 잠 잘수 있는 제공같은 거. 기본적인 것은 상담받을 때 거의 듣고 왔거든요. 그 전에는 이런 거 그렇게 해주는 건지 몰랐죠.

M18: 그때 당시엔 몰랐지만 뭐 원스톱지원센터나 여성의 전화, 1366 그 정도...

#### ④ 전문기관의 지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전문기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피해 여성들의 응답은 '긍정적으로 느꼈음'(전형적)과 '아쉬움이 있음'(변동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다. 전문기관의

지원에서의 긍정적인 면은 ‘나를 구해준 기분이 든다’, ‘해방감과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게 해주어 자신감을 되찾게 해줌’ 등을 들 수 있겠고,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 된 이유로는 강제 분리, 비밀보장,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임을 밝혔다. 이에 반해 전문기관 지원의 아쉬운 점은 거주 기간이 너무 짧고, 퇴소 후의 보장이 안된다는 생각에 있으면서도 불안하다. 기관 내의 사무처리가 비체계적이고, 다른 기관과의 연계가 잘 안되는 것,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공해주긴 하나 그 외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이 많아 엄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으로 인해 여기서도 좌절감을 맛본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또한,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후원받기도 하는 등 존중받고 있지 못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꽤 있어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 가. 긍정적으로 느꼈음

M02: 좋은 건 이루 말 할 수 없죠. 너무 도움을 많이... 진짜 제가 그 전까지는 세상에 원망을 하고 어쩔 이렇까. 정말 원망 많이 했죠. 뭐 목숨까지도 버릴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런 기관을 통해서 아 정말 세상을 살만한 곳이구나 도움이 저를 구원해 준 기분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시설 기관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M03: 아. 여기서는. 다 도움 되요. 뭐든지 다 도움 되요. 말 한마디라도 상담도 어떤 거 내가 억울한 거 이야기를 하다보면 옆에 선생님들 듣고 도움도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런 것도 도움 많이 되고, 도움 많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도움 많이 되고. 주로 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하소연하게 되면 들어도 주고, 상대방의 하소연을 내가 들어도 주고 그런 것도 있고, 모든 면에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죠.

M06: 안전하잖아요. 신변이 우선... 안전하고... 그 사람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내 집 나오면 다 고생이잖아요. 편하기야 하겠어 그치만 마음이 안전하니까 그게 행복한 거죠. 그 예전에 받았던 그런 생활에서 벗어났다라는 해방감 같은 거죠. 이게 쉼터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내 집하고 틀리니까 애들이 처음에 와서 집에 가자 그랬어요. 그렇긴 한데 결과를 두고 보고 애들도 보고 하니깐 그런 게 안전한 그런 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걸 감수하는 거죠...

M08: 왜냐면 사교육을 지금 제가 이 안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벌이도... 왜냐면 노출 때문에 4대 보험이 있는 그런 직장을 못 다니기 때문에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바깥의 일반 그... 학원도 사실 뭐 주민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닐 수도 없지만 할 수가 없잖아요. 가르치기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학교에 있는 그런 걸 저렴한 가격으로

근데 일단 그걸 지원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제 스스로 불안감이 덜한 거죠.  
 M18: 좋은 점은 일단 제가 존중 받고 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제 자신감을 찾게 해주는 게 쟈 큰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남편하고 살면서 잘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있어요. 주로 뭐 음식이나 이런 것도 남들이 하는 건 잘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데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었던 걸 여기 와서는 시도해볼 기회도 있고 해보니까 되네 이런 거요 그런 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자신감을 찾도록 인도를 해주시는 거 같아요.

## 나. 아쉬움이 있음

M01: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온 사람들이.. “쉼터” 이라면 다 무슨 ‘최상실이 있는 줄 알았다.’ 그리고 뭐 무슨 ... 무슨 ‘환자복처럼 뭐 이런 거 입고 있는 거 아니냐.’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했지만 아무래도 좀 그런 부정적인 면의 인식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생각했던 거 보다 되게 가정집처럼 시설자체도 되게 좌우하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너무 낙후한 시설이라거나 협소하거나 이러면 자기가 있던 집들이 그래도 물론 약하게 사는 것만은 아니었잖아요. 폭력에 노출되었다고 다들 열악한 상황으로 막 있진 않잖아요. 근데 막 그런 시설로 오게 되면 정말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질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도 깨끗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정서적으로 또 아이들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아요.

M06: 도움이 되지 않은 거는 그건 생각을 안 해 봤어요.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일단 단기적인 거는 그렇긴 해요. 장기... 장기... 혼자... 훌훌단신인 여성분들 장기센터도 있는 걸로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랑은 또 멀기 때문에 일단 퇴소는 언제든지 해야 되잖아요. 장기도 일 년 이 년이지 평생은 아니니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나갔을 때 그 불안감.

M14: 일단은 이혼 진행부분도 구체적으로 저하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굉장히 이거는 민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그냥 너가 알아서 해. 너 상황 너가 제일 잘 아니니까 너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살짝은 그 부분이 아쉬웠어요. 전 그거를 3개월만에 이혼소송을 밝게 됐거든요. 다행히 국선이 빨리 선임이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7월 말 정도에 다 마무리가 될 거 같아요.

## 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나 서비스의 개선 방안에 대한 생각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현행 정부의 지원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피해 여성들은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일반적)’, ‘쉼터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전형적)’, ‘퇴소 후 자립지원의 확대(전형적)’,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성 도모(변동적)’ 등으로 응답했다. 자립지원의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는 피해여성들이 교육을 수료하고 경제생활을 하면서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쉼터 거주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과 제도의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주민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등록번호의 지급, 약자에게 너무 불리한 현행 법, 가해자에 대한 처벌, 거주기한 연장, 심리치료의 평생 지원, 남자 청소년들이 모와 분리되지 않는 것 등이고, 쉼터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의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 가. 자립지원 확대

M01: (아)... 이제 여기에서 있는 동안은 그니까 보통은 한 6개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3개월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9개월까지 최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혼이면 이혼, 뭐 이제 여러 가지 자격준비를 하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 나와 있으면 이제 넉넉하게 막 경제적으로 돈을 가지고 나온다던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립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자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이제 주거지원이라든가, 저같은 경우도 지금 나와서 살 곳을 마련을 해야 되요. 7개월째라서..이제 빨리 나가서 자립하는 거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밤에 잠이 안오는데... 그니까... 이를 테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지원된다고 하는데, 어중떠게 이제 뭐.. 집 명익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대출은 많이 꺼 있고, 뭐 실제로 여기 와 가지고 그 집을 판다 한들 전세자금 마련을 못하고, 이런 경우에 참 원래대로 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그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동네가 이제 또 시세도 높고 이러니까 차이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자립할 때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M05: 아무래도 나오게 되면 여기는 있는 기간이 일정하잖아요. 6개월이에요. 6개월인데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연장이 된다고 하지만, 그 6개월 연장하려면 그 학원을 다녀가지고 수료 교육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연장이 된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직장에 다니면 학원에 다닐 수가 없잖아요.

시간도 없을뿐더러 그게 어쨌든 연장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이 지나면 딱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정 폭력을 당하고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그냥 자그만 임대주택이라든가 자그마한 아파트를 하나라도 마련해주면 아무래도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M05: 6개월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6개월이 아니라 1년에서 1년 3개월 4개월 정도 되면 그 동안 돈도 모아놓고 밖에 나가서라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나. 법, 제도 개정

M08: 사실 이게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여자들이 쉽게 못 나오는 게 남편하고 이혼하는 게 제일 두려운 게 사회적인 선입견도 있지만 이제는 그거보다는 자립해서 실질적으로... 근데 단기가 6개월, 중장기가 1년, 그 다음에 주거지원이 2년이거든요. 3년 6개월에 자립해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주거지원 이거를 3년, 5년 연장을 해주든지 아니면 저희 일자리 같은 거...

M10: 사건이 꼭 사건을 나아 잡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연에 방지 한 거잖아요, 애하구 나하구 하두 맞았으니까 맞기 전에 방지를 한건데, 그 사건이 안났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잡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좀 저기하더라구. 경찰서 갔는데도. 저사람이 우릴 때릴라구 해서 이리 도망왔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뭐 좀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는,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그 애길 들었었거든요, 전에 왜 다른 데도 아빠가 아이를 때려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3년 징역을 받았대요. 근데 우리두 그 애길 들었으니까 경찰서에 갔는데 그게 안된다는 거예요. 사건이 안났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 그 전에 난거는 우리가 뭐 신고를 사건 났을 때 신고했어야 되는데, 지나서 하면 사건이 안난거기 땀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를 한건데, 그 미연에 방지한거를 좀 어떻게 우린 살려구 도망나온 거잖아요 맞을까봐 미리 도망나온 건데 그게 참 안되니까 꼭 맞아야지만 가야 되구 이게 좀 안타깝더라구 어떻게 좀 바로 잡아서 경찰에 신고하면 몇 년이고 잡아서 아니면 따로 떨어뜨려 분리시켜 놓던가. 경찰이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쯤 되는 거 같은데 그전에는 너무 안되더라고요. 아니 법적으로 좀 강하게 저 사람이 만약에 남자..남편한테 가가주고, 니가 가족을 이렇게 하면.. 경찰이라도 이렇게 강하게 애길 해주면 약간 겁먹을 거 아니예요. 그런 거 좀 강경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에게.

M11: 남자 같은 경우는 엄마랑 떨어져있어야 되잖아요. 여자는 같이 있어도 되지만.. 근데 그런 애들은 집에서 나온 것도 힘든데, 엄마랑 떨어져서 지 혼자 생활해야 되면 그 환경이 애가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도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M14: 4대 보험이 정말 철저하게 보호가 돼서 대통령도 열어 볼 수 없을 만큼, 이 부분은 아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 다.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성 도모

M05: 법률적으로 좀 지원해주는 부분 그런 거.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개인적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까지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M10: 제가 시설에 있을 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좀 따지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그 당한사람 얘기듣고 그냥 이혼 같은 것도 쉽게 해주면 안되냐. 정말 저희는 맞고 살았거든, 조금만 찢려도 피나고 아프고 따갑다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그거 계속 맞고 자라고 맞고 자라고 폐쇄된 공포... 조그만 집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계속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 자체도 공포거든요. 근데 그거를 맨날 증거대라 뭐대라 이혼하는데도 너무 복잡하니까 저는 그래서 나는 이혼 하고 싶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 라. 쉼터 규정 개선

M03: 사실은 여기도 정부 지원이잖아요. 정부 지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여자들이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돈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쪽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어요. 마음 놓고 돈을 벌수 있게끔. 빨리 돈을 벌어서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인제 아. 인제 돈을 버는데 대해서 귀가를 빨리 제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규칙이니까 우리가 따라 주긴 해야 되는데. 직장이 다 그 시간대에 맞는 직장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직장도 있고 저란 직업도 있고 한데 그런 쪽에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거 같고.

M08: 일자리가 중장기에 있으면 그거를 직장을 다닐 수가 있는데, 그게 진짜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프로그램 들어가 되고 저희가 몇 시까지 들어와야, 7시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 일하는 데는 4대 보험을 들어야 되고, 일단 4대 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다 안 돼요. 일을 정식으로 된 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는 집에 일찍 가야 되잖아요. 원래 8시까지가

근데 우리는 6시까지만 하고 가야 되는, 토요일 근무 안 되는 거, 이런 거 다 빼다보니까 여기 그... 그 뭐야...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여기서 지금 생각하시는 게 작업장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서 교육을 하고 여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옆에서 가까운데 있으면 쉽게 무슨 일을 때 바로 달려 갈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을지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거를 또 이렇게 도매로 팔면 수익도 생기고 그럼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이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 마. 컴퓨터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정부지원과 관련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내용과 후원금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로 인해 기관의 눈치를 보고 미안해하게 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며, 의료비나 자녀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지원액이 정해져 있음으로 인한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다.

M04: 이게 100% 지원이 아니거든요. 이게 쏠쏠하게 들어가는 게, 다들 멤버들이 공감해 해요. 자기 와서 두 달만에 50만원 썼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쓰이거든요. 별거를 산 게 아닌데.. 그리고 애들 저는 둘이나 있으니까.. 많이 쓰여요. 그리고 후원금이 만약에 빵구가 나가거나 그러면, 하다못해 교통비 같은 것 까지 저희가 해야되는 건데..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죠. 왜냐면 원장님이 구청에서 예산이 요새는 형편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식도 정말 내내 김치 밖에 없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예산이 그 때 그 때 다르니까 어쩔 때는 김치만 먹다가 어쩔 때는 소고기도 먹게 되고.. 그런 차이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분을 후원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도 힘들면 후원금 같은 게 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눈치 보이고... 피죤 하나 세탁 세제 하나... 이거 다 떨어졌어요 말하기가 되게 미안한 경우도 있고.. 복지예산 자체가 너무 없기도 하고... 후원에 의존을 하시다보니까... 정말 없어요... 그러시면... 저희도 정말 눈치가 보이고...

M12: 네. 한 개 하면 8만원 9만원. 아 그래서 우리는 못 하겠다. 여기 시설에 있는 동안은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열심히 저축하고 이제 나가서 독립, 저축하잖아요. 50프로라도 5만원 내가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지원을 해줄 수 없더라도, 네 다 아니라도 그것도 힘이 될 것 같아요. 의료비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또 아이들의 교육비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한 달에 학습 책이 2~3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교육비가 그것 밖에 지원이 안 된대요.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M18: 문민정부 참여정부 때만 해도 지원이 많았대요. 막 말로 엄마들 구두값이 지원이 됐대요. 왜냐면 남편한테 맞다가 맨발로 뛰쳐나온 엄마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신발값부터 지금이 됐대요. 근데 지난 정부 때부터 축소됐다고 하더라고... 그런 점은 좀 아쉽죠. 복지 그런 쪽에 우선순위에서 배제됐다는 건... 제가 그런 입장에 처해보니까 그런 게 좀 더 강화됐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 ⑥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

가정폭력 피해여성만이 아니라 함께 피해를 입은 청소년 자녀들에게 특별히 어떠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변한 모든 피해여성들이 심리치료(일반적)이라고 응답했다. 가정폭력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이는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속적으로 심리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하면서, 학교 수업료 외 부수적으로 필요한 비용 지원(전형적)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외에는 반드시 심리치료가 아니더라도 인생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 학교에서 자칫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학교 밖 외부전문기관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가. 심리치료

M01: 예. 정서적인 면이라던가 한참 예민한 아이들이잖아요. 사춘기니까... 그래서 작은 아이 같은 경우도 처음 와서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먼저 학교에서 잘 지냈거든요. 친구들과하고, 어느 날 갑자기 딱 새벽 세시 떨어져 오게 된 상황이잖아요.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먼저 애들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 학교에 전학을 와서 갑자기... 이제 뭐 우리가 돈을 벌어서 좋은 곳으로 이사를 와서 새 학교에 전학을 했다 하면 그런 기분이 안들었을 텐데... 막 엄청나게 그 좌절을 느끼고 막 이 상황을 되게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처음에 또 되게 어색하기도 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상황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위축이 되가지고 막 울고 학교 가기 싫다고 울고 며칠 결석하고 이랬었어요. 상담선생님과도 제가 상담도 하고... 다행히 담임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좋은 분을 만나서... 이제 막 잘해주셔서 갖고 빨리 적응하고 또 친구들이랑도 잘 사귀고 또 사교성이 그래도 있는

아이라서 적응이 잘 됐어요. 근데 너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약간 아이들 정서에 대한 거 미술치료, 심리치료도 하기도 하지만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좀 세밀화, 디테일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M02: 음... 너무 많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위해서 참고 살잖아요. 그런 거를... 폭력을 당하면서도 자식이 졸업할 때까지 참아야지 하지만 실제로 그 자식도 똑같이 겪고 있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고 가족도, 아동도 피해자예요. 아동도 나중에 어른들과 같은 심리치료를 요하구요, 그런 거를... 아후... 그 장기간 가족 내에서 가족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이들도 그것이 나중에 습득이 되고, 차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울 때 남편과의 부부생활에서도 자기도 가해잖아요. 그 아이도 폭력에 대한 피해자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밑에 자기 무의식적으로 깔려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나중에 차후에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양육하거나 부부생활에서도 그게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가정폭력을 받은 부분에서 전체적인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가 항상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M10: 일단 애도 마음이 불안하고 많이 맞았으니까 심리상담 이런거 미술치료도 괜찮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안정되긴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화날 때 그게 또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 심리상담 같은 거를 꾸준히, 아동폭력 당한 사람들은 무료로 할 수 있는 거, 무료로 돌봐줄 수 있는 거 그런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둘이 나왔을 때는 제가 혼자 벌어서 먹기 참 힘들잖아요. 그럴 때 어느 정도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애가 나중에 성장해서두 건강하게 자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 나. 학교 외 외부기관에서의 접근

M02: 뭐... 청소년에 대한 지금 제가 아이가 다니고 있는 데가 해바라기 아동센터라는 데거든요. 그런 곳이 어른들에 대한 정신과 상담이 병원에만 많이 있잖아요. 병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좀... 그니까 밀접한 곳에 많이 자연스럽게 갈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M02: 학교 내에 상담선생님들이 다 있어요. 계셔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상담을 한다는 것은 아우 제 뭐 잘못했나봐, 문제 있나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그런 쪽으로만 많이 하지... 가정폭력 그런 거를 학교에선 당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가족 안에서 그런 거를... 그런 것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은 밖에서 표출을 하지 않아요. 학교상담 있다고 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만 상담을 하지 가정 폭력에 대해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좀 너무 힘들지 않나 너무 현실적으로...

M03: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도 도움을 제 마음은 받고 싶은데, 왕따 당할까봐,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이겠

지만. 나름대로 보호를 해준다고 하겠지만. 그게 100% 가능할지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 기관이... 사회복지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서 어떻게 방법을 취해서 해주면... 학교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대 요즘 하도 왕따를 당하니까,

M03: 왕따 당하고 그럴까봐 걱정이 되고, 복지관에서 어떻게 음...

M03: 그런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해주는 게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애들한테 경찰이 그러는 것도 또 그럴 것이고, 전문상담, 복지 그런 쪽이 또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네.

#### 다. 학업에 부차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지원

M04: 애들 생활비 준다고 해도 그게 넉넉친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야될 거... 애들 학교가면 학용품 이런 것들 소소하게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엄마가 가진 돈이 있어야지 안그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게 100% 여기서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니깐... 결국은 엄마가 가진 능력이나 그런 거에서 차이가 나게 되요. 숙박이나 식비나 생활비에서는 안 들어간다 뿐이지 그 외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엄마 능력이 중요하고..엄마가 얼마나 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와닿는거예요.

M05: 아이들요? 아이들한테는 아무래도 교육비 지원이죠. 초등학생은 무상이잖아요. 무상이더라도 그 외에 들어가는 돈이 많잖아요. 학습지라든가 학원비 지원이라든가.

M07: 그니까 심리치료나 놀이나 이런... 애들이 어... 태권도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뭘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지원들을 특별활동 지원들이나 아니면, 아니면 강사가 오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풍성하게. 애기들이 더 많이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다쳤으니까. 근데 엄마들은 몰라요. 찾을 수가 없지 전문가가 아니니깐요.

#### 라. 인생 멘토링

M07: 교육, 유명하신 분들이나... 의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판사가 되고 싶다는... 그러면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을 좀 해주셔서 아이들이 커 가는데... 네. 이게 너무 폭력에 치우쳐서 애들 뭐 심리를... 뭐 이것만 하다보면 애들 더 소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아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아이 판단을 했어요. 그것이 끝이란 말이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선생님과 엄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 같은 경우 알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필요한데 멘토 하나가 빠졌단 말이예요 가정에서. 학교로 가도

아빠의 자리는 없어요. 부재중이에요. 그럼 아이들은 뭔가 그... 정하고 갈 수 있는 중심을 잃은 거죠. 그전엔 엄마 아빠 같이 동시에 봤다가 너무 아빠... 자신의 아빤데 너무 나쁜 사람이야. 이미 다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보호만 받는 걸로 커진다면 아이들은 강하게 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관을 알거나 굉장히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가시고 그런 일들을 하신 분들을 이렇게 멘토로 연결해서 우리 옛날에 뭐 키다리 아저씨? 옛날에 그런 것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서 애들이... 어리더라도 다 알아 듣거든요. (유명한 분들이라고 하면...) 전문가들이죠. 사회활동 하시고 계신 분들. 누구는 과학자가 되고 싶고, 제 큰아들 같은 경우 그래요. 근데 저는 과학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전문가시고, 그런 분들이 몇 마디라도 해주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풍성해서...

M06: 피해를 당했던 아이들한테는 안정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 큰아이가 지금 학교... 가정 형편상 학원을 못 다니거든요. 근데 멘토링 지원이 있어요. 혹시 들어 보셨는지? 이게 저는 그게 너무 좋은데.. 그게 국영수 딱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정말 멘토링처럼 해서 공부뿐만 아니라 수업뿐만 아니라 가정 피해 입은 아이들 예를 들어서 수업... 국영수가 아니라 종이접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상처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 이름을 제가 많이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 걸 좋아한다 멘토링을 통해서 동아리처럼 학교에도 있겠지만 이거는 대상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멘토링해서... 우리 아이들은 멘토링 하면서 수업진도가 많이 못 따라가요. 근데 학원은 잘하는 애들 위주로 쪽 가잖아요. 그런데 일대일 지도를 해주시니깐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제도가 너무 좋다 생각했거든요.

M06: 지금 현재 진행되는 멘토링은 학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가정 폭력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호 뭐 그런 거에 대해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들은 다 맞벌이하고 바쁘지 근데 이렇게 안식을 찾고 기댈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멘토링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어루만져 주고...

### (3) 현재 입소중인 시설에서의 경험

표 V-12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현재 입소 중인 시설에서의 경험 영역

영역	범주	응답빈도
입소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1) 행정(제도)의 문제	변동적(6)
	2) 허술한 서비스	변동적(3)

영역	범주	응답빈도
입소시설에서의 지원 내용	1) 의식주 지원	일반적(14)
	2) 무료 법률상담	전형적(7)
	3) 정신과 상담 및 약	변동적(3)
	4) 아이들 심리치료	전형적(9)
	5) 모 대상 (개인, 집단)상담	전형적(9)
	6) 비밀 전학	변동적(4)
	7) 의료지원	전형적(9)
	8) 교육 지원	전형적(11)
	9) 기타 학교에 드는 비용	변동적(4)
	10) 학업 외 운동 및 취미활동 지원	변동적(3)
	11) 문화생활 지원	변동적(4)
	12)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교육	전형적(7)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	1) 원만함	전형적(10)
	2) 신경쓰이고 불편함	변동적(5)

### ① 입소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현재 입소 시설에 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은 행정제도의 문제(변동적)과 허술한 서비스체계(변동적)를 언급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행정상의 어려움은 이들이 입소할 때, 반드시 경찰이 동반했다는 기록이 남아야 한다는 점인데, 힘든 상황에서 어렵게 스스로 찾아간 피해여성들을 경찰이 함께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입소는 시켜주면서도 엄청난 쓴소리를 하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시설 직원이 서비스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나, 각 기관이 연계가 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 가. 행정(제도)의 문제

M02: 과정의 어려움은... 거의 긴급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기 올 때도 그랬지만 정말 경찰에 폭력을 가해서.. 지금 여기 오는 분들을 거의 보면 거의 다쳐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폭력을 당한 상태에서 바로 경찰에 가서 경찰에서 아 이런 분들은 정말 너무 심하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격리를 해야 겠다 할 때 경찰서에서도 쉼터로 전화를 해서 이리이러한 사건이

있어서 이런 분이 계신데, 그쪽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굳이 OO뿐이 아니라 다른 쉼터에서도 그쪽 지역에서도 그런 경험을 당했을 때,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경찰서 자체에서도...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아동보호기관에서 연계가 돼서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 찾아서 전화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걸.. 기관마다 기관과 기관끼리 알고 있으면 그런 연계로 인해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스스로 발로 찾아서 전화해서 오진 않아요.

M08: 그니까는 그게 웃기더라고요. 제가 1366을 알아가지고 1366에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임시 보호시설로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경찰서에 다시 전화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거기서 다시 1366으로 하래요. 그게 뭐가 다른 거지... 어찌됐든 간에 증거를 일단은 경찰이 출동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으로 봤을 때는 그냥 좀... 조금은 번거롭다.

## 나. 허술한 서비스

M04: 아까 이야기했지만 OO에 하루 있었던 센터... 그것도 처음에는 저희가 OO으로 가게 되었었던데요. OO에 OOO 내부에 그런게 있었어요. 거기에 처음에 갔었는데 거기서 설명을 잘 못 해주신거예요. 핸드폰 다 끄고 배터리 빼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간거죠. 전원이 켜져 있었던 거예요. 위치추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되서 다시... 그러니까 그 소장님이 처음 하신 것 같아요. 꼼꼼하게 못 챙겨주셨어요.

M07: 이게 되게 복잡했어요. 그니까는 처음에 그 남편 친구분이 원래 가정법률 상담을 하셨던 분이라 이쪽을 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우선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해서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1366을. 근데 02 1366이라 해서 02 1366을 눌렀더니 “계시는 곳이 어딘가요?” 라고 여쭙보시길래 OOO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근데 “OOO가 무슨 구조?”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무슨 구조 저도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무슨 구인지 몰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대요. 다급한 상황에서 이거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무슨 군지는 앞에 컴퓨터도 없을까 아니면 주변분들... 뭐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아니고 그래서 너무 허술하게 그렇게 끊으시길래 그냥 다시 전화해보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당황을 하고 여기 다시 해야 되나. 예 근데 다시 하고 어떻게 기다리세요 뭐가뭔가 해가지고 공간도 나와야 되고 뭐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해주셨는데. 네... 이건 쉽지는 않더라고요.

## ② 현재 입소 중인 시설에서의 지원 내용

각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분류하자면, 의료지원, 교육지원, 상담지원, 생활(주거)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겠다. 모든 주거 입소시설은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만, 지역에 따라, 기관 성격에 따라 각각의 서비스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피해 여성들의 응답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설들이 기본적인 의료지원, 교육지원, 상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으나 지원 금액, 지원 회수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공부방 지원, 수업 외의 학교 활동 지원, 취미생활 지원금 등이 제공되는 기관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관도 있고 심지어, 개인 취향에 따라 개인사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곳도 있어서, 입소 시설에 따른 편차로 상대적인 불만감을 가중시키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M03: 교육지원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구요. 안그래도... 생각을 해봤어요. 자격증을 뭔가 하나 따야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일하느라고 시간을 못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은 저는 못 받고 있구요. 다른 분은 아마 받고 계실 거예요. 받고 계실거고. (취업지원은)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었고.. 거주지원은 받고 있고.

M03: 생활비는 아니요. 아이고 여기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먹고 자고 공짜로 다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M04: 생활비... 식비... 아이들 교육지원... 의료지원...

M05: 식사, 잠자는 거, 상담지원도 되고 공부방 지원, 급식비, 아이들 심리상담 하고 있으니깐요. 매일 오시거든요. 1주일에 한 번 상담 실장님이 와서

M13: 현재 여기에서? 여기서는 지금은 없는데요. 아동보호센터에서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아동보호센터라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애랑 나랑 정신과 치료.

M06: 숙식 전부 다 지원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아프면 병원 다 갈 수 있게끔 다 해주시고, 비밀전학 다 해주시고. (숙식과 의료. 아까 심리치료 이런 같은 것도 받고 계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상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심리치료 개인 상담 하시는 분이 오셔서 계속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요가도 해요. 요가나 종이접기, 쿼트 뭐 이런 것도 해요 근데 이걸 계속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씩 정해져서 하는데. 그런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상담하는 거요. 이게 도움이 많이 되죠. (아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쉼터에서 받고 계신 게 있나요?) 학교 일단 다니고 있고요. 학용품 이런 거 필요한 거 다 제공을 해 주시고. 뭐 준비물..

그 정도... 수학여행 간다 하면 그런 것도 지원해 주시고 교복비도 지원해 주시고 경비는 거의 지원해 주신다고 보면 되요.

M07: 옷도 받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어린이날 때 애들 선물도 챙겨주셨고, 영화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먹는 거에 굉장히 신경 써 주셨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구동성 말씀하시는 게 ‘아! 우리 살찐다.’ 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시고, 개인 개인이 조금 요구가 다를 거 아니에요? 최대한 해주시려고 알아보시고... 네. 굉장히 좋아요. (취업지원이나 이런 것 생활비지원, 상담지원, 자녀의 경우에 뭐 교육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취업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어... 취업지원은 취업상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취업교육, 직업교육훈련 이런 것 있어서 낱자 되면 해보시라고 엄마들한테 하셨고, 교육비 지원은 나라에서 뭐 10만원씩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어린이집을 가니까 그쪽으로 다 빠져나간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애들 사소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 지원은 단체적으로 갈 때 뭐 애들이 운동화가 없으니까 운동화 하나씩 갈 때 그럴 때 빼고는 특별히 지원이... 말씀 드리기도 참 그렇고 소소하게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둘째 같은, 첫째 같은 경우 유치원만 다니는데도 애들 생일선물을 매일 꼬박 꼬박 챙겨야 돼요. 거기다가 애들이 좀 먹나요? 애기들 또 좋아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니까는 뭐 노트 사소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네. 그걸 무슨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M08: 일단은 숙식, 그다음에 의료지원, 그다음에 생활용품, 그 다음에 아이 둘째아이는 양육비, 첫째 아이는 방과후 활동비, 학교에서 뭐 어디가고 그러면 들어가는 교통비, 참가비 같은 거 그런 거 다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의료...

M10: 인제, 옷하구 의복하구, 의식, 먹는 거, 그리고 병원비두 해주구, 그리고 요즘은 가끔씩 뮤지컬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런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애가 원하는 쪽으로 학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보컬학원. 재능이 좀 있는 거 같다고, 선생님이 절대음감이라고 학원에서 애기 해줬었나봐요. 그러니까 또 애가 원하는 쪽으로 학원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 좋은 점 같아요. 공부방. 공부방도 있구, 학교에서 먹는 급식있잖아요, 우유급식. 이런 것도 해주구. 그것두 많이 해주는 거예요. 많이 해줬어요.

M11: 뭐든지 먹는 것부터 입는 거... 애들 학원... 방과수업 지원 받고 상담 같은 거 받는 거...

M12: 아 지금 받고 있는 거요? 의료비. 수술비, 치료비 같은 거요. 그리고 방과 후하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공부방 다닐 수 있도록 하구요. 거주지하고 식비 이런 거... 생활비는 안 따로 받아요. 상담은 다른 쉼터에 있을 때는 받았어요.

M14: 주거지원하고, 다음에 심리상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취업지원, 원예치료 같은 거. 다음 달부터 집단 상담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M18: 옷 같은 것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계절에 맞게 옷이나 신발 같은 거 꼭 새 거는 아니어도 어디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받... 저희 시설장님이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잘 받아오시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먹는 거는 정말 제일 좋은 걸로 먹여주시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나는 이렇게 못 먹고 살 것 같은 거로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게 보여서 감사하죠.

M18: 자녀에 대한 지원은, 제가 지금 이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상태가 된 거면 무슨 한부모가정 그런 쪽으로 지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 그런 건 못 받지만, 시설장님께서 다른 쉼터 다른 입소자들하고 약간 형평성을 생각하셔서 우리 딸아이가 좀 지원이 너무 없다 생각하시면 체육복이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체육복을 대금을 대납을 해주신다든지 그리고 선생님들도 교복 같은 거 지원받을 수 있게 구청 쪽으로 협의해서 지원금 같은 것도 이렇게 받아주시고 신청해서 받게 해주시고 그런 게 있어서 혜택을 받죠.

### ③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

현재 입소시설에서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입소자들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동질감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해주려고 하는 면이 있는(전형적) 반면,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입고 입소하여, 예민한 상태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혹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있기도 했다(변동적). 또한 자녀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유아, 아동, 청소년들 간의 발달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또한 호소하였다.

#### 가. 원만함

M05: 특별이 어려움은 없어요. 다 같은 처지니까

M08: 그냥 원만한 편이에요. 예, 괜찮아요. 좋아요.

M12: 다른 입소자? 다 서로 공감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좋아요.

#### 나. 신경 쓰이고 불편함

M02: 어... 거의 서로서로 많이 도와서는 하는데 개인 취향을 조금 많이 주장하는 분들이 몇몇 계시기

마련이잖아요. 다 성격차이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맞추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규칙이나 생활 이런 거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이니까 그... 타인이잖아요. 어쨌든... 타인에 대한 취향을 존중해주지 못하고 배려가 없이 좀... 그런 분들이 이기적인 부분들이 생기자 보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M10: 되게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뭐... 사람이 여럿이 쓰다보니까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한 사람 비위 맞추기도 힘든데 여럿이 할러니까 서로 부딪히는건 있는데, 그리고 또 다 가쪽이다 보니까 예민한 게 있잖아요. 조금만 자기 건드려도 막 예민한 거 진짜 별거 아닌데도. 그런 게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조금 되니까는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막 해줄려구 하니까 또 괜찮더라고. 처음에는 힘들어도 나중에 괜찮더라구요.

### 결 과 요약

-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어머니들의 경험은 다음과 같음.
  - 가정폭력 행위자인 남편에 대해 죽이고 싶었음, 무서움, 분노 및 치 떨림 등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
  - 피해자인 자신에 대해서는 무기력감, 절망감, 초라하고 비참함, 자기비하, 수치심, 자괴감 등의 감정을 보임.
  -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변화로는 무기력하고 우울해짐, 사람을 피하게 됨, 집중력 저하, 아이들에게 보상을 받고 싶어함, 아이들에게 거칠게 대함 등이 있었음.
  - 자녀에 대해 가지는 감정은 불쌍함, 약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느낌, 보호해주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음 등임.
  - 폭력 직후 경찰의 개입과 확실한 처벌, 쉼터에 대한 정보, 가해자와의 분리, 쉼터 외에 잠시 피해 있을 수 있는 곳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경험은 다음과 같음
  - 처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계기는 아이들을 위해 결심함,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음, 남편을 떠나 새로운 내 삶을 찾고 싶었음 등임.
  - 처음 도움을 받게 되는 경로는 경찰과 1366 전화신고를 통해서임.
  - 가정폭력 피해자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1366 정도이며, 전혀 아는 것이 없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전형적임.
  - 전문기관 지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아쉬움도 있음.
  - 정부의 지원체계나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연장을 포함한 법, 제도의 개정, 자립지원 확대, 쉼터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성 도모, 쉼터 규정 개선 등을 요구함.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는 심리치료, 학업에 부차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지원,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에서의 접근, 인생에 대한 멘토링 등을 요구함.
- 피해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입소시설에서의 경험은 다음과 같음.

- 입소하는 과정에서 행정제도의 문제와 허술한 서비스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함.
- 입소시설에서는 의식주, 교육, 아이들 심리치료, 어머니 대상 상담, 의료, 무료 법률상담,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교육, 비밀전학, 기타 학교에 드는 비용, 문화생활, 정신과 상담, 학업 외 운동 및 취미활동 등을 지원받고 있음.
- 다른 입소자들과는 원만하게 지내는 편이지만, 신경쓰이고 불편한 부분도 있음.

### 3) 현장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전체 5집단 21명의 쉼터 실무자에게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조사는 입소생들을 면접하고 상담하는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1)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 경험 2) 가정폭력 관련하여 받은 지원 경험 3) 입소 중인 시설에서의 경험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 (1)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 경험

##### ①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행위자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행위자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실무자들이 한 대답을 유목화해보면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성, 직접적인 피해자인가 간접적인 피해자인가, 아버지와의 밀착관계 여부에 따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이가 어릴수록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찾는 경향이 있었으며 여자 아이는 무조건적으로 피하고 싶음이 많은 반면, 남자아이들은 분노와 복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어머니를 폭력하는 아버지들 중, 자녀에게는 매우 자상한 아버지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 간접적인 피해자의 경우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경향이 컸다. 이런 경우는 또한, 아버지와 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수의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가지면서도 죄책감, 안쓰러움 등의 양가감정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P02: 아버지하고 밀착관계가 있었던 아이들은 현재 상황에 지금 엄마가 피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위해서 나와 있지만 때로는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P12: 아무래도 중학생까지는 두려운 존재, 피하고 싶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넘어가고 18살, 19살이 넘어서는 아이들한테는 복수의 대상이 되는 거죠... 분노를 많이 표출하고...

P13: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분노의 대상이고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말하는 아이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남자아이들은...

P05: 꼬맹이 중에서도 아빠가 불쌍하다고 하는 아이도 있어요.

P11: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엄마 때문에 나와요. 거의 여자애들 데리고 나오잖아요. 남자애들은 썬터에 입소를 못하니까.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나도 위험하고 엄마도 위험하기 때문에 나왔다. 하지만 아빠는 싫어. 나중에 우리 아빠긴 하지만, 분리가 잘 돼서 해결이 잘되면 나중에 만나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엄마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길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좀 힘이 되더라고요.

P15: 신기한 아이들은 좀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어느 정도는 있더라고요... 부모님을 어쨌든 신고했다는 거에 대해서...

## ② (어머니도 피해자인 경우)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어머니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피해자인 어머니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실무자들이 한 대답을 유목화해보면 의존심과 엄마와 자신을 분리하여 생각함, 미움, 분노감과 불쌍함 등으로 구분된다.

'의존심'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빠와도 분리되었는데 엄마와도 분리된다면 자신이 혼자 남는다는 두려움과 또 유기적으로 모와 자녀의 감정이 분리되지 않고 뭉쳐서 병적인 의존성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엄마와 자신을 분리하여 생각함'은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으니 여기서 학교 잘 다닐 수 있다면 다니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 학비나 용돈, 장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이다.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이런 가정에서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에 대한 원망, 엄마를 따라 나왔으나 엄마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서 제2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상황에서의 억울함과 분노를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역시 피해자였던 어머니에 대해 불쌍하고 안쓰러움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P01: 굉장히 의존적이예요. 엄마마저 없으면 자기는... 그래서 양가감정이 극과 극을 달려요... 엄마에게 집착, 의존 이런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아빠랑도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엄마마저도 분리가 되면 자기는 혼자 남는 거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P05: 아이들한테도 만약에 아빠와의 관계가 안 좋은 경우는, 너네 아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감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당하고 와가지고 여기 왔는데, 왜 또 저렇게 얘기를 하나. 일종의 배신감이죠. 배신감

P09: 저희는 엄마를 그렇게 안쓰러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를 왜 놓았나?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시기라서 그런지.

P11: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엄마 때문에 나와요. 거의 여자애들 데리고 나오잖아요. 남자애들은 쉼터에 입소를 못하니까.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나도 위험하고 엄마도 위험하기 때문에 나왔다. 하지만 아빠는 싫어. 나중에 우리 아빠긴 하지만, 분리가 잘 돼서 해결이 잘되면 나중에 만나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엄마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길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좀 힘이 되더라고요.

P11: 맞아요. 대학생 딸이 있었는데 다 자기가 증거 다 모으고, 엄마가 USB통화녹음하고, 사진 찍고 다 그렇게. 엄마랑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아무리 아빠가 잘해줬다고 해도, 엄마가 맞는 거를 보고, 엄마가 고생하는 거를 보니까.

P08: 가족 톨툴 뭉쳐서, 유기적으로 뭉쳐가지고 감정이 막 뒤섞여서 힘들어하는 집도 있지만 지금은 대개 이렇게 개별적으로 엄마는 엄마 인생 살고 나는 내 학교 가야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집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후자가 더 많은 것 같고.

P12: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더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중략) 아빠는 저런 인간이야. 근데 엄마는 그러면 안되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엄마가 그래도 나는 보호해줘야지. 한 번은 말려줘야지..

P13: 아버지와 동일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옆에서 날 때리지는 않지만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도 엄마도 똑같은 사람이야, 엄마도 여차피 나를 보호해줄 수 없는 사람이야라고 해서 아빠랑 똑같이 미움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구요.

### ③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감정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자신에 대해 가지는 감정은 두려움, 절망감, 자괴감, 울분 등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모르거나 표현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들도 많다. 이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여유가 없거나 혹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한 것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폭력을 당하는 자신에 대해 가지는 생각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부류와 폭력의 원인을 가해자가 아닌 본인에게서 찾는 즉, 자신이 무언가 잘못해서 받는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감정과 생각들은 피해 아동·청소년 개인의 성격적 특질과 환경적 영향의 결과로 보인다.

P01: 어떤 아이는 우리 지금 5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 아 내가 이렇게 살줄이야. 굉장히 두렵고 절망적이겠쥬.

P10: 자기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감정도 모르는 것 같아요. 더 오바해서 한다던가. 실질적으로 상담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또 그래요. 자기의 진짜 감정을 숨기기위해서 더 그런 거 같아요.

P09: 울분이 꼭차있는데, 주먹을 쥐고, 벽을 막 이렇게 하고 하긴 하는데 그걸 토해내진 않쥬.

O13: 폭력의 원인을 가해자한테 찾기보다는 본인한테 찾는 경우도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청소년이지 않아서, 내가 뭘 안 해서 아빠가 날 때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존감은 당연히 낮고, 사회적응력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되게 우울해하는. 본인 스스로 되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우울해 하는 아이들이 여자청소년들 중에서는 많이 있는 것. 가정폭력이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대항을 못할 바에는 스스로를 망가뜨린다고 해야 하나.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P14: 되게 무력하구요... (중략) 되게 수동적이고 아이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되게 불안해해요. 쉼터를 갈거나 집에 갈거나 이렇게 안내를 하면 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담자한테 제가 뭘하면 좋아요라고 되묻는 경우도 많구요...

P13: 가정폭력이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대항을 못할 바에는 스스로를 망가뜨린다고 해야 하나,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 ④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생활태도상의 변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어떠한 생활태도상의 변화가 나타나는가 라고 실무자들에게 질문하였다. 그들이 언급한 내용을 유목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구분하자면, 나이에 비해 어른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외상으로 인해 퇴행을 보이는 아이도 있다. 또한 어떻게 적응해야 나에게 이득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매우 빠르기도 한데

아동·청소년들의 연령대,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 폭력의 피해자였던 아동·청소년들이 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거친 어머니의 행동이나 언어를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있어 부모의 폭력적인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학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P02: 아이도 사실은 의존을 하지만, 엄마도 사실은 아이에게 의존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가 정말 어린애 같지 않은, 어른 같은, 너무나 어른 같은. 또 그런 게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강화잖아요. 너 어쩔 이렇게 착하니. 어쩔 이렇게 엄마 말을 잘 듣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P03: 속된말로 애어른이 되고, 아이가 엄마를 요리를 하죠.

P01: 발달단계, 그리고 아이의 연령대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P05: 애어른 같은 모습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아이들이 많은 곳에 왔잖아요. 아이들이 적은 곳에 있다가 많은 곳에 오고, 갑자기 동생이 없었던 아이 같은 경우는 동생이 생길수도 있고, 위애가 없었는데 위에 형이나 누나가 생길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 관심을 계속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지는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입소자가 오고 새로운 입소자 아이들이 오면 관심으로 또 그쪽으로 쏠리다보니까 때로는 퇴행이 일어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더 아이 같은 짓을 할 때가 있어요.

P09: 동생한테도 해요. 폭력을 행사해요. 저희들은 남자아이들인데 형이 동생한테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해요. 정말 동생 가엾기도 하고... 그니까 왜 이렇게 하냐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빠도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P11: 보면 엄마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 해요. 어머니의 언어가 거칠면 애의 언어도 거칠고. 이견 당연한 거겠지만.

### ⑤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폭력 발생 직후 가장 필요한 도움

폭력이 발생한 직후,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장기적인 심리치료를 언급했다. 모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결혼이고, 성인이니까 스스로 수용하고 극복하려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태껏 익숙하게 생활했던 환경을 떠나, 낯선 곳에 온 것 뿐 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긴급하게 무언가 비밀스럽게 시설로 들어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느끼게 된 불안을 다루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정서적 안정이 궁극적으로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직결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P01: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사건 나면서 정신과상담 장기치료 플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심터를 이용했거나, 아니면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 같은 경우에 좀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모든 여성에게 필요하지만, 여성들은 성인이고, 자기가 선택한 결혼이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수용하고 극복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P03: 제가 보기에는 입소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아이든 엄마든 가족 간의 미술치료를 통해서 불안을 해소하며 상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엄마의 안정이 제일 먼저 필요해요. 엄마가 안정적인 표정이나 안정적으로 이곳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편안해요. 근데 엄마가 늘 불안해하고 엄마가 그 안에 있는 이모들하고 사이도 좋지 않고 이랬을 때는 아이들은 똑같아요. 거울이더라구요.

P06: 어머님들을 비롯해서 아이들도, 그래서 어머니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 심리치료, 심리치료를 좀 장기로 입소해있는 동안만이라도, 퇴소하고 나서도 좀 받을 수 있게 연계를 해주시면 안 되냐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P14: 거의 대부분 몇 시간 안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 되게 불안해요. 여러 기관을 만나서 오는 것도 불안하고 본인도 다이렉트로 전화하는 것도 되게 불안해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게 되게,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보이고 또 낯선 사람이 자길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자기를 도와줄 것인지 믿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 해소가 제일 큰 것 같아요.

## (2) 가정폭력 관련하여 받은 지원경험

### ① 피해자들이 처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계기

피해자들이 전문기관에 처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인 것 같은가에 대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아이들 때문에 결단을 내리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계속 주게 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많은 피해여성들이 나 혼자라면

어떻게든 참는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이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움이 커져서 결단을 내리게 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면서 주변의 피해를 너무 주게 된다는 생각 등으로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P01: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때렸고, 아들이 아버지를 밀치는 이런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아버지가 112에 전화신고를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날 때렸다고, 그래서 경찰이 오고 아들이 조사를 받으러가고 이러는 상황에서, 아 더 이상 내가 이제는 안 되겠다. 아이들하고 나와야겠다 해서 나오셨어요. 아이들 때문에 돌아가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들 때문에 결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P03: 혼자서 참아요. 나 혼자서 어떻게 해서라도 참는데, 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이제 아이들이 아빠를, 이러다가는 무슨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세요. 생명이 위협이 느껴면, 이걸 한계가 오면 이제 뭐 일이, 칼부림이 나겠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죠. 그때는 나오세요.

P06: 자기의 생명이, 목숨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대부분 이게 계속 되기는 하지만 상담을 하다보면은 자기가 꼭 죽을 것 같았대요. 아니면 자기 자녀가 아빠한테 목을 조이던지, 졸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각박한 상황이라서 그냥 맨몸으로 뛰쳐나오는 경우 있죠.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P11: 초기에는 고칠 수 있겠거니, 안하겠다고 해서 조금 참다가 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애들 때문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친정에서 나와라, 아니면 친정이 너 계속 살아라, 너 거기서 나오면 어디 갈 데가 있니 그래서 못나왔다가, 꾸역꾸역 참다가 진짜 안 되겠어,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나온 분도 계시고 다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

P09: 자기만 맞아도 괜찮은데 친정식구, 오빠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꾸리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큰 피해까지 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 ② 피해자들이 처음 도움을 받게 되는 경로

피해자들이 처음 도움을 받게 되는 경로에 대한 질문에 실무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들은 경찰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폭력을 피해 경찰서로 달아나거나, 폭력상황에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때, 경찰이 1366을 연결시켜 주거나 쉽터를 안내하는 등 최근 들어 경찰의 역할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자녀들이 정보를 찾거나 들은 후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P01: 컴퓨터에 대해서 알게 된 거가, 경찰을 부르잖아요. 경찰이 1366안내해줘서 이렇게 왔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P05: 그리고 과거랑 달라진 건요. 좀 큰애들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개네들이 알아봐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줘요. ‘엄마, 그러지 말고 상담소 가보면 안 돼? 엄마, 우리 이렇게 계속 살다가 우리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엄마 어떡해 해. 우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데를 알아보면 안 될까?’ 이러면서 그 아이들 때문에 어머님이. 솔직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생각까지는 못하셨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막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애가 이렇게 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한번 그러면 알아봐야 되나,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똑똑한 아이들은 지네들이 인터넷 쳐보고, 알아보고 해가지고, 개네들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P08: 사건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해서 이렇게 오고, 사건이 안 생기면 가족이나 딸내미나 알아보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1366통해서 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일시컴퓨터에 들어오게 되는 아동·청소년들은 대체로 아동학대(또는 가정폭력)로 신고되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오는 경우가 있고, 중장기컴퓨터로 연계되는 과정 중에 일시컴퓨터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P15: 저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돼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중략)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에도 일시컴퓨터가 있긴 한데, 거기 자리가 없어서 저희 쪽으로 주말동안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중장기로 연계하는 과정 상에 저희 쪽으로 의뢰를 많이 하시는데요...

P13: 갈 곳이 없으니까... 집으로 갈 수는 없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개입은 하셔야 되고 애가 한곳에 있어야 사례개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컴퓨터를 갈 때도 일반 가출컴퓨터보다는 그룹홈을 알아보거나 중장기쪽으로 알아보거나 이래야 되니까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 ③ 피해자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 피해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더라는 대답이 주를 이루었다. 근래 들어서는 많은 컴퓨터에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데도 아직도 의외로 컴퓨터의 역할, 컴퓨터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입소 후 상담을 진행하다보니, 컴퓨터는

감옥같은 곳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P02: 의외로 아직도 쉼터의 역할, 쉼터가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P05: 쉼터는 아직도 오신 분들, 어머니들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라는 말씀과 정말 센터가 감옥 같은데, 그럴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그 불안감이 많이 높았다가 왔는데 일반 가정집이거든요. 그니까 이제 아이들도 어머니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주택가에 쑥 들어가 숨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P14: 이런 것도 도와줘요? 이런 반응도 보이구요. 알고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1388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하면 이런 것도 도와줘요? 라고.

P16: 학교에서 교육은 하는데 잘 모르는 거 같아요.

### (3) 입소중인 시설에서의 경험

#### ① 현재 입소중인 시설경험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식

또한 현장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일시쉼터의 입소 문제를 언급하였다. 아동·청소년 일시쉼터의 경우 공간이나 입소정원 특성에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간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 입소자의 성별과 이후 입소를 원하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입소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P15: 저희는 (쉼터에) 성별 구분이 없어요. 여자 아이가 한 명 입소하면 그 날 남자 아이는 입소를 못해요. 그리고 남자아이는요 두 명 이상 저희는 안받아요. (중략) 남자애들이 두명 이상 오면 선생님이 케어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안받아요. (중략) 일단 남녀는 저희가 구분이 안되어 있는 한 공간, 그냥 집이라고 보시면 돼서 24시간 선생님이 밤새 같이 있다고 해도 혼숙은, 저희 기관 혼숙은 안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일단은 전혀 받지 않구요...

P08: 현실성은 없는데요. 저는 계속 느끼는 거거든요. 쉼터라는 곳이 나쁜 곳은 아닌데 가족 단위가 와서 다 같이 살기에는 아이들한테 너무 힘든 곳이에요. 너무 힘들고 그거를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지켜야하는 정말 작은 규율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거를 봐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도 참 힘들거니와 그걸 끼워 맞춰서 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족 단위가 오면 가족만이 뭔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예산이랑 관련되기 때문에 말이 안 맞지만 사실은 그게 어려움이예요. 방따로  
줄 수도 없고, 섞여서 살아야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고. 말이 안 되지.

또한 일시쉼터에서의 생활 역시 특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공간과 생필품을  
제공받는 이외에 상담이나 생활관리를 잘 받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소년들은  
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을 떠나 심리적인 안정을 경험할 수 있는 쉼터에서의 생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P13: 그게 진짜 할 일이 없는데, 저희 안에 TV나 DVD, 책, 보드게임, Wii 뭐 그런 게 있어요. 거의  
이제 방안에서 가목으로 일주일 있는 애들은 학교도 안가고 외출할 게 없으면 정말 잠은 충분히  
자구요... (중략) 그렇다고 외출을 시켜줄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그럴 때 애들이 많이 심심해  
해요. (중략) 대부분은 터치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애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정말  
오랜만의 기간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짧은 기간이지만, 그  
안에서 애들이 얘기하고 싶으면 그 얘기 다 들어주고 되게 편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

입소해있는 피해자 특히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현 시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 언급한 피해자들의 시설경험을 ‘불만족스러움’, ‘만족함’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불만족스러움의 구체적인 예는 1) 규정이나 규칙 등으로 제한 받는 것에 대한  
불만 2) 나만의 공간이 없다는 불편감 3) 외부와의 단절에서 오는 불편감 4)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편감 등이 있었고, 이와 반대로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경우는 예전 집보다  
쾌적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하고 있다.

P04: 아이들 같은 경우, 공동체생활이 처음이다 보니까요. 그 부분이 익숙지 않죠. 어른들이야 이제  
자기네 상황에 따라서 와 있긴 하지만, 엄마 따라 온 애들이니까, 단체생활에 대해서 힘들어해요.  
내 맘대로 TV도 못보고, 내 맘대로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컴퓨터도 못하고, 항상 제한적인 것에  
대한 아이들의 불만이 있죠.

P05: 단기라서 그래. 단기의 특성이라 초기, 딱 들어온 거라 가장 단적인 예로 일단 단절이 가장  
크거든요. 친구들과의 관계에 단절을 딱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P05: 저희 같은 경우는 단기쉼터이다 보니까 한방에 여러 가족 있잖아요. 나만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커요. 하다못해 중고등학교 애들은 한창 전화할 나이잖아요. 친구가 됐든, 남자친구가 됐든, 근데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카톡이나 하고 문자나 보내지, 전화통화가 조금 길어지면 이제 이모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눈초리들이 다 이제 집중이 되잖아요. 나만의 공간자체가 없는 거죠. 내가 음악듣고 싶다고 그래서 크게 음악 틀어놓고 들을 수도 없고요. 아이들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고 싶은, 저희 같은 경우는 TV가 각방에 다 있긴 해요. 거실에도 있고 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보고 싶다 그래도 그 각 가족이 있는 방에서 우리가족만 있으면 모르는데 다른 가족이 함께 있는데 보고 싶은 채널이 다를 수 있잖아요.

P11: 가장 큰 변화는 주거지를 옮기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친구들과 이별을 하고, 나 내일 전학 가, 이런 이별식도 없이 건강하게 나오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고.

P13: 일단은 가해자랑 분리된 거에 대한 안정된 마음이 제일 클 것 같구요... (중략) 애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정말 오랜만의 기간 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더 있으면 안돼요? 어디 안가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짧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짧은 기간이지만 그 안에서 애들이 얘기하고 싶으면 그 얘기 다 들어주고 되게 편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

P16: 특별한 불편감은 저희 시설이 워낙 폐쇄적이어서 외출, 외박이 자유롭지 않고, 아이들이 보통 답답하다. 특히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 내내 그룹홈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 ②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

기관 내에서 다른 입소자들과의 관계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었다. 공동체 생활 역시 하나의 조직생활이므로 그 안에서 주도적인 사람이 생겨나기 마련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자녀가 있는 엄마와 싱글인 엄마, 형제가 있는 아이들과 형제가 없는 아이들, 피해자로 입소했지만 가해자인 엄마 등 구성원들의 역동이 입소자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P01: 자기 남편을 피해서 여길 왔는데, 자기 남편 모습을 체험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저희도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아이 엄마하고 다른 입소자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P04: 형제가 입소를 하게 되면 다른 집에도 형제가 있으면 싸우잖아요... 저희는 이제 아이들은 괜찮다고 놀면서 아이들은 푸니까 애길 해도, 엄마들도 그 모습 보면서 야단쳐야 되고, 데리고 가서 내

자식만 훈계를 해야 되고, 이런 면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싸우고 이런 면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해요.

P01: 힘의 논리가 있어서요. 한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한 대여섯 명이 있다 그러면 한사람을 왕따를 시켜요. 왕따를 시키는데 그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이 왕따를 시켜서 결국 그 사람이 못 견디고 나갈 정도로 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P03: 아이들을 동반한 엄마와 싱글로 오신 분들이 갈등을 많이 하죠.

P08: 피해자의 신분으로써 와있는 가해자는 공동체, 단체생활에서 반드시 문제를 너무 많이 발생시켜요.

P08: 애들끼리 싸우거나 이런 거는 크게 별 문제 될 것 같지 않은데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제일 큰 거 같아요.

다만,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다른 문제를 가진 위기 청소년들과 쉼터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문제와 같은 다른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쉼터 생활의 위험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P13: ... 다만 다른 비행 청소년들이 저희는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집이 싫어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기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우려가 되게 큰 애들이라서 다른 애들이랑 말썽거나 이럴 때도 선생님들이 옆에서 다 지켜보고 이러거든요. 혹시 애들이 꼬시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중략) 저희 실제 대상이 그 가폭문제를 주로 갖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다보니까 가끔씩 그런 아이들이 일주일 정도 있다 보면 가폭청소년들이 따로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들어요.

P13: 애들끼리 싸우거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제일 큰 거 같아요... (중략) 예를 들어, 이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이 있고, 비행이 이제 한참 물오른 애가 있어서 애가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데리고 나가는 거죠. 저희가 의무적으로 애를 강제로 데리고 있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가장 큰 문제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중략) 같이 나가거나, 같이 나가면 선생님이 잡을 거 뻔히 아니까 비행청소년이 먼저 퇴소를 하고 가폭인 애가 학교 간다면서 애를 따라 나간다가... 아니면 선생님이 잠깐 상담방에 있는 사이에도망친다가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제일 난감하죠.

P14: 저희 나름대로 애네들을 어떻게든 뜯어볼려고, 분리시킬려고 한 아이는 가정으로 보낸다거나 한 아이는 다른 쉼터로 보낸다던지, 동반입소를 하더라도 저희는 남자애가 두 명 들어오면 한명은 일시보호소로 보내고 한명만 저희가 받아요. 일부러 분리를 할려고 하고 각자 상담을 하는데

저희가 따로 보내도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게 좀 한계인 것 같아요.

P12: 그래서 방을 아예 따로 준다던지, 인수인계할 때 선생님이 다른 애들이 애한테 말 못시키게 해달라고, 애한테도 겁을 이제 잔뜩...

P13: 방 출입을 못하게 한다거나 애만 방 혼자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침에 애들 일어날 시간에 애를 깨우지 않는다거나 밥먹는 시간에 밥을 따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긴 해도 불을 애들은 다 붙긴 하더라고요.

### ③ 시설종사자와의 관계

시설종사자와 입소자들간의 관계가 어떠한냐는 질문에 대해 현장전문가들은 입소자들은 현장전문가를 겁이고, 자신들을 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현장전문가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달리 요구하고, 입소자들 간의 상호밀착이 강할수록 종사자들과의 관계는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들 여성이 더 많은 편이라, 남자 청소년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하는 현장 실무자도 있었다.

P01: 상호 밀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훈육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어머니들이, 이거를 수용을 못하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다 알아요. 우리 훈육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P05: 어머님들 성향과 선생님들 성향과 서로 맞춰가는 것. 본인들의 성향에 맞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어머님들은 다 아시거든요. 이 선생님은 애길 하면 뭘 잘 들어주고, 이 선생님은 애길 하면, 그니까 지원에 있어서도 이 선생님한테 애길 하면 뭐가 잘 통과가 되고, 이 선생님한테 애길 하면 뭐가 통과가 되고 이걸 아시니까 그거에 맞춰서.

P08: 겁과 울이죠 뭐. 본인, 클라이언트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저는 끊임없이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을 얘기를 해줘요. A한테 이렇게 대하고 B한테도 이렇게 대한다고 사실을 얘기해주고 뭔가 오래 있을 경우는 힘이 쌓이잖아요. 그 힘을 끊어줘요. 개인적으로 끊어줘도 해결이 안 되면 모두가 있을 때 그 힘을 딱 끊어줘요.

P16: 사람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아이 특성에 따라. 대부분 그런 걸 이해하시는 분들이 지도를 하시니까 최대한 맞춰주긴 하는데, 개중에 정말 쉽지 않은 아이도 있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게 관철이 안 될 시에는 문제행동 일으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힘드신 경우도 있고 아이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 ④ 피해자들의 향후 계획

피해자들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현장 실무자들은 가정복귀와 자립의 비율은 다양한 이유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가정복귀의 원인을 1) 개인적 차이 2) 기관의 차이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개인적 차이는 ‘연령대가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경제력이 없어서’, ‘달리 돌아갈 곳이 없어서’, ‘가해자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기관의 차이는 현 시설이 ‘중장기’인가 ‘단기’ 시설인가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다. 중장기 기관의 경우는 입소 기간이 기니까 그 동안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는데, 단기기관의 경우는 너무 짧아 미처 자립을 준비할 수 없었다.

P11: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와 떨어져 살거나, 그런데 아이를 두고 오면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모성애 강하시거나 그러면 데리고 나오시던지 아니면 여기서 이혼 소송을 해서. 근데 보통 대부분 보면 아이를 두고 나오면 분리하잖아요. 소송에서. 아이 두고 오신 분은 들어가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분리하니까, 소송을 해도 어쨌든 우리나라 아직 법자체가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양육 의사가 없다는 걸로 판단을 하셔서.

P08: 미워하는데 어쩔 수 없이 경제력이 안돼서 들어가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것도 사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용기이고 그게 밑바닥이 아니라 승리한 선택인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좌절을 하세요.

P10: 애가 어린사람들은 들어가는 이유 보면 거의 경제력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두고 왔다던지.

P11: 성인이거나 중고등학생이면 덜 들어가시는데 아예 미취학이나 초등학교는 좀 들어가시더라고요.

P14: 저희는 8대2, 7대3정도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2나 3정도. 근데 하루나 이틀 있다 가는 사람은 모르죠. 간다 그랬는데 집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믿을 수도 없고.

P14: 저희는 거의 가정복귀, 왜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요. 거의 가정복귀고 정말 안 되면 다른 시군센터로 보내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집은요 가정복귀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 갈 데가 없거든요.

P15: 그것도 기관별로 조금 달라요.

P17: 연령대가 어린 아이들은 가정복귀를 많이 더 희망을 하는 것 같고 청소년으로 갈수록 어차피 그냥 내가 몇 살, 4~5년만 살면 성인이 되니까 그냥 내가 성인으로 나가고 싶다고 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은 거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까지 생각은 않고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크다보니까 고학년으로 갈수록 여기던 다른 그룹홈이든, 다른 쉼터든 이런데 가서 생활하겠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아이들 중에서는 가정복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 가해자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어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점에서 밖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P12: 가정복귀를 원했던 애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바뀔까요? 우리집이 바뀔까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게 아니면 이제 바뀌어도 지금이 더 좋아요. 밖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중략)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아니라 밖에서 생활하는 애들이 가정복귀를 거의 거부하더라구요.

#### (4)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 ① 현재 시설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지원 내용

인터뷰에 참가한 현장 전문가들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원내용은 비슷하면서도 차별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많은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크게 분류해보면 1) 생활지원 -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 2) 자녀들의 교육지원, 3) 의료지원, 4) 법률지원 등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이 외에 각 기관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기관에 따라 이런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는, 지자체간의 지원, 지역자원의 활용여부, 후원 여부, 기관의 자부담금 등의 차이 때문이었다. 현장실무자들은 기관에 따른 이러한 차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P04, P06, P11: 아이들은 비밀전학...

P07, P05, P06, P10: 의료비 지원

P01, P02: 학습지원

P10, P14: 법률지원

P13, P18: 상담

P06: 그게 지자체마다 달라요.

P05: 그런 상황에서도 너무 큰 건은 후원 아니면 후원재단 연결해요.

## ②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나 서비스의 개선방향

현장 실무자로서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나 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현장실무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피해당사자들의 입장에서의 개선점, 종사자들 입장에서의 개선점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우선, 피해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들은 '퇴소 시 자립지원금 증가', '주무 행정부서들의 통합적인 연계', '지원금 증가',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입 청소년 연령 상향 조정' 등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와 질적인 서비스 내용의 확충을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종사자들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들은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가장 큰 이슈임을 알 수 있었으며, '예산 확충', '정치인들의 인식개선' 등은 피해당사자, 종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개선되어야 할 점들로 보인다.

P02: 저희 주무부처가 여가부잖아요. 바라옵건대 여가부가 좀 이렇게 노동부도, 복지부도, 통합적으로 중심이 돼서 우리가 일을 하기 편하게 좀 질서가 되어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현장에서 참 많아요.

P03: 종사자처우가 너무 열악해요. 그게 이제 법인의 재정도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하여튼 처우가 너무 열악해요.

P07: 먼저 의식이 다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치하시는 분들도.

P08: 지자체에 별로 지원이 다르시잖아요. 양육비도 지자체마다 다르고 교복비 뭐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내려줘야 되요.

P11: 쉼터 입소하면 수급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P10: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엄마들하고 가끔씩 하는 얘기에요. 이 엄마들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다 집에서 살림을 살던 분이시잖아요. 말이 쉼터이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 여행 왔다는 느낌으로 쉬게 조리사가 있으면 안 될까 이거 당번 때문에도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엄마들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이 엄마들이 음식을 하면서 활력을 얻고 힘도 될 수 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쉬고 싶는데 그날은 엄마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거야 아침, 점심, 저녁을 이 엄마들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야 조리사를 도와줘도 되지만 거의 대부분 엄마들이 90%가 지겹도록 부엌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좀 쉴 수 있는, 소풍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 이름 그대로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

P08: 피해자분들이 그거인 경우가 있어요. 신랑이 다 떨어 먹어가지고 자기 명의로 빚도 지고 해가지고 신용불량자인 경우에 지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분들 경우에도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P12: 그리고 또 한 가지 애매한 게 가정폭력이라는 법적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명확한 가정폭력인데 그 사람들이 보고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하면 애는 가정폭력이 아닌 거예요.

P20: 이 썬터가, 저희 같은 경우는 5년째, 6년째 있어요. 한 곳에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는 혐오시설인가 싶어요. 쉬쉬해서 얻긴 하는데 계속 왕래하는 사람들이 기관차량도 왔다가고 새벽에도 막 왔다가고 하면 장기간 있다 보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알음알음해서 여기 뭐가 있다더라, 그거는 가정폭력 썬터도 마찬가지로 꺼라 생각이 들어요. 그게 법제화돼서 정확하게 보호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게 지자체나 정부부처에서 어느 정도 딱 그 정해줘서 해줄 수 있는, 뒷받침될 수 있는 명확한 그런 게 있지 않으면, 보호관찰소 구걸해서 얻어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몇몇 사람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재계약하기에도 어려운 상황도 있고. 더 확충이 되고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것 까지.

### ③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

#### 가. 정서 및 교육적 지원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특히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실무자들의 대답을 정리해보면 ‘정서적 지원’, ‘교육적 지원’ 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정서적 지원의 경우 현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심리치료를 장기간 치료로 법제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비밀 전학, 공부방 마련,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P10: 진짜 그런 지원은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학교를 가면 학교에 드는 모든 비용을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엄마가 직장을 안다니면 엄마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돈인데.

P11: 아이들의 미술치료가 거의 10회기로 끝나잖아요. 근데 10회기로 절대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P20: 그래야 되지 않을까.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일시보호 뿐만 아니라 단기 보호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시설이 늘어나면 아이들 보호조치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고 굳이 아이를 타시군에 보내지 않더라도 될 수 있는 방안이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행위자 굳이 남자아이일 경우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남자들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아동학대까지는

아니지만, 가정폭력 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데 대부분 비밀스럽긴 하잖아요. 근데 그 쉼터가 대부분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쉼터 같은 경우는 정말 비밀보장이 되지만 가정폭력은 인터넷 쳐보면 센터가 있는 곳에 쉼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행위자가 찾아와서 난동 피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엄격한 제한을 하게끔 현장에서 바로 체포해서 구금을 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 가정폭력 법을 제가 잘 몰라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려본 거구요.

P20: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제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마다 심리치료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줄이고 늘리고 이런 건 되는데, 심리치료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예산이라던가 인력이 충분히 지원이 돼서 학대피해 아동이 심리치료를 받던가 어떤 치료적 접근이 없으면 보호를 한다고 해서 애가 나아지는 건 절대 없으니까, 명확하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육적인 부분도 관련부처에서 전문적인 지원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학교에서 거부하지 않고.

#### 나.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사 반영 및 부모로부터의 동의 문제

현장전문가들은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가정복귀를 원하기는 하나, 행위자의 폭력 재발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부모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경우, 기관의 입장에서는 재발의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아동·청소년을 인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보호기관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해주지 않는다는 점에 실망을 하여 향후 폭력이 재발하는 경우 쉼터와 같은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 거리로 나가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할 수도 있다.

P14: 나중에 가정복귀 선택을 해서 본인이 좀 더 좋을 수 있는 거를 권유를 하는데, 가정복귀를 하고 싶어하지만 아빠가 없는, 행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복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P13: 애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건 재발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게 집에 가는 게 본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집에 가게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중략) 보통 가정폭력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는데, 그 기관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는 이 건 같은 경우는 재가 가도 될 만한 상황이다. 집에 가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사례개입을 하겠다. (중략) 부모가 재발방지 약속을 한 경우에 아이들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애한테 너 집에 가기 싫으니까 쉼터에 가자 할 수도 없고, 분명히 재발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호자가 재발장지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P15: 아이를 보는 앞에서 막 때리기 시작하니까 저희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보호할 수 밖에 없었고 이 아이가 분리되고 있다고 하니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 아버지가 동의없이 이렇게 처리하거나 막 저희 선생님께서 얘기를 했던거죠... (중략) 우리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면 아버님 동의 없이도 우리는 입소할 수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데려왔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늘 뭔가 개입을 할 때 부모동의를 하고 부모 동의 하에 모든 걸 한다고... 애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기관인데 도대체 애 말, 애의 의견만 믿고 데리고 가냐 이렇게 되가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저희 쪽으로 전화가 와서... (중략) 폭력이 눈앞에서 이루어졌고 실상 아이가 요청했을 때 저희가 강제성은 없으나 입소절차는 가능하기 때문에... (중략)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모 동의를 얻어 움직이는 단체고, 동의도 동의지만 계속 학대하는 부모일지라도 그쪽에선 개입하고 상담을 진행하다보니까 연락을 계속하고 연락하다보면 애 어딴냐고 하고, 그러면 거짓말 할 순 없고, 애는 무섭고 여기 말고 다른데 가고 싶어하고 그런 순환들이 좀 최근에 있었어요.

부모가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로 규정이 되어 있는 한, 가정복귀의 문제나 시설입소, 심리치료 등 피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부모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더구나 사례관정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청소년 일시쉼터 등의 청소년 기관들은 개입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기관 담당자들이 보호자로서 부모 대리인의 역할을 할 경우 부모 쪽에서 법적인 대응을 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의 입장에서도 부모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 부모로서의 의무를 함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P13: 귀가를 할지 시설로 갈지 그런 것도 이제 그쪽(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로 결정을 하구요... 그쪽에서 사례개입을 하니까 주로 결정하고 간혹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귀가를 했다가 다시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아예 저희 쪽으로,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난감하죠.

P15: (정신과 등에 데려갈 때 법적인 대응 문제는) 저희 쪽보다 병원으로 컴플레인 가기 때문에 안해주는 거예요. 딱 이렇게 부모 대리인의 역할을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또 대리인의 역할을 하자 치면 역할만 할 수 없고 의무도 따라오는 거라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다. 연령 제한 규정 완화

현장실무자들은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규정된 연령으로 인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현재의 가정폭력 지원체계가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주무부처가 다르다보니 성별 차이로 인해 가족 간 동반 입소가 어렵거나, 연령제한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13: 보통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는 연령이 만 18세까지인데 그러면 현재 아직 청소년인 애들은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만 18세가 지나서 지원을 못받는 애들도 있거든요. (중략) 현재 고3이고 만18세가 지났는데 생일이 지나서 사례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사례개입을 안해주세요. 가정폭력이 확실한데... (중략) 전화상담은 가능해요 뭐 이런 정도예요. (중략)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냐 물어보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 가정폭력 신고로 되버리는 거라서 그럴 때 좀 많이 난감해요.

## 라. 비밀전학제도의 개선

현장실무자들은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나와 쉼터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전학을 가게 되는 상황을 언급하였다. 가해자인 아버지를 피해 비밀리에 쉼터에 오는 학생들을 위해 학적도 비밀리에 옮길 수 있도록 비밀전학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비밀전학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비밀전학과 관련한 행정처리 지연 및 복잡한 서류절차 문제는 학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학교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01: 저희는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한분이 오랫동안 비밀전학을 맡으셔서 그런지, 그래서 다니던 학교에 동의서, 전학동의서 해서 보내잖아요. 거기에다는 안 나온다고 해달라고 해요. 아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그 서류를 다니던 학교의 교육청으로 보내잖아요. 어디 학교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 학교에서는. 교육청으로 보내면, 그 다니던 학교의 교육청 장학사 통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초등학교에서 지금 전학서류가 가정폭력으로 갈겁니다. 그러면 받으시면 저희 교육청으로, 저희가 이제 전학시킨 교육청으로 보내주십시오. 약간의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이게 토스돼서 오니까 다니던 학교에서는 어디로 간지 모르고, 교육청에

서는 어떤 관할교육청으로만 보내지 어디학교로 전학 가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만하게 진행은 되는데, 굉장히 절차가 여러 개를 거쳐야 되니까 시간은 좀 많이 걸리죠.

P02: 이동이 많으니까 업무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P02: 교육청에 그 건에 대해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저는 한 장학사를 5명까지 거친 적이 있어요. 이리해라 저리해라.

P05: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쉼터 지역 같은 경우는, 요 근래,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요 근래 와서는 거의 중고등학교도 바로 들어와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연계하는 데로 갈 수 있었는데,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서류가 그 아이가 있었던 중학교에서 비밀전학 서류가 그 중학교가 해당하는 교육청에 보내지고 그 교육청에서 저희 기관이 있는 교육청으로 보내지고 그 교육청에서 다시 또 저희 기관 근처 학교까지 오고 이게 거의 한 달이에요. 그 아이는 그럼 한 달 동안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어머니도, 아이도.

P05: OO도가 완화가 된 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히 주변에 있는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계시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교무부장 선생님과 자꾸 많이 하다보니까 소장님이 가서 많이 인사도 드리고 하다보니까 일단 그러면 서류 오기 전에 학교부터 다니게 하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P06: 몰라도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아예 오신다고, 저희는 중장기니까 미리 어디 시설에서 들어오신다 하면 주민번호라든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미리 공문을 넣어놔요. 그러면 2주정도, 빠르면 열흘정도 되고 늦으면 2주정도 되면 공문이 이쪽 교육청에서 학교로 넘어와요. 그러면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때쯤 돼서 전화를 드리면 아 공문이 어제 왔다 그러나 오늘 왔다 그러나 그렇게 또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바로 그러면 내일 아침에 8시 반까지 가겠습니다 해서 지금은 그렇게 조금이라도 빨리 학교를 갈 수 있게끔 해드리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비밀전학 문제가 아주 힘들어요.

P06: 서류가 교육청에서 와야지 만이, 보고 내 눈으로 확인 해야지 만이 아이를 받아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P11: 너무 힘들어요 비밀전학. 그 거의 오래 걸리면 한 달이 걸려요. 이거는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학습권이 보장이 안 되니까 애들이 한 달 건너뛰는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학습에 대한, 못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P11: 너무 많죠. 전달체계가. 지금 그게 자체가 저희가 이제 원학교에 공문을 보내요.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원학교는 그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 교육청은 또 저희학교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요. 그러면 저희학교 교육청은 우리가 오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가는 거거든요. 이 몇 다리 건너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P10: 공무원들도 사실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전화를 한 다섯 군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라 그래가지고 교육청에다 전화를 했는데 저희 담당 아닙니다 또 이렇게 바꿔주고. 또 그쪽에서 이쪽이라고 맞다고 전화했는데, 그래서 제가이랬어요. 다섯 번이나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끼리 하는 말이 야, 다섯 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 아직까지 이런 훈련이 안되었는거같아요.

P08: 비밀전학의 행정 간소화. 절대적으로 필요하구요.

그러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전학을 가게 되더라도, 일선 학교에서 가정폭력 피해 학생들을 문제아나 골치거리로 치부하면서 전학을 거부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P02: 심지어는 저희 쉼터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는 제외하고 있거든요.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조금 떨어진 학교로 이 아이가 왔다가 하면 또 다시 퇴소하고 나면 새로운 아이가 오게 되면 그 학교로 가게 되잖아요. 왜 우리학교로만 오느냐고.

P03: 초등학생을 데리고 6학년짜리를 전학을 시켰는데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 반 배정이 되잖아요. 책 가져왔니? 엄마하고 저하고 학생하고 셋이 갔는데, 책을 안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엄마가 돼가지고 어떻게 책도 안 들고 애를 전학을 시켜요 하시는 거예요. (중략) 책을 안 들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문제 많다는 거지, 연세 많으신 여자 선생님이신데, 엄마가 잘하지, 반학기만 있으면 졸업인 애를... 참지 못하고... 하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또 한 번 그 집 누나는 중학생인데 전학을 시키는데, 선생님께서 이 학교는 문제아가 많은 학교예요. 괜히 애가 와서 또 피해당할까봐 걱정이예요 하면서 친절하게는 말씀하셨지만 나 이 아이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또 엄마가 그 학교를 보내기 싫다시는 거지, 그래서 OO쪽으로 괜찮은 학군 쪽으로, 여기갈래 그럼? 그랬더니 거기는 좋다고. (중략) 사춘기고, 이제 전학을 시키러 가면, 행정선생님, 누구선생님, 제가 미리 설명을 해요, 이리이러 하니 말도 좀 조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화로 미리 다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선생님 또 오바하시는 거예요. 나는 니가 염색할 줄 알았더니, 예쁘구나, 가정폭력피해자녀들이라고 하면 무언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선입견을 갖고 계신거지. 칭찬하는 말속에 이미 오바를 하시는 거예요.

P07: 안받아주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반 협박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럼 또 협박 식으로 해서 안 받는 거죠.

P07: 그니까 받아주셔야. 저희가 이거 무슨 법령도 있다. 이러면 왜 이렇게 협박 식으로 하시냐고. 근데 저희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아이가 이만저만 해서 당장 학교를 가야하는데 왜 못받아주시냐

그랬더니 다른 학교 알아보시라고 저희가 정원이 다 찼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시고,  
P05: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학교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문제야 하나 더 받는 기분이 드시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P06: 다른 학교 보내면 안 되냐고. 왜 우리학교 여야 하냐고.  
P05: 어떻게 보면 요주의인물이 되는 아이들 또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P07: 암묵적으로 아이들한테 낙인이 생기는거예요.  
P05: 법령에 있는데도 거부하세요.  
P07: 그것도 교육청으로 공문을 다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식자체들이  
다 변화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까지도 아이들 전학보내기가.  
P20: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소득수준, 그거 같은 경우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기관  
같은 경우는 위탁교육이나 전학을 해야 되는데 그 학교 아니면 학군에 갈수가 없는데 그 학군  
내에서 상위 몇 프로 거주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학교라, 학교장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 표현하고, 법에서 정해서 강제성이 없으면 안한다는.

가정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학교에서의 전학거부 외에도 비밀전학의 핵심이 되는 '비밀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은 학교 및 교육청 등 업무담당자들이 대응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자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이차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P04: 아빠가 와서 난리치면 어떻게 하냐고 오히려 저희한테 물어봐요. 제가 서류해서 다 보내도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오히려 더 교장선생님들이 아직까지 그런 인식교육이 안되신 것 같아서요.  
P03: 저는 예전에 상담소에 있을 때, 제가 비밀전학시킨 집이 있는데, 남편이 지속적으로 학교에  
찾아가서 우리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나갔다. 내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 어디로  
전학 갔는지 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하니깐 내가 보낸 공문을 복사를 해서 드린거예요.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그 분이 내 이름을 대면서 전화가 왔어요. 담당 누구, 소장 000 있구만요. 우리  
와이프 내놔라. 그런 일이 있었네요.  
P07: 저희 예전에 전 학교에서 전전학교에서 노출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아빠가 그  
동네 유지인거요. 알아주는 유지인거예요. 그래서 학교선생님한테, 집에서는 폭력남편, 폭력아빠지  
만 동네에서는 정말 자상하고, 따뜻하고, 정말 인지도 높은 남편인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또 사정을 한 거예요. 뭐라고 사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부인이 아이들 데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어디 학교로 갔다더라 얘기를 해줘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이.

P05: 그리고 어떤 분은 아무생각도 없이 아빠한테 담임선생님이 노출하시고, 애 전학 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모른다고 차라리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아예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이래야지 되는데. 언급을 아예 여기와 연락이 제대로 닿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그거를 하니까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짐작 있는 아빠는요 담임선생님한테 계속 협박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힘드니까 우리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뭘 어떻게 해, 선생님이 알아서 제한을 하셔야지, 그걸 우리한테 하시면 안되잖아요. 그 선에서 알아서 하시는 건데.

P06: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전화를 하세요. 불안하셔가지고, 이거 또 와서 아빠가 깡판을 부릴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경찰 부르라고 하세요. 선생님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구요, 부르세요, 부르시면 됩니다, 어머 그래도 되는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P07: 대부분 의식들이 잘 안되어 있어서. 그냥 애아버지이겠거니, 설마. 그냥 대화로 푸세요라고, 남일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 학교로 갔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 얘기를.

P17: 그들도 그런 걸로 연락드리고 하면 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원래 그 부모가 교육청에 전화해서 민원 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자식 어디학교 다니냐고 빨리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관심을 좀, 담당자마다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는 아니세요. 교육청은 특히나.

결국 행정처리 지연의 문제는 학생들이 빨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학교생활을 원활히 해나가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고 학교적응이라는 이차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등 불안이 가중된다.

P05: 왜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차라리 들어갈까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차라리 방학 때 오시면 좋죠. 아주 감사하죠. (중략) 아이들 같은 경우도 되게 오자마자 어떤 애들은 중간고사를 바로 봐야 되는 상황. 그러면 공부에 욕심에 없는 애들은 괜찮아요. 대충 니가 대충 찌고 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게 있는데 이 한번으로 그걸 다 깎아먹게 되잖아요. 일단 내신이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화가나죽겠는데, 당장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시험범위도 모르는데 내일 시험을 본다고 하니, 정말 그 아이 입장에서는 엄청 스트레스가 되고, 엄마는 엄마대로 너무 미안하고, 이 상황이 되더라고요.

P05: 그니까 서류도 그렇지만 교복문제도 또 있어가지고 교복이 또 빨리 이제 돈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이 거의 일주일 이상 걸리고 이러다보면 엄마와 아이의 그 불안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 입소했을 때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것까지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고비가 되는 것 같아요.

#### 마.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지원

현장실무자들은 쉼터에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피해자가 입소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피해자의 입소가 초기에 차단되는 경우도 있으며, 입소가 된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설 내 역동이나 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피해자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나 강사와의 상담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장실무자들이 병원 치료 및 약물 복용 문제, 행동 조절 문제 등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현장실무자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종합병원 차원에서의 진단시스템, 정신보건센터 인력 및 기능 확충, 가정폭력전문치유센터 건립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관련 전문가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낙인을 찍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언급하였다.

P15: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잘 안받으시고 블랙리스트 다 되어 있어서 요새는 어디는 그냥 받아주는데 어디는 이름, 나이 이런 거 물어보고 연계하라는 기관도 있더라고요.

P14: 그런 아이가 오면 일단 되게 힘들어요. 갈 데도 없고 보낼 데도 없고, 받아주는 데도 없고... 말씀하셨던 대로 블랙리스트가 떠나지고 이름만 대도 개 안되겠어요 말씀을 하기 때문에...

P04: 그전에 회의 갔을 때 어떤 시설에 오셨던 분은 그분이 온 시설을 다 그냥 영망으로 해놨더라고요. 한 분이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통제가 안되는 거예요. 거기 입소했던 다른 가정 어머니들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분 정신과적인 문제가 하나 있으면 온 그 시, 경찰, 정부기관까지 자기한테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시설 하나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P01: 그런 분 한번 들어오면 진짜 전쟁이에요. 모든 그 집단의 다이내믹이 완전히 깨져버려. 후유증이 너무 크고, 진짜 특징이 그거예요 다른데 가서 다 썰서, 여기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해요. 1366, 여성의 전화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여기서 버젓이 생활을 해요. 저한테

피드백이 오는 줄도 모르고, 여기가 이렇게 아무것도 서비스가 없고 그렇게 불만이면 1366에서 좋은데 보내주신다고 하니 나가시라고 그러면 연계시켜드리겠다고. 그래도 안 나가요.

P08: 정말 멘탈이 우리가 커버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저는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전까진 폭력으로 정말 이렇게 오시는 분이고 그냥 시간 지나면서 공동생활 자체가 가능한,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분들이 심터로 오시는거예요. 입원을 해야 돼요. 우리로서는 커버가 안 돼요. 밤에 돌아다니고 별 희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약 먹으라 하면 난리가 나죠. 날 정신병자 취급한다고. 그거가 문제인거예요. 생활도 생활이지만 일단 상태가 여기가 적합하지 않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상황인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거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 그렇대요. 제가 연계하면서 물어보거든요 요즘 어때요 물어보면요 거의 그렇대요.

P01: 이미 7, 8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진료를 계속 약을 타서 먹었는데, 약을 먹는 것 가지고 여기 공동체생활이 어려운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1366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1366에서 이런 분들을 막 심터에 보내니까 심터에서 막 클레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여기서 공동체 생활 하냐고, 왜냐면 심터라는 공간은 칼도 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다 식사당번 하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분을 우리에게 보내느냐 이렇게 하고. 1366은 무조건 밤에 경찰이 와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보호를 하라고 하고, 자기는 심터 가겠다는데 여기서는 이런 문제는 못 받겠다고 하니깐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진단 시스템 이런 거를 하든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마다 있잖아요. 큰 구역으로 광역으로 전국으로 한 대여섯 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가정폭력보호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P01: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니라 정신보건센터. 거기는 정신과 의사도 같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정신보건센터에서 큰 광역시에 몇 개정도만 만들어 논다고 하면 정말 그분들이 치료도 받고 안전하게 보호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P03: 근데 전문가. 나름대로 다 전문가이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전문가는 효과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안산에 치유센터 최초에 생긴다고 하죠. 가정폭력전문치유센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P03: 그런 게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전문가 이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병원에 가서 별 소용이 없어요. 잘 참아보시지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 이 엄마들이 상처만 받고 오죠. 그리고 정신과 치료는 거의 약물로. 정말 정신과폭력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서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낙인만 찍혀서 또다시 상처만 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 현장전문가들은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인식함.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나이와 성, 직간접 피해 여부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인식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이가 어릴수록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여자 아동·청소년들은 아버지를 피하고 싶은 대상으로 보는 반면 남자 아동·청소년들은 분노와 복수의 대상으로 봄.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움과 분노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죄책감, 안쓰러움 등의 감정을 가지는 등 양가적인 감정을 보임.
  - 피해자에 대한 어머니에 대해서는 의존심, 엄마와 자신을 분리하여 생각함, 미움, 분노감과 불쌍함 등의 감정을 가짐.
  - 피해자인 자신에 대해서는 두려움, 절망감, 자괴감, 울분 등의 감정을 가짐.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은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외상으로 인한 퇴행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빠름.
  - 현장전문가들은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장기적인 심리치료가 가장 필요하다고 언급함.
  
- 현장전문가들은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받은 지원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함.
  -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동·청소년 스스로 정보를 찾아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편이며, 1366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서 서비스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함.
  - 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만족하기도 하고 불만족하기도 함. 만족하는 경우는 쾌적함과 심리적 안정이 주요 이유였고, 불만족하는 경우는 규정이나 규칙 등으로 인한 제한, 개인적 공간이 없음, 외부와의 단절, 타 입소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불편감 등이 주요 이유임.
  - 입소자들 간의 관계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역동이 입소자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침.
  - 입소자들은 시설종사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요구사항을 맞춰가기도 함. 여성 시설종사자 중 남자 청소년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음.
  - 피해자들의 가정복귀와 자립 비율은 다양한 이유로 차이를 보이는데, 단기시설 입소자의 경우 자립준비기간이 짧아 자립준비가 어려운 반면, 중장기시설 입소자는 자립여건을 만드는 경향이 있음. 가정복귀의 경우 어린 자녀들 때문에, 경제력 없음, 달리 돌아갈 곳이 없어서, 가해자가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등이 주요 이유가 됨.
  
- 현장전문가들은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주무 행정부서의 통합적인 연계, 퇴소 시 자립 지원금 증가,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입 청소년 연령 상향 조정 등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질적인 서비스 내용 확충 등이 요구됨.
  -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정서적 지원과 교육적 지원이 가장 중요함. 이를 위해 단기간으로 제한된 심리치료를 장기 치료로 법제화하고, 비밀전학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 제공 등의 지원이 요구됨.

### 3. 논의 및 시사점

가정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장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폭력은 아동, 청소년들의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오늘날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은 과거에 비해 높아진 편이지만 안타깝게도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피해를 경험한 피해여성,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심층면접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체계와 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가정폭력피해 여성과 피해 아동·청소년의 면접내용을 CQR로 분석한 결과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들은 가정폭력 후, 가해자인 아버지에게는 미움과 불쌍함 등의 양가감정을, 피해자인 어머니에게는 보호해주지 못했음에 대한 미안함이 가장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둘 다 싫다'라는 응답은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아동·청소년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인 부모 사이에서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있으며, 양가감정 사이에서 분노와 죄책감 등과 같은 심리적인 불편감을 경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치료는 폭력을 당한 직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폭력을 당한 후 자신에 대해 가지는 생각과 감정은 후회와 스스로를 비열하다고 생각함 등과 같은 '자책'과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자아정체감을 형성해나가는 시기에 이러한 자기지각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이후, 피신하여 시설에 입소하는 과정과 이후 계획에서 주도적인 엄마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상 당하는 엄마를 보살펴주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자신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미안함, 폭력이 행사될 때 느끼는 무서움과 공포 등의 이유로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엄마의 의견을 따르고, 엄마를 위해 생활해야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이는 자칫, 가정폭력피해여성과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간의 불안정애착을 유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대부분의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지원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곳으로 가야 안전하며, 어떤 도움을 청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가정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고려하도록 예방차원의 교육을 하는 것과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다섯째, 쉼터 및 일시보호소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인터뷰 결과,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들과 피해여성들은 관련 보호시설에서의 생활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거주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다시 시설을 옮기거나 불충분한 상태에서 자립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표현하고 있었다. 많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신의 학업과 미래를 설계할 곳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들의 요구에 맞는 장기쉼터가 더 확충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또한 거주시설과 함께 가정폭력피해자들의 개입을 위한 국가차원의 상담센터 및 병원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료 및 심리치료가 장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환경적, 법적 제도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겠다.

첫째,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 경험은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성별, 연령, 가해자, 피해자와의 밀착 정도,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에 대해 양가감정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가정폭력피해 아동·청소년과의 면접이나 상담에서는 해당 청소년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존중하며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특히, 폭력이 발생한 직후,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장기적인 심리치료를 언급한 것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외상에 대한 치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되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둘째, 가정폭력 관련하여 받은 지원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쉼터나 가정폭력 관련기관과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피해를 신고하고 기관으로 입소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겪은 기관 간의 연계 부족, 허술한 서비스 등의 보고를 볼 때, 예전에 비하여 사회인식이 많이 개선되었고, 인터넷을 비롯하여 기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가정폭력피해 여성이나 아동·청소년들이 지원서비스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나 서비스의 개선은 피해당사자들과 현장실무자와 가정폭력피해지원기관 모두에게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국가의 예산은 피해당사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과 이들에게 개입하는 기관과 현장실무자들을 위한 지원으로 크게 구분되어 실행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특히,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일시적인 시혜성 지원보다 장기적으로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과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지원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해당기관과 현장실무자들에게는 소진되지 않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 즉, 보수체제, 행정적인 절차의 간소화 등에서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실무자들이 언급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대한 검토는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넷째, 입소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모든 기관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는가, 국가에서는 왜 이러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 지자체의 지원 범위 등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제 VI 장



## 정책제언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2. 정책제언



## 제 VI 장 정책 제언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존의 가정폭력 관련 행정체계 및 지원서비스가 '건강한 가정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폭력이 가족이라는 체계 내에서 미치는 영향을 가족이라는 체계의 역동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가정구성원의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라 지원 부처가 다른 현재의 시스템은 가족이라는 체계의 전체성을 고려하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개별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단순논리에서 벗어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가족이라는 관점 내에서 통합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피해 가정구성원 개개인 중 누구도 보호·지원에서 배제되지 않고,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해 보다 개선해야 할 법률상, 정책 상 지원방안을 고려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 1) 가정폭력 관련 법률 상 제한점

현재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두 가지 법률-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가정구성원 사이에 일어난 신체적, 정신적, 재산 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예방은 모든 가정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법률 상에 규정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에만 해당할 뿐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이 아니며, 가정폭력범죄자와 그 가정구성원인 공범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sup>13)</sup> 이러한 규정으로 인한 한계는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상 규정된 행위가 아닐 경우 행위자가 처벌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도 가정폭력범죄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만 국가가 개입하여 보호와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규정되어 있어,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폭력을 경험하지 않거나 가정폭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측면이 매우 미흡하다 할 수 있다.

둘째,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여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에서는 건전한 가정을 육성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을 살펴보면, 가정폭력범죄행위자는 아니지만, 가정폭력을 행한 행위자의 경우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나아가 가정폭력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가족이나 타인의 권유로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희망할 때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반해,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은 가정폭력의 예방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동반가정 구성원에 대해서는 숙식의 제공 이외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부모의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동·청소년들이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만큼이나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가정폭력범죄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살펴보면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감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상담위탁 등 대부분 보안처분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교정적 처분을 통해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가정을 육성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좋은 법률이라 할 수 있지만, 행위자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에

13)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 간의 차이는 ‘제3장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언급한 바 있다.

부합하는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다른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처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진정한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친권행사의 제한, 접근금지, 보호관찰 등의 방법을 벗어나 가족 간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갈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다섯째,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아동들의 경우 4년 이상의 양육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4년이 초과한 경우 국가의 개입을 중단하겠다는 근거는 그 근거가 매우 모호하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피해 아동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개입 정도를 단축할 수는 있으나, 피해 아동이 원할 경우 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2) 가정폭력 대응 서비스 상의 제한점

가정폭력 관련 지원 서비스에서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서비스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대응서비스는 대체로 여성과 청소년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아동이나 노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등 대상에 따라 지원체계가 분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일원화된 체계에 의해 각 대상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연령범주에 따라 일부는 보건복지부의 체계에 따라, 일부는 여성가족부의 체계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여성긴급전화인 1366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원스톱 위기개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이는 여성 중심의 지원서비스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동이나 청소년은 또 다른 체계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 어머니들이 자녀를 동반하여 쉼터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 등의 문제로 인해 가정구성원이 각기 다른 보호시설로 흩어져서 생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피해자를 성별이나 연령으로 구분하는 현재의 지원체계는 피해자를 가족구성원이라는

관점이 아닌 개인에 대한 지원에 머무르게 되어 '건전한 가정을 육성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해자를 단순히 연령범주에 따라 구분하기보다 피해자라는 범주 내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학습권 보장을 위해 현재 비밀전학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업무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부족과 업무에 관한 낮은 이해도로 인해 학령기 청소년들의 비밀전학 시 비밀이 유지되지 않거나, 폭력 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비밀전학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들이 전학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업무담당자 조차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가정폭력의 문제에 대해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정도로 치부하여 가족의 사적인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인식 때문일 수도 있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정에 대해, 그리고 가해자인 아버지에게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기도 하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보다는 어머니와 같은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행위자인 아버지와의 재결합을 거부하거나, 또는 생활의 안정을 위해 행위자인 아버지와의 재결합을 원하는 경우 모두에 해당된다.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취를 결정하게 될 경우 이후 가출이나 폭력의 재발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넷째, 가정폭력과 관련,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었으나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은 가정폭력이라는 문제에서 주피해자이기보다 주변인으로 대접받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폭력경험으로 인해 성장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들과 폭력의 대물림 경향을 고려할 때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험이 직접적인 피해이건 간접적인 피해이건 상관없이 이들을 위한 개입은 매우 시급하며, 향후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는 그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이들의 외상적 경험에 대한 치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상처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일률적인 치료서비스의 횟수로 제한할 수 없고, 의료 및 심리 전문가가 아닌 업무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그 지원의 여부나 정도, 기간 등을 제한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든 지원은 아동·청소년 전문가의 판단과 의견에 따라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 정책제언

위와 같은 정책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법률 관련 개선 방안

#### (1) 가정폭력행위와 가정폭력범죄행위의 재규정을 통한 조기개입

가정폭력행위와 가정폭력범죄행위를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피해자와 가정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개념규정을 새로 해야 한다. 현재 가정폭력범죄를 행한 행위자를 가정폭력행위자로 표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폭력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자에게만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상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가정폭력행위에 의한 피해자에 계도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폭력범죄를 제외한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예비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범죄를 제외한 가정폭력의 범위에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관계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치료지원,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사전에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알콜중독, 마약중독, 언어폭력의 경우에 삼진아웃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행위를 할 경우 국가가 수감명령, 치료명령, 상담명령을 통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수의 가정폭력범죄는 사전에 차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육자의 알콜중독, 마약중독, 언어폭력의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가 지원된다면 비록 가정폭력범죄행위자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지만, 가정폭력범죄를 제외한 가정폭력행위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성립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 대해서 가정폭력범죄이전 국가의 개입을 통한 가정폭력범죄예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건전한 가정육성'의 목적을 가정폭력보호법에도 명시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건전한 가정의 육성이라는 목적개념은 가정보호사건 처리를 위한 개념으로 두고, 가정폭력보호법상 건전한 가정의 육성의 목적을 설정하면, 가정폭력범죄행위자가 되기 전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가정폭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게 마련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이후 재발의 방지를 위한 가정폭력행위 시 국가의 개입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죄 이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가정폭력범죄를 제외한 가정폭력행위 시 국가가 복지적 개입을 하는 것은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 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모든 이에게 복지적 개입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도와 단계에 따라 다양한 국가개입의 길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의미이다.

(3) 관계개선을 위한 갈등해결의 관점에서 회복적 정의 도입 방안 마련

부부관계개선이나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갈등해결 기제의 교육과 사회적 합의'는 세대별로 지역별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아동·청소년은 학교폭력의 해결기제로 또래조정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해결을 배우고 있으며, 2007년 12월 신설된 소년법상의 화해권고조항, 2008년 시행을 시작하고 나중에 법에 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이 형사사범분야에서 실행되고 있다. 그리고 대안적 분쟁해결을 통한 르완다 전범의 처리까지 다양한 갈등해결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상사중재법원이 중재이전에 조정의 먼저 권유하고 거치는 중재조정이 유행하고 있는 등<sup>14)</sup> 단순한 처벌 위주의 해결을 넘어서 최근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가정폭력 사안에서도 관계개선을 위한 상담이나 지원, 조정에도 국가가 재정적 지원이나 연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구체적으로 원가정 구성원과의 재결합이 가능한 관계개선, 재결합이 불가능하지만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관계개선 프로그램

14) 중재는 제3의 권력자에게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중재해달라고 청원하는 것이다. 중재자의 권위에 의해서 중재안을 당사자들이 무조건 받아들여야한다는 것이 조정과는 가장 크게 구별되는 개념이다.

제공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기존의 타인과의 관계를 재구축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건강한 공동체 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정책 관련 개선 방안

### (1) 가정폭력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관련 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관련 업무는 여성과 청소년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노인과 아동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가해자 교정 및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건강한 가족가치 정착을 위한 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등이 담당하고 있다. 각 담당업무에 따라 부처가 구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업무체계는 업무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 대상에 따라 또 한 번 주무부처가 구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족관련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문제를 여성가족부의 전담 하에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부처 간 업무를 재편하고, 일원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특정 부처에서 업무를 전담하는 형식의 현실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업무담당자 간 연계를 통해 현장의 업무체계를 총괄하는 통합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관련 기관 간 업무 내용을 분장하고 이에 따른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신고 외에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더욱이 피해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아동·청소년인지, 노인인지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지원과 관련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특히, 노인 및 아동)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여도 그에 따른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고자가 여성이건, 아동·청소년이건 간에 '통합 가정폭력 원스톱 지원센터(가칭)'를 통해 신고를 하면, 가정폭력 사건의 특성에 따라

현장전문가가 기존에 구축된 다양한 기관 간 연계를 통해 경찰 신고, 의료지원, 거주지 지원, 법률 지원 등 피해자의 연령별, 성별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지원센터는 기존의 방식과 같이 피해자가 가정폭력 사건 발생 후 어느 기관에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경황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전문가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 또는 도움 요청이 들어온 가정에 대해서는 신고된 가정폭력 외에 다른 유형의 가정폭력(자녀학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가정폭력 회복센터 설치·운영

또한 통합 가정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내에는 가정폭력 회복센터를 설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상담, 가해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의무교육,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구성원을 위한 지원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앞서 서술한 ‘회복적 정의’의 측면에서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이는 단순히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각기 제시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회복적 정의를 접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갈등 해결 및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가해자에게는 성행교정의 기회를, 피해자에게는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와 회복은 원가정으로의 복귀, 또는 원가족과의 재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당사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입은 피해가 무엇이고 이를 회복하고 극복하기 위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15). 즉, 가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처벌이나 피해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서 피해당사자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을 가해당사자와 협의함으로써 피해회복의 수단과 방법을 도모하는 방식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폭력으로 인해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거나 부모가 적절한 역할을 해주지 못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가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리치료나 상담, 회복적 정의를 접목한 갈등해결 프로그램

외에 가해자인 부(또는 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좋은 역할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멘토를 연결하여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가정에 대한, 그리고 부모에 대한 손상된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매칭한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대학생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회복센터는 기존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기관 및 센터들 중 지역 내 거점기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거점기관은 지역 내 상담기관 및 센터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3) 심리적 외상 센터 운영

현재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피해자들과 현장전문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심리적 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보호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담 및 정신과 치료의 경우 지원 횟수나 지원 비용의 한계가 있으며,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적인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충분한 치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상담 초기에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다가 어느 정도 상담이 지속되고 상담자와 라포를 형성하게 된 이후에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면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감정이나 고민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치유를 시작하기도 전에 상담이 끝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흔히 가정폭력을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관계의 문제이고,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정폭력은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가정구성원이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리적 외상을 남기는 일종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횟수 또는 일정 비용의 심리상담을 제공하기보다 피해자들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각 피해자들의 외상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보호시설로 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위한 비용을 더 많이 배분하는 방식이나 심리적 외상만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센터를 신규 건립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겠으나,

피해자들의 보다 안정적인 외상 치유를 위해서는 현재 시군구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정신보건센터나 보건소(성인 대상자의 경우) 혹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청소년 대상자의 경우) 내에 심리적 외상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여 가정폭력을 비롯한 학교폭력 문제,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접근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 필요

아동학대특별법이 시행되었으나 피해 아동·청소년은 여전히 주변인으로 대접받고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강제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사는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다. 미국의 피해 아동·청소년보호와 지원 정책이 ‘원가정 복귀, 입양, 자립’ 등으로 나뉘어 중간 목표를 가지고 세부 계획을 수립했던 과정에서 당사자인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욕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엇보다도 원가정에서의 폭력문제와 갈등이 해결되어 원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 할 수 있으나,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상태일 경우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대안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의사결정 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5)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와 지원 제공 시 아동·청소년 전문가의 의견 반영 필요

성장과정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폭력 목격 경험)은 개인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치명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고, 개인이 처한 상황과 자원에 따라 그 회복 가능성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정폭력보호법상의 피해자 동반 가정구성원일 가능성

이 가장 높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실제 피해 상황이나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즉, 이러한 지원은 일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는 과한 도움이 되는 지원일 수도 있으나, 일부 다른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 될 수도 있다.

이에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정폭력보호법에서의 보호와 지원의 여부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 상황과 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동반 가정구성원으로 추정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의 지원 여부가 보호시설의 업무자에게 달려있으면 안되며, 이는 임의적 규정이 아니라 법률에 필요적 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필요적 규정이라 함은 모든 간접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상담 및 치료가 강제되도록 규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보호자 중에서 1인이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면, 가정구성원인 동반 아동·청소년은 반드시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상담 및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보호시설의 업무담당자가 재정적 요인이나 인력적 요인을 기준으로 상담 및 치료에 대한 필요성과 같은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여부를 판단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든 보호와 지원은 아동·청소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성장 및 발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6) 건강한 가정 및 사회 육성을 위한 반폭력교육 실시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 조사와 심층면접 결과, 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고, 추후 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폭력이 대물림될 수도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및 각종 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보다도 피해자가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폭력 사용에 대한 허용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폭력의 고리를 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낮추기 위해 각급 학교에서 반폭력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폭력교육은 갈등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옳지 않음을 알려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폭력이 사용되어서는 안됨을 가르치는데 목적을 두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폭력의 예방교육에 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는 바, 학교에서 폭력과 관련한 또 하나의 교육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와 같은 법률에 기초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 및 전달 및 과급력이 강한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개발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갈등해결 방법, 자신과 타인의 인권 보호 등에 기반하여 폭력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 (7)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관련 현장전문가들은 일선 학교, 교육청, 경찰서 등 다양한 관련 기관 업무담당자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문제를 제기하였다. 많은 업무담당자들은 가정폭력에 대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관계의 문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훈육의 일환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특정 문제로 인해 폭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폭력을 피해자의 문제로 보거나, 피해자에게 좀 더 참을성을 요구하는 등의 반응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쉼터입소, 비밀전학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비밀유지를 하지 않고 ‘가족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인 바, 폭력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인식, 나아가 우리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폭력은 가정폭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사이버 폭력, 데이트 폭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관한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폭력 자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며, 이는 앞서 서술한 반폭력 교육과도 연계하여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 (8) 쉼터 공간 개선 및 확충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거주를 지원하는 쉼터의 경우,

일시쉼터이건 중장기쉼터이건 상관없이 폭력의 피해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신체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락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쉼터는 성별과 연령 제한 문제로 피해 가족이 여러 시설로 분리되어 거주해야 하거나, 청소년 일시쉼터의 경우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입소가 거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일시쉼터는 시도별로 1개씩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입소자의 성별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방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이다. 일시쉼터가 남자 청소년 방과 여자 청소년 방을 구비해야 한다는 기준이 존재하지도 않고, 시도 내 접근 가능한 시설조차 없는 경우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을 오히려 거리로 내몰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한다. 이에 쉼터 공간 개선 및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나, 예산상의 문제와 비밀유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무조건적 시설 확충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의 공간 개선이나 기 운영 중인 시설의 활용에 초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 가족 쉼터의 경우, 10세 이상의 남자 아동이 함께 입소를 해야 하는 경우 남자 아동을 격리하여 청소년 쉼터나 그룹홈 등에 입소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격리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에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여성(남성)쉼터, 피해가족쉼터,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를 위한 쉼터 등 그 유형을 다양화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쉼터의 경우 원룸형 다가구주택 등을 활용하여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일시쉼터의 경우에는 최소 시도별 1개소를 설치해야 하고, 쉼터 내에 남자 청소년 방과 여자청소년 방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시도별 쉼터 1개소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 내 청소년 중장기 쉼터를 거점기관으로 지정하여 일시쉼터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쉼터 이용 후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다른 비행문제를 가진 청소년들과 어울려 가출팸이나 노숙 등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추적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추적조사의 경우 개인정보 이용 관련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는 있으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감시의 차원이 아니라 라포를 잘 형성한 현장전문가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참 고 문 헌

- 강문희, 신현옥, 정옥환, 정정옥(2004). 아동발달. 서울:교문사.
- 강소영(2012). 가정폭력노출경험이 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방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8(1), 5-30.
- 국가정책조정회의(2013).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 관계부처 합동.
- 김성경(2010). 가출경험 중고등학생의 개인특성, 가족특성 및 폭력피해 경험과 가출빈도 관련성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7, 93-111.
- 김잔디(2012). 배우자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방안 -미국의 Greenbook 정책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3, 185-212.
- 김재엽, 김희수, 양혜원(2006). 가정폭력 노출 아동 문제의 심각성 및 이에 대한 복지적 대책. 가족법연구, 20(1), 83-119.
- 김재엽, 이병화, 윤여원(2011). 신체적 장애인의 아동기 폭력경험과 성인기 가정폭력과의 관계 연구- 법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6), 201-225.
- 김재엽, 조춘범, 정윤경(2008).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0(2), 29-51.
- 김재엽, 조학래, 양혜원(2003)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문제와 개입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5, 27-54.
- 김효진, 이재연(2004). 초등학생의 가정폭력노출과 또래폭력의 관계. 아동권리연구, 8(3), 413-437.
- 노충래, 김현경(2004). 중학생의 부부폭력 목격경험, 아동학대, 학교폭력 가해여부의 공존성 및 학교폭력 가해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사회복지연구, 5, 79-107.
- 박명숙(2006). 피학대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국가간 비교를 통한 함국적 함의-미국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7(5), 79-93.

- 박세경, 서문희, 서영숙, 진미정, 노성향, 강주희(2005).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은하, 권세원(2010). 가정폭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3), 201-231.
- 박인선(2002). 가정폭력대응서비스의 과제. 이화사회복지연구, 2, 76-96.
- 박정선, 황성현(2010). 청소년 가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출충동 변인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 1-21.
- 보건복지부(2003-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1). 아동학대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9).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서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 예방센터(2004).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선진국 연수보고서. 서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양혜원, 신혜섭(2006). 남녀고교생의 이성교제 폭력 실태와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7(1), 33-59.
-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주요결과.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1). 가출청소년 가정복귀 지원을 위한 심층조사 및 정책과제발굴 연구보고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3).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4). ‘본인집·이웃집의 가정폭력사건 10명 중 5명은 신고의사 있어’ :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보도자료.
- 오승환(2010). 청소년 가출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가출충동과 가출경험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301-324.
- 오주, 아영아(2006). 중학생 학교폭력 가해-피해 중복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개발연구, 12(1), 79-100.
- 유영주 외(2004). 새로운 가족학. 서울: 신정.
- 이경은, 장덕희(2000).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폭력범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7(1), 95-123.
- 이상희, 하승수, 이혜원(2008). 한일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대한 비교 연구. 아동과 권리, 12(3).

- 이유진, 김영한, 김형모(2012).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 서울: 보건복지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창호, 권해수, 조은경(2002). 폭력가정 아이들의 실태 분석. 제 23회 특수상담사례연구발표회 ‘폭력가정의 아이들’ . 한국청소년상담원.
- 장희숙(2002). 폭력가정 청소년들의 특성과 개입방안. 제 23회 특수상담사례연구발표회 ‘폭력가정의 아이들’ . 한국청소년상담원.
- 장희숙(2003). 아내폭력가정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쉼터거주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5, 255-281.
- 정운경, 원경림, 최지현(2012). 가정폭력이 가출에 미치는 영향과 유해업소 출입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12), 159-179.
- 정혜숙(2009). 아내학대와 아동학대의 중복발생을 둘러싼 여성주의 비판모델과 여성복지적 과제의 검토. 한국여성학, 25(4), 109-139.
- 조미숙 역(2004). 가정폭력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경기: 21세기사. Kashani, J. H., & Allan, W. D.(1998). The impact of family violence on children and adolescents. CA: Sage publication.
- 조미숙, 이윤로(1999). 아동구타 가정과 아동의 적응연구 논점과 과제. 한국가족복지학, 3, 165-186.
- 조아미(2011). 비행친구와 청소년 가출의 관계에서 약물사용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2), 79-95.
- 최장원, 김희진(2011).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 73-103.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가정폭력 사건의 회복적 사법 도입 가능성. 콜로키움자료집 14-S2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홍세희, 노연경, 박민선(2010). 청소년의 가출빈도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와 생태체계적 변수들과의 관련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17(2), 181-201.
- 황옥경(2011). 지역사회 협력체계 모형개발을 위한 학대피해 아동 보호정책의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모형개발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17-48.
- 후양 란잉(2010). 대만의 회복적 사법 개관. 법학논집, 15(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제처(201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 보건복지부(201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아동·청소년 보호 분야〉.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09mn.jsp?PAR\\_MENU\\_ID=06&MENU\\_ID=0609020403](http://www.mw.go.kr/front_new/jc/sjc0109mn.jsp?PAR_MENU_ID=06&MENU_ID=0609020403)
- 여성가족부(2014). <http://www.mogef.go.kr/>
- 연합뉴스(2014.4.1.). 가정폭력부모에 최대 4년 ‘친권정지’ 가능해진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3/31/0200000000AKR20140331212951001.HTML?input=1179m>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http://korea1391.org/new\\_index/](http://korea1391.org/new_index/)
- Appel, A. E., & Holden, G. W.(1998). The Co-occurrence of spouse and physical child abuse: A review and appraisa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2, 578-599.
- Berk, L. E.(2006). *Child Development*(7th ed.). MA: Pearson.
- Bolger, K. E., & Patterson, C. J.(2001). Developmental pathways from child maltreatment to peer rejection. *Child Development*, 72, 549-568.
- Buchanan, A.(1996). *Cycles of child maltreatment*. Chichester, UK: Wiley
- Carter, J. (2005).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and Youth Violence: Strategies for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Family Violence Prevention Fund.
- Carter, L. S., Weithorn L. A., & Behrman, R. E.(1999). Domestic Violence and Children: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The Future of Children*, 9(3), 4-20.
- Clara E. H.(2010).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ornell, C. P., & Gelles, R. J.(1982). Adolescents to parent violence.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15(1), 8-14.
- Downs, W. R., Smyth, N. J., & Miller, B. A.(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violence and alcohol problems among men who batter: An empirical

- review and synthesis. *Aggression and violence Behavior*, 1, 327–344.
- Dutton, D. G., & Hart, S. D.(1992). Evidence for long-term, specific effects of childhood abuse and neglect on criminal behavior in men.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36, 129–137.
- Edelson, J.(1999). The overlap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women battering. *Violence Against Women*, 5, 134–154.
- Ehrensaft, M. K., Cohen, P., Brown, J., Smailes, E., Chen, H., & Johnson, J. G.(2003).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tner violence: A 20-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 741–753.
- Fantuzzo, J. W., Depaola, L. M., Lambert, L., & Martino, T.(1991). Effects of interparental violence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competencie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258–265.
- Folsom, W. S., Christensen, M. L., Avery, L., & Moore, C.(2003). The Co-Occurrence of Child Abuse and Domestic Violence: An Issue of Service Delivery for Social Service Professional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0(5), 375–387.
- Graham-Bermann, S. A., & Levendosky, A. A.(1998). Traumatic stress symptoms in children of battered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3, 111–128.
- Grusec, J. E., & Lytton, H.(1988). *Social development: History, theory and research*. NY: Springer-Verlag.
- Henning, K., Leitenberg, H., Coffey, P., Bennett, T., & Jankowski, M. K.(1997). Long-term psychological adjustment to witnessing interparental physical conflict during childhood. *Child Abuse and Neglect*, 21, 501–515.
- Hershorn, M., & Rosenbaum, A.(1985). Children of marital violence: A closer look at the unintended victi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5, 260–266.
- Holtzworth-Munroe, A., Bates, L., Smutzler, N., & Sandin, E.(1997). A brief review of th research on husband violence: Part One. Maritally violence versus

- nonviolence me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2, 65–99.
- Jones, D. P.(1997). Social support and coping strategies as mediators of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21, 207–209.
- Jouriles, E. N., & Norwood, W. D.(1995). Physical aggression toward boys and girls in the families characterized by the battering of wom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9, 69–78.
- Kalmuss, D.(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6(1), 11–19.
- Kaufman, J., & Ziegler, E.(1987). Do abused children become abusive par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186–192.
- Kwong, M. J., Bartholomew, K., Henderson, A. J. Z., & Trinke, S. J.(2003).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relationship viol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 288–301.
- Lewis, N. K.(2003), Balancing the Dictates of Law and Ethical Practice: Empowerment of Female Survivors of Domestic Violence in the Presence of Overlapping Child Abuse, *Ethics & Behavior*, 13(4), 353–366.
- Magen, R. H., Conroy, K., Hess, P. M., Panciera, A., & Simon, B. L.(2001), “Identifying domestic violence in child abuse and neglect investigations” ,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6), pp.580–601.
- Malinosky–Rummellm R., & Hansen, D. J.(1993).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hood physical abuse. *Psychological Bulletin*, 114(1), 68–79.
- Markward, M. J.(1997). The impact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 *Family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78(1), 66–70.
- Murrell, A. R., Christoff, K. A., & Henning, K. R.(2007). Characteristics of Domestic Violence Offenders: Associations with Childhood Exposure to Violence. *J Fam Violence*, 22(7), 523–532.
- Pfouts, J. H., Schopler, J. H., & Henley, H. C.(1982) Forgotten victims of family violence. *Social Work*, 27(4), 367–368.
- Santrock, J. W.(2003). *Children*(7th ed.). IA: McGraw–Hill.

- Shonk, S. M., & Cicchetti, D.(2001). Maltreatment, competency deficits, and risk for academic and behavioral mal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7(1), 3–17.
- Simons, R. L., & Whitbeck, L. B., Conger, R. D., & Chyi-In, W. (199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harsh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7(1), 159–171.
- Spaccarelli, S., Sandler, I. N., & Roosa, M.(1994). History of spouse violence against mother: Correlated risks and unique effects in child mental health. *Journal of Family Violence*, 9(1), 79–98.
- Stark, E., & Flitcraft, A. H.(1988), Women and children at risk: A feminist perspective on child abus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18, 97–118.
- Stith, S. M., Rosen, K. H., Middleton, K. M., Busch, A. L., Lundeberg, K., & Carlton, R. P.(2000).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pouse abuse: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 640–654.
- Straus, M. A., Gelles, R. J.(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Straus, M. A., Gelles, R. J., & Steinmetz, S.(1980). *Behind close doors: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New York: Doubleday.
- Thomlison, B.(1997).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child maltreatment. In M. W. Fraser(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an ecological perspective*(pp.50–72). WA: NASW Press.
- U. 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1993). *National crime victims survey*.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agh, F., & Bonner, M.(2002), *Domestic Violence and Child Protection: Issues in Safety Planning*, *Child Abuse Review* 11(5), 282–295.
- Widom, C. S.(1989). Does violence beget violence?: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106(1), 3–28.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3). <https://www.childwelfare.gov/>



## Abstract

### Survey on Children and Youth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and Measure to Respon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 of children and youth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and explore ways to solve the issue. Various types of domestic violence experienced by children and youth have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children and youth and would lead to misdeed and crime. Therefore, the ways to support them to grow as a healthy member of our society is desperately required beyond measures to support victims. To this end, literatures and documents on the condition of domestic violence were analyzed and in-depth interview with mothers, children and youth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ollowing policy proposals.

The ways to revise relevant ac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tection and support provided only to the direc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crime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shall be expanded to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ct and domestic violence act shall be blocked by making involvement in domestic violence act possible through order to take class, treatment and counseling even though some act is not classified as domestic violence crime.

Second, counseling to improve relationship and adop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in settlement is required to improve relationship in case where reunion with members of original home is possible and to improve relationship to the extent that relationship is good enough to support the growth of children and youth.

Direction for policy improvement is as follows.

First, the system to link the optimized service depending on the victims' age, sex and condition is required by establishing "One-stop Support Center for Domestic Violence (temporary name)" that is responsible for overall management of domestic violence issues because current support works for domestic violence are scattered depending on the group to be supported.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enter that provides program to promote the restoration of victims and nurture a healthy household by resolving conflicts and improving

relationship from the perspective of “restorative justice” moving away from the system that provides individual program including correction of assailant’s behavior,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therapy for victims. In addition, offering mentoring program to provide the role model of good family and good parents, that are lacking in children and youth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would be helpful.

Third, it is necessary to assign experts who can deal with trauma not only from domestic violence but also from school violence and other incidents and accidents to existing mental health centers, public health clinics and counseling centers to support victims who are not restored due to limitations to the number of times to receive support and cost.

Fourth, children and youth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have to return to home with possibility of violence or home with parents whom they do not want to live with against their will. Therefore, field experts need to provide exact and various information to make children and youth make the best decision and to make this possible,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sentence “(when decision should be made, the opinion of children and youth can be reflected” in the relevant act. In addition, the experience (experience of witnessing violence) of children and youth have very fetal impact on individual’s development and the possibility of restoration may be different significantly depending on one’s condition and resources. Therefore, the support for children and youth shall be provided meeting the needs of the affected children reflecting the extent and condition of the case and opinion of experts on children and youth.

Fifth, as part of efforts to prevent various types of violence and cut the cycle of violence, education on anti–violence should be provided to teach that violence cannot be justified in any case and they can move away from violence based on variou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skills,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mselves and others.

Sixth, continuous training and promotion to raise awareness of the public and relevant workers on the domestic violence are necessary to make them recognize that domestic violence is not the private matters of family but the criminal act that cannot be justified in any case.

Seven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ofessional service by diversifying the types of shelter including shelter for women (men), shelter for affected family and shelter for victims who require more professional psychiatric treatment and offering the service that meets the demand of victims.

##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4-R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안선영·황여정·이수정·이로사
- 14-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 임희진·송병국
- 14-R0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I / 이경상·박선영·조남익
-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김정주·김정숙
- 14-R05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박영균·조흥식
- 14-R06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 총괄보고서 / 김형주·권재기
- 14-R0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 김형주
- 14-R07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이창호·신나민
- 14-R0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이유진·이창훈·강지명
- 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승경·송미경
- 14-R1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지연·정소연
- 14-R11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 배상률
-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조혜영·이태주·이덕난
- 13-R1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손병덕
- 14-R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 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유나
- 14-R14-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 김경준·이호균·서여정·김광혁·김형욱·윤상석·박병식·이석구
- 14-R14-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경준·김희진
- 14-R14-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 천정웅
- 14-R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지역사회 진단·분석 / 김지경·하현주·김옥태
- 14-R15-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김영한·임영식·김민
- 14-R16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양계민·신현욱·박주희
- 14-R16-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4-R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오해섭·맹영임
- 14-R17-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 오해섭·맹영임·문호영
- 14-R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사업보고서 / 이종원·황진구·모상현·정은주·강현철·한영근·허효주·문은옥·이영화
- 14-R18-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Ⅰ - 청소년 생활시간 추이 분석 / 정은주
- 14-R18-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Ⅱ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 모상현
- 14-R18-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Ⅲ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 황진구·허효주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I 데이터 분석 보고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 / 김지영·전영실·박성훈 (자체번호 14-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측정 도구개발 / 김태준 (자체번호 14-R20-2)

## 수 시 과 제

- 14-R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 이유진·배규한
- 14-R2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모상현·이진숙
- 14-R23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방안 / 김희진
- 14-R2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백혜정·임희진
- 14-R25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배상률
- 14-R26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황진구
- 14-R27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정숙

## 수 탁 과 제

- 14-R28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성은모
- 14-R29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박창남
- 14-R30 학교 밖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진로 실태조사 / 김지경·이상준
- 14-R31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14-R32-1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2-2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3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 조혜영·양계민
- 14-R33-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활용편 :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매뉴얼 / 조혜영·양계민
- 14-R34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한·이유진

- 14-R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지경·김지연·김정주
- 14-R36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윤철경·김혁진·김범구·정다정
- 14-R36-1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 윤철경·하시연
- 14-R37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총괄보고서 / 성은모
- 14-R37-1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통일체험 활동 운영매뉴얼 / 성은모
- 14-R38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평가 체계개발 및 프로그램 분석 / 양계민
- 14-R39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2014 / 황진구·이종원·김희진
- 14-R40 2014년도 공동생활가정평가 사후관리 / 김지연·이경상
- 14-R41-1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예방매뉴얼(1-1)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2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1-2)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3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1-3)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 14-R41-4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진단도구 개발(1-4) / 정제영·강태훈·류성창·변수용
- 14-R42 2014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김경준
- 14-R43 대안교육포럼 / 윤철경·오해섭·백혜정·김희진
- 14-R4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희진·황여정
- 14-R45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모델 확대 방안 / 황진구
- 14-R4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지연·김동일·김태완·윤철경
- 14-R47 고용차별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성은모
- 14-R48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이창호·윤철경·최금해·김욱태
- 14-R49 2014년 또래조정사업 / 서정아·김영한·이유진
- 14-R50 20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돌봄 연계 모형 개발 연구 / 양계민
- 14-R51 청소년우대정책관련 하위법령 개정추진 기초연구 / 이창호·조혜영·김용훈
- 14-R52 신고·인증제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정립 및 분류 체계 연구 / 임지연·김민
- 14-R53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성은모
- 14-R54 약물사이버중독 안전내용체계안 개발연구 / 이창호·왕석순
- 14-R55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검정교과목정비 및 표준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 김경준·오해섭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4-S01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I (1/6~10)
- 14-S0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 II (1/13~17)
- 14-S0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1/21)
- 14-S0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집중 연수 (2/4~7)
- 14-S05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 (2/20)
- 14-S06 제1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4)
- 14-S07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11)

- 14-S08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 일본의 최근동향 (3/13)
- 14-S09 STATA를 이용한 공간분석의 기초 (3/21)
- 14-S10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 (3/26)
- 14-S11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워크숍 (4/3~4)
- 14-S1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학교장 특별연수 (4/14~16)
- 14-S13 학업중단예방 시·도 담당자 워크숍 (4/11~12)
- 14-S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4/23)
- 14-S15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진단지표 (4/29)
- 14-S16 복잡표본조사에서 가치치 산출 (5/8)
- 14-S17 다문화시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교육 (5/12)
- 14-S18 시군구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7)
- 14-S19 지역사회 지표를 통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정책의 실제 활용 (5/26)
- 14-S20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플릿트러닝의 적용 가능성 (5/26)
- 14-S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숍 (5/30)
- 14-S22 위기청소년을 위한 숲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 (5/30)
- 14-S23 청소년 통일 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Action Learning의 적용가능성 (5/29)
- 14-S2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6/13)
- 14-S25 Mplus를 활용한 자료분석 (7/4)
- 14-S26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세미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7/11)
- 14-S27 질적연구방법론 : CQR (7/21)
- 14-S28 가정폭력사건의 회복적사법 도입가능성 (7/29)
- 14-S29 2014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 하계합숙연수 (7/22~25)
- 14-S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사례(중등) 발표 워크숍 (8/7, 8/10)
- 14-S31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8/29)
- 14-S32 표본조사의 올바른 모수 추정법 (8/14)
- 14-S33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8/21)
- 14-S34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담당자 2차 워크숍 (8/28~29)
- 14-S35 대안교실 담당 교원 심화연수 (8/18~22)
- 14-S36 질적연구방법론 : 근거이론 (8/29)
- 14-S37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안 도출 (9/19)
- 14-S38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9/19)
- 14-S39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역량 강화 방안 (9/30)
- 14-S40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 정책과 실천 (9/25~26)
- 14-S41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공동세미나 (9/25)
- 14-S42 학교 사이버불링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 (11/3)
- 14-S43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30)
- 14-S4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11/12)
- 14-S45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1/7)
- 14-S46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11/17)
- 14-S47 국회다정다감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11/07)
- 14-S48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워크숍 (11/29)

##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7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7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7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75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1호 :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2호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3호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4호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5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6호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3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4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5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6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7호 :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8호 :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 과학에 관한 의식조사 : 주요 연구결과

연구보고 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인 쇄** 2014년 12월 24일

**발 행** 2014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전화 02)2263-388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17-5 93330